

2016 안전관리계획



2016 안전관리계획



안양시립석수도서관
등록
*** 2016 ***
제 RF009769 호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I. 총괄	1
1. 개요	3
2. 전년도 성과	4
3. 여건 및 전망	6
4. 추진방향	7
5. 기관별 역할과 책임	8
6.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13
II.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7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9
1-1. 풍수해	21
1-2. 지진	38
1-3. 가뭄	43
1-4. 폭염	51
1-5. 설해	58
1-6. 황사	68
1-7. 산사태	81
2. 사회재난 관리대책	85
2-1. 문화재	87
2-2. 산불재난	102
2-3. 대형건축물 사고	107
2-4. 공동주택 사고	118

목 차

2-5. 지하도상가 사고	124
2-6. 공연장	137
2-7. 상수도시설사고	146
2-8. 하수도시설사고	149
2-9. 공동구 사고	156
2-10. 도로재난	160
2-11. 교통대책	169
2-12. 에너지 사고	176
2-13. 정보통신 사고	185
2-14. 긴급통신 사고	193
2-15. 감염병	197
2-16. 가축전염병	211
2-17. 전시재난	219
3. 안전관리대책	225
3-1. 어린이집	227
3-2. 어린이놀이시설	232
3-3. 전기,가스,유류사고	236
3-4. 등산로	245
3-5. 공공건축물	249
3-6. 체육시설	262
3-7. 아동복지시설	267
3-8. 청소년시설	273

목 차

3-9. 노인복지시설	281
3-10. 장애인복지시설	285
3-11. 학교폭력	290
3-12. 식품안전 관리	291
3-13. 자살예방	298

Ⅲ.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303

1. 재난상황관리	305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307
3. 재난현장 환경 정비	311
4. 긴급 통신 지원	317
5.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321
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341
7. 재난 수습 홍보	345
8. 재난관리자원 지원	346
9. 교통대책	350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353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366
12. 사회질서 유지	367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371
14.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374

목 차

IV. 주요사업 재정투자 계획	377
V.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 계획	381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83
2. 안양만안경찰서	404
3. 안양동안경찰서	408

I. 총괄



여 백

1. 개 요

□ 큰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시·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수립목표

- 안양시 지역의 현실과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확립

□ 성 격

- 재난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추진
- 안전관리계획 추진으로 재정투자와 정책 연계성 제고
-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반응

□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3개 분야 37개 유형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
자연재난 (7)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설해, 황사, 산사태
사회재난 (17)	문화재, 산불재난, 대형건축물 사고, 공동주택 사고, 지하도상가사고, 공연장,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공동구, 도로재난, 교통대책, 에너지 사고, 정보통신 사고, 긴급통신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전시재난(국지도발)
안전관리 (13)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전기,가스, 유류 사고, 등산로, 공공건축물,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학교폭력, 식품안전관리, 자살예방

2. 전년도 성과

□ 자연재난

-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36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대비 상황관리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재난상황시 즉시 대처 가능토록 구축하였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 및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음.
-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재난장비를 일선에 배치하고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사전 절차를 수립하는 등 재난 발생시 복구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도록 하였음.
- 우기철 집중호우는 없었으나 태풍 및 홍수에 대비, 사전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예방활동을 전개 사회적 피해 제로화 및 물적피해 최소화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재난 없는 안전 안양 구축

□ 사회재난

- 관·민간전문가 등 협력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대응시스템 가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짐
-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지원 대책본부를 운영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 외래진료소 운영 : 5개소(민안·동안보건과, 한림대성심병원, 샘병원, 메트로병원)

- ▶ 국민안심병원 지정 : 3개소(안양샘병원, 평촌우리병원, 월스기념병원)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 행동매뉴얼 등을 현장 맞춤형으로 정비
 - 재난관리 단계별 역할 및 임무 명확화
 - 현장중심 즉각 대응반 구축, 기능별 협업 업무 강화
- 가뭄과 건조한 기후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미 발생하였음
- 자살예방 계획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자살예방 전담팀 신설, 조직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운영함.

□ 안전관리

-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련 시설환경 개선(개보수)을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 * 안심보육환경 구축 일환 '15년 관내 전체어린이집 CCTV설치 완료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주체를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국가대진단 기간 동안 8개분야 36개유형 2,551개시설(26개 부서)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보수 완료하였음.

3. 여건 및 전망

□ 자연재난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 위험 상존
 - * 우리나라의 기온은 3.0~5.9℃ 상승 (쏘지구는 1.8~3.7℃ 상승, 2099년 가정)
- 안양시의 최근 큰 재난피해는 없었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소규모 피해가 발생
- 연평균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재난

-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도시화·집중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대형·복합재난이 증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불안감이 증가
 - * 세월호 참사('14. 4월)
- 신종바이러스(메르스, 에볼라 등), 생물테러 위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위협증가
 - * 전국 감염병 발생의 22.5%로 매년 증가 추세(메르스 발생으로 전국 186명 발생 사망 38명, 안양시 사망자 없음.)

□ 안전관리

-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축제장 등 안전사고 발생 지속
- 취약계층 복지 관련 노후시설 및 안전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 강화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하고 주 5일제 정착으로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필요성 대두

4. 추진방향

비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양

목표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부터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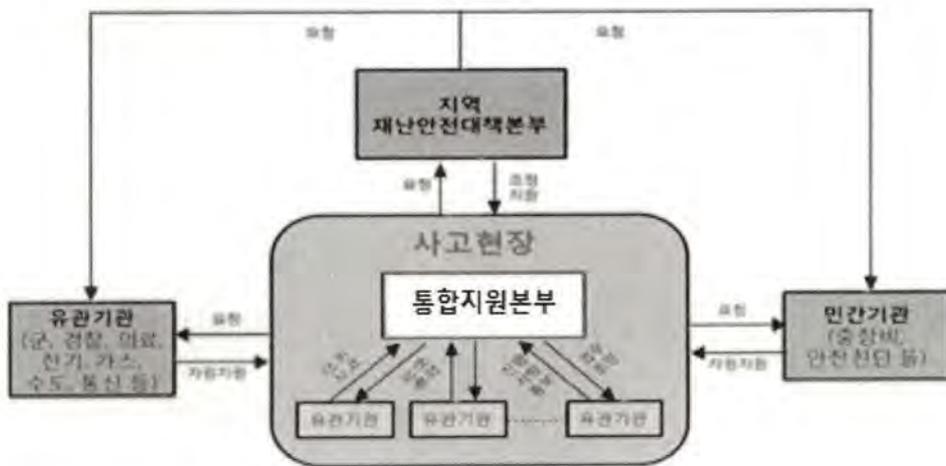
<p>자연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대비 사전 취약시설 점검정비 추진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 강화 ·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강화
<p>사회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및 생물테러 모니터링 구축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테러·위기대응 매뉴얼 지속적 정비 및 훈련 실시 · 민·관 협업체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보급
<p>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조사·점검 등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대형 건설공사 현장 사전점검 ·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제로화 환경 조성 및 선도활동 강화 · 민관협력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5. 기관별 역할과 책임

5-1. 재난현장 지휘체계

□ 목 적

재난발생시 지자체·소방·경찰·공공기관 등 재난과 관련한 다수의 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할 경우, 기관간 업무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 지휘·대응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현장대응체계도》

□ 현장지휘권의 위임

○ 현장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구역 내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지역본부장에게 있음.

※ 다만, 재난대응활동중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 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재난 유형이나 재난현장 피해규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 대응책임조직의 장이나 부시장에게 현장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발생한 재난과 유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한 재난의 형태, 특성, 실제 대응활동 등을 고려하여 대응 책임조직 결정

(예) 지역본부장은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환경관련부서의 장,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가축질병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재난규모가 크고 복합적일 경우 직접 현장지휘를 하거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지휘토록 할 수 있음.

□ 현장지휘권의 이양

- 재난현장의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단계별로 현장지휘권을 순차적으로 이양
 - ※ 부서장 → 국장급 → 과장급
- 재난현장에 도착한 현장지휘권 상급자는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지휘권을 인수할 것인지 또는 현장지휘관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칠 것인지를 결정함.
- 인수인계할 현장지휘관이 서로 대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해 대면이 어려운 경우 무선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현장지휘권 이양 상황을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참여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참여인력에게 전파(선언)함.
- 현장지휘권 이양시 인수·인계 사항

- 피해규모와 범위, 위험물질 존재와 누출여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및 현장 참여인력의 안전조치와 주의사항 등
- 재난현장 대응활동계획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참가한 기관, 단체의 현황 및 부여된 임무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동원한 자원(인적, 물적 및 정보 등) 및 추가 대응자원의 필요성

5-2. 재난현장 대응시 관련 기관별 역할과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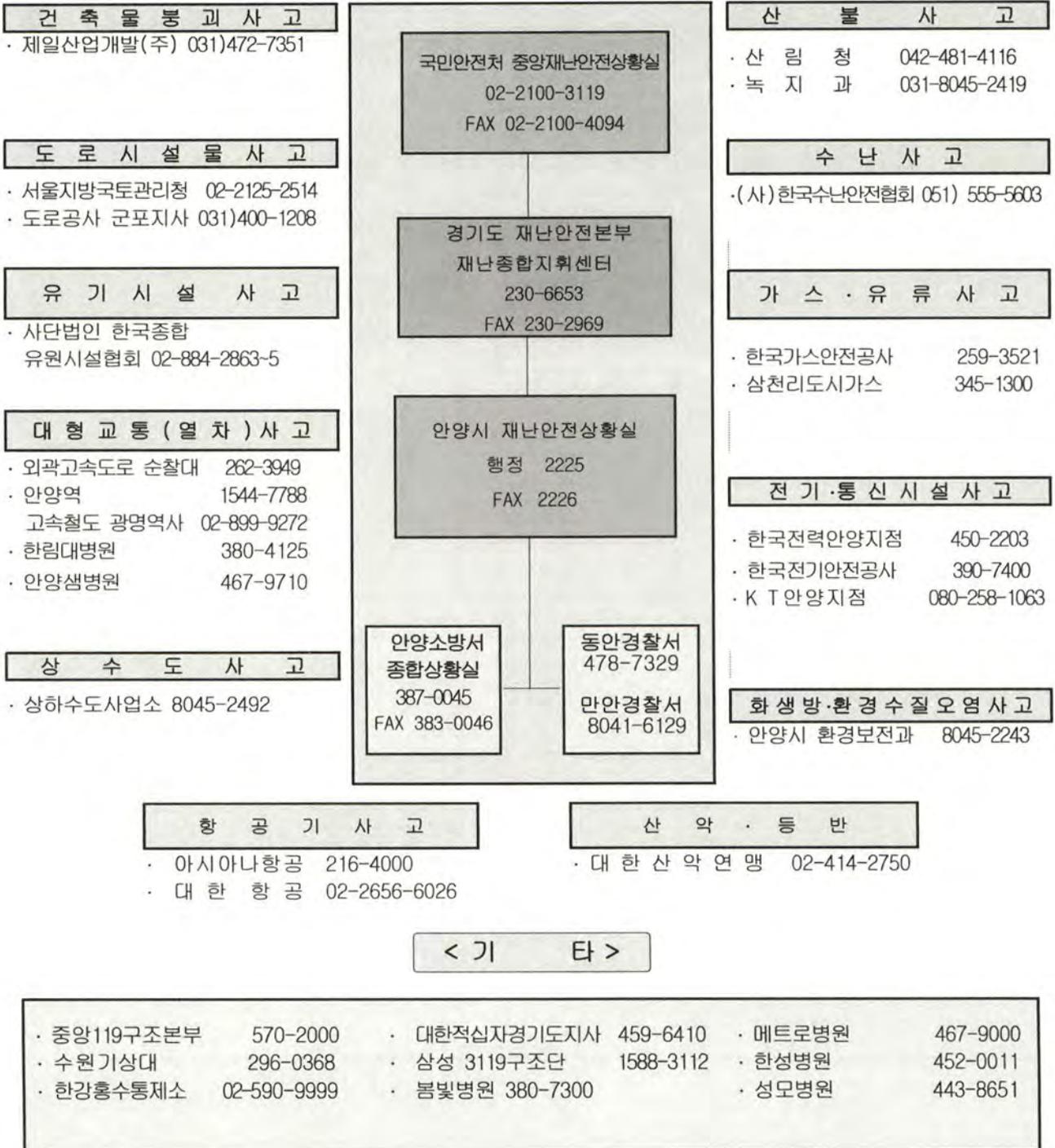
기 관	역할과 임무
안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및 전파, 현장상황 모니터링, 현장 출동 명령 •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 및 정보 등) 지원 •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현장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치공무원이 재난현장 응급조치 • 출동준비 및 출동 • 지휘권 선언, 현장지휘소 설치 •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본)와 현장지휘소, 참여기관별 지휘소 간의 공통통신망 구축 • 재난현장 대응계획 수립 • 현장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지역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 유관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정보(지도, 주민현황, 재해약자 및 재해위험시설 등)를 전달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에게 임무부여 및 활동상황 파악 • 현장상황의 전개에 따른 현장지휘권 인수인계 • 시대본에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요청 • 유관기관에 요청한 자원(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점검 • 시대본에 의료기관 및 영안실 정보 요청 • 홍보담당을 지정하여 언론 및 대외발표 일원화 • 의전활동을 위한 조직 또는 인력 운영 • 지역본부장에게 재난현장 대응활동 완료보고 • 유관기관 재난현장 철수 지시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시대본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및 실행 • 긴급구조활동구역을 위해 통제선 설치 •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 현장지휘관과 공통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 공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기 관	역할과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 부상자 응급조치 • 부상자 긴급이송 및 사체운구를 위한 구급차 및 헬기 지원 •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 현장지휘관과 공통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 공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 재난현장의 방범 및 경비 •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통제, 일제신호 조치 • 교통정보를 공통통신망을 이용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 주민고립 및 인명 구조활동 • 재해사상자 발생시 신원확인 지원 • 의료기관 및 영안실 주변 현장통제 •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유 관 기 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주시, 출동대기, 준비 등 대응태세 확립 •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 현장지휘관과 공통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 공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대민지원 활동

기 관	역할과 임무
산림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신고 접수 • 조난사고 발생시 헬기 및 기타 신속한 운송체제 확립 • 응급구조 장비 및 인원 신속동원 등 구난체제 가동 •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 양수기, 포대, 비닐 등 수방자재 지원 • 대응단계에 따른 응급복구반 및 가용장비 자재 등 지원 • 피해확대 방지 및 탐방객 접근 통제
통신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 수단 및 이동용 긴급복구장비 지원 • 긴급전화 및 인터넷 설치 • 재난대책용 통신 지원, 긴급복구 및 임시조치
전기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 긴급 전력 공급 및 설비 설치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전력공급
가스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6. 재난·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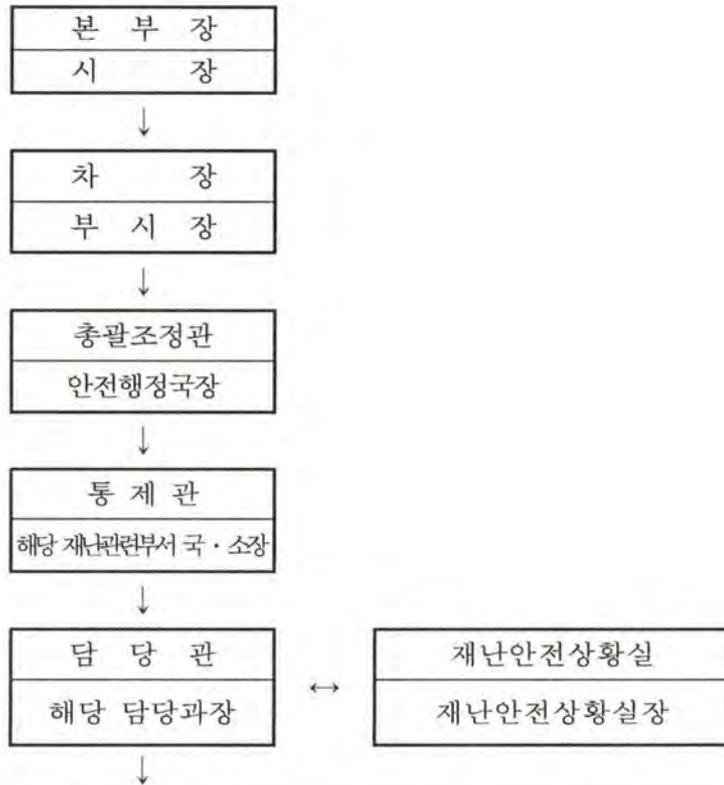
6-1. 유관기관 상황전파 체계도



6-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 조직도



① 상황 관리 총괄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④ 긴급 통신 지원	⑤ 시설 응급 복구	⑥ 에너지 기능 복구	⑦ 재난 수습 홍보	⑧ 물자 관리및 자원 지원	⑨ 교통 대책	⑩ 의료 · 방역	⑪ 자원 봉사 관리	⑫ 사회 질서 유지	⑬ 수색 구조 구급
안전 총괄과	복지 정책과	청소 행정과	정보 통신과	건축과 등 7개부서	녹색 성장과	홍보실	안전 총괄과	도로과, 대중 교통과	보건소	자치 행정과	안양 동안· मान 경찰서	안양 소방서

○ 협업기능별 소관부서 주요업무

기능별	담당부서	주요업무
① 상황관리총괄	안전총괄과	◎ 재난총괄담당 임무수행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③ 재난현장환경정비	청소행정과	◎ 쓰레기수거, 처리지원, 유해물질 제거
④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과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⑤ 시설응급복구	건축과, 하수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녹지과, 수도시설과, 고용경제과	◎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⑥ 에너지 기능복구	녹색성장과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기능 회복 지원
⑦ 재난수습홍보	홍보실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 종합적인 재난 물자계획,관리,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
⑨ 교통대책	도로과 대중교통과	◎ 비상 교통수단 지원,우회도로 지정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⑪ 자원봉사관리	자치행정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 사회질서유지	안양동안 민안경찰서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⑬ 수색·구조·구급	안양소방서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침수지역 배수 작업 지원

여 백

II.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 자연재난 / 2. 사회재난 / 3. 안전관리



여 백

1. 자연재난 관리대책



여 백

1-1. 풍수해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33	1			8	16	5	2	1		
태풍	8					8					
호우	25	1			8	8	5	2	1		
대설											
강풍											
풍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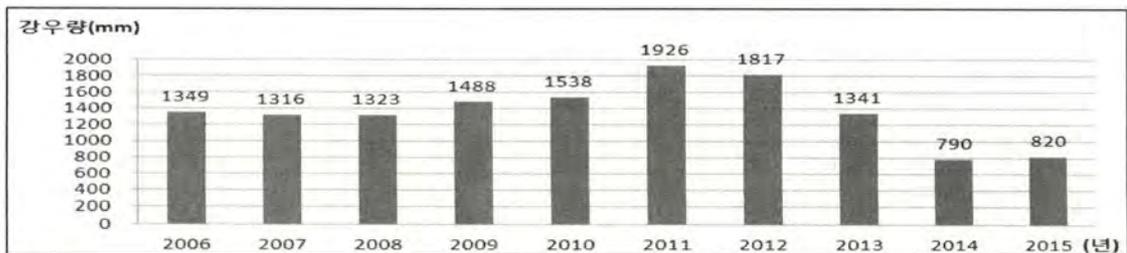
2) 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연평균	합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1						1					
사망 실종	소계	1					1					
	사망	1					1					
	실종											
부상												

나. 원인분석

- 1) 최근 10년간('05~'14) 풍수해로 인명피해 1명(사망·실종 1명), 재산 피해 33억원 발생
- 2) 풍수해 피해는 연도별 강수량 및 태풍영향 등이 원인으로 편차가 크고 최근 2년간은 강수량 및 태풍의 영향이 적었음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재산피해(억원)	-	-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조례 제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 조례』 제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 자연재해위험개선 표지판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 조례안 의회상정	4월 5월

2) 재정사업(예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재해예경보 확충사업

-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과 재난발생 시 저감대책 및 신속한 복구체계의 확립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 ◇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재해예경보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 주요내용
 - 기초현황조사 : 자료조사(주요풍수해현황, 방재관련계획), 설문조사
 - 풍수해위험지구선정 :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위험지구 단위대책 등
 - 풍수해 저감 시행계획 : 투자우선순위 결정, 단계별·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등
- 용역비 : 224백만원
- 용역기간 : 2016.4 ~ 2017.10 (착수일로부터 1년 7개월간)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용역 발주	3월
2/4분기	용역 업체 선정 착수보고회 개최	4월 5월
3/4분기	용역 사업 추진	
4/4분기	1차 중간보고회 개최 (~17.10월 용역완료)	10월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 사업 주요내용

- 경보방송시스템 2개소 신규 설치(관양동 저류시설, 석탑교)
- 영상감시시스템 3개소 신규 설치(관양동 저류시설, 석탑교, 박달교)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월 ~ 6월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현장조사 및 설계 계약 및 착공	2월 3월
2/4분기	- 준공 및 시운전	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374		262	1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224	-	112	112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	150	-	150				

3)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 풍수해 비상근무대비 재난담당자 교육 및 훈련 실시
- ◇ 풍수해 대비 점검 및 정비 실시

□ 주요내용

- 비상근무자 자체 교육
 - 재난발생대비 비상근무자(안전총괄과)에 대한 근무요령 교육
 - 향후 기상전망 및 비상근무자별 업무분장
- 풍수해 대비 중앙·도·시 합동훈련(도상훈련)
 - 태풍 내습을 가상하여 재난대응훈련 실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13개 협업부서 합동 훈련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시 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우려취약지역 점검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안전점검

□ 추진일정

구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시 점검	3월
2/4분기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우려취약지역 점검	4월
	· 풍수해 대비 중앙·도·시군 합동훈련(도상훈련) 실시	4월
	· 비상근무자 자체 교육 실시	5월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안전점검 실시	5월

마. 재난대응 활동계획

1) 예방단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하천·사면 등) 선정하여 지구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중 : 2016~2017년 224백만원(최초 수립 2012.2월)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

- 목 적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승인 등 철자이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
- 협의대상
 - 행정계획 : 35개법령에 의한 49개 계획(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지정 등)
 - 개발사업 : 50개법령에 의한 62개 사업(개발행위허가, 도로공사시행 등)
- 협의기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지역본부장

(다)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 대 상 : 산간계곡 경보시설, 음성경보방송시설, AWS, 강우량계, 수위관측시설, 재난감시CCTV, 문자전광판
- 내 용 : 재난발생 및 발생 우려지역의 현장영상·기상·수위관측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파악으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보 방송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 ※ 2016년 확충 계획 : 경보방송 2개소, 영삼감시 3개소 신규설치, 150백만원

2) 대비단계

(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 목적 : 내진설계 대상시설, 붕괴위험이 있는 다목적댐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으로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내용 : 댐·다중이용시설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 작성·배포

(나)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민·관·군 협약

- 해당기관 : 육군 1580부대, 2506부대
- 주요내용 : 재해물자·장비 공유 및 긴급대응 협조

(다) 인적·물적자원 동원체계 구축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점검

- 수방재재 확보

[비축기준]

- 종 류 : PP마대(모래), 톤백(모래), 로프, 말뚝, 삽, 해머, 낫, 톱, 곡괭이 등
- 비축장소 : 구청, 주민센터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침수위험지역 등
-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지정기준]

- 대상장비 : 덩크 굴삭기, 페이로다, 크레인, 청소차, 불도저, 집게차, 트랙터 등

[지정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장비
 -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 3단계 : 군부대 장비
 - ▶ 4단계 : 민간 장비

○ 방역물자 및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방역물자 확보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손씻기용 위생비누, 예방접종약품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 보관장소 : 만안·동안 보건소에 비축관리

-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

- 종 류 : 양수기,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등

-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침수위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 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보관장소 : 구·동주민센터 창고, 관내 침수위험지역 등

(라)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지정기준

-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재해발생빈도, 침수 흔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m²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구호물자 확보

- '피해액', '연평균 강우량',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시군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에 따라 비축

※ '16년 1월 현재 비축현황 : 응급구호세트 221개, 취사구호세트 105개

- 생수, 쌀, 부식, 즉석식품, 부탄가스 등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장기보관이 어려울 경우 사전구매선을 확보, 재해발생 시 즉시 조달

(마) 긴급 대피체계 구축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선”(SAFETY LINE) 운영

○ “재난안전선”(SAFETY LINE)의 개념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연결한 선
- 내부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운영권자 : 시장·군수

- 운영방안

- “재난안전선”은 재난의 예방단계, 사태발생 시, 복구·수습단계까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활용

[예방단계] - 기상특보가 발생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출입차단

[사태발생] -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복구·수습] -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띠 등 위험 지역에 안전한 복구를 위한 통제

(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 관내 강우·수위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체제 구축
 - 재난 예·경보시스템(36개) : 경보시설(3), 강우량관측(5), 수위관측(8), CCTV(20)
- ⇒ 임계값을 현장여건 고려, 하천변 경계 위험수위 재확인
- ⇒ 팝업 및 경보시스템 : AWS·강우량·수위관측 연계, SMS 문자정보 운영

(사) 방재 훈련 : 5월

- 기본방향 : 재난상황 발생시 협업기능 실과별 임무와 역할 숙지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협업에 기반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훈련참여 : 여름철 협업기능별 실·과 및 유관기관
- 훈련방법 : 토의(도상) 훈련 ※가상의 극한 기상상황 설정
 - 풍수해·폭설 상황에서의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 숙지상태 점검
 - 협업기능별 대응방안 발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3) 대응단계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

-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대책에 관한 관련실과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

- 재난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반조치 요청 등

(나) 상황근무체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16. 5. 15 ~ 10. 15 (5개월)

구분		근무기준	편성인원	비고
준비 단계	상시대비단계 (평상시)	· 상시운영체제 (24시간 상황관리)	1	
	사전대비단계 (보강단계)	· 호우·강풍주의보 발표 · 태풍정보(도착예상 1일전)	7	시설응급 복구반
비상 단계	I 단계	· 호우·강풍경보 발표 · 태풍주의보 발표	20	대책본부 가동
	II 단계	· 재난발생 시 · 태풍경보 발표	51	대책본부 강화/ 응급복구
	III 단계	· 대규모 재난발생 시	71	

※ 유관기관(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소방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군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안양

(다) 상황판단회의 운영

○ 회의개최

- 태풍·호우 등 발생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 될 경우
- 태풍·호우 등 발생으로 예비특보 발령단계부터 수시 개최
- 주요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별 소집대상 범위 결정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이동 조치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결정 등

○ 단계별 회의참석대상

기상특보 단계	회의 주제	참석대상	비고
예비특보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팀장 등 관련 실·과팀장 자연재난팀 실무 직원 	
주의보	안전총괄과장		
경보	안전행정국장		

1. 자연재난팀장이 기상특보 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2.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라) 실무반 편성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	비고
①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괄과	○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청소행정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④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유)KT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⑤ 시 설 응급복구	응급시설복구반 (도로과, 하천관리과, 하수과 등)	○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⑥ 에 너 지 기능복구	녹색성장과 (유)한국전력공사 (유)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기능 회복 지원	
⑦ 재난수습 홍보	홍보실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군부대	○ 재난물자 지원 및 관리	
⑨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대충교통과	○ 육상교통수단 지원	
⑩ 의료·방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⑪ 자원봉사 관 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 사회질서 유 지	만안경찰서 동안경찰서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⑬ 수 색 구조·구급	안양소방서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마) 위험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 지원

○ 사전 대피체계 구축

- 위험지구 내 사이렌·가두방송·자동음성통보시스템·지역방송 등 최단시간 내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피명령 정보 전달
- 사전에 지정된 대피안내요원(동 또는 구청 공무원)과 대피지원요원(자율방재단원 등)은 현장에 즉시 출동, 사전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대피 유도

○ 재난 유형별 예·경보 기준

구분	예보	경보	
태풍	1안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2안	태풍의 예상이동경로 및 영향권에 포함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지역내에서 강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될 때
집중호우	1안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2안	○○댐 수위가 ○m 이상일 때	○○댐 수위가 ○m 이상일 때
	3안	○○교 수위가 ○m 이상일 때	○○교 수위가 ○m 이상일 때

○ 재난 예·경보 발령

- 발령권자 :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 상 : 자연재난 및 대형 광범위한 재난 피해
- 시 기 :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예상되는 때

○ 발령방법 : 전기통신시설 또는 방송의 우선 사용 요청

- 기상상황과 재난 예·경보 및 재난사항 등

(바) 현장 CP형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에서 통합 상황관리

- 지역본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선정, 재해발생시 현장접근이 용이한 곳을 비상지원본부 설치대상으로 사전 지정
- 취약지역(지점) 별로 현장책임자를 지정,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현장 관리 및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임무·역할 등 교육 실시
- 재해발생 예견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대피 및 지역 내 전 분야의 협조 당부

- 구조·구급 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 현황 파악 및 전파

(사)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 수재민 응급구호 활동 실시
 - 사망·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의연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 구호물자(인력, 장비, 물품 등) 지원
-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평상시]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도모를 위한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등 지원

[비상시]

- 자원봉사센터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행정과)

4) 복구단계

(가)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 추진방침

- 사유재산피해 One-Stop 지원시스템 정착으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피해원인의 정밀분석을 토대로 한 항구복구 대책수립 시행
- 자연생태계 및 주변여건을 종합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추진
- 사업시행과정 오류, 불필요한 사업방지 등을 위한 사전심의 강화
-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등 적극 활용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 설정 추진
- 사유시설 : 주택(금년 말), 농경지(영농기 이전)
- 공공시설
- 대규모 : 내년도 우기 전까지 수해방지시설 우선시공 완료
- 소규모 :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실시설계 이전 사전심의제 운영 철저
- 개선복구 사업지구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 적정한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

(나) 복구의 종류

○ 응급복구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 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한 복구

○ 항구복구

- 기능복원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
- 개선복구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시설물별 복구 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하거나 근원적복구 또는 전문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하여 수립·복구

(다) 피해신고 및 조사

- 피해 신고 및 보고(재난 종료일로부터 7~14일 이내)
 - 공공시설 : 시·군→도/중앙(7일 이내)
 - 사유시설 : 피해자→시·군(10일 이내), 시·군→도/중앙(14일 이내)
 - ※ 보고된 피해액 기준으로 국고지원대상 여부 판단
- 피해조사 및 확정보고(17일 이내)
 - 국고미지원 재난 : 지방합동 피해조사(시·군 피해조사)
 - 국고지원 재난 : 중앙합동 피해조사(피해액 5천만원 이상 공공시설), 지방합동 피해조사(피해액 5천만원 미만 공공시설, 사유시설 전체)
 - ※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피해 확정보고

(라) 재난복구비용의 국고지원 대상 및 기준

- 일반피해지역
 - 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선정기준 :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군별 피해액이 재정력 지수를 고려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기준금액	비고
0.1미만	피해액이 18억원 이상	
0.1이상~0.2미만	피해액이 24억원 이상	
0.2이상~0.4미만	피해액이 30억원 이상	양평, 가평, 연천
0.4이상~0.6미만	피해액이 36억원 이상	안성,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
0.6이상	피해액이 42억원 이상	안양시 등 23개 시·군

○ 특별재난지역

- 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선정기준 : 시·군별 피해액이 국비지원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및 중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기준금액	비고
0.1미만	피해액이 45억원 이상	
0.1이상 ~ 0.2미만	피해액이 60억원 이상	
0.2이상 ~ 0.4미만	피해액이 75억원 이상	양평, 가평, 연천
0.4이상 ~ 0.6미만	피해액이 90억원 이상	안성,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
0.6이상	피해액이 105억원 이상	안양시 등 23개 시·군

- 지원내용 :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지원액 = (지방비부담액-국비지원 기준금액)*시군별 국고추가 지원율

< 과거 선포현황 >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3.5 기간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전국일원)
○ 2005.12.3~12.24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시·도 57개 시·군·구(전국일원)
○ 2006.7.9~7.29 기간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가 발생한 7개 시·도 39개 시·군·구
○ 2011.7.26~7.29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한 3개시·도 12개 시·군·구
○ 2012년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발생한 6개시·도 30개 시·군·구
○ 2012년 태풍 제16호 「산바」 내습으로 발생한 3개시·도 15개 시·군·구
○ 2013.7.11.~15,18 및 22~23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한 2개 시·도 7개 시·군·구

(마)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기능복원사업과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 매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 확정

바) 복구비 지원절차

-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시급성에 따라 예비비로 선조치)
- 재해복구비 예산교부 및 재배정

(사)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피해조사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 피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 재난관리시스템(NDMS) 환경개선
 - 피해신고체계, 피해현황관리,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현동체계 안정화 등 개선
-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 수립·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 재해복구사업 실시절차 중앙본부장의 사전심의
 - 지방심의 : 시·군 시행 10억원~30억원 사업
 - 중앙심의 : 시·군 시행 30억원 이상, 道 시행 10억원 이상 사업
-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가 300억 원 이상인 시·군 또는 1,000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에 대한 복구사업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아)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 및 조기정착 유도

- 기존 풍수해 복구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선,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자율적인 방재체제 구축,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지원을 위해 도입한 풍수해보험제도 활성화 추진

- 풍수해보험 사업의 지속실시
 - 시기별 / 시설별 위험시설에 대한 가입촉진대책 추진
 - 여름철/겨울철 풍수해집중 시기 도래 이전 단체가입 적극 추진
 - 상습침수지역, 재해이력 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촉진 추진
 - 현실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 국민안전처 제작 CF영상 적극 활용(IPTV, 전광판 등)
 - 각종 교육·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홍보물 제작·배부)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침수경험 세대 등 풍수해 위험지역 거주자 중심의 맞춤형 가입추진
 -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속가입, 아파트 단체계약 가입 활동
 - 재난지원금 지급세대, 침수경험 세대 등 가입 활동
- 풍수해보험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
 - 보험금의 현실적 수준에 맞는 증액, 현실성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 보험가입 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발굴 및 건의
 - 민간 보험사의 역할 증대 및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1. 현황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이 파괴되거나 시설물이 붕괴되고 침수·범람 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교통두절, 유해물질 유출 등과 같은 연계피해가 발생함.

2. 목표

- 가.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대비활동
- 나.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초동대응으로 재난 초기의 혼란 방지
- 다.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연계피해에도 신속한 대응

3.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

- ◇ 13개 협업기능별 협업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13개 협업기능별 협업체계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시설물별 내진보강 대책 수립
- 지진 매뉴얼 현행화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6년 내진보강 대책 수립	1월
2/4분기	지진 매뉴얼 정비	4월
연 중	지진안전성표시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홍보	1~12월

나. 재정사업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기존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 공공건축물 등 7종 116동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독려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6년 내진보강대책 수립	1월
연 중	2016년 내진보강사업 추진 독려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6	'17	'18	'19	'20	비고*
내진보강사업	13,727	2,360	2,924	2,531	3,044	2,868	

다.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 지진 재난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
-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주요내용

- 교육·훈련 참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문교육 참석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한 대응 훈련 참여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지진가속도계측 통합시스템을 통한 상황 준비

-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 민간건축물(「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신 축)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 감면
 - (대수선)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내진성능 확보 공공건축물에 대한 명판 등을 부착하여 홍보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1~12월
연 중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	1~12월

라. 재난대응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시설물의 보강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1)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지진재해대책법령 상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내진설계 적용실태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

2)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완공된 기존시설물 및 신축 저층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 추진

- 공공시설물 :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 내진보강 실시
- 민간건축물 :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나) 대비단계

□ 재난 감시체계 운영

- 1) 기상청 관측망 공유체계 및 지진해일대응시스템 활용
- 2) 재난예·경보 및 정보 수집·전달
 -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 전파
 - 각종 매체 활용(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

□ 재난 발생 시 피해경감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1)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홍보용 자료 배포
- 2) 재난체험관 활용, 민방위훈련 등 민간 대비활동 지원

다) 대응단계

□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1)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 관련 특보의 통보시스템 활용
- 인터넷, SNS, 유·무선, FAX,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2)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소방, 경찰, 군 헬기 동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3)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가동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 현장지휘소의 신속 설치 및 각 기능별 활동 전개
-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도로, 철도, 공동구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라)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1)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
- 2) 개선복구 위주사업의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추진
- 3)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4)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5)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피해 기록 및 사후 활용

- 1) 지진 발생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 기록
- 2)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1. 피해현황 : 재산 및 인명피해 해당없음

2. 개선방안

가. 점검 및 홍보

- ◇ 가뭄극복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유중인 장비 정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실시

□ 주요내용

- 가뭄대책 장비 정비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
 - 양수기 등 장비 정비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 실시
-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필요시)
 -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한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 가뭄대책 장비(양수기 등) 정비	5월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 · 대비단계

□ 가뭄대책 장비 정비

- 보유중인 장비(양수기 등) 정비

□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

- 가뭄실태 및 저수율 분석
- 가뭄대비 추진계획
 -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분야 추진계획

- 상황관리체계 및 보고요령
- 관련 실과소별 응급조치사항 및 추진대책 등
- 상습가뭄재해지역 전수조사 및 중·장기대책 수립
- 가뭄대비 민·관·군 간담회 실시
 - 가뭄대책 관련 부서 및 기관별 추진사항 확인 및 주요임무 고지
 - 협력체계 구축으로 가뭄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 가뭄발생 시 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 상류지역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업소 중점 단속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강수량, 저수율 수시파악 및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 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2) 대응단계

- 가뭄지역 인력·장비 등 지원
 - 군부대, 민간단체와 협조 인력·장비 동원하여 적극 지원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원 및 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자율 참여 유도, 밭작물 물주기 등 지원
- 공업용수 공급 지원
 -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지원
 - 절수운동 지속전개 및 용수수요 분산 유도
 -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지원
 - 공업용수가 여유 있는 업체에서 인근 농가에 지원 유도

□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적극 개방 주민 활용

- 가뭄지역에 음용수 및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의 적극 개방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소방력 비상지원체계 강화

- 소방차량 이용 생활용수, 농업용수 급수지원
- 가뭄 확산지역 상황관리 및 비상 급수지원 체계 확립
 - 물탱크 소방차, 동력펌프 등 가뭄지원 장비 100% 가동태세 구축
- 동원자원 보유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가뭄 확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압 경계 근무활동 강화

□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지역주민 생활용수 절수운동 강화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저수, 절수, 용수개발)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가. 군부대

- 가뭄극복을 위한 병력 및 장비 총동원 지원
 - 기본임무수행과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를 제외한 전 역량 집중 지원
- 시추기 및 인력을 지원하여 용수원 개발 추진
- 급수·제독차 및 청수선을 지원하여 가뭄지역 운반급수
- 굴삭기·굴도저 등을 투입 간이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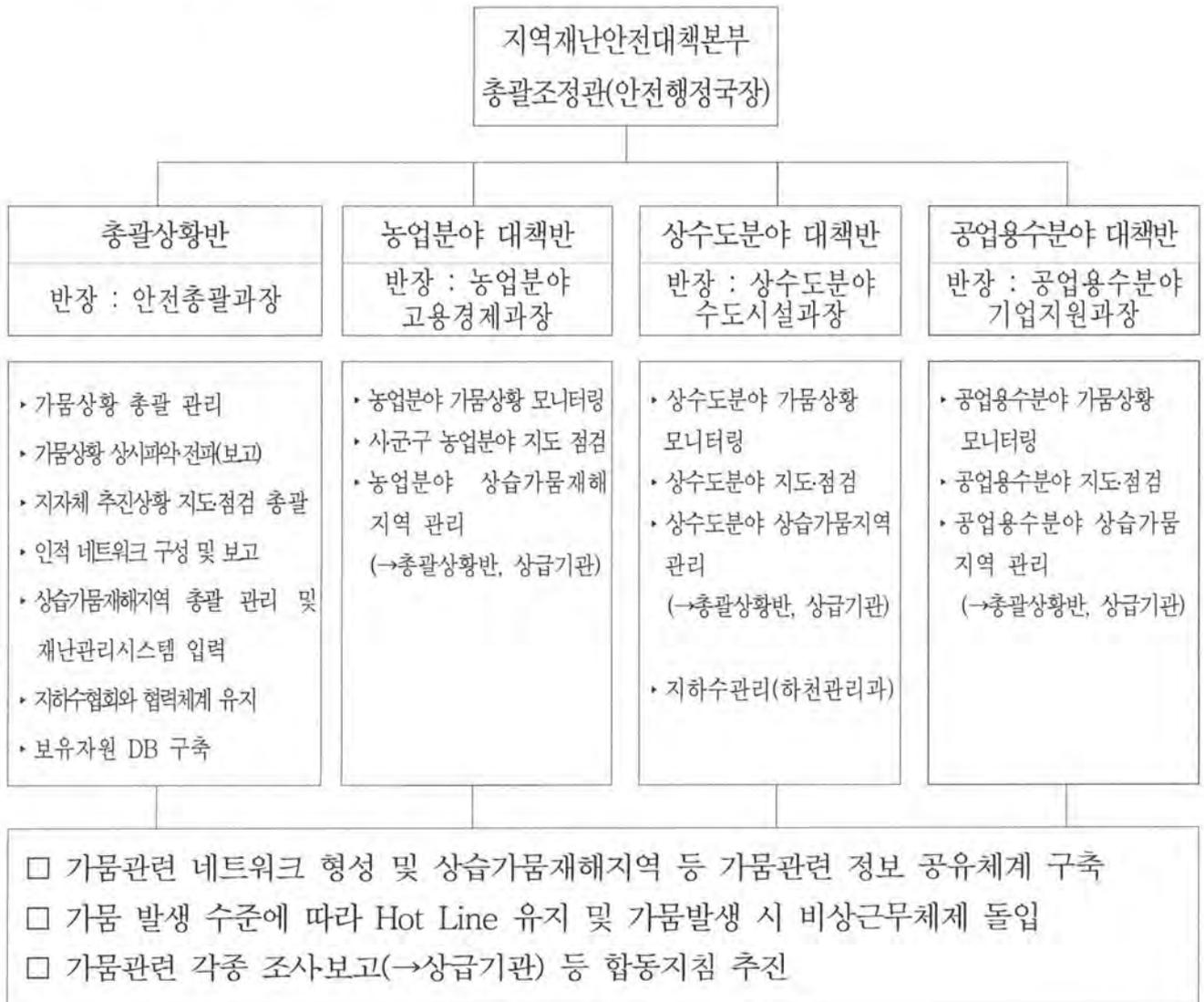
나.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 가뭄대책기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 가뭄대책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수요가 집중되는 양수기 생산관리로 차질없는 공급

다. 수도권기상청

- 중·장기 예보자료 적기제공
 - 신속·정확한 강수전망(강우량·강우시기 등)의 예보
- 가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체계



○ 반별주요임무

구 분		실 무 팀 장	분 장 사 무
책 임 관	실무대책팀		
상황총괄반 (안전총괄과장)	상황관리팀	자연재난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파악 및 전과 기뭄대책 상황보고서 작성 ◦ 강수량, 저수지저수율, 하천수위, 댐방류량 등 데이터 파악 ◦ 상황실 장비 관리·운영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IMS)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행정지원반 (총무과장)	운영지원팀	총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및 본부장 특별지시 관리 ◦ 기뭄 단계별 비상소집 및 복무관리 ◦ 문제점, 애로사항 분석 조치
원예특작반 (고용경제과장)	복구팀	도시농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관련 기뭄대책 추진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공업및 생활용수반 (수도시설과장)	용수지원팀	급수팀장 기업SOS팀장 지하수관리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뭄지역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공급대책 추진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자원봉사지원반 (자치행정과장)	주민관리팀	자치행정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분석·판단 및 민심동향·미담사례 파악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 구별 상황파악 및 종합집계 ◦ 유관기관비상근무통보
	민간협력팀	민간협력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기타 자원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대민지원활동 추진
홍보지원반 (홍보실장)	공보팀	공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 TV, 라디오 기상·뉴스속보, 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보도 내용 정정보도 ◦ 홍보상황, 실적기록 및 정리 보고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 대응단계시 상황근무 계획

반 별	임 무	조 직	상황근무계획		
			평상시	가뭄 시작단계	가뭄 확산단계
계			1	11	23
상황총괄반 (안전총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파악 및 전파, 가뭄대책상황보고서 작성 ◦ 강수량, 저수지저수율, 하천수위, 댐방류량 등 데이터 파악 ◦ 상황실 장비 관리·운영 및 국가재난관리 시스템(NDMS) 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안전총괄과	1 자연재난팀 1	2 자연재난팀 도시농업 1	3 자연재난팀 도시농업 1 애차관리 1
행정지원반 (총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및 본부장 특별지시 관리 ◦ 가뭄 단계별 비상소집 및 복무관리 ◦ 문제점, 애로사항 분석 조치 	총무과		1 총무 1	1 총무 1
원예특작반 (고용경제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관련 가뭄대책 추진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고용경제과		2 도시농업 1 애차관리 1	4 도시농업 2 애차관리 2
공업 및 생활용수반 (수도시설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지역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공급대책 추진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수도 시설과 기업 지원과 하수과		3 급수 1 보수 1 기업SCS 1	9 급수 2 보수 2 시설 1 누수방지 1 기업SCS 2 자하수관리 1
자원봉사지원반 (자치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분석·판단 및 민심동향·미담사례 파악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원처리 ◦ 구별 상황파악 및 종합집계 ◦ 유관기관비상근무통보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기타 자원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대민지원활동 추진 	자치 행정과		2 자치행정 1 민간협력 1	4 자치행정 2 민간협력 2
홍보지원반 (홍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 TV, 라디오 기상·뉴스속보, 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 보도 내용 정정보도 ◦ 홍보상황, 실적기록 및 정리 보고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자료수집 및 보고 등 	홍보실 정보 통신과		1 공보 1	2 공보 1 전산기획 1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원

- 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단계별 추진대책 수립실시토록 조정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동이용

3) 복구단계

- 중앙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이상시 지원
-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하여 지원
- 유류대 및 전기료
 -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지원
 -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 수도시설의 복구 및 정상가동
- 지하수 이용을 위한 수질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 수질기준 적합성에 따라 향후 활용여부 검토
 -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1. 피해현황 : 재산 및 인명피해 해당없음

2.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 : 내실있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폭염피해 경감 및 대비체계 확립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철저

□ 주요내용

○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체크 또는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보호

○ 영농사업장, 건설·산업 사업장 근로자의 공사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홍보로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폭염 사전대비(무더위쉼터·폭염 취약계층 등 정비)	4월
2/4분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6월
3/4분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7월-9월

나. 재정사업 :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및 냉방비 지원

◇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무더위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및 취약 계층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홍보물 배포 및 냉방비 추가 지원

□ 주요내용

- 폭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
-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도 재해구호기금)
 -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우선 사용 후 폭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대상결정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 홍보물 제작·배포	6월
3/4분기	-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지원	8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65	13	13	13	13	13	
폭염 홍보물 제작	40	8	8	8	8	8	
냉방비 추가 지원	25	5	5	5	5	5	

다. 교육, 점검 및 홍보

◇ 폭염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담당자 및 재난도우미를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더위쉼터 점검 등 실시

□ 주요내용

- 재난도우미 간담회 개최 및 캠페인 실시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폭염에 의한 신체장애 및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 후 캠페인 실시

○ 폭염대책 추진실태 점검

- 상황관리체계 구축 여부,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대책 추진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 재난도우미 간담회 실시 및 폭염대책 추진실태 점검	7월

라.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 · 대비단계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 시 차원의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 · 관리
-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본부 차원의 폭염 지휘통제본부 구성 · 운영
- 폭염특보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재난문자방송 등)

□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 에어컨 구비 시설에 한해 지정 · 운영
-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 요령 등 비치

□ 폭염대비 맞춤형 보호 및 홍보활동 강화

- 언론사에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 홍보자료 배포
- 주민대상 홍보자료 제작 · 보급 강화
- 폭염대응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등 홍보활동 강화
- 폭염특보 문자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활동 추진

□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추진

- 건설현장 감독시 폭염 건강장해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적정 휴식시간) 지도 강화

2) 대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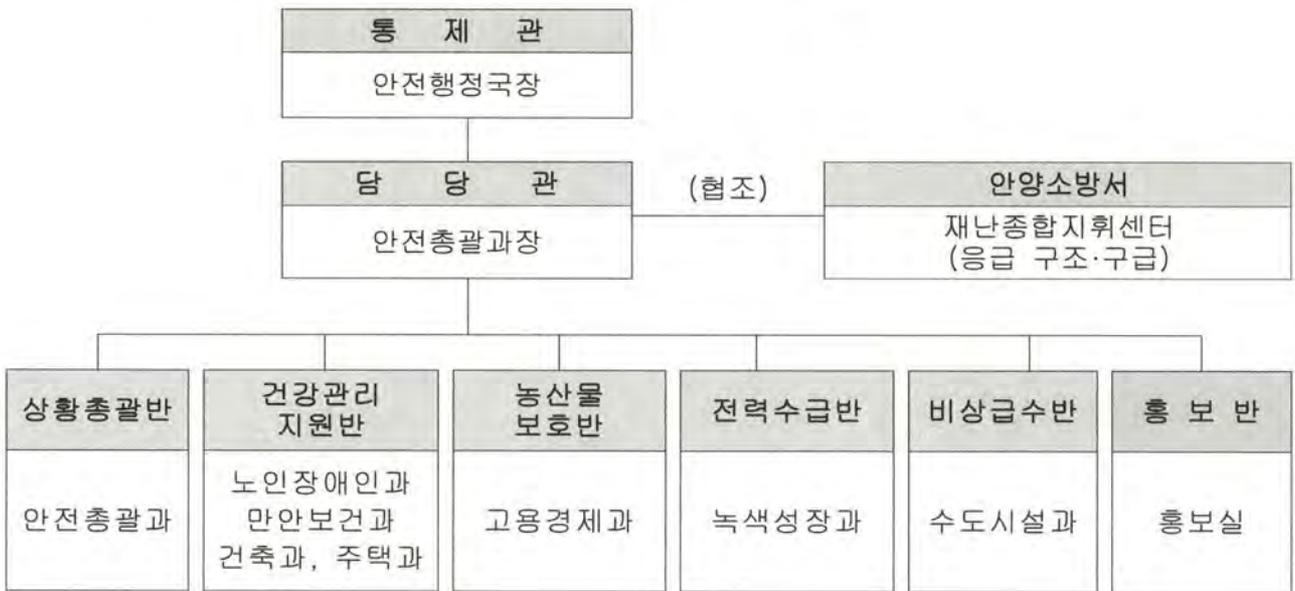
-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유지
 - 폭염 지휘통제본부를 중심으로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지도·점검 등 총괄 상황 관리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폭염특보 예견시 재난도우미 활용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 건강상태 점검 등의 서비스 실시
-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
 -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운영기간 : '16. 5. 24 ~ 9. 30(종료시점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고내용 : 폭염으로 인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 구급차 운영
 - 온열질환자 119 신고 시 재난종합지휘센터 의사의 지도에 따른 전문 응급처치 제공
-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 휴식 유도
 - 행동요령 홍보 집중실시 및 휴식 권고
-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
 - 폭염 특보시 언론매체,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 강화

< 폭염특보 발령기준 >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폭염경보 :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열 대 야 : 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운 밤

□ **폭염 지휘통제본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6. 6. 1~9. 30(폭염대책 기간)
- 운영방식
 - 평상시 : 관련 부서별 폭염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특보시 : 폭염대책 추진 및 주요 대처활동 및 피해상황 보고
- 구 성 : 폭염 지휘통제본부(6개 반)



《**관계기관 주요임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초등·중·고등학교 수업단축 및 휴교 검토
- 급식소 식중독 발생우려 방역활동 실시 및 식품위생상태 점검

□ **환경사업소**

- 전력예비율 점검 및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이상 고온에 따른 광역 정전시 단계별 긴급복구 대책 추진
- 전력예비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 노후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및 정비
-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마련
- 근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추진
- 근로장 등 현장 노동자 안전대책 추진

□ 안양시보건소

- 긴급의료상황에 대비한 긴급의료지원체계 수립·추진
- 전염병 대비 비상방역 대책 추진
-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추진
-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조 구급요원 수시 순회 관찰

□ 상하수도사업소

- 물소비 감소방안 강구
-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지도·점검
- 정수장 등의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추진
- 가정이나 기업 및 학교 등 단체에서는 덩지 않을 때 생수 등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미리 구입토록 권장
- 물질약 홍보요원 위촉 및 주부들 대상 물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의 물차, 병물, 비상급수 지원

□ 도시국, 도로교통사업소, 한국철도공사

-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의 물차, 병물, 비상급수 지원
- 건설, 야외 현장 노동자 등의 안전을 고려, 일정온도 이상시 폭서기를 설정, 공사중지 명령 방안 강구
- 도로포장 표면변형 대비, 살수차 동원 살수 실시
- 철도 선로 레일 좌굴 예방대책 추진
- 지하철, 열차 전력공급 선로 단락 등으로 인한 복구 및 승객안전 대책 추진

□ 안양동안 · 만안경찰서

- 최근 인명 경시 풍조에 편승하여 폭염과 불쾌지수 상승에 따른 우발적, 무조건적 강도 · 살인 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 저소득층 및 노숙자, 사회 불만자 등의 우발적, 불특정 다중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대책 추진

3) 복구단계

- 폭염대책 추진성과 분석
- 분야별 폭염대책 추진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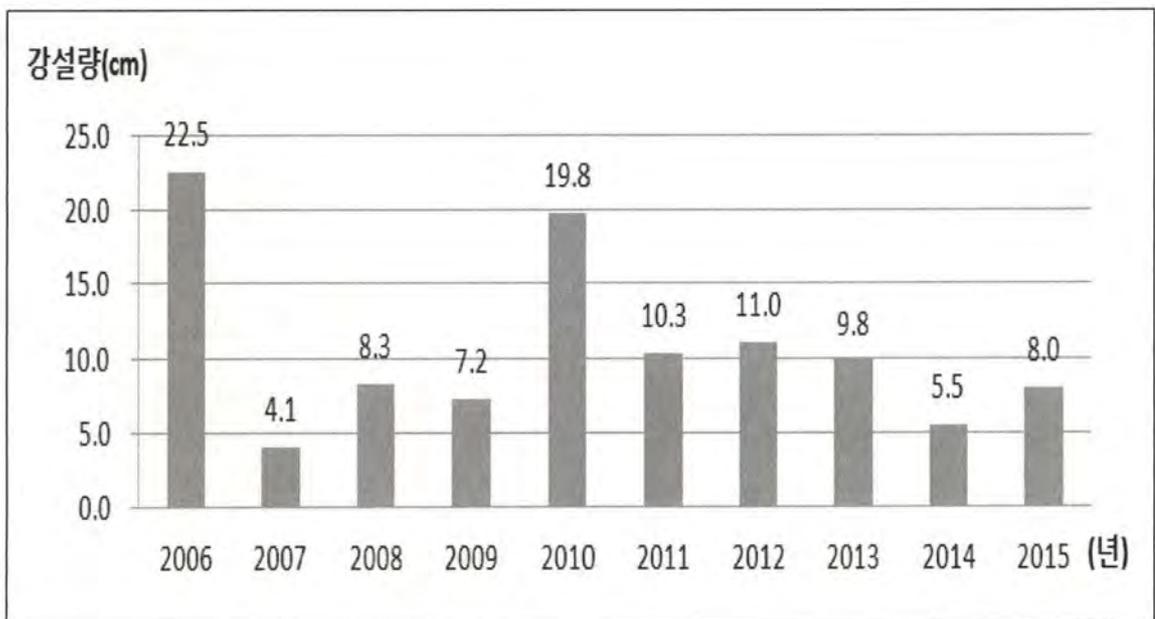
1. 피해현황

가. 재산피해 : '06~'15년 기간 없음

나. 인명피해 : '06~'15년 기간 없음

2. 원인분석

○ 최근 10년간 폭설·한파에 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었음



3.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재산피해(억원)	-	-	

4. 개선방안

1) 재정사업(예산)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 제설 취약지역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내용

- 사업명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위치 : 일변가지하차도 등
 -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자동염수분사장치 1식 설치
 - 사업기간 : 2016. 5. ~ 11.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추경예산 확보	4월
2/4분기	조사 및 발주 준비	5월 ~ 8월
3/4분기	계약 및 설치	9월 ~ 10월
4/4분기	준공 및 시험가동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자동염수분사장치	850	250	350	250			

2) 겨울철 대설 한파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강화

-
- ◇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정비 및 예방시설 확대, 제설자재 장비 확보
 - ◇ 겨울철 설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등
-

□ 주요내용

- 협업관리 : 상황근무, 협업체계 구축 및 기능별 임무·역할 명확화
- 상황관리 :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 * 강설징후 3시간 前비상발령, 강설 1시간 前제설장비 현장배치 원칙
- 인명보호 :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D/B확대 구축 및 집중관리

- 교통대책 : 제설 장비·자재 사전 확보, 취약구간 제설 책임담당제 실시
- 물자동원 : 지자체간 응원체계와 도로제설 책임기관간 광역지원체계 구축
- 제설장비, 자재 등을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 실시간 파악
- 시설보호 : 농·축산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시설보강 강화
- 한파대책 :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과 취약계층 특별관리
* 「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 구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4/4분기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실시 ·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대책 훈련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도 영상회의	10-11월

3)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추진

◇ 대규모 폭설에 의한 통행 불통 등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통한 조기 교통소통대책 마련

□ 훈련개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유형 : 폭설 대응 현장 종합 훈련(통제, 제설, 홍보, 회차, 구호 등)
- 일자 : 11월경
- 주관 : 지역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 * 유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 중점 추진사항 >

- (도로통제) 적설량에 따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도로제설) 제설장비·인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제설작업
- (재난홍보) 차량정체에 따른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홍보
- (차량회차) 비상회차로 개방 및 차량 회차·견인 실시
- (물자동원) 장비·자재 응원 및 민·관·군 협조를 통한 물자동원
- (구조구호) 운전자·승객 대피유도 및 구호물품 보급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4/4분기	폭설대응훈련 기본계획 수립	11월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추진	11월

5. 재난대응 활동계획

1) 예방·대비단계

□ 설해방재의 홍보 강화 및 건축물 주변 책임 제설 협조

(가) 대주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한파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반상회 회보, 스티커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11월~3월까지
- 홍보내용
 - 설해발생 및 한파시 대국민 행동요령
 - 설해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 강설시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 및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
- 홍보매체 : TV,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깃발, 스티커, 광고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 홍보방법
 - 민방위 훈련시간을 이용한 대국민 설해대비요령 홍보
 - 설해 및 한파 대책상황을 방송, TV, 신문 등에 보도
 - 강설시 교통방송(TBS)은 타 방송에 우선하여 집중방송

(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의 제설책임 홍보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내 용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의무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겨울철 산간 고립예상지역 관리대책 수립
 - 대설시 교통두절예상 산간마을 재정비 및 특별지정·관리
 - 비상대비 구호물자(구호세트 등)공급 및 차량소통대책(트랙터 제설삽날 등) 수립
 - 적설량에 따른 차량통제 기준(산간지역 기준)

구 분	적설량 및 노면상태	통제내용
전면통제	- 노면적설 10cm이상이고, 계속 강설일 때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모든 차량 통행금지
부분통제	- 노면적설 5~10cm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판단될 때	월동장구 미 장착차량 및 대형화물차량 금지

□ 도로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가) 민·관·군·경 제설장비·인력 확보 및 시설 설치

- 군부대·청소차·소방차 등에 제설삽날을 장착, 제설 대체장비 파악
- 자체 보유 장비로 제설 가능한 구역을 전면 재조사,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민간업체에 책임 제설구역 지정 운영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부족장비 추가 구입 및 임대계약 적극 추진
- 민간지원 제설장비 및 민간단체 봉사인력 등을 강설 초기단계부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구축(협회 등)
-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장비 첨단화 추진
 - 램프구간 등 주요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확대

(나) 폭설에 대처할 수 있는 제설자재 확보

- 제설자재 관리체계 마련 및 확보기준량 상향 조정
- 금년도 자재 확보량 = 전년도 당초 확보량 + 폭설 대비 추가 확보량

(다) 「맞춤형 도로 제설방법 및 장비 선진화 방안」 적극 활용

- 교통 지·정체 우려구간,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구간을 재정비하여 제설장비 사전 전면 분산배치 계획 수립(강설시 즉시 실행)
-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은 교통흐름 통제계획 수립(경찰 협조)
- 기상정보(온도, 예상강설량), 교통정보(차량통행 등) 도로조건(평지, 경사지, 노폭 등) 등을 종합 고려한 제설계획 수립
- 적설량에 따른 제설방법 및 제설제 사용방법 활용

(라) 폭설시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소통대책

-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귀가할 경우, 공공기관·학교운동장·도로변 주차장 등 무료 개방 사전협의
-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출근·등교시간을 늦추어 대중교통 분산 이용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지하철 러시아워 및 막차 시간 연장운영과 안전조치 강구
- 교통소통 취약구간, 최근 교통통제 및 교통통제 예상구간 등에 대하여는 우회도로 사전 지정·관리 신속한 제설 대책 강구(관리기관 협조체계 사전협의)

(마) 도로 제설대책 마련

- 대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 관리
- 신설 도로 및 확장개통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
- 염화칼슘 사용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제설대책 강구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계획 수립(전면 또는 부분통제)
- 고속도로 교통차단시 인접 국도, 지방도 제설작업 강화대책 마련

(바) 취약구간 교통통제 대책

- 고갯길, 고가도로 및 간선도로 등 진출입 차량은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통행제한 대책 마련
- 강설 예상시부터 가용 경력 주요 교차로에 집중배치, 교통흐름 조정 및 경찰청 『교통비상근무령』에 의한 비상근무시 교통통제 계획 수립

(사) 언비(氷雨) 등 기온 급강하에 따른 결빙사고 저감대책

- 노면 결빙시 등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 : 영상 5℃ 이하 강우 예보시 노면결빙 대비 제설팀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구축
- 언비(氷雨), 이슬, 안개 등으로 결빙 예상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새벽시간대 염화물 사전 살포계획 수립

□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가) 비닐하우스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을 통해 눈 내리는 시점부터 녹여 흘러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운을 실시
 - 대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 제거(안전에 유의)토록 사전 홍보

(나) 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 축산시설 보강 및 경감대책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해당 시·군에서 대설에 대비,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제도
- 축산농가 스스로 대설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등 가입 제도

□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직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근무 편성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계 및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직원을 실무반에 편성·구축
 - 지역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조 및 직원파견 사전 협의
- 긴급 상황시 군지원 체계 사전 구축
 -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군(軍) 인력 및 장비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사전 구축
- 재난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방재역량 강화차원의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분야 역할분담 체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 도, 유관기관간 제설지원 체계 강화
 -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계 구축
 - 서울시(금천구), 과천시 ⇔ 안양시 ⇔ 군포시, 의왕시
 -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경계 인접자치단체 및 제설기관 공동으로 광역 제설작업 협조체계 구축
- 이면도로 제설 활성화 추진
 - 이면도로 민관 제설담당자 지정·운영
 - 자율방재단 등 민간 참여 강화
 - * 유공자 표창 등 활성화 유도
- 「마을 제설반」 구성·운영 활성화
 - 마을진입로 및 산간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마을 제설반」 구성

□ **행동매뉴얼 활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

○ 홍보방법

- 반상회 회보에 설해대비 협조사항 게재
- 지역별 설해대책 사전 조치사항을 지방 보도기관에 제공
- 지방TV 및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 등

○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차량운전자, 보행자, 직장, 가정, 농촌 등 행동요령 수립

○ 재난방송 자막 및 스마트방송 협조요청(공문안)

- 방송법 제75조(재난방송)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9조(재난방송)와 관련하여
- '○○년 ○○월 ○○일 ○○:○○ ○○지역에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위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난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막 표출 등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대비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 홍보 강화

- 반상회 회보에 설해 및 한파대비 협조사항 게재
- 지역별 설해 및 한파대책 사전 조치사항을 지방 보도기관에 제공
- 지방TV 및 라디오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앙과 연계 실시
- 기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실시

○ 제설 책임범위 등 조례 홍보 강화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조례 홍보 실시

- 개인 및 자치단체별 「행동 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상황에 적용 가능토록 작성된 지방자치단체별 행동매뉴얼의 적극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
- 설해예방을 위한 기상예보 시스템 강화
 - 기습 폭설 등의 예보능력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기술의 고도화
- 설해정보의 수집·전파 및 통신수단의 확보
 - 저기압 및 전선의 활동 등에 의한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의 기상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수집·전파하기 위한 체제 확립
 -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시스템의 역할분담을 통한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 확보대책 수립 추진

※ 【 대응 및 복구대책 】 ⇒ 풍수해대책에 준하여 시행

1. 황사대책

가. 피해현황

1)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 농도 증가

- ▶ 황사 발생시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최고농도가 $1,000\mu\text{g}/\text{m}^3$ 이상으로 평상시보다 약 29배 증가('10년, 서울기준)

※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 : PM10 24시간평균 $100\mu\text{g}/\text{m}^3$, 연평균 $50\mu\text{g}/\text{m}^3$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중 $10\sim 20\mu\text{g}/\text{m}^3$ 은 황사에서 기인

- ▶ 특히 서해와 동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중 각각 $20\sim 50\mu\text{g}/\text{m}^3$, $5\sim 10\mu\text{g}/\text{m}^3$ 가량이 황사에서 기인('10년, 국립환경과학원)

2)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호흡기질환 등의 증가

-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환 유발에 영향

-호흡기 : 2002. 3월 황사발생시 비황사발생시 보다 호흡기계 환자는 4.9%, 이비인후과 진료환자는 7.2% 증가('03년)

-천식 : 서울 등 7개 도시 병원 입원자료('99~'03년) 조사결과, 천식으로 인한 병원입원 건수는 황사 발생일부터 2일후까지 대조일에 비해 4.6 ~ 6.4% 증가('08, 국립환경과학원, 서울대)

-안질환 : '02 ~'03년 황사발생과 관련 질환과의 역학조사 결과, 안구질환 6.0%, 상기도 질환 11.1%, 하기도 질환 18.5% 증가

3) 산업 피해 현황

산 업	피 해 내 용
디 스플 레 이	○ 불량률 증가, 설비청소, 소모품 증가 및 설비 이상
반 도 체	○ 황사발생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먼지 여과장치의 필터교체 추가 비용 증가
철강, 석유화학	○ 설비청소, 추가 마무리(포장)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자 동 차	○ 도장불량률 및 왁스칠·세차 비용 증가 ○ 수출차의 야적장 이동에 따른 물류비 증가 ○ 필터 추가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기 계 산 업	○ 공정과정에 미세먼지 침투 시 제품결함, 기계 오작동 등 오류발생

나. 원인분석

1) 중국의 사막화 현황

- 중국의 사막화면적은 263.62만km²(‘04년 기준)로서 전체 국토 면적의 27.46%, 토양의 모래화(沙化)지역은 173.97만km²로서 전체 면적의 18.12%를 점유(‘05.6, 중국 국가임업국)
- 지난 20~30년간 중국 북동부 반건조, 아습윤 지역의 농업과 목축 교차지대에서 토양사막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
- 우리나라와 근접한 이들 지역의 사막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황사가 빈발하는 주요 요인이 됨

2) 몽골의 사막화 현황

- 고비사막 등 몽골의 중남부 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사막화 위협을 받고 있음.
- 지난 40년 동안 모래사막 면적이 3만8천ha 확대됐으며, 88%가 고비사막 등 몽골의 중남부지역에서 발생

다. 목표

- 1) 황사(미세먼지) 오염도 추이 관찰
- 2) 황사피해 방지대책 적극 추진
- 3) 황사(미세먼지) 저감 조치 실시
- 4) 해당지역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라. 개선방안

- 1) 제도개선

가) 황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

- ◇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이나 건강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기오염 경보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대규모 강한 황사 발생
 -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강한 황사 발생
 -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단계로 세분화하여 위기관리
- 황사 예보 및 특보 발령기준

▶ 황사 예보기준

- 옅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mu\text{g}/\text{m}^3$ 미만
- 짙은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sim 800 \mu\text{g}/\text{m}^3$ 미만
- 매우 짙은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

▶ 황사 특보기준

- 황사주의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경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취약계층을 위한 황사마스크 지원	1 ~ 3월
1/4분기	황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	1 ~ 3월

□ 법령 제·개정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의 황사 피해 대응체계
기상법	황사 예·특보제 운영

2) 재정사업(예산)

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 황사(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어린이 등에게 황사 마스크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 및 불안감 해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4,090명('15. 12월말 기준)

계(명)	65세 이상 수급자(명)	요보호아동(명)			노인일자 리참여자
		소계	0세~초등생	중등생 이상	
4,090	2,266	274	129	145	1,550

※ 요보호아동 중 0세~초등생은 유아용, 중등생 이상은 성인용 마스크 지급

○ 황사마스크 지원매수

계(매)	65세 이상 수급자(매)	요보호아동(매)			노인일자 리참여자
		소계	0세~초등생	중등생 이상	
12,270	6,798	822	387	435	4,650

○ 지급매수 : 12,270매(4,090명 × 3매/1인)

○ 소요예산 : 13,650천원(도비 4,095천원 시비 9,555천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황사마스크 지원대상 파악	1 ~ 3월
1/4분기	2016년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계획 수립	1 ~ 3월
1/4분기	2016년 취약계층을 위한 황사마스크 구입의뢰	1 ~ 3월
1/4분기	2016년 취약계층을 위한 황사마스크 보조금 교부금 신청	1 ~ 3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68	13.6	13.6	13.6	13.6	13.6	

나) 미세먼지(황사) 발생에 따른 주민 행동요령 홍보

- ◇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경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및 주민 행동요령 홍보

□ 주요내용

- 부서별 미세먼지 피해 예방 대응조치
 - 도로 물청소 등 대청소 실시 : 청소행정과
 -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 단속 : 구청 환경위생과
 - 덕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환경보전과 등
- 대기오염 휴대폰 문자 서비스 가입 홍보
- 미세먼지(황사) 영향 및 경보 발령시 행동 요령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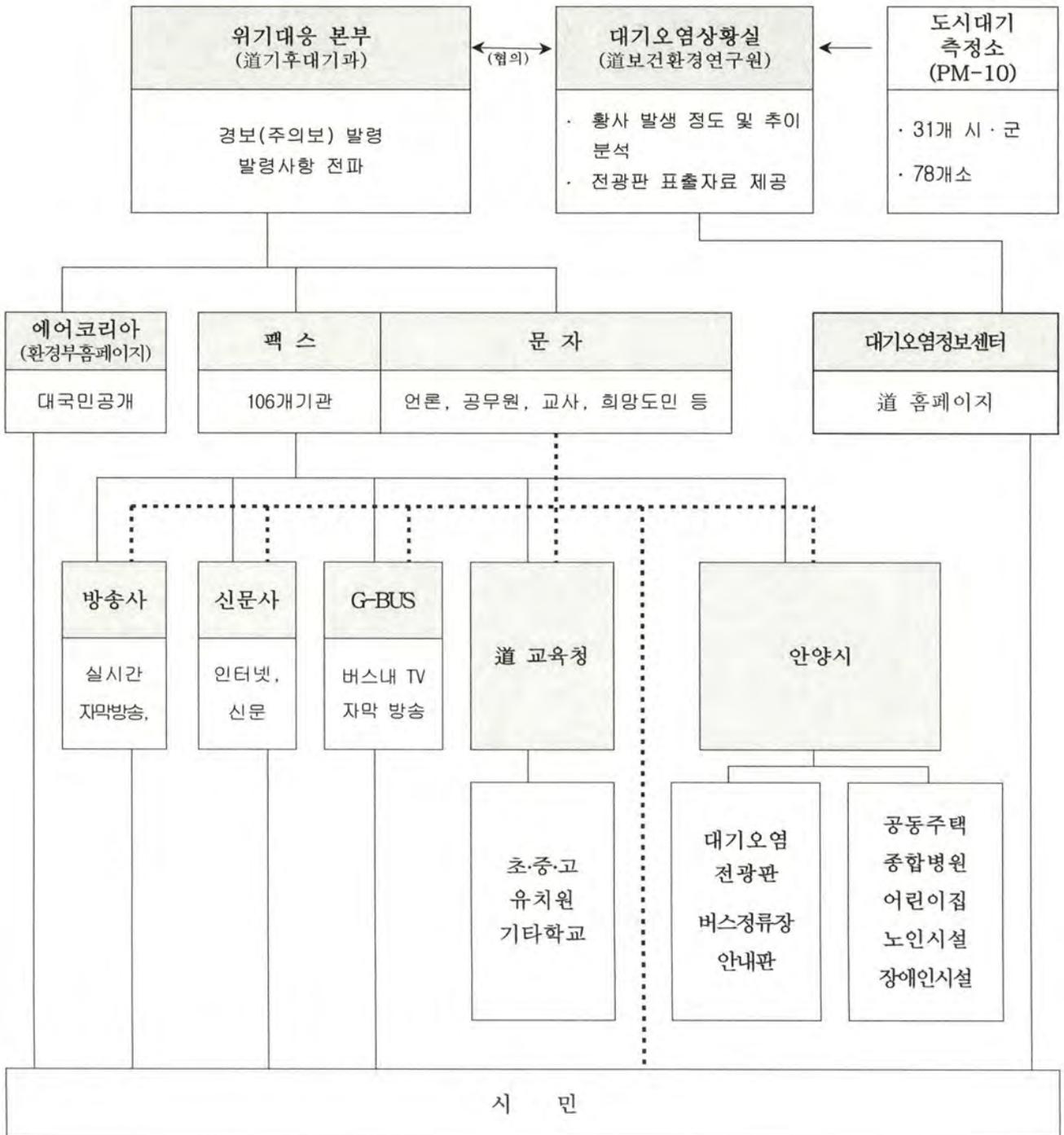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미세먼지(황사) 대처방법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가입안내	
3/4분기	미세먼지(황사) 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가입 안내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황사대비 홍보 및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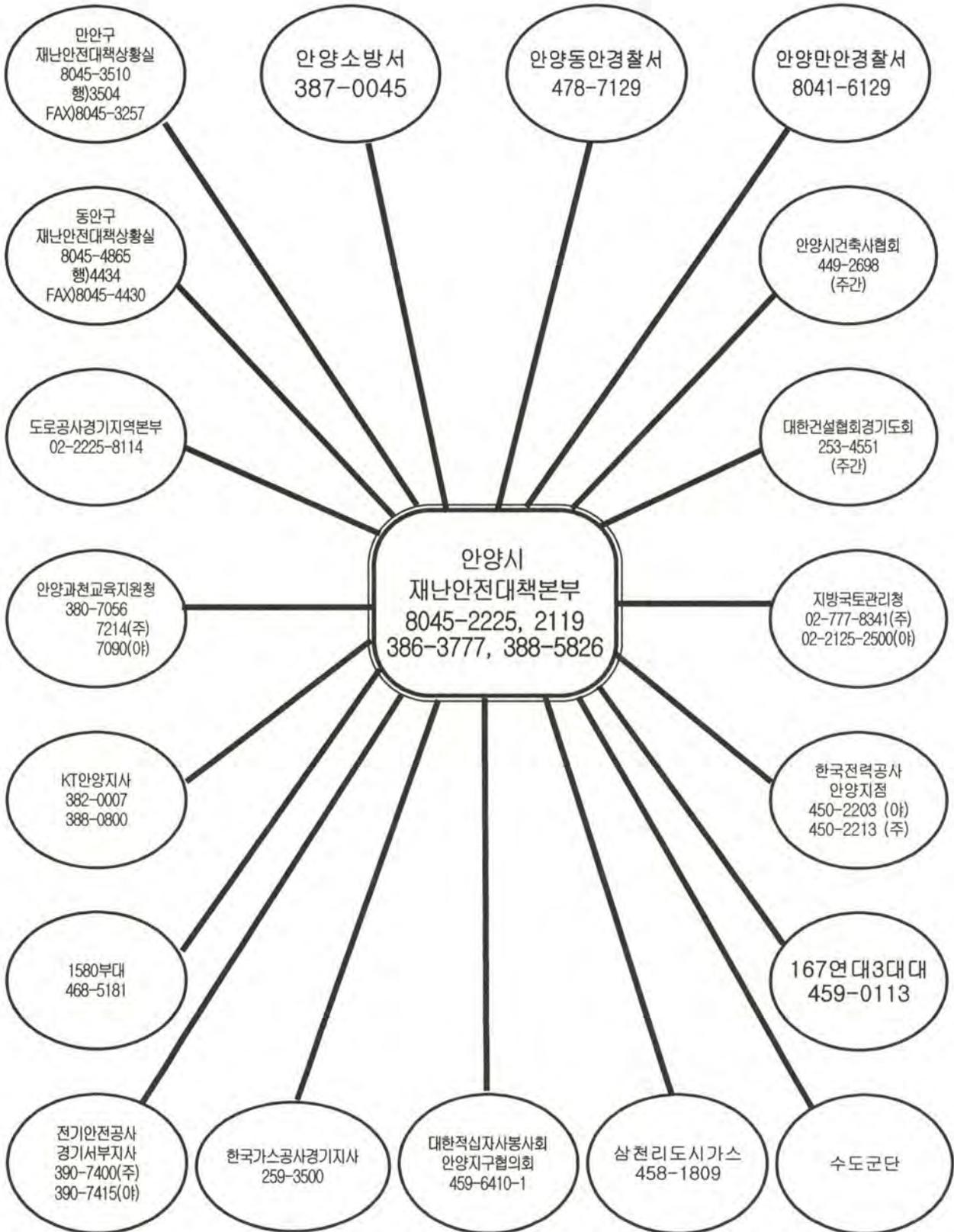
1) 위기대응 체계도



2) 유관기관의 책임·역할

담당기관	담당업무	전화
국 민 안 전 처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피해예방	02-2100-2114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황사관련 법률 정비 등 지원	044-201-6838~9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 구난본부 운영	031-230-6621
경기도 기후대기과	· 황사마스크 지원 등 황사 피해예방	031-8008-3516
안 양 소 방 서	· 긴급구조 구난본부 운영 · 종합적인 구조대책 및 구조현장	470-012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대피시설 이용 협조	380-7056
동안·만안경찰서	· 통제선 안의 출입통제, 경비 및 주변교통 정리 · 인명구조 병력 투입	동안:478-7157 만안:8041-6156)
5 1 사 단 화 학 대	· 인명구조 병력 투입 · 중장비 현장지원 및 군 항공대 지원	290-9349 (294-7746)
한 국 전 력 공 사	· 사고지역 단전조치 · 사고수습 및 전력공급(조명,동력등)	450-2213
K T 안 양 지 점	· 긴급전화가설 및 복구 · 이동전화차량 현장상주 배치	382-0007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공급차단 · 가스시설응급복구 및 사고요인 조사	259-3500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술인력·장비 투입 · 전기안전관리 및 사고요인 조사	390-7400
샘 안 양 병 원	· 구급차 등 지원, 사상자 수용처리	467-9770
한 립 대 성 심 병 원	· 구급차 등 지원, 사상자 수용처리	455-3388
메 트 로 병 원	· 구급차 등 지원, 사상자 수용처리	467-9010
대 한 적 십 자 사	·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 각종자원봉사자 관리업무	459-6410~1
안 양 시 보 건 소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 사상자의 응급처리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	만안:8045-3473 동안:8045-4473
수 원 기 상 대	· 사고지역 및 인근지역 상세 기상정보 제공	296-0368

○ 유관기관 협조체계



나) 대응단계

□ 황사(미세먼지) 오염도 추이 관찰

- 1) 황사 발생상황 전파 및 관리
- 2) 수원기상대

○ 휴대폰 문자메시지, Fax, 이메일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전파

□ 황사피해 방지 대책적극 추진

1) 경보 발령 전파 시스템 구축

- 병원, 어린이집, 아파트,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경보 발령사항 전파
- 대기오염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모니터에 경보발령 사항 및 행동요령 표출

2)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홍보추진

3) 산업, 식품, 질병 등 분야별 단계별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 실과소별 시행

□ 황사(미세먼지) 저감 조치 실시

- 1)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계도·단속
- 2) 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물량(20~30%) 감축
- 3) 도로 청소차·살수차 운행 강화

□ 황사로 인한 주민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활동

1) 황사로 인한 주민 피해 조사·보고 및 복구활동

□ 해당지역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 1) 대기오염측정기기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며, 측정
장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신속한 정비로 결측률 최소화

별첨1 황사 대비 주민 행동 요령

□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 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 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별첨2

황사로 인한 발생가능 질환 및 대처방법

질환별	주 증상	대 처 방 법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곤란 · 목의 통증 · 기관지,기도점막의 염증 · 기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 차단 ·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한다. · 물을 많이 마신다
안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가려움증 · 눈물이 남 · 눈이 빨갛게 충혈 됨 · 눈에 원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통증 ·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의 착용은 삼간다.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낸다. ·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로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비인후과 질환((알레르기 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채기가 계속됨 · 맑은 콧물이 흐름 · 코 막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귀하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콧속을 씻어낸다.
피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의 가려움증 · 두드러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시에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다 ·피부에 로션 등을 발라 흠먼지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별첨3 산업계 황사 대응체계

□ 기본 대책

- 직업상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 건강피해 방지 대책 강화
 - 실외 장기 근무자(노점상, 환경미화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 규정 보완
 - 황사 발생시, 마스크, 보호안경 의무착용
- 외국노동자 등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다문화관련 정부단체, NGO, 교회 등을 통한 황사 인식교육 및 행동지침 개발, 시행
- 6개 업종별(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 황사 피해방지 및 지원대책 수립
 - 황사예방 TF(Task Force) 운영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 황사 발생시 예보-주의보-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실시
 - 매우 짙은 황사($800\mu\text{g}/\text{m}^3/\text{hr}$ 이상)가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 작업 일시 중단 등 권고

□ 황사발생 단계별 대응방안

황사 단계	주요 대응방안
1단계 (황사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방송 및 외부출입문과 사무실 공조기의 외부유입 차단 ○ 근무자의 실외활동 통제
2단계 (황사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로 인한 먼지유입 통제를 위한 모든 공정의 에어샤워 시설을 평상시 2배 가동 ○ 기술자들이 공정의 청결도를 측정해 먼지유입 이상유무 확인
3단계 (황사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에 반입되는 자재들의 흐름을 통제, 황사예방 TF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품들은 반입 불가

별첨4 체육분야 행사 대응체계

□ 기본방향

- 생활체육 활동 시 행사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전파
 - 대상기관(3) : 1차적으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전파하고 이들 기관에서 다시 종목별 가맹경기 단체에 재 전파
 - 대상종목 : 걷기대회, 사이클, 족구,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 실외경기 개최 자제 및 취소 권고지침 시달
 - 대상기관(4) : 1차적으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에 시달하고, 이들 기관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재 전파
 - 대상종목 : 축구, 야구, 육상(트랙, 필드, 마라톤), 도로 사이클 등
 - 경기개최 자제 및 취소 권고기준 마련 시행

□ 경기개최여부 가이드 라인

구 분	발령기준	경기개최 여부
주의보	먼지농도가 4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국제스포츠기구 경기일정에 따른 국제경기의 경우 개최 자제 권고 ② 친선국제경기, 국내 프로 및 종목별 대회의 경우 개최 취소 및 연기 권고
경 보	먼지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국제스포츠기구의 경기일정에 따른 국제경기의 경우 개최 취소 및 연기 권고 ② 친선국제경기, 국내 프로 및 종목별 대회의 경우 개최 취소 및 연기 권고

1.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산사태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당해연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산림청 및 경기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우리시 특수성을 고려한 안양시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2)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극대화

- 담당자 지정, 행동매뉴얼 숙지 및 사용자 정보 현행화
- 주민연락망 및 대피체계 구축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절차 이행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지정·고시
- 산사태취약지역 위주의 현장관리 집중 추진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 사전에 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 인명대피 및 구조 : 경찰서 및 소방서
-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 : 군부대, 산림조합 등

□ 산사태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조치

-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정비

대 대응단계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

○ 운영기간 : 5. 15 ~ 10. 15

- 상황실장 : 녹지과장

- 설치장소 : 녹지과(산림휴양팀)

- 주요임무 :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 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 등

2) 산사태 대응단계에 따른 비상근무조 운영

○ 관심단계 : 비상근무 없이 업무담당자가 기상상황 모니터링 등 징후 감시활동

-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사태 유관기관 협조체계 사전구축

○ 주의단계 :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조 3명 근무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산사태취약지역 인명 피해 예방조치 이행

○ 경계단계 : 1개조 3명 24시간 근무(익일 09:00교대)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산사태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강화 조치 이행

○ 심각단계 : 1개조 3명 24시간 근무(익일 09:00교대)

-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산사태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강화, 산사태취약지역 거주주민 산사태 위험예보 전파 및 주민대피

라) 복구단계

□ 산사태 피해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1)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산림청 산사태 조사·복구 실무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 종료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실시
- 산사태전문 원인조사단 필요 시 파견 요청

2) 산사태 발생지 항구적·체계적 복구계획 수립

- 생활권지역 등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실시
-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 필요 시 파견 요청

2.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 ◇ 산사태방지 행동매뉴얼 정비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후 지정·고시

□ 주요내용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 산림재해업무 담당국·소장 및 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례개정 완료(2016. 1. 6.)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후 지정·고시하여 취약지역 집중관리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2월
2/4분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4월

나. 재정사업(예산)

- ◇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사업내용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2016. 5월 ~ 10월(6개월)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정비 실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공고	4월
3/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5월~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사방사업	27	-	27				

다.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산사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산사태방지 담당자 및 산사태현장 예방단 직무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산사태방지 담당자 시책교육(2월)
 -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 예방·대응 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5월)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전문성 강화 교육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방지 담당자 시책교육	2월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5월

2. 사회재난 관리대책



여 백

1. 안전관리 기본계획

가.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

○ 문화재 정기점검 실시

- 해빙기 및 봄철 건조기 점검 실시(2월~4월, 건조물 대상)
- 풍수해 대비 점검 실시 (6월, 전년도 풍수해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
- 가을철 산불발생 대비 점검 실시(10월, 산림인접 문화재대상)
-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 실시(12월, 동파 등 겨울철 재난우려대상)

○ 화재 감시·소화시설 설치 및 전문업체 주기적 점검·유지관리

- 노후 전기·소방 등 시설 개선사업 :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 방재설비 : 전통사찰 방재시설 관련 기기 점검, 유지관리
- 소방·감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 문화재 위험요인 사전제거(관리요원 1명)

- 배수로 정비, 고사목 및 낙엽제거 등 위험요인 사전차단
- * 자체점검에 따른 사고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2. 풍수해 대책

가. 예방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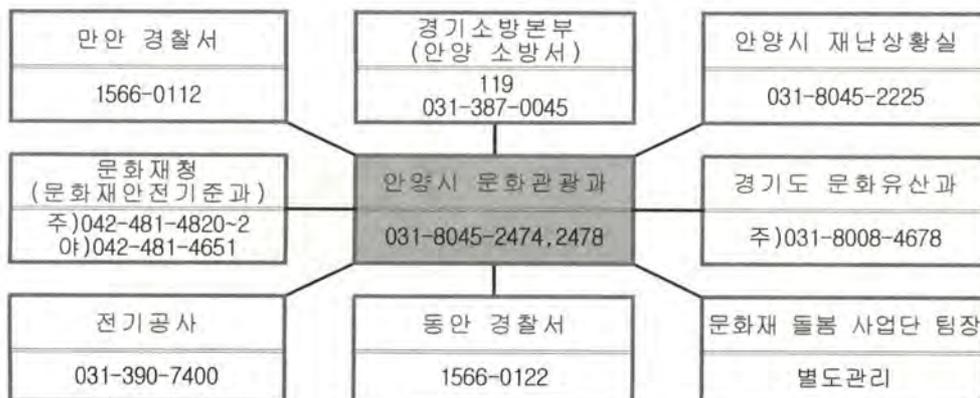
- 여름철 풍수해 특별 재난대책기간 운용(6월~9월)에 따른 문화재 지역 내 문화재 및 문화재보유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리스트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문화재	석조 문화재	- 지반의 습윤 또는 침하 여부 - 부재이격, 파손 및 분리, 표면 균열, 박락 유무 - 기단부 및 탑신부의 기울어짐 또는 변형 여부	
	목조 문화재 (문화재보유 시설물 포함)	- 부재의 이격 및 기둥의 기울기 여부 - 벽체의 배부름·누수 및 서까래 처짐·파손 여부 - 기와의 파손 여부 및 지붕누수 여부 - 창호 탈락 및 파손 여부 - 우수에 의한 벽체 회반죽 마감 박리 여부 - 부착 시설물(전등, 전기시설 등) 탈락 및 훼손 여부 - 목조문화재 부분 침수 여부	
기타 시설물 및 임야, 하천 등		- 배수로, 암거 등 배수시설 퇴적물 여부 - 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의 붕괴 및 토사유실 우려 여부 - 야외시설물(안내판,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훼손, 전도 여부 - 전기 및 가스 시설물 누전 및 누설 여부 - 전기배선 노출 여부 및 전신주 전도 여부 - 계단 및 장애인 경사로 침하 또는 훼손 여부 - 수목 전도 및 가지 부러짐 여부 - 수목 지주목 및 보강목 체결 이상 유무 - 도로 침수 및 유실 여부 - 주변 임도 유실 여부 -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여부 - 진입교량 침수 및 훼손 피해 여부 - 산지하천내 부유목 및 토석류 적재 여부	
문화재 공사현장		- 비계, 덧집의 이탈 여부, 안내판 전도 여부 - 공사자재 적재 안전성 및 유실 여부(덮개상태 등)	

- 재난 피해 우려, 위험개소 일제 정비 및 보수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성,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황 주시
-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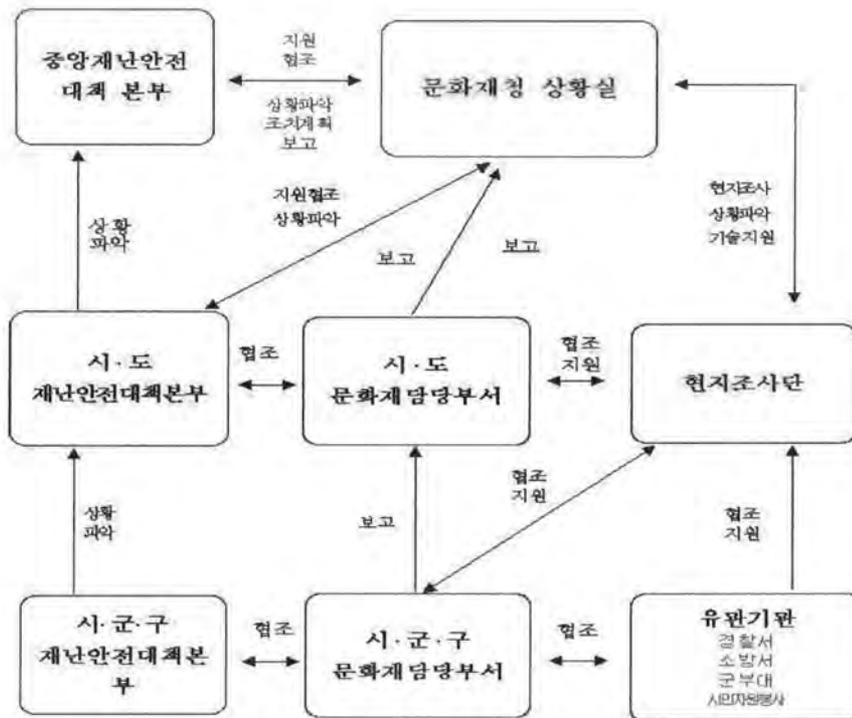
나. 대비단계

- 태풍, 호우, 홍수 발생 상황 파악
 -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 위성영성,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황 주시
 - ▶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 상황판단회의(상황반 주재)
 - ▶ 상황반에서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 분석, 상황판단하여 유동적, 유기적 대처
 - ▶ 재난상황판단 및 기상특보에 따라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의 비상근무 실사여부를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조치 지시
 - ▶ 문화재지역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종 피해 유형별 대처요령 마련·시행 및 유관기관 비상업무연락 체계 유지
- 문화재지역외 재난 피해지역 긴급 복구 시행(문화재지역으로의 피해확산 방지)

다. 대응단계

-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문화재 피해현황, 진행상황 등을 조사 후 도 및 문화재청 상황반에 신속 보고
- 문화재 대피경로 확보
-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점검유지하고, 해당기관에 문화재 보호 조치 지시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긴급 보수 지원반 운용(응급복구 및 대비)

▶ 재난상황 대응체계



라. 복구단계

- 문화재 재난 피해지역에 현지조사단(해당 부서·기관 합동)을 파견하여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조사 실시
- 문화재 복원은 별도의 복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
- 재난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확대 방지
- 복구 시에는 기존의 실측설계, 탁본문양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형 복원을 추진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전승활용장비, 의상, 악기 등의 피해가 발생시에는 전승자의 입회하에 피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시 필요한 예산지원 기초 자료로 활용
- 재난 피해 복구 시 재난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복구대책을 추진

※ 문화재 수리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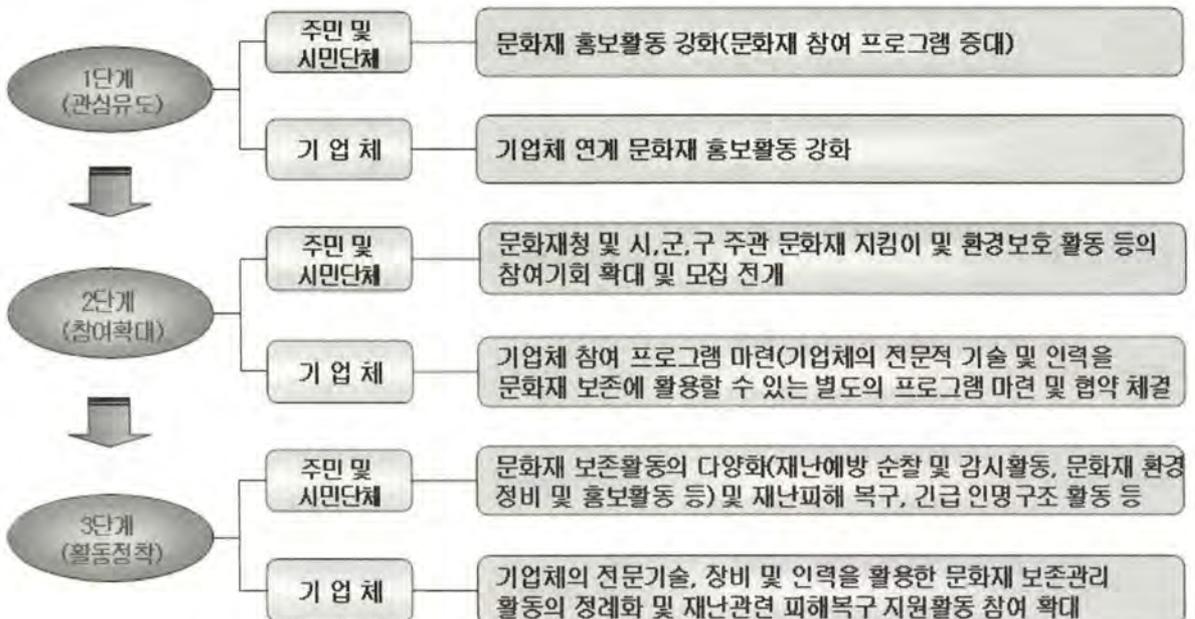
문화재수리규범 관련 문화재 수리 기본원칙

-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음
-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음
- 전통기법으로 수리
-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함
-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후의 현황과 수리절차 및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김
- 문화재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 변형시키지 않음
-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함
-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함

마. 홍보대책

○ 기업체 및 시민단체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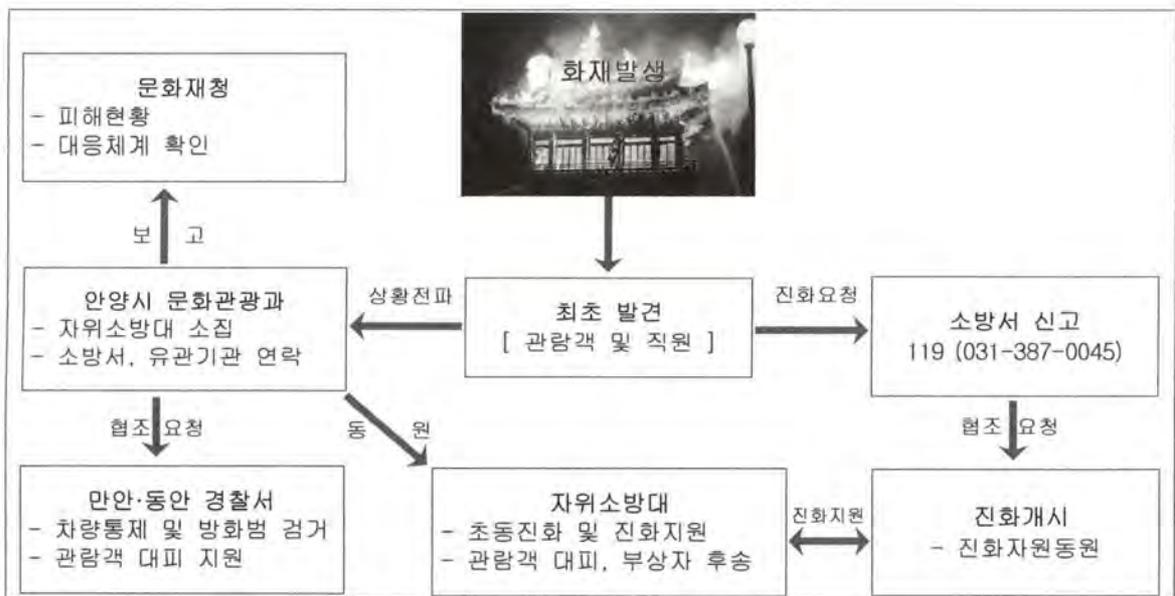
- ▶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하여 각종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문화재 홍보 시행
- ▶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 활동 참여 유도하고 환경정화활동, 문화재지킴이 및 문화재 바로알기 행사 등의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설 운영화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 기반 구축
- ▶ 각종 위기상황 및 재난상황시 피해예방,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의 참여 기회 확대와 동원인력의 적정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 실시



3. 화재 및 위기대응 대책

가. 예방단계

- 문화재지역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예방 사업 추진
 - ▶ 문화재지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 인화물질 반입 금지
 - ▶ 문화재지역 방화선 구축, 내화수림 조성 및 인화물질 제거
-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구축



○ 문화재 화재피해예방 관리실태 점검

- ▶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방수총, 저수조 등) 관리 실태 점검 실시

나. 대비단계

- 문화재 안전(산불)상황실 운용 및 비상근무체계 운영
 - ▶ 유관기관 핫라인 개설 및 운영
 - ▶ 문화재 산불피해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 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산불정보 발령, 정보 공유 및 상황관리 체계 운용
 - ▶ 산불정보 단계별 상황대응 및 관리
 - ▶ 산불정보 단계별 조치사항 지시 및 확인
- 화재위험 및 취약지 산불방지 특별 관리대책 시행
 - ▶ 화재위험 및 취약지 일제점검 실시
 - ▶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 강화 지시
- 문화재 화재피해 대비 진화훈련 및 교육 실시
 - ▶ 자위소방대 및 진화대원 교육 실시
 - ▶ 민관군 합동 진화훈련 시나리오 마련 및 실시
- 문화재 보호대책 점검
 - ▶ 문화재 소산대책 수립
 - ▶ 화재 방화선 구축 계획 및 장비 배치 계획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 유관기관 및 부서 임무의 명확화
 - ▶ 화재확산 단계별 진화 및 소산활동 체계 확립 시행

다. 대응단계

- 신속한 상황접수 및 상황 파악
 - ▶ 화재 발생지 위치, 문화재 피해 우려 여부 확인(이격거리, 피해 위험성 파악)
- 유관기관의 신속한 상황전파
 - ▶ 진화동원 인력, 진화 출동경로, 문화재 유무 확인 등
 - ▶ 화재발생지역 인근 문화재 현황에 대한 소방서 등 통보

○ 문화재 소산 및 보호조치 시행

- ▶ 중요 문화재 대피장소 확보
- ▶ 이동 가능한 문화재 안전한 장소로 소산 지시
- ▶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 방화피복 등 실시
- ▶ 소산문화재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경찰서 지원 요청

○ 문화재 주변 방화선 구축 및 소화력 전진 배치

- ▶ 문화재 주변 살수 및 수목벌채 등을 통한 방화선 구축
- ▶ 자위소방대 및 진화인력 배치·운용
- ▶ 산림청, 국민안전처 문화재 주변 소화력 집중 지원 요청

○ 문화재 피해 우려 시 현지조사단 구성·파견(필요시)

- ▶ 안전기준과, 해당부서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 및 파견
 - 산불진화통합본부 조사단(문화재 전문가) 파견
 - 문화재 보호조치 지도 및 피해상황 조사

○ 업무수행 및 협조체계





라. 복구단계

- 문화재 재난 피해지역에 현지조사단(해당 부서·기관 합동)을 파견하여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조사 실시
- 문화재 복원은 별도의 복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
- 재난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확대 방지
- 복구 시에는 기존의 실측설계, 탁본문양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형 복원을 추진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전승활용장비, 의상, 악기 등의 피해가 발생시에는 전승자의 입회하에 피해목록을 작성하고 복원시 필요한 예산지원 기초 자료로 활용
- 재난 피해 복구 시 재난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복구대책을 추진

※ 문화재 수리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규범 관련 문화재 수리 기본원칙

-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음
-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음
- 전통기법으로 수리
-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함
-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후의 현황과 수리절차 및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김
- 문화재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 변형시키지 않음
-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함
-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함

※ 문화재 유형별 복구 대책

가. 중요 건조물문화재 피해 복구

- 현지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사 등 실시
- 문화재 종류별 복구지도 자문단을 구성·운영
 - 기존의 실측설계 및 탁본문양 등 고증자료를 토대로 복원 추진
 - 복구지도 자문단은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자문지도
 - 지방자치단체는 복구공사 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
- 피해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우선 응급복구 실시, 피해확대 방지
- 복구공사 중 고증, 기술지도 필요시 문화재청의 지도 및 자문수령
- 복구소요예산은 문화재청,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자료, 장비 등 피해 복구

- 전승자 안전보호
 - 전승자의 안전보호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시행
 - 피해발생시 전승자의 피난, 부상자 치료 등 안전대책 최우선 시행
 - 전승자의 피해상황 및 후계자 등 현황을 분석하고 전승대책을 수립
- 전승관련 자료, 전승장비, 작품 등의 사후보호와 복원
 - 전승자 입회하에 지자체 합동으로 전승활용장비, 의상 등 피해목록 작성
 - 피해목록은 지자체 관리, 문화재청에 통보하여 예산지원의 자료로 활용

다. 천연기념물 문화재 피해 복구

- 유전자 비교 검토를 통한 복원
 - 분산 보유된 유전자 분석 및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통하여 복원
 - 분산 보유된 종지정 천연기념물의 이전·번식
- 서식지·도래지 조정(종 지정 천연기념물)
 - 이전된 서식지·도래지의 경우 우선 보존 조치(가지정 등)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구역을 조정·변경조치
- 노거수 재난피해
 - 생육 가능한 노거수는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개선작업 실시.
 - 생육 불가능 노거수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해제 여부 결정
- 비가연성 천연기념물의 피해
 - 천연기념물 주변의 토사, 강우 등으로 인한 표면 변색을 방지
 - 천연기념물의 낙뢰, 열해 피해로 인한 갈라진 부위 등 파악

라. 동산문화재 피해 최소화(소화수 등 물에 젖는 등 2차 피해 예방대책)

- 물리적 파손이 발생할 경우 현장보존을 위하여 사진으로 기록
- 일반적으로 서적류가 소화수 등에 젖어 48시간 이내 건조할 수 없는 경우
 - ①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②튼튼한 박스에 서적 뒷면을 밑으로 해서 넣거나
 - ③ 냉동처리한다.
- ※ 금속, 도자기, 석조, 유리판, 사진, 가구 등은 냉동에 적합하지 않음
- 서적류 등의 경우 흡수지, 종이타월, 왁스 코팅지 등을 사용하여 소장품 끼리의 접촉을 막고 잉크의 옮김과 번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지를 삽입
- 토양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흐르는 물로 세척하거나, 물을 넣은 용기 안에서 부드럽게 흔들면서 세정
- 통풍이 좋고 습도가 낮은 선선한 장소에서 흡수성 소재를 소장품 밑에 깔고 젖으면 교체하며, 가능한 소장품을 틈이 있는 선반에 놓아 말려 수분의 증발을 촉진

마. 홍보대책

○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위기 단계	홍보업무 점검사항
쟁점관리	이슈 모니터링: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위험요소 발견
	쟁점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분석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부서 내 보고 및 위기대응 의사결정 지원
위기상황 대비	위기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매뉴얼 공유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와 현장 상황실, 브리핑실 등 취재지원시설 마련
	체크리스트 통한 언론 인터뷰, 브리핑 준비
위기 대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대응입장 정리 및 핵심메시지 선정,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1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동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청장 수시 보고, 부처 내 상황 전파
	오보 적극 대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인터넷을 통한 소문 처리 및 외부전문가 지원 확보
사후 위기관리	여론을 반영한 메시지 수정 및 정책 보완·수정
	이미지 회복 활동 : 공중관리, 매체관리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등

참고 문화재 소산대책

○ 소산 목적

- ▶ 산불(화재), 풍수해(태풍, 호우), 낙뢰 등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문화재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피해발생 우려 지역 또는 우려 시설물로부터 이동 가능한 문화재를 이격 또는 격리시킴

○ 소산 기본 방침

- ▶ 상시 유관기관과 소산대책 공조체계 유지 및 점검
- ▶ 재난의 피해상황 및 정도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
- ▶ 소산 가능 문화재는 유관기관 협조 하에 안전한 장소로 소산
- ▶ 소산 시 문화재 소실·훼손 및 도난방지 등 종합계획 수립
- ▶ 문화재 소산 시에는 문화재를 분류(지정, 비지정)하고 신속 안전하게 소산(지정문화재, 경량 문화재 우선 소산)
- ▶ 소산이 불가능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응급조치(해체, 매몰 및 피복 등) 시행
- ▶ 재난 발생 시 소실 및 훼손될 우려가 높은 문화재부터 우선 소산

○ 문화재 유형별 소산 대책

가.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소산

- 건조물문화재 내 동산문화재의 소산 등을 위하여 대피시설 확보
- 소산 시 문화재의 훼손방지, 도난방지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
-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사전에 소산문화재 목록을 작성 비치 관리
- 소산문화재 목록에 지정구분·명칭·크기·재질·무게·소산장소 등 명시
- 재난 피해 발생우려가 높을 경우 해당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소산 문화재 목록, 소산계획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안전한 장소로 소산

나. 천연기념물 소산

- 종 지정 천연기념물(동물) 소산
 - 축양 천연기념물(제주마, 오골계 등)의 경우 모든 개체를 안전시설에 소산, 긴박할 경우에는 혈통 우수 소수개체(50개체이상) 선정
 - 유관기관의 보유자원을 파악하여 유사시 활용방안 강구
 -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여 신속한 협력체제 유지
 - 천연기념물 분포 위치도를 배포하여 문화재 보호 정보 공유
 - 종 지정 천연기념물(동물)의 유관기관에 비상 소산 등 공조체계 유지
 - 우선 보호 천연기념물을 동물원 등 전문시설에 소산하고 불가능시에는 인근 축산장, 대학 등의 보유시설 등으로 소산
 - 긴박한 경우 야생 생존가능 천연기념물은 적극 야생 방사
 - 유관기관의 보유자원을 파악하여 유사시 활용방안 강구

다. 사적, 명승 중요민속자료 문화재 소산 대책

- : 중요 건조물문화재 소산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동 문화재지역의 실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 소산 기본 방침

- ▶ 상시 유관기관과 소산대책 공조체계 유지 및 점검

○ 태풍예보 및 호우주의보 발령시 조치요령

- ▶ 문화재지역내 시설물내외 하수구, 배수구 등을 점검하여 막힌 곳이나 침적물 집적이 많을 시에는 반드시 제거
-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 안전점검
 - 대규모 나지로 구성된 산지 비탈면 또는 시설물 개보수, 신설공사로 비탈면 절취한 지역 세부점검 및 안전조치 시행
 - 침수 및 산사태 등 피해위험개소에 대하여는 접근을 금지하고 소산이 가능한 경량문화재에 대한 사전에 소산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시 소산 실시

※ 산사태가 발생 초기 또는 진행시 나타나는 현상

- ①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②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③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④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 ▶ 하천주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이동 가능한 시설물 이동 실시
-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 사전 준비
- ▶ 태풍 내습시 강풍등으로 인하여 비산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지붕, 안내판 등) 안전점검 실시하고 강풍으로 전도 할 우려가 높은 수목 등에 대하여 주변 시설물 대피 시행
- ▶ 각종 언론매체(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기상예보 숙지

○ 태풍 내습 및 호우시 조치요령

- ▶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내 거주자 대피 및 문화재 소산
- ▶ 산사태 위험지역 접근금지 및 인접 문화재 등 소산대피
- ▶ 안내판 및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고정
- ▶ 대피시 수도, 가스밸브 및 전기는 반드시 차단
- ▶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경청하고 2차 피해 대비

○ 태풍이 지나가거나 및 호우가 지나간 후 조치요령

- ▶ 문화재시설물 점검 및 피해 상황 파악
- ▶ 추가 피해 발생 가능 및 위험개소 응급조치 시행
- ▶ 피해발생시 즉시 연락(관리자, 소유자⇒시·도(시·군·구)⇒문화재청)

참고 문화재 현황

※ 문화재 : 27점 (유형14,무형4,기념물6,민속문화재1,문화재자료2)

구분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년월일	
유형문화재	보물	4	중초사지 당간지주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석수동)	'63. 1. 21	
	경기도 유형문화재	38	만안교	만안구 석수동 679(하천)	'73. 7. 10	
		92	석수동 마애종	만안구 석수1동 산 32	'80. 6. 2	
		93	안양사 귀부	만안구 예술공원로131번길103 (석수동)	"	
		94	삼막사 마애삼존불	만안구 삼막로480(석수동)	"	
		112	삼막사 3층석탑	만안구 삼막로478(석수동)	'83. 9. 19	
		125	삼막사 사적비	만안구 삼막로478(석수동)	'85. 6. 28	
		149	유영수양완 연명지도(윤창노)	동안구 비산2동 미륵 (아) 7-1205	'94. 10. 29	
		150	건륭59년 5월 3일 군호재가문서(윤창노)	"	"	
		164	중초사지3층석탑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석수동)	'98. 1	
		243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만안구 안양동 16-1번지	'10. 9. 8	
	비지정 유형문화재			박서신도비	만안구 석수2동 산168	
				삼막사삼귀자	만안구 삼막로 480(석수동)	
				안양사 부도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103 (석수동)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17	생칠장(송복남)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21(부림동, 공작부영아파트 309동 1508호)	'97. 9. 30	
		30	북매유기(임선빈)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3-13	'99. 10. 18	
	비지정 무형문화재	평남제1호	평양검무(이봉애)	만안구 만안로 475-1	2001. 2. 23	
			방자유기(이형근)	만안구 박달로 324-21		
기념물	경기도 기념물	124	비산동 도요지	동안구 비산1동 산 3-1	'91. 4. 12	
		126	석수동 석실분	만안구 석수1동 236-9	"	
	비지정 기념물		평촌 지석묘	동안구 평촌대로76(자유공원)		
			비산동 석실분(1호,2)	동안구 관악대로121번길 79(비산동)		
			석수동 석실분	만안구 석수1동 산53-3		
	최경환 성지	만안구 병목안로394(안양동)				
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	3	삼막사 남녀근석	만안구 삼막로480(석수동)	85. 6. 28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60	삼막사 명부전	만안구 삼막로478(석수동)	83. 9. 19	
		100	구 서이면사무소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안양동)	2001. 1. 22	

1. 산불(사회재난)대책

가.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구 분	건 수			면 적(ha)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21	20	1	0.32	0.29	0.03
2011	4	4	0	0.06	0.06	0
2012	8	8	0	0.08	0.08	0
2013	1	1	0	0.02	0.02	0
2014	4	3	1	0.07	0.04	0.03
2015	8	4	4	0.395	0.11	0.285

나. 원인분석

-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8% 차지
 - 기타 15%, 쓰레기소각 7%, 논밭두렁 소각 7%, 담뱃불실화 6%, 성묘객 실화 5% 등

다. 목표

구분	'15년 발생건수	'16년 목표	증 감
발생건수	8	5	-3
피해면적(ha)	0.285	0.1	-0.185

라. 추진방안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가) 산불조심기간 설정

- ▶ 봄 철 2. 1. ~ 5. 15.(105일간), 가을철 11. 1. ~ 12. 15.(45일간)

나)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 설치기관 : 시 1(녹지과), 구 2(건설과)
- ▶ 운영시간 : 9:00~21:00

다) 근무반 편성

- ▶ 평 일 : 녹지과(산림휴양팀)에서 상황유지
- ▶ 토·일·공휴일 : 근무반 별도 편성 운영

2) 산불 위기경보별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

-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발령 단계별로 비상대기, 입산 통제 등 조치사항 이행

구분	판단기준	행동지침	비고
관심	· 산불위험지수 : 60미만	·산불방지대책 설치·운영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산불방지 홍보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징후활동 감시
주의	· 산불위험지수 : 60 ~ 80 이상	·상황모니터링 실시 및 위기징후 목록 분석·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점검, 확인 ·대국민, 언론 홍보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산불경계경보 발령
경계	· 산불위험지수 : 81이상 지역이 50% 이상	·직원의 1/6이상 비상대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출동준비 ·유관기관 경보발령 상황전파	·대비계획 점검 ·산불위험경보 발령
심각	· 산불위험지수 : 81이상 지역이 70% 이상	·직원의 1/4이상 비상대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출동준비 ·유관기관 경보발령 상황전파	·즉각 대응태세 돌입

※ 경보발령 내용은 유선방송, 마을앨범방송 등으로 신속히 전파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불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유관기관의 보유자원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마. 재정사업(예산)

□ 사업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및 교육
- 산불진화헬기 임차
-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1월
2/4분기	산불진화 및 안전교육 실시, 산불방지 시민홍보	3월
3/4분기	-	
4/4분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산불방지대책 추진	999	533	466				

바.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산불취약지 등산로 관리

- 등산로 통제 : 수리산, 관악산 일원
- 통제 방법 :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
- 공익근무요원·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를 취약지에 배치, 엄격 통제
- 위반자(화기물소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사전예고적 기동단속 실시로 계도성과 제고

- 단속반편성 운영 : 본청(구청 단위 별도편성 운영)
- 단속반 편성(2개조)

단속반장	A조		B조	
	녹지과장	조장 산림휴양팀장 권오영	조장	녹지9급 성현직
	조원 녹지8급 이승아	조원	운전7급 천춘식, 녹지8급 이남일	

○ 집중단속사항

-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 위반(과태료 30만원 이하)
- ▶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다양한 산불홍보로 산불 경각심 고취

- 시정뉴스, 우리 안양지, 신문 등에 산불조심 적극홍보(본청 홍보실과 협의)
- 반상회, 민방위 교육, 직장 교육, 각종 회의 시 홍보·교육 실시
- 산불방지 자동음성 홍보기기 활용 : 8개소
- 산불 임차 헬기를 통한 공중계도 :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1회

□ 주요 등산로입구 및 산림욕로 산불조심 계도 활동 전개

- 등산로에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안내판 설치
- 등산로 입구에 화기물 보관소 운영 - 4개소

□ 기타 산불요인별 예방대책 마련

- 군부대의 사격장, 소각장 주변에 방화선 설치
- 사회 불만자, 정신이상자, 노숙자 등 우범자 특별관리
- 산림 내 무속행위 등에 대한 산불위험요인 감시 강화

나) 대비단계

□ 산불기간 감시탑 및 감시 초소 근무 강화

- 운영주체 : 구 (만안, 동안)
- 운영방법
 - ▶ 근무자 :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10:00 ~ 18:00)
 - ▶ 근무방법
 - 무전기, 쌍안경, 관내도, 중식용 도시락 휴대
 - 경계근무 철저히 및 유사시 대책본부에 신속 보고
- 감시탑 현황 : 3개소(만안구 2개소, 동안구 1개소)

만 안 구		동 안 구	
소 재 지	속 칭 명	소 재 지	속 칭 명
안양6동 산103-102	현충탑 뒤	비산3동 산3-1	전망대 주변
석수3동 산187	와룡산 정상	-	-

- 감시초소 현황 : 6개소(만안구 3개소, 동안구 3개소)
 - ▶ 만안구 : 삼막사 입구, 삼막사 정상, 공군부대 입구
 - ▶ 동안구 : 내비산 산림욕장 입구, 간촌약수터 입구, (구)세심천약수터 옆

□ 야간 산불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 전개

- 야간산불 다발지역, 산림과 연접한 밭두렁 소각지역, 무속활동 우려지역 등
- 야간산불 다발지역 감시 및 방화자 검거를 위한 감시 강화
 - ▶ 필요시 공무원, 경찰, 산불감시원 합동 ‘야간감시반’ 편성 운영

다) 대응단계

-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감시
 - 산불 위험 시기에는 집중 감시·계도 활동 실시
 - 산불위험 시간대에 관계자가 탑승하여 계도 방송 집중 실시
- 헬기진화와 지상진화의 역할분담
 - 헬기는 주불 진화를 담당하고, 잔불 정리는 산불현장 지휘자가 지상 진화 인력으로 진화
 - 공중 - 지상 간 협력으로 야간 산불로 진행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주력
- 진화인력 동원체계 전환
 - 지상진화 인력은 산불진화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필수인력 중심으로 동원체계 전환(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비전문 인력은 동원 자제)
 - ▶ 산림공무원, 소방공무원, 산림공익요원 등 진화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을 투입
 - ▶ 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진화에 경험이 있거나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진화요원 투입
 - 특히 야간산불 진화인력 동원 시에는 안전사고 등을 고려, 훈련 받은 정예요원만 동원하는 방안 강구
- 산불확산 단계에 따라 산불진화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투입
 - 초기에는 산림공무원, 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익근무요원 투입
 - 임차헬기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2.1.부터 배치)
 - ※ 임차헬기 계류장소 :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 산불확산 시에는 소방, 군, 일반공무원을 동원하여 추가 투입
 - 감시원, 소방·군·경찰, 민간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 산불현장에는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진화차량 외 차량통제
- 토·일요일, 공휴일 공무원 비상대기조 운영
 - ※ 산불방생 위험이 적을 경우 대책본부만 운영(방송실시)

라) 복구단계

- 피해 유형별·임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복구기술 적용
 - 자연적·인위적 방법을 병행, 피해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옥, 축사, 농림시설 등에 최우선 응급복구 지원

1. 목 표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재난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능력 강화
-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기평가로 사고발생 징후 사전 판단·대비
-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과 상황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활동 수행

2. 시설물 현황

1) 특정관리대상시설 : 761개동

구 분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건축물	761	721	186	460	75	40	40	-

2) 시특별 대상 시설물 : 754개소

구 분 시설별	시 설 종 별			비 고
	총계	1종	2종	
계	754	35	719	
민간건축물	710	23	687	
공공건축물	44	12	32	

3. 단계별 재난관리계획

가) 예방단계

□ 대형건축물사고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시설물 관리·안전점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 대상시설 : 1종, 2종 시설물
-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년 시행)
- ▶ 연2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후 시스템에 등재(관리주체)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 정기점검 :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NDMS에 입력
 -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연2회
 - 재난위험시설(D,E급) 월1회
- ▶ 재난위험시설 장·단기해소계획 수립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A~C급) : 일반적인 시설·지역
- 재난위험시설·지역(D·E급) : 긴급히 보수·보강과 사용 및 주거 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

3)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기능 :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 구성 : 건축·토목 등 민간전문가 20명
- 역할
 - ▶ 특정관리대상시설 위험요소 발견시 합동안전점검
 -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 ▶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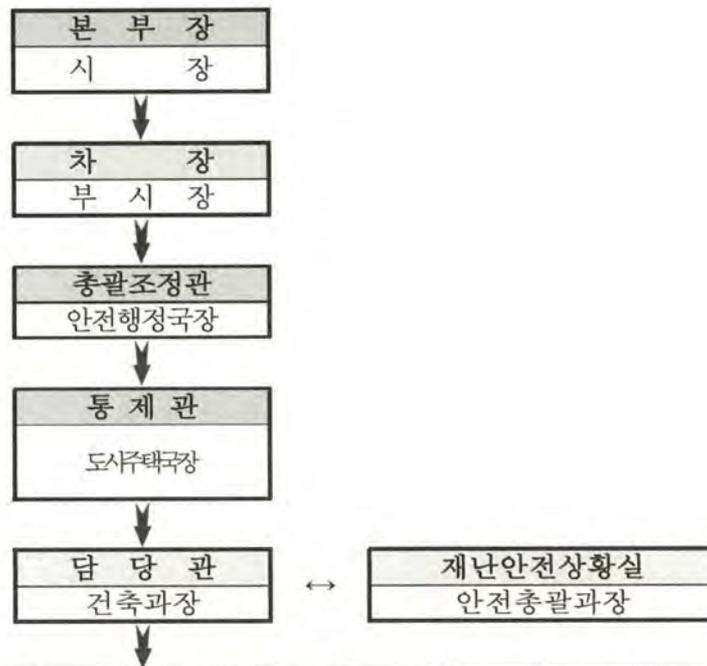
나) 대비단계

□ 사고징후 대비체계 구축

1) 경계활동 강화 및 정보수집

- 기상특보 및 언론보도 사항 등 실시간 정보 확인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사고대비 조치사항 이행 통보
- 긴급복구용 장비 정비·점검 철저 등 비상대비태세 유지
- 피해발생 우려 시설 예찰강화 및 주변지역 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2)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상황 관리 총괄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④ 긴급 통신 지원	⑤ 시설 응급 복구	⑥ 에너 지 기능 복구	⑦ 재난 수습 홍보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⑨ 교통 대책	⑩ 의료 · 방역	⑪ 자원 봉사 관리	⑫ 사회 질서 유지	⑬ 수색 구조 구급
건축과	복지 정책과	청소 행정과	정보 통신과	건축과 하수과 도로과 등 8개부서	녹색 성장과	홍보실	안전 총괄과	도로과 (교통 정책과)	만안· 동안 보건과	자치 행정과, 자원봉 사센터	만안· 동안· 경찰서	만안 소방서

3) 실무반별 세부 임무내용

구 분		담 당 임 무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도시주택국장	준비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단계에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담당관	건축과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함
상황관리 총괄반	동향파악 및 상황보고 취합	반장 : 상황업무 총괄(건축허가팀장)
		팀장 : 건축허가팀 직원 (동향보고서·보고서 작성 및 상황판단 관련업무)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현장 방문 시 상황보고 및 보고서 작성 3.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상황판단회의 결과 조치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5. 수습대처 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6.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사고원인 조사 7. 긴급상황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 조치
	상황 관리 지원	팀장 : 안전총괄팀 직원 1.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2.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자료 준비 3. 상황근무자 후생·복지 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 방송 모니터링 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8.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반장 : 복지정책과장	
	1. 긴급생활안정지원 체제 구축 및 가동준비 2.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 지원 준비 3. 재해구호물자 응원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 재확인 4. 이재민 구호비용 등 소요재원 지출 준비 5. 피해지원 정책 종합홍보 사전 준비 6.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관련기관 전파·공유 7. 임시주거시설 수용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구 분	담 당 임 무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	8.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관리, 관련기관 전파·공유 9. 장기수용 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지원 10.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조정 11. 피해주민 간접지원 통합 원스톱 서비스 운영 12. 이재민 주거환경 정비 지원 13. 긴급생활안정지원 정책 평가 및 피드백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	반장 : 청소행정과장 1.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사전점검 2.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 점검 3. 대규모 재난폐기물 발생 대비 장비 동원 체계 점검 4. 재난폐기물 발생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실시간 재난폐기물 현황 파악 6.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인력 등 지원에 대한 사전협의 7. 폐기물처리시설, 수집운반시설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시행 8.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9. 지역별 재난폐기물에 보관 및 수거 현황 파악 10. 주민에게 분리배출 방법 및 장소 안내, 홍보 11. 재난폐기물에 대하여 우선 처리 후 복구비 지원 및 정산
긴 통 신 지 원 급 반	반장 : 정보통신과장 1. 통신두절 상황 파악 및 대처 방안 마련 2.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 자원 파악 3.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지역 상황관리 4. 통신두절 지역 신속한 긴급통신 지원 5. 통신두절 장기화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6. 긴급통신지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시 응 급 복 구 설 반	반장 : 건축과, 하수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수도시설과, 녹지과, 고용경제과, 교통정책과 1. 공공시설의 기능별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2. 피해가 많은 지역의 부족 인력·장비·자재를 파악하여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3. 피해 시설유형 파악 및 인력·장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지역 파악 4. 피해지역 장비·인력 부족 대비 군·민간 인력·장비의 지원 체계 가동

구 분	담 당 임 무
에너지 기 능 복 구 반	반장 : 녹색성장과장 1. 대규모 전력·가스 시설물 피해 대비 응급복구체계 점검 2. 인명구조 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3. 에너지(전기·가스·유류) 시설 피해상황 관리 4. 침수지역 감전사고, 가스누출 폭발 등 2차 피해방지 예방활동 5.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안전점검단 가동
재 난 수 습 홍 보 반	반장 : 홍보실장 1. 보도지원팀 및 공보팀 구성 운영 2.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3.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인터넷, 지역방송 등) 4.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5. 재난 대처·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6.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7.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8.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9.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10.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물자관리및 자원지원반	반장 : 안전총괄과장 1. 자재·장비 등 방재자원 동원 협력체계 구축 2. 방재자원 사전 확보조치 및 상호지원협약 동원체계 확립 3. 피해예상지역(자재·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교 통 대 책 반	반장 : 교통정책과장 1. 교통 재해취약시설 점검·조치 2. 도로 침수피해 대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간판 등 통제방지 점검 등 3. 교통통제상황 파악 및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교통대책 추진
의 방 역 료 반	반장 : 만안·동안 보건과장 1.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2.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4. 의료봉사 활동 지원 요청

구 분	담당 임 무
자 원 봉 사 관 리 반	반장 : 자치행정과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4.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사 회 질 서 유 지 반	반장 : 동안·만안경찰서 관련 과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 강화 및 사전 출입통제 2. 피해예상지역 범죠평방 등 치안유지 활동상황 3. 피해지역 치안유지 및 현황 파악 4. 재해지역 민심동향 및 각종 여론청취·보고
수 색 구 조 · 구 급 반	반장 : 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구급 업무는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과 협조 2.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3. 구조구급 상황 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가동 4.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등) 5.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행 지 정 원	반장 : 총무과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시정에 관한 방문자료 작성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4) 유관기관간 긴급지원체제 구축

기관별	조치사항	비고
수도군단, 제1580부대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등	440-6720 468-5180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 학교 이재민 수용시설 사용지원 등	380-7216
안양मान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 재난현장 교통통제 ○ 소방서 합동 사고원인조사 및 범죄예방 ○ 재해사상자 발생시 신원확인 지원 ○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통제, ○ 의료기관 및 영안실 주변 현장통제 등	8041-6129 478-7329
안양소방서	○ 응급구조 장비 및 인원 신속동원 등 구난체제 가동 ○ 양수기, 포대, 비닐 등 수방자재 지원 ○ 광역적 재난지원 및 인근시 지원 등	470-0120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전력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 긴급 전력 공급 및 설비 설치 등	390-7400(주) 390-7415(야)
한국전력 안양지점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가설 ○ 필요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설비 응급복구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옥내설비 점검·보강 등	450-2232(주) 450-2203(야)
삼천리도시가스	○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가스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458-1809 (상황실)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민원인,직원 등) 급식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등	459-6410
KT안양지사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 긴급응급소통 지원 등	385-0060 (상황실)

다) 대응단계

□ 재난상황보고 및 재난대책본부 발동

1) 사고접수 및 전파

- 재난종합상황실 초동 조치
 - ▶ 현장급파 : 시, 구 상황근무자
 - ▶ 상황보고체제 유지 (현장상황실 ↔ 시 재난종합상황실)
 - ▶ 전직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파
- 초동보고 (도 재난종합상황실 Safe-on 또는 유선 보고)
- 사고규모에 따라 각 유관기관 및 부서에 위기경보 전파
-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등 재난상황 홍보 실시
- SNS 등을 활용 주민에게 재난상황 신속 전파

2)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발동

- 상황실 비상근무자 : 현장과의 연락 상황수집
 - ▶ 중간, 최종보고(상황총괄반)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 대책본부 : 본부장(시장) 및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반
- 각부서 및 유관기관 통보
 - ▶ 상황실 비상근무자 및 구조 구급지원
-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 : (책임자)수습책임 관계기관의장

□ 응급조치

1) 대피명령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2) 위험구역 설정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

3) 강제대피 조치

-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험구역 안에 있는 자를 강제 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 조치

□ 구조·구급 및 홍보강화

1) 구조·구급

-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통제단장 안양소방서장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 구조 요청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구조인력 및 장비 요청

2)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강화

- 재난상황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여 사고발생후 화산재 등 피해 최소화
- 지역별로 대피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홍보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사고수습지원단의 구성

- 주 관 : 본부장 시장
- 구 성 : 재난유형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
- 주요활동내용
 - ▶ 재난수습에 필요한 기술의 자문·권고 또는 조언
 - ▶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상황

2) 응급복구 및 방역, 부상자 치료

- 사고수습지원단의 자문에 따른 응급복구 조치 시행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 투입
- 사고 잔재물 수거 처리

- 2차 피해 유발요인 제거
- 인접지역 피해확산방지 협조 요청
- 방역조직 가동(보건소)
- 부상자 치료를 위한 치료대책 강구

3) 사고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

-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원인 분석으로 근본적인 대책강구
- 공무원, 재난전문가, 전문기술자로 편성된 피해원인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규명
-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항구 복구대책 수립
 -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복구

4) 손실 및 치료보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과 제46조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 인력 및 투입장비의 부상, 고장, 파손에 대한 보상 실시
-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민간 긴급구조요원 등이 응급 조치·긴급구조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5) 재난 재발 방지대책

-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1. 목 적

- 공동주택의 화재 및 붕괴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리대책 수립.
- 위험·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안전의식 고취.
- 공동주택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추진, 취약시기별 중점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능력 제고
 - * 점검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
 -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점검 (D,E등급은 월1회점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관리

- 시특별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관리주체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16층이상 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3) 관내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 관리

4) 교육, 훈련, 점검, 홍보 등

-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
 -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 매회별 4시간
 - 대상자
 - ▶ 방법교육 : 경비책임자
 - ▶ 소방,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교육내용
 - ▶ 방법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기관 : 경찰서, 소방서, 주택관리사협회 등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 교육대상자 : 관리감독자(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
 - 교육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점검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안안전교육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관리주체) * 반 기마다 1회씩 안전점검
- 공동주택 안전 및 화재 예방 안내(수시)

나) 대비단계

- 1)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대책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정기점검〉

- 중점관리시설(A, B, C급) : 반기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D, E급) : 매월 1회 이상(단, E급은 매월 2회 이상)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점검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2)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 입력 확인

3) 관내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관리

- 현장별 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시기별(해빙기, 우기 등)로 별도계획 수립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 추가 또는 변경시행
- * 필요시 관련전문가(안전총괄과 안전자문위원) 합동점검 실시

다) 대응단계

1) 응급조치

○ 대피명령

-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지역안에 있는 주민에게 대피명령
- 재난 발생상황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파 및 대피명령

○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및 강제대피 조치

-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노후 공동주택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주기적 관리로 재난 발생 우려 사전예방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강제대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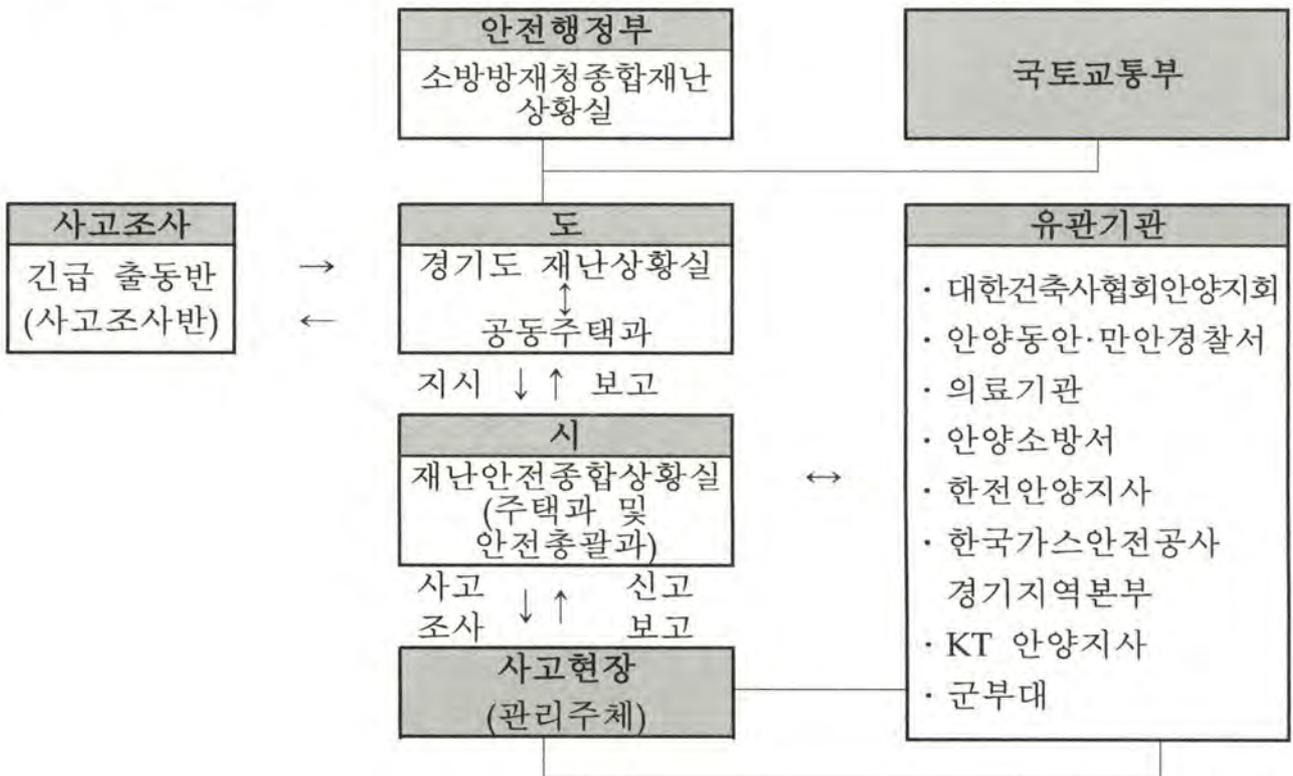
2) 사고의 접수·보고 및 전파

- 사고가 발생 시 직원 비상소집 및 수습대책반 구성
 - 현장출동 : 시, 구 상황근무자
 - 상황보고체제 유지(현장상황실 ↔ 시 재난종합상황실)
- 사고내용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해당지역에 전파
- 유관기관 및 부서에 사고 상황 전파

3) 사고수습 및 대응

- 사고현장 접근 통제 및 질서유지
 - 사고현장 책임기관 자체인력 우선 동원
 - 유관기관(경찰서,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등) 지원 요청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구조인력 및 장비요청
-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은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 구조 요청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우선 복구
- 피해조사 완료후 항구적인 복구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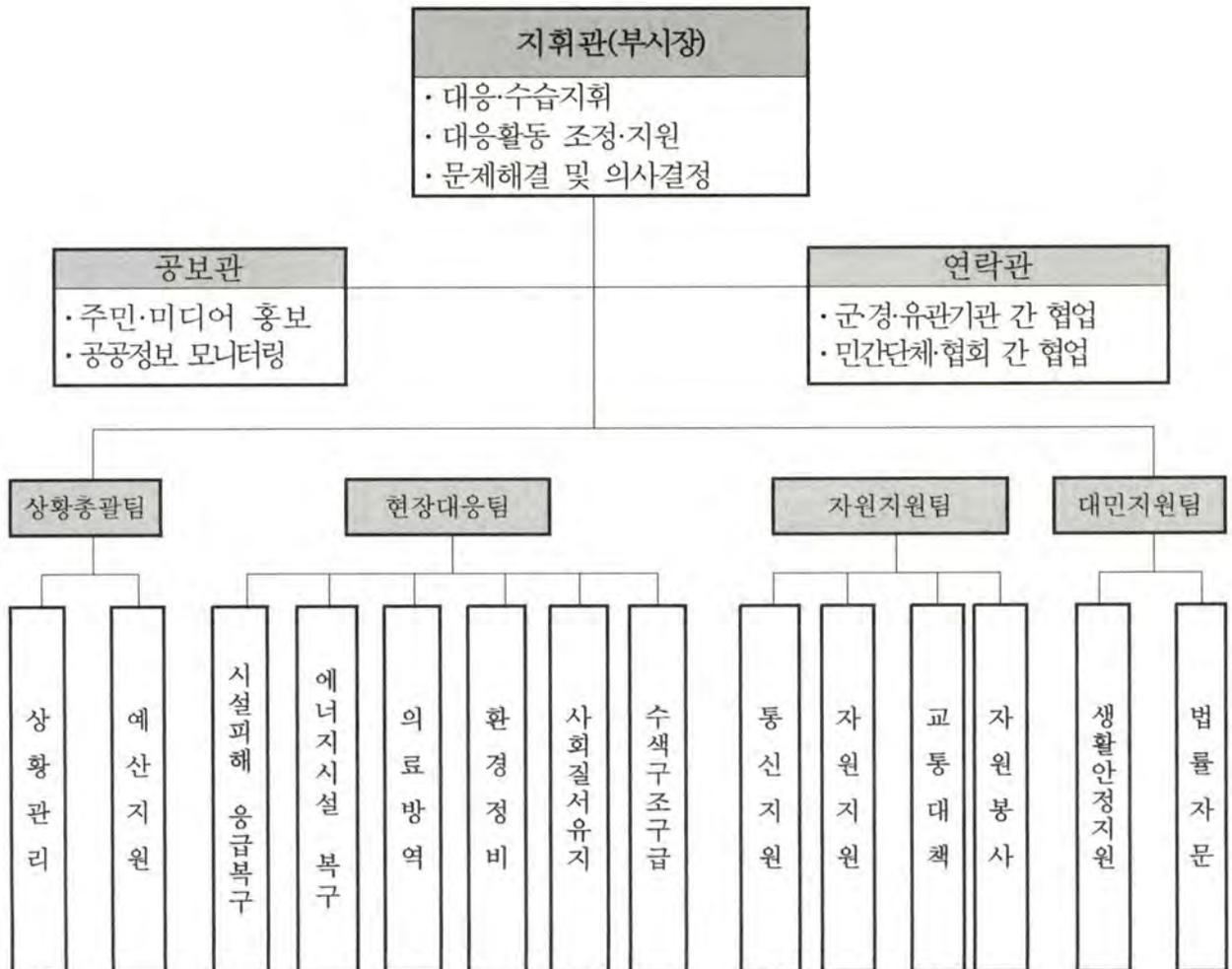
4) 재난상황 수습체계도



5) 유관기관 연락처

유관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안양소방서	387-0045	387-0045	383-0046	383-0046	
안양동안경찰서	478-7329	478-7329	388-1158	388-1158	
안양만안경찰서	8041-6129	8041-6129	8041-6301	8041-6301	
(주)삼천리도시가스	345-1300	345-1300	453-5671	453-5671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450-2203	450-2203	450-2389	450-2389	
KT 안양지사	455-0060	385-0500	455-0060	385-0500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처	420-2670	420-2439	420-2542	-	

라) 복구단계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2) 응급복구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 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 투입
- 사고 잔재물 수거 및 2차 피해 유발요인 제거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3) 사고원인조사

- 합동조사단 구성 및 현장을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담당부서 책임자 및 외부전문가
 -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항구 복구 대책 수립

4) 항구복구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보수·보강

1. 추진 방침

-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상 화재(폭발) 및 침수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
- 재난을 대비한 비상대비 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 철저
- 지하도상가의 취약성을 감안 화기 사용 금지

2. 주요시설현황

□ 중앙지하도 상가

구 분	지 하 상 가	비고
건축부문	- 점포 169개(1,262.224㎡) - 지하보행로 (848.86㎡) - 계단 출입구 (162.212㎡) - 4개소 - 기계실 등 기타 (137.181㎡)	총면적 -2410.477㎡
기계부문	- 에스컬레이터 설비 1조(3번 출구) - 경사형리프트 설비 2대(1, 4번 출구) - 공기조화 설비 8대, 패키지 냉방설비 18대 - 배수 펌프 5대 (7.5HP)	
전기부문	- 수전설비 22,900 750kVA - 저압 분전반 설비 10면 - 비상 발전 설비 380V/220V 160kW	
통신부문	- MDF실 (유선 전화 및 인터넷) - 자동제어시스템 1식 - 전관 및 비상 방송 설비 1식 - CCTV 14개소	
소방부문	- 화재수신반(P형 1급) 등 자동화재 탐지 설비 1식 - 스프링클러, 방화셔틀 및 제연 설비 각 1식 - 옥외 송수구 1개소 - 무선통신보조 설비 1식	

□ 일반가 지하쇼핑몰

구분	지하상가	건물(관리사무소)	비고
건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408개소(15,823.62m²) - 화장실 남녀 4개소(장애인 3개소) - 물탱크 1개소(소방전용) - 캐노피 21개소(계단실) - 공조실 5개소 - 정화조 3개소(1,2,3번 화장실) - 자동계측시스템 1식(구조물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5개소 (1,653.59m²) - 화장실 6개소(2~7층) - 물탱크 1개소(소방겸용) (지하 2층) - 공조실 1개소 - 정화조 1개소(지하 1층) 	총면적 17,477.21m ²
기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컬레이터 3조(5,8,12번 출구) - 장애인 엘리베이터 1대 - 공조기 14대(공조섹션 16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식 냉온수기 2대(지하2층) - 냉각탑 4대(옥상층) - 엘리베이터 1대 - 공조기 2대(지하 1층) 	
전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설비 1,250KVA(부전기실) (예비 750KVA 별도 구비) - 원격검침 시스템 1식(옵니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설비 1,750KVA(주전기실 8층) (예비 1,000KVA 별도 구비) - 비상발전기 600KW 1대(지하1층) 	
통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F실(KT 전용선로 확보) - 자동제어시스템 1식(지멘스) - 방송설비 1식, TV공시청설비 1식 - CCTV 18개소(장애인엘리베이터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인터넷 지하상가 연계 (집단전화 구축) - CCTV 3개소(8층, 지하2층, 엘리베이터) 	
소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시스템 구축(수신반 R형 500회로)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1식 -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1식 - 옥외 송수구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상가 연계 부수신반(7층)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1식 - 스프링클러 1식 - 옥외 송수구 2개소 	

3. 재난관리 예방대책

□ 화재예방

- 화기취급 장소 화재 진압용 소화기 배치
- 식용유 화재 예방법 및 화재진압방법 교육·훈련실시(※ 방송문안 : 별첨 1)
 - ▶ 식용유로 튀김 등 음식물 조리시 자리가석 금지
 - 식용유를 불로 15분이상 가열할 경우 화기가 없어도 자연발화 우려
(찌꺼기가 있을 경우 약 163℃에 발화)

- 식용유 화재 발생시 물로 화재 진압할 경우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함
으로 물 사용 절대엄금

- 중화요리 식당 화재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사용하지 않는 전원차단(멀티탭) 및 전기화재 발생시 전원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설치권장
- 도시가스 누설여부 등 정기적인 점검실시
- 용접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 ▶ 가연물 제거조치 또는 비산방지포 사용
 - ▶ 용접부위의 가연성 보온재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로 적신 후 용접 작업 실시
 - ▶ 용접장소에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호스를 전개 후 작업 실시
 - ▶ 용접작업을 마친 후 30분 이상 현장 이상 유무 확인
- 규격전선 사용 및 전기 과부하 등 전기화재 발생요인 차단
- 겨울철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 주변 의류 등 가연물질 방치금지
- 정기적인 덕트 청소로 기름찌꺼기 등 화재 취약요인 제거
- 지하상가 내에 너무 과도하게 물건 등 가연물을 적치할 경우 높은 화재 하중으로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
 - ▶ 상품 등 가연물 적치를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 방화시설

- 방화문·방화셔터 정상기능 유지 → 방화문 닫힘 상태 유지
- 방화구역(면적별)선상 방화구획 정상 기능유지

□ 안전점검 및 훈련

-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 ▶ 소방·전기·가스·승강기·건축·토목분야 등
- 점검시 지하상가 각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병행 실시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매월 정기점검
-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 안전교육 등 실시

□ 정전예방

-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 정상기능 여부
 - ▶ 정전시 자동 전환으로 비상전원 기능 유지 → 자동운영
 - ▶ 상시 충분한 연료(유류)확보여부 점검

□ 수해예방

- 폭우로 인한 지하상가 침수 방치용 차수판 설치
- 폭우시 사전에 침수 방지용 모래포대 비치
- 침수시 배수용 펌프 비치

□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 지하상가 화재의 초등진화 및 예방을 위한 자체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4. 재난관리 대응대책

□ 화재발생 신고

- 화재발생 최초 목격자 119신고, 구내전파, 초등진화 등의 조치
- 신속한 상황통보
 - ▶ 화재발생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 경보기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하여 화재 전파함과 동시 소방서, 시청 등에 신고

□ 화재진압

- 화재초기 안전조치
 - ▶ 전기에 의한 화재발생시 우선 전원차단
 - ▶ 유류에 의한 화재발생시 분말소화기, 모래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차단
 - ▶ 초등 진화가 불가능 할 경우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

□ 화재진압 체계 구축

- 소화기, 옥내 소화전사용법 숙지로 신속한 화재진압체계 구축

□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 소화반으로 편성된 상인에게 화재진압에 필요한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 지급
- 자위소방대 활성화 : 본부분대, 소·수방분대, 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편성 운영

□ 화재 대책본부 설치

- 화재발생 상황 정도를 파악하여 화재대책본부 설치 운영

5. 대피대책

-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로 확보 : 대피로(별첨 2)
- 출입구, 비상구, 피난통로 등에 상품적치 장애물 엄금
- 피난 동선상에 노란색 선을 그어 피난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 유도등 및 비상 조명등을 유사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상기능 유지
- 화재발생시 경보설비 및 방송설비를 활용 신속 대피유도
- 지하공간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신속한 인명대피 필요

6. 인명피해 대책

- 인명피해 대책을 위해 안양시 보건소에 화재현장 주변에 의료구호반 운영 협조요청
- 화재로 인한 부·사상자 발생 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

7. 재난관리 복구대책

□ 응급복구 요령

- 화재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주위 정비를 신속하게 한다.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한다.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업무에 지장 없게 한다.
- 즉시 복구 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한다.

□ 재난응급 복구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응급대책 마련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우선 응급복구 한다.

□ 원할한 재난복구

-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보험사 등 보상협의 신속추진.
- 전문기술 요원을 투입 2차 피해 유발요인을 철저히 진단하여 제거 및 조치
- 피해보상
 - ▶ 공단 재난대책 상황실과 사고 관련기관 합동조사반 편성, 사고발생 원인, 책임 소재, 피해현장 등을 조사
 - ▶ 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완료 후 사고원인규명·분석으로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각 시설별로 수립 추진
 - ▶ 동 조사반의 피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책임자 부담 복구 등 추진
 - ▶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건설업체 장비사용 협정 체결

□ 재난원인분석 조사단 구성·운영

-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인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 전문가 위주로 편성하여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등.

□ 손실보상 및 치료보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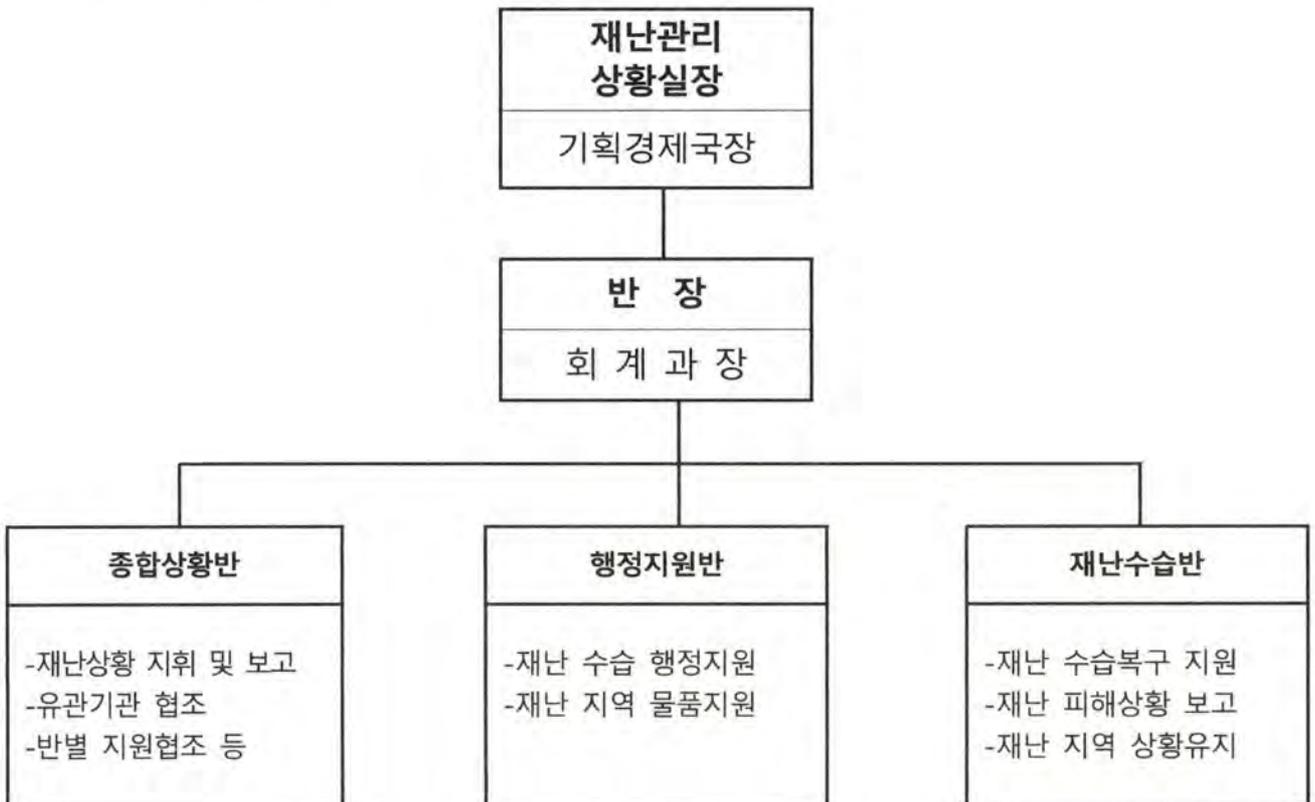
- 동원명령 및 응급부담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자, 민간 긴급구조요원 및 투입장비 등의 사망·부상 및 고장 파손에 대한 보상
- 보상협의추진은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당사자 선정, 범위, 금액, 방법등 결정
- 보상금 지급정산은 보상 협의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또는 보상금 확정 후 정산지급
- 피해보상(배상)업무추진 절차는 재난복구 및 보상계획 수립 → 재난사고 → 조사분석 → 보상기준설정 → 보상협의 추진 → 보상금지급.
- 정산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민사법에 따라 보상 추진
 - ※ 사고책임자 구별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행사
- 재산복구 및 보상계획 내용은 재난복구 및 수습, 피해자보상, 지역안전 대책 수립 등이며 재난사고 조사분석은 인명 및 재산피해, 이재민현황, 책임 소재, 보상능력 유무판단 등
- 기타사항은 국가배상법에 따르고 경상자 치료대책, 중상자 장기치료대책 수립

□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수립
- 관할 유관기관에 대한 협력체제 운영 등에 대한 평가
- 상황의 기록유지 및 보전
 - ▶ 발생 → 수습 → 복구 등 일련의 상황관리 일지 작성
 - ※ 회의보고 및 지시사항, 언론보도내용, 현장사진 등
 - ▶ 보도관계자에 대한 홍보는 창구를 통합하고 보도지원 반장이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하며 보도 발표 시 필요한 사항은 사고일시, 장소, 책임자, 사고개요, 부상자, 사고 상황, 부상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령, 직업, 부상정도, 수용병원 등)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 브리핑

II 재난대책 기구표

1. 재난관리 조직 및 임무



□ 재난발생에 따른 주요 대응계획

조치사항	주요임무	비고
상황접수 및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별 상황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및 건물구조 및 용도 등 정보파악 ○ 상황관리관(직원) 현장 출동 2명(현장 및 관리사무소) ○ 현장 및 사무실간 정보 전달 	
상황보고 및 전파 (5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상황보고(팩스 또는 유선)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상황 전파 및 최초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팀장 2명, 직원 2명 파견 ○ 현장통합지휘소 팀장 2명, 직원 2명 파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 개별 장례 여부 및 유가족 편의 제공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 인명피해 현황 파악, 언론 보도자료 준비 	
마무리 사고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보상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대표선정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 재난발생 원인 조사. 분석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실무반 편성

[종합 상황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회계과	과장	조정환	2170	- 총괄지휘
	팀장	손병국	5538	- 현장 파악(상황관리관) - 재난상황 지휘 및 보고 - 피해자 보상대책 강구 (피해자 대표선정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팀장	신현자	2324	- 유관기관 및 반별 지원협조 등
	주무관	김훈	2174	- 유관기관 협조, 피해보상 대책 수립
	주무관	유한순	5537	- 재난 상황 보고서 작성 - 언론 보도자료 준비 -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 대책강구
	주무관	이경덕	2643	- 반별 지원협조 등 - 인명피해 현황 파악

[행정 지원반]

소 속	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요임무
회계과	팀장	정명모	2177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수습 행정지원 - 사고수습상황 보고서 작성
	팀장	석봉철	5906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지역 물품지원
	주무관	이명선	2644	- 재난수습 행정지원
	주무관	조심순	5533	- 재난지역 물품지원
	주무관	황남숙	2791	- 재난지역 물품지원
	주무관	김수정	5540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주무관	오예님	5534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주무관	박경희	5535	- 소요병실 화보 및 의료진 협조
	주무관	한인수	2172	- 소요병실 화보 및 의료진 협조
	주무관	박은하	5907	- 병원별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파악
	주무관	김남희	5862	- 병원별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파악
	주무관	김하연	5908	- 합동 분향소 설치, 장례 지원 및 유가족 편의 제공
	주무관	장미영	5909	- 합동 분향소 설치, 장례 지원 및 유가족 편의 제공

[재난 수습반]

소 속	직급	성 명	전화번호	주요임무
회계과	팀장	최석락	2176	- 현장통합 지휘소 - 재난 피해상황 보고, 재난지역 상황 유지
	팀장	김용복	5020	- 현장통합 지휘소, 재난 수습복구 지원
	주무관	강승희	2469	- 인명피해 현황 파악
	주무관	문용균	2943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주무관	이현우	2731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주무관	유재훈	2323	- 피해주민 단체행동 동향 파악
	주무관	박준양	2620	- 합동 분향소 설치, 장례 지원 및 유가족 편의 제공
	주무관	김덕용	5485	- 합동 분향소 설치, 장례 지원 및 유가족 편의 제공
	주무관	강귀훈	2627	- 재난 수습복구 지원
	주무관	김영기	5536	- 재난 수습복구 지원

2. 지하상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지하상가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롯데백화점 (안양점)	시설관리팀 채병용 소장	031-463-2828
	안전실/방재실(24시간 근무)	031-463-2112, 031-463-2118
CGV빌딩	관리사무실 이성규 소장	031-463-5780
	보안실/방재실(24시간 근무)	031-463-5119, 031-463-5996
본프라자 빌딩	관리사무실 정찬기 소장	031-441-0680
안양역	역무실(24시간 근무)	031-448-7788
중앙지하상가	관리사무실 우용호 소장	031-445-5202
일번가 지하 쇼핑몰	관리사무실 최흥식 과장	031-463-9000
	보안실/방재실(24시간 근무)	031-463-9006, 031-463-9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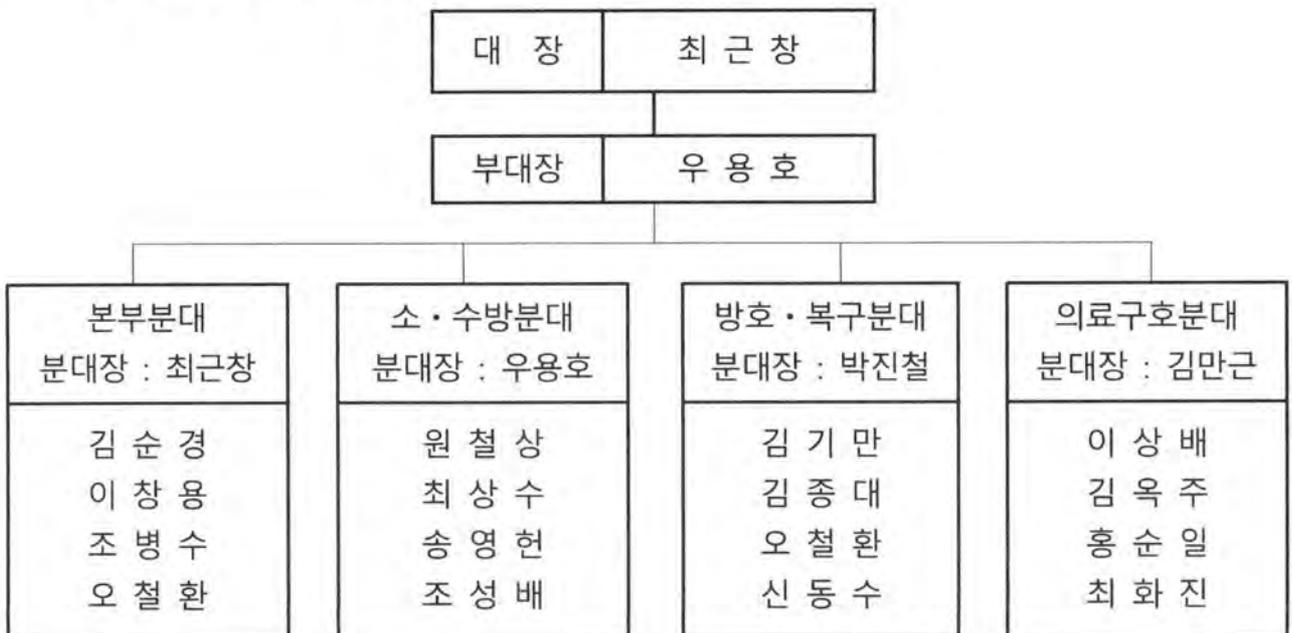
□ 유관기관

구 분	기 관 명	연 락 처
가스 사고	삼 천 리	031-429-3651
	한국가스안전공사	031-259-3500
수도 사고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031-8045-2489, 2443
전기 사고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한국전기안전공사	031-390-7400
화재 신고	안양소방서	국번없이 #119 031-470-0120
폭발 신고	안양만안경찰서	국번없이 #112 031-449-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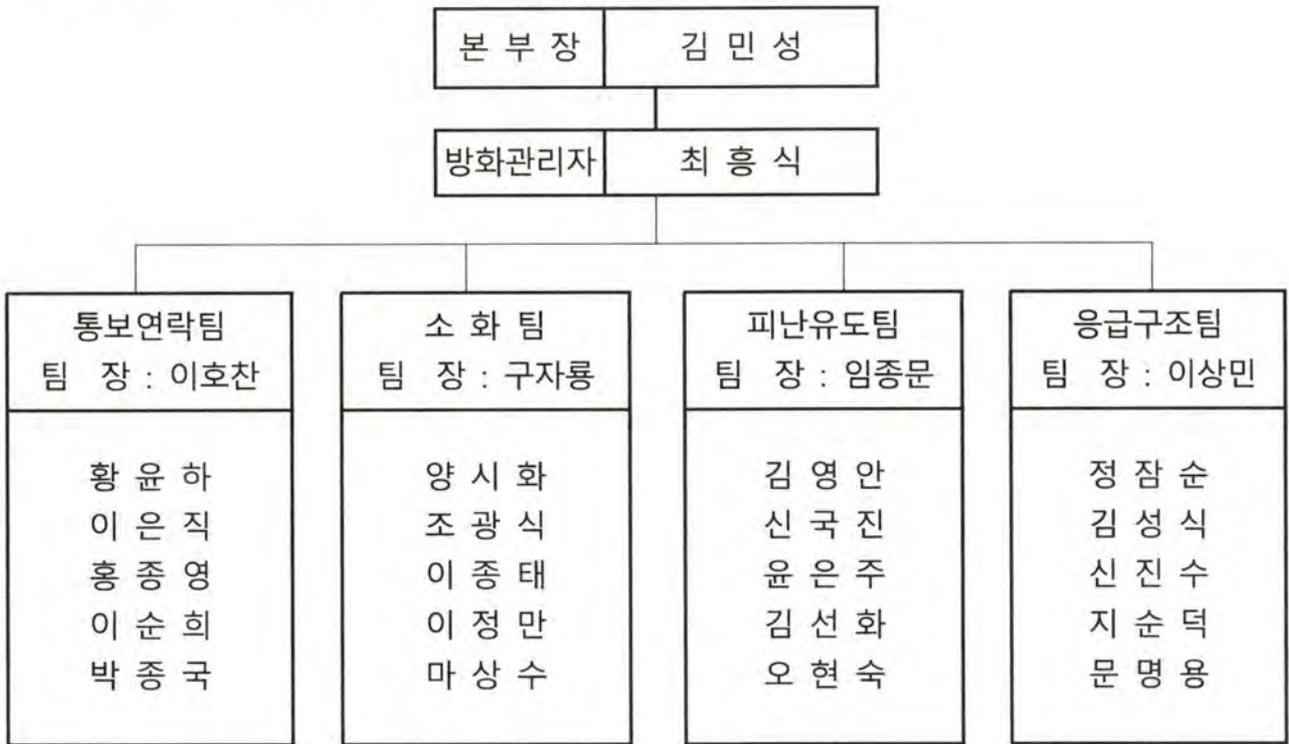
3. 자위소방대 구성 및 행동요령

본부분대	지휘 반	<input type="checkbox"/> 자위소방대 총괄지휘·운용 <input type="checkbox"/> 시, 유관기관 보고협조 체계 유지
	훈련 반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화재예방활동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소화기구(소화기, 옥내소화전)위치, 사용법 숙지 교육
	경고 반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인력관리 지원
소·수방분대	소화 반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소화기구(소화기, 옥내소화전)위치, 사용법 숙지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초기소화 실시(화재진압) <input type="checkbox"/> 119소방대원 보조 및 지원
	급수 반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소화기구(소화기, 옥내소화전)위치, 사용법 숙지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초기소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소화기기(소화 수 등) 지원 및 소방대원 보조 및 지원
복구분대	대피 및 반출 반	<input type="checkbox"/> 평상시 양방향 피난로 숙지 및 장애요소 제거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이용객 대피유도 (노약자 및 장애인의 피난보조 포함)
	경계 반	<input type="checkbox"/> 이용객 진입통제 및 주변 정리
	방호조치 복구 반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복구 및 지원(전기, 기계, 건축 등)
의료구호분대	의료 반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조치
	방독 반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조치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화생방 지원
	후송 반	<input type="checkbox"/> 화재 시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조치 <input type="checkbox"/> 환자 후송(공단 차량 이용)

중앙지하도상가



□ 일반가 지하쇼핑몰



□ 방 송 문(안) : 별첨1

(매일 퇴근 10분전에 방송)

화 재 예 방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영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포 영업주께서는 매일 점포 퇴점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종 전열기구 등 불필요한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여 주시고, 또한 난로를 사용하시는 점주께서는 완전 소화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퇴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주님들의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영업전에 방송)

폭 발 예 방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식당가 및 상가 점주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당가 점주님들께서는 가스 및 조리대의 폭발예방을 위하여 가스의 상시 점검과 조리대의 기름찌꺼기 제거 및 식용유 사용시 자리 이석을 하지 마시고 조리하여 주시고, 상가 점주님들께서도 부탄가스 사용시 폭발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1. 목 적

상설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예방대책

가. 상설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상설 공연장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실시
 - ▶ 소방시설, 비상구 설치, 각종 안전장치 등
- 무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공연법 제12조)
 - ▶ 전문안전진단기관의 정기 안전진단 실시
 - ▶ 자체 수시검사 실시 : 자체검사계획 수립하여 매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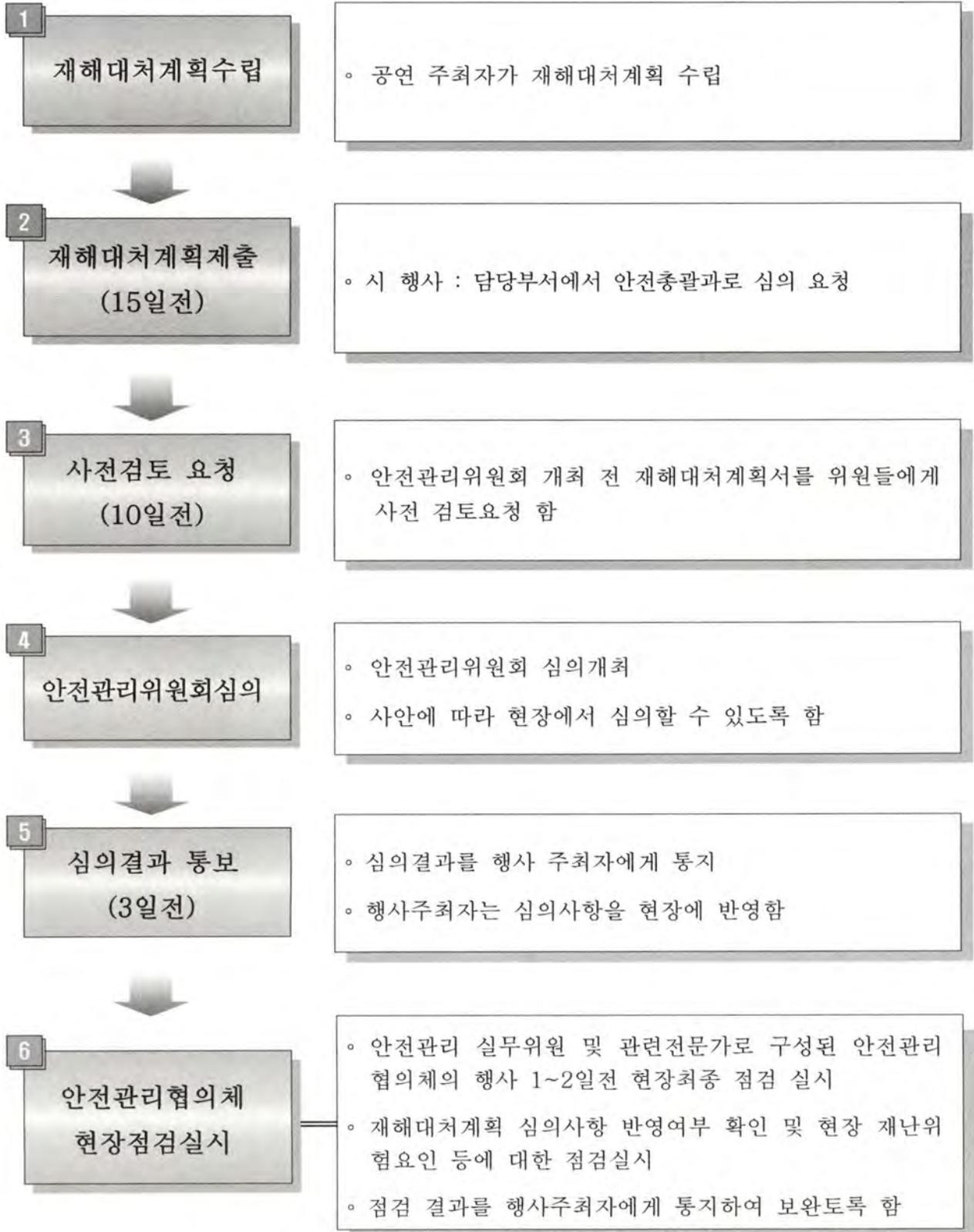
나. 상설 공연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실시

다. 영화상영관 비상대비 안전관리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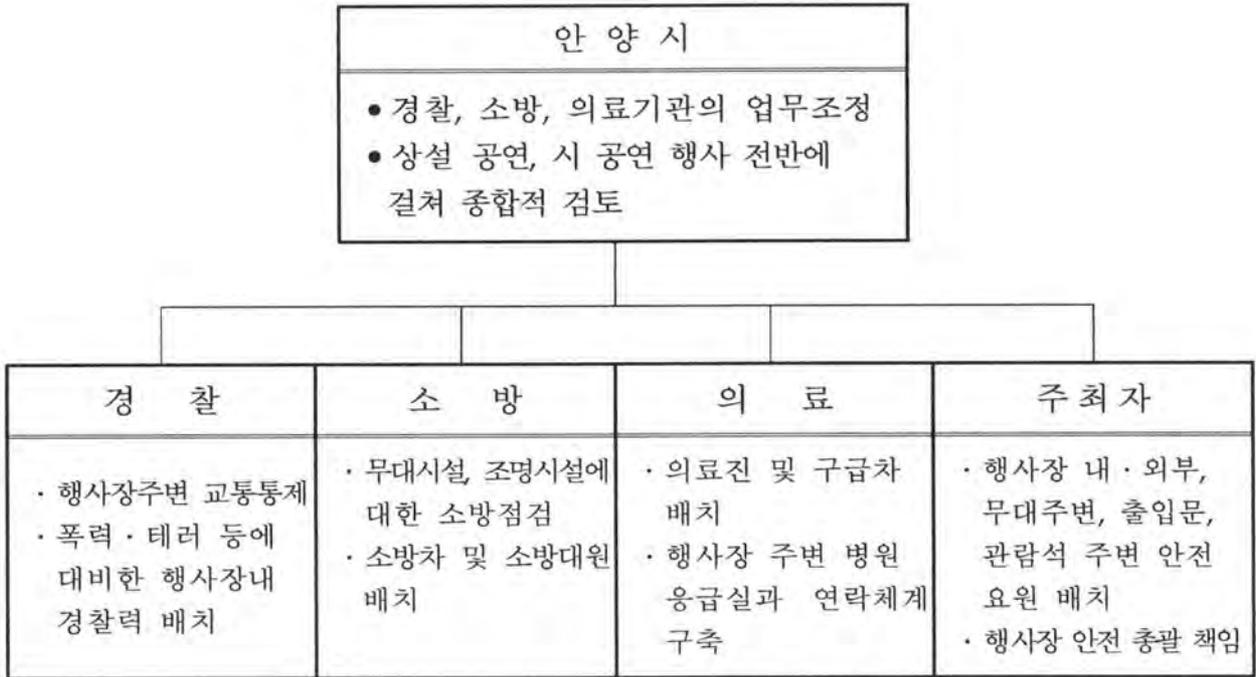
- 본 영화 상영 전 “비상시 대피요령 안내”를 담은 영화 상영
- 상영관 입구에 대피로, 비상구 등을 표시한 안내판 설치

[재해대처계획 심의 절차]



3. 대비대책

가. 유관기관별 협력체제 구축



나.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

- 사전 안전교육 실시
 - ▶ 교 육 자 : 공연 및 행사 주최자
 - ▶ 교육대상 : 안전관리요원, 관계자
 - ▶ 교육내용 : 개인별 임무 및 근무 수칙, 돌발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안전관리요령 매뉴얼 제작·배포

다. 보험 가입 유도

- 공공시설물 : 손해보험 가입
- 공연·행사 주최자 : 인적상해보험 가입(재해대처계획신고대상공연·행사시)

라. 공연·행사시 안전대책

- 행사 주최자 안전관리
 - ▶ 행사주최자에게 재해대처계획서를 행사 15일전 제출 안내함
 - ▶ 행사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여 행사담당부서에 제출

- ▶ 행사담당부서에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받은 즉시 재난부서 심의 요청
- ▶ 행사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 심의 결과를 행사 계획에 성실히 반영하고 결과를 재난관리과 및 행사주관부서에 통지함

○ 재난부서 안전관리

- ▶ 행사담당부서로부터 제출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결과를 행사담당부서 및 행사주최자에게 통지함
- ▶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담당부서 및 행사주최자에게 통지함

○ 재해대처계획 작성

- ▶ 공연의 원활한 운영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
- ▶ 공연기간 내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안양시 안전관리협의체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 공연 진행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
-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단계별, 유형별 대처방법 계획
- ▶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근무요령을 마련
- ▶ 공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임무, 기간, 인원, 행동요령 등 계획 수립
- ▶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 계획 및 safety line 설치계획을 수립
- ▶ 경찰서 및 교통과와 사전협의, 공연장 주변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마련
- ▶ 공연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
- ▶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
- ▶ 위생 및 응급환자 의료안전대책을 마련
- ▶ 행사주최자가 개별계약을 통해 용역을 줄 경우 개별 계약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마. 공연·행사시 단계별 안전관리요령

1단계(입장 1시간전~입장완료 10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표소, 출입문 주변에 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 사전 계획된 이동 통로로 관람객 이동 유도 및 행사장내 분산 출입 유도·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통하여 질서 유지 유도, 위험에 대한 경각심 유발·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2단계(입장완료 10분전~행사종료 20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별로 관람객을 구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관리가 수월토록 조치·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통로에 관람객 착석 금지 조치· 무대와 관람석의 거리 유지를 통해 행사장내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위험물 투척 행위 및 무대로의 진출 행위 차단



3단계(행사종료 20분전~해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로, 출입문 주변에 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 사전계획된 이동 통로로 관람객 이동 유도 및 분산 퇴장 유도· 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안내방송 실시·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교통 통제

4. 대응대책

가. 유관기관(경찰·소방서·병원)과의 협력 체계 하에 사고 수습

- 사전에 배치한 경찰·소방·안전관리요원의 즉각적인 파견으로 안전 사고 수습 조치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 비상 연락하여 지원요청
- 경찰의 협조를 받아 외부인의 사고 현장 접근 금지 조치

나. 인명 우선구조 실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여야 한다.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구급하여야 한다.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치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피난유도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한다.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시민들이 사고 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추가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 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등 주변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119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연관계자는 사고발생 즉시 공연진행을 중지하고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 2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발생 즉시 모든 공연진행을 중지하고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상황보고 및 전파

- 행사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즉시 구두(전화)보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한다.
- 신고자 → 종합상황실(공연장) → 119상황실(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 안전행정부 → 총리실·청와대

마. 안양시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설치장소, 근무반원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보고
- 현장에서는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한다.

바. 사고현장 통제선을 설치·운영한다.

사.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 구조·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블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등

5. 복구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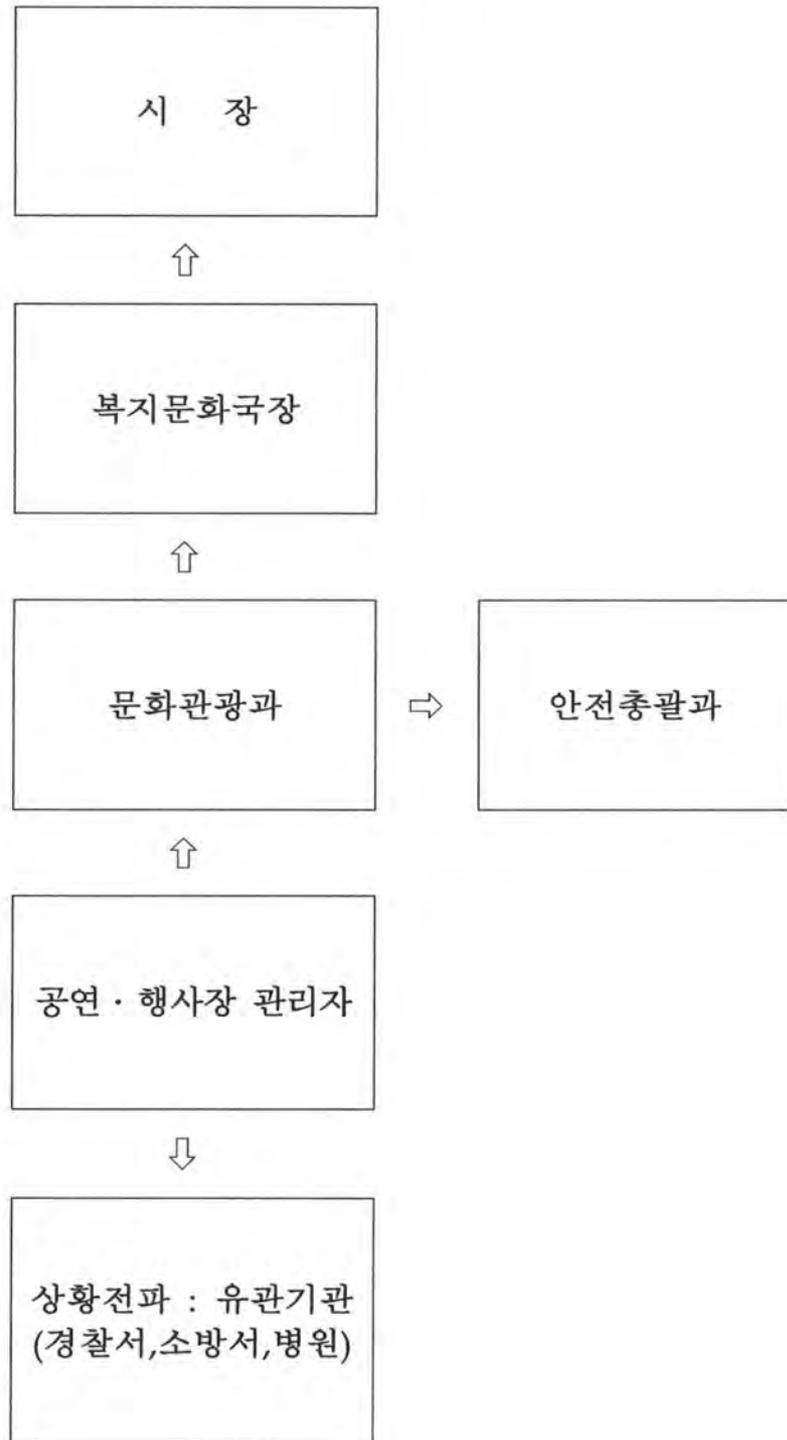
가.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합동조사단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 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피해자(대표)와 보상 협의(중재)
-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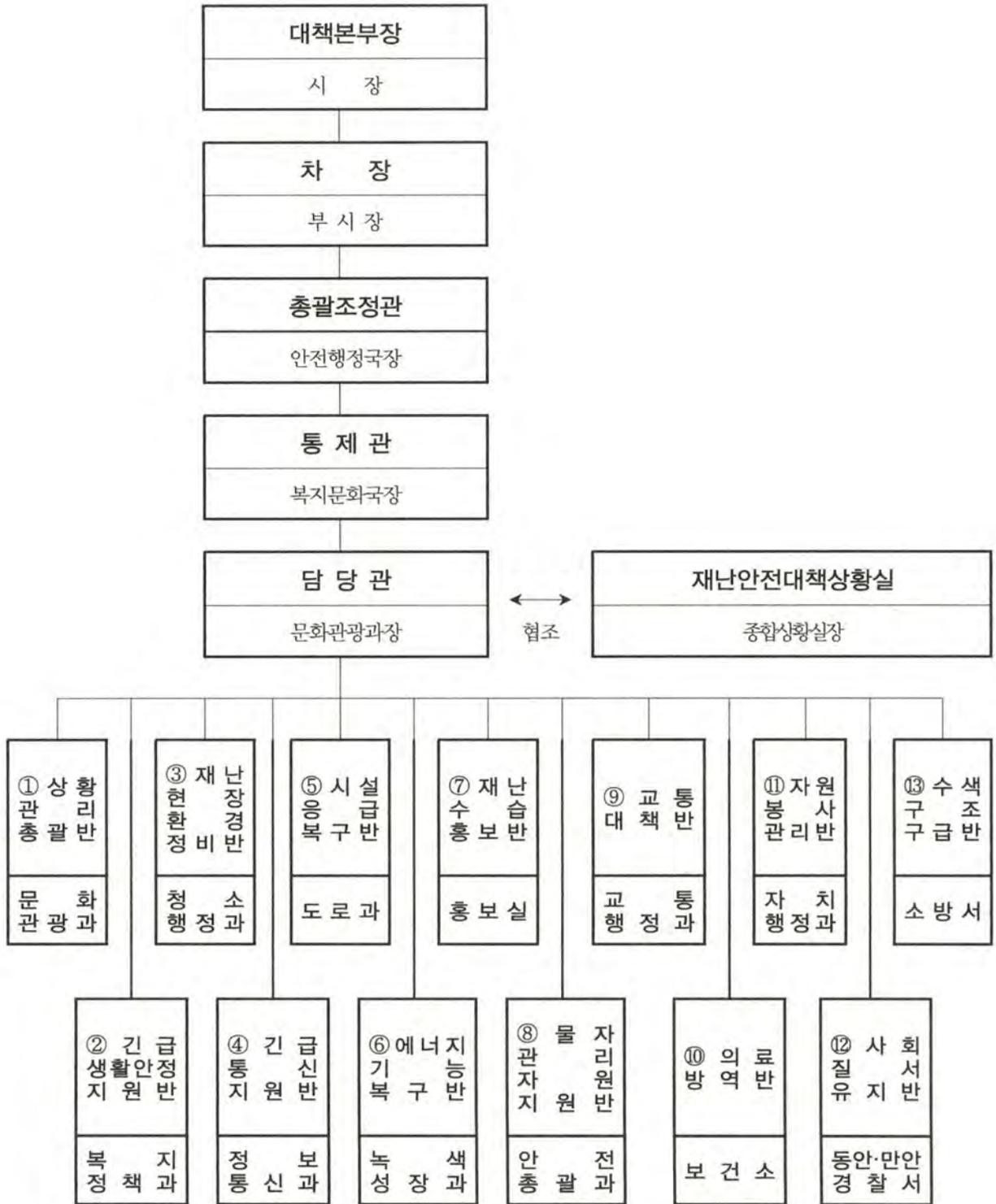
나. 피해시설 복구 및 위문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험금 청구, 국고 및 기금)
- 피해지역 및 피해복구참여자 위문 활동

6. 신속 · 정확한 응급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구축



7. 사고수습본부 운영



1. 목 적

- 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 및 행동요령 체계화
- 비상 복구 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누수사고의 사전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누수사고발생 피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
- 비상 급수 체계구축으로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2. 추진방침

- 재난관리의 체계적·능동적 추진을 위한 대처 방안
- 취약시설 사전정비 및 보수로 사고 미연 예방
- 긴급 복구 체제 및 급수대책 운영 확립(24시간 운영)

3. 세부 추진계획

가. 급수상황실 운영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연중)
 - ▶ 평일 : 18:00 ~ 22:00 (근무시간 이후 당직실 상황유지)
 - ▶ 휴일 : 09:00 ~ 18:00 (근무시간 이후 당직실 상황유지)
- 상황실장 : 수도시설과장
- 상 황 실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상황실
- 근 무 내 용
 - ▶ 수계별 송·배수 공급 상황관리
 - ▶ 무인 가압장 급수공급 수시감시
 - ▶ 급수불량 민원 원인 분석과 단계별 조치
 - ▶ 배·급수관 동파 및 결빙에 따른 조치
 - ▶ 긴급 누수복구

나. 비상급수장비 확보

- 급수차 - 10대 (안양시 2대, 인근시(의왕,과천,군포) 3대, 소방차 5대)
 - ※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가 비상급수차량 상호지원 협약체결
- 물탱크 - 13대 (1 ~ 2.5톤)

다. 긴급복구업체 지정 및 자재확보

- 복구업체 : 8개 업체 24시간 수시 대기
 - ▶ 급수민원처리 4개, 누수 응급복구 4개 업체
- 복구자재 확보 : 이음관 등 22종 / 374점(시 보유 관급자재)

4. 급수불량 및 누수시 단계별 복구 대책

가. 1단계 : 접수 및 상황유지

- 급수불량 및 누수접수 ----- 급수팀, 누수방지팀
(전화접수 일시,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각종 공사여부 확인)
 - ▶ 누수 시
 - 누수 시 단수지역 범위 파악 후 비상급수차 출동 대기
 - 누수 시 누수방지팀 2명 현장출동 상황 파악후 급수팀에 통보
 - ▶ 급수불량 시
 - 건축물대장 및 옥내급수관 노후여부 확인
 - 계량기내 이물질 제거 등 원인에 따라 조치
 - 수압체크 및 계량기 노후상태 점검
 - 계량기 및 급수관 노후상태 점검

나. 2단계 : 관로점검

- 인력투입 ----- 수도시설과 각 팀 지원(4명)
 - ▶ 관로 점검범위 확정 ----- 각 팀장
 - 인력 : 누수방지, 급수팀 현장 (수계 조정시 각팀 지원)
 - 차량 : 2대(1214, 8903)
 - 관로 개폐여부(도면표기) 및 배수지, 관로 수계 확인

다. 3단계 : 누수탐사

- 인력투입 ----- 각 팀 지원(4명)
 - ▶ 관로탐사범위 확정 ----- 각 팀장
 - 인력 : 누수방지팀 및 누수탐사 용역사 (수계 조정시 각팀 지원)
 - 차량 : 2대(1214, 8903)
 - 장비 : 누수탐사 장비 및 시약(비색기)
 - ▶ 노선별 관로탐사

라. 4단계 : 복구공사

- 업체투입 ----- 누수복구업체
 - ▶ 급수불량 관로교체공사 (시설팀, 급수팀)
 - ▶ 누수 복구공사 (누수방지팀)
- 단수 발생시 비상급수 실시 (급수팀 - 각팀 인력지원)

※ 복구 업체 및 자재 보유 업체 현황

업체명	사 무 실	연 락 처	비 고
정우기공	449-0906	별도관리	누수복구
이원건설	466-3351	별도관리	
오성건설	446-4411	별도관리	
성진건설	464-0614	별도관리	
정우기공	449-0906	별도관리	급수민원
예주건설	420-8833	별도관리	
세호개발	444-0530	별도관리	
대광건설	473-3910	별도관리	
협선공업	421-1123	별도관리	증압장
청원금속	385-7677	별도관리	자재업체
경기배관	479-2711	별도관리	
보성주철	448-3600	별도관리	

※ 급수차량 응급지원 비상연락망

명 칭	담당자	연락처	비고
과천시청	상수시설팀	02-2150-3720	상수도사업소
군포시청	급수팀	390-3230	수도사업소
의왕시청	상수팀	345-3611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양소방서	현장대응팀	470-0410	안양소방서 및 파출소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제34조의4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수립주체 : 시장
- 수립내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책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재정투자계획 등

2.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가. 재난관리 여건

- 하수처리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미처리 하수의 하천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 및 재해위험 요인이 상존
- 재난 및 재해는 그 시기와 대상이 예측하기 어려움

나. 전 망

-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태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철저한 대응태세 마련
- 노후 및 재래식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속 추진
-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내재 시설은 응급조치 및 특별관리하여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조치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복리증진 및 안전생활 도모
-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차단하여 안전관리 구축

-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나. 추진전략

-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 안전대책의 수립
-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 취약시설물은 우선 보수·보강실시
-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

4. 운영계획

가. 예방대책

□ 시설물 실태조사

- 기 간 : 2016. 5~6월, 9~10월(연 2회 실시)
 - ▶ 대 상 : 하수도 시설물 관리, 시설공사현장, 수질관리,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 시설물 정기점검 강화
 - ▶ 하수도 맨홀 안전조치
 - 맨홀 퇴적물 준설 및 하수관 파손상태점검 (취약지 중점점검)
 - 우수토실 및 배수불량지역 수시 확인 및 조치
 - ▶ 소방설비
 - 종합정밀점검 : 1회/년, 관리대행업체 시행
 - 소방서와 유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 ▶ 시설물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 수해대비 시설물 수시점검 실시
 - 비상 시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대책 수립
 -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편성 : 상하수도사업소,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소방서
 - 점검회수 : 매년 2회 이상

- 주요 점검사항
 - 수해 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 하수처리시설 수질 적정 관리
 - 전기안전 규정 적정 이행 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 하수도 맨홀 등 시설물 관리 실태
 - 배수불량 지역 및 관로 퇴적물 제거상태 등
- 시특법 대상시설관리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 ▶ 행정지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장 안전사고 예방 독려
 -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등 실시

나. 대비대책

□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

○ 구성 (표 1참조)

- ▶ 평상시 하수도 시설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 운영
-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통제관(상하수도 사업소장), 현장지휘소 및 6개반으로 편성

○ 운영

-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방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 결정 시행
-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 반별임무

- ▶ 상황총괄반
 - 상황관리, 보고체계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 ▶ 행정지원반
 - 직원비상소집,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 업무

- ▶ 수습반
 - 하수도시설물사고 발생상황 파악, 사태별 대책 지시, 각종 상황 기록유지
- ▶ 복구인력·장비·차량 지원, 응급조치 지원
- ▶ 공보지원반
- ▶ 유·무선 통신망 유지, 각종 보고 및 홍보의 통신망 지원, 사고 상황에 따라 수습대책 홍보
- 상황유지
 - ▶ 재난사고에 대한 상황파악·보고 및 관련실국 전파
 - ▶ 관련 부처간 사건·사고에 관한 비상연락 체계 유지
 - ▶ 필요시 관련기관에 응급조치 및 복구지원 요청
 - ▶ 재난수습방안 모색 및 조치
-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 ▶ 인명사고가 발생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어 119 등 긴급구조 기관 협조요청
 - ▶ 재난현장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재난발생에 대비한 상시 응급 복구 및 수방장비 비축

□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 인력·물자·장비 등을 파악하여 지속관리
- 인근 공사장 장비, 인력, 자재를 최대한 조기 지원
- 유관기관, 단체, 관련회사 등과 협조체제 유지

다. 대응대책

□ 사고의 접수·보고 및 전파

-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 비상소집 및 수습대책반 구성
- 사고내용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해당지역에 전파
- 관련 실·국은 초동태세 발동 및 지원방안 강구
- 지방 및 중앙 재난관련기관과의 재난정보교류, 전파체제 확립

□ 사고수습 및 대응

- 재난사고와 관련 인근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협조사항 지원 요청
- 구조기관에 사상자 구조 등 지원 요청
- 재난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활동방침 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우선 복구
- 피해조사 완료후 항구적인 복구대책 추진

라. 복구대책

□ 재난피해 보상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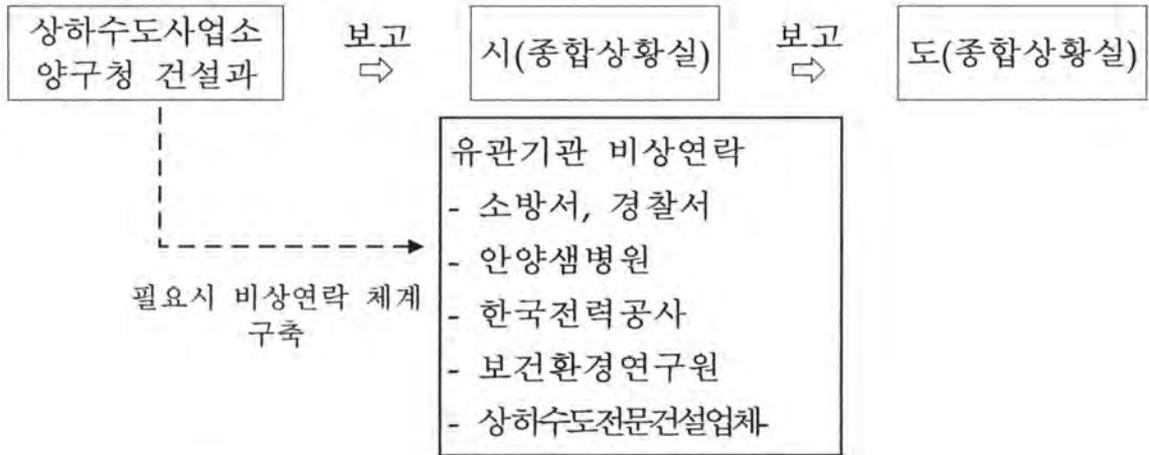
- 사고원인규명에 따라 피해보상 추진
- 피해자 대표자와 협의하여 보상금 지급 등 추진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복구체계
 - ▶ 재난 피해내용 조사
 - ▶ 재난 수습대책 마련
 - ▶ 전문기술자 투입하여 복구계획 수립
 - ▶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소요 예산지원
- 사고원인 규명
 - ▶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인규명
 - ▶ 필요시 전문가와 관련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 정밀조사 분석
- 재발방지대책 수립
 - ▶ 사고원인 규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 관리 체계 및 현장의 세부사항을 분석, 문제점 개선
 - ▶ 사고원인을 전파하여 타 시설에 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제 점검하여 문제시설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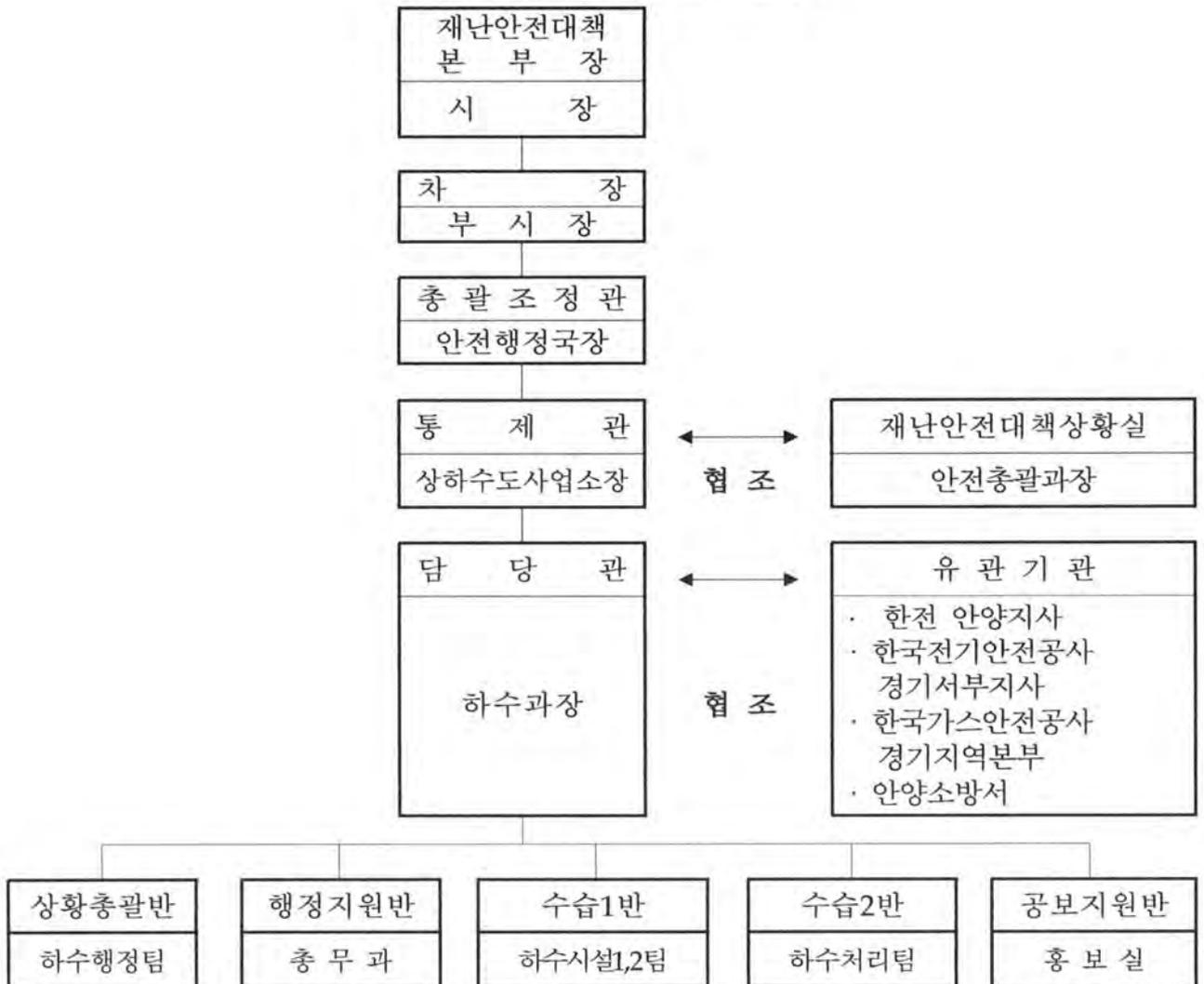
5. 추진체계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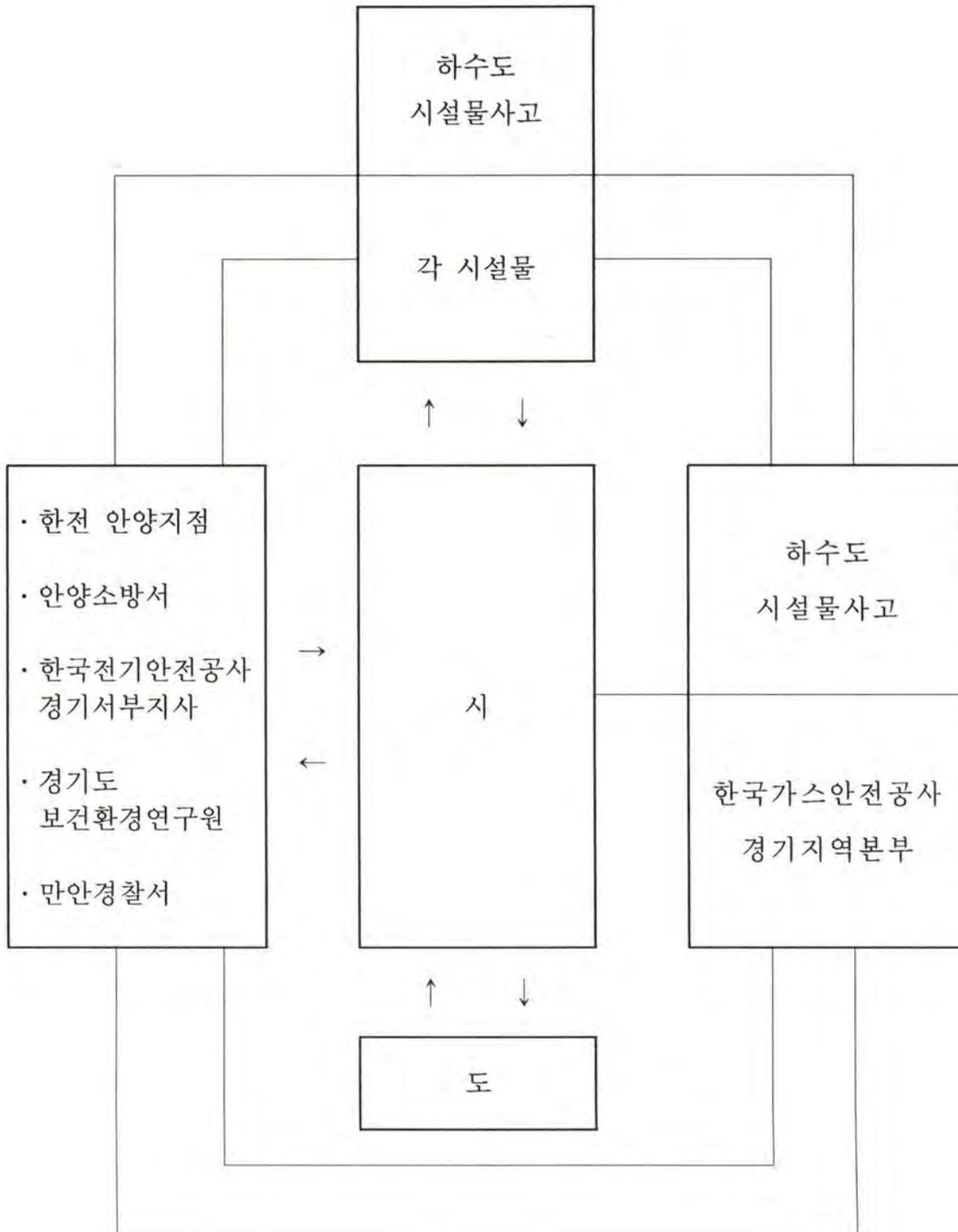


□ 하수도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

<하수도 사고 수습대책본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1.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가. 피해현황

1) 재산

구분	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태풍	0	-	-	-	-	-	-	-	-	-	-
호우	0	-	-	-	-	-	-	-	-	-	-
대설	0	-	-	-	-	-	-	-	-	-	-
강풍	0	-	-	-	-	-	-	-	-	-	-
풍랑	0	-	-	-	-	-	-	-	-	-	-

2) 인명

(단위: 억 원, 명)

구분	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사망	0	-	-	-	-	-	-	-	-	-	-
실종	0	-	-	-	-	-	-	-	-	-	-
부상	0	-	-	-	-	-	-	-	-	-	-

주) 피해액은 2014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 ▶ 최근 10년간('05~'14) 인명·재산 피해사항 없었으나, 점용시설물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침수 사고 발생.

* 공사 중) 공동구 물막이 시설 미설치로 인한 침수(배수복구)
고압선로 22.9KV 접속부 불량으로 인한 폭발(한전복구)

나. 원인분석

- 1) 점용기관 시설물 공사 시 안전조치(감독) 미흡으로 집중호우시 공동구로 우수 유입으로 공동구 침수 발생
- 2) 점용기관 한전 고압선로 노후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

다. 목 표

- ▶ 재난에 대한 피해 Zero 추진
- 시설물 사고 피해 Zero 추진

구 분	'14년 피해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0	0	동 일
재산피해(억원)	0	0	동 일

라. 개선방안(여건과 전망)

- 1) 점용기관 시설물 공사시 안전조치(감독) 체계 강화
- 2) 공동구 관리인원 증원
 - ▶ 공동구 10km규모에 비하여 관리인원 절대적 부족(국토부 7명, 현재 3명)

마. 재난·안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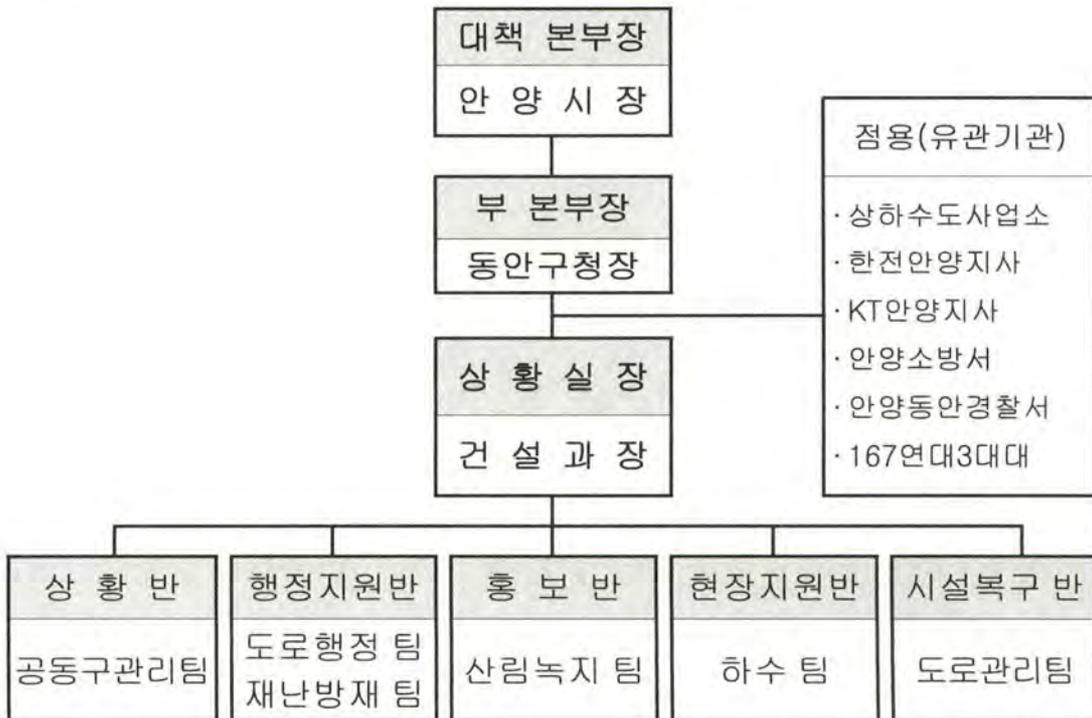
1) 재난·안전 활동계획(기관별 역할과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지원 · 공동구시설 방호 및 장비 조치 · 테러분자 수색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및 주민 긴급대피 지원 · 교통통제 등 현장 질서유지 · 사망자 신원파악 등
점용기관 (상수·한전·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 현장지휘본부에 관련시설물 정보제공 · 우회·대체 공급시설 가동 및 응급복구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현장 신속한 출동 및 진압 · 연기유입 위험지역 대피조치 · 인명구조 활동 및 사상자 이송조치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체계가동 - 핫라인 운영 (출동여부 확인 등) · 종합상황 파악 및 관련부서 보고, 통보 · 분야별 (상수도·전기·통신) 합동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사고수습, 조사 등에 따른 대외기관 협조 업무 · 2차 피해 유발 방지를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 공동구관리협의회 :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 관리 중요사항 협의

2) 재난·안전 관리체계

▶ 구성



▶ 운영

- 사고발생 시 규모와 피해예상 정도에 따라 수습대책 수립
- 사고전과 및 수습과정에 발생하는 제반사항 각 반별 책임수행

바. 재난·안전 관리대책

1) 재난·안전 관리대책

▶ 개 요

- 신속한 정보체제 유지로 신속히 대처하여 시설보호 및 도시기능 유지
- 철저한 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재난사고 예방

2) 주요내용

- ▶ 공동구 : 상수구(누수, 파열), 전력구·통신구(전선 케이블화재) 대비
- ▶ 기 타 : 불순분자 등에 의한 테러대비
- ▶ 공 통 : 구조물 손괴 및 부대설비(전기, 통신) 등 화재 대비

3) 추진일정(공동구 관련)

- ▶ 정밀안전진단(5년/1회), 정밀점검(2년/1회), 정기점검(년/2회) 실시
- ▶ 일일점검, 취약시기 안전점검, 구조물·시설물 보수(연중) 실시
- ▶ 전기설비 : 안전점검(월/1회), 정기검사(3년/1회) 실시
- ▶ 소방설비 : 안전점검(월/1회), 작동기능(년/1회), 종합정밀(년/1회) 실시
- ▶ 방호진단·훈련 - 군·경 훈련 및 읍지훈련 시(수시) 실시

4)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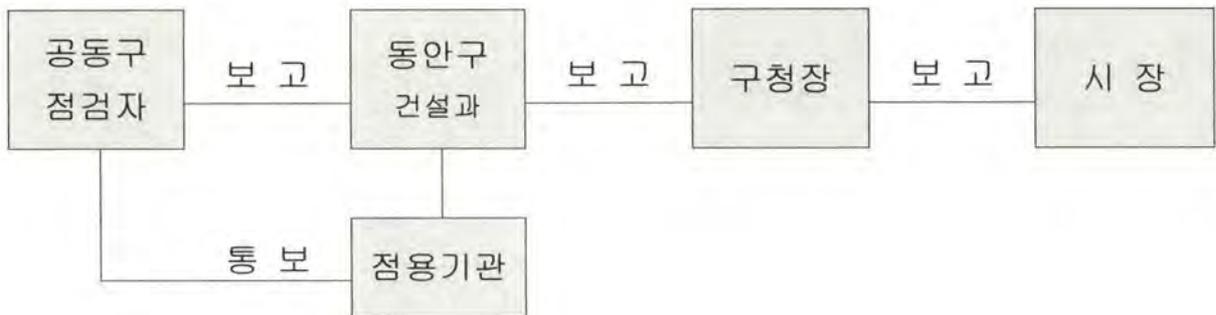
- ▶ 관리사무소 직원 상시근무 및 일상 점검·현장 확인(수시) 실시
- ▶ 점용기관(한전, KT, 상하수도사업) 자체시설물 점검(년/2회) 실시
- ▶ 출입·방호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Hot-Line, 경제협정서) 구축
 - 안양소방서 : 비상발생 시 신속출동
 - 동안경찰서 : 일일 순찰점검
 - 군 부 대 : 방호진단 실시
- ▶ 이상발견 시 ⇒ 점용기관(즉·보), 비상복구 반· 비상연락체계(확립)

5) 복구대책

- ▶ 공동구관리사무소(상황실) 설치 ⇒ 사고 시 복구대책본부로 전환(편성)
- ▶ 복구대책반별 임무

상 황 반	행정지원반	홍 보 반	현장지원반	시설복구 반
공동구관리팀	도로행정 팀 재난방재 팀	산림녹지 팀	하수 팀	도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팀장 ◦ 반장: 직원 ◦ 임무 ▶ 종합상황관리 ▶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팀장(도로) ◦ 반원: 직원(재난) ◦ 임무 ▶ 행정/재정 지원 ▶ 비상사황 관리/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팀장 ◦ 반장: 직원 ◦ 임무 ▶ 보도자료 작성 ▶ 주민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팀장 ◦ 반장: 직원 ◦ 임무 ▶ 물자 동원/지원 ▶ 소요장비 등 수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팀장 ◦ 반장: 직원 ◦ 임무 ▶ 복구장비/기술인력 지원 ▶ 상황별 대책수립

▶ 보고체계



1. 목 적

- 도로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사전 구축

2. 주요내용

가. 예방대책

1)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에 맞추어 도로 관리 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기구표 및 근무인원 등 계획수립

2)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규모와 특성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1 종	2 종
교 량	· 500m이상, 특수교	· 100m이상
터 널	· 1,000m이상	· 국도급이상 도로의 터널 등
절토사면		·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옹 벽		· 연장 100m이상 (지면노출 5m이상)

※ 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 재난대처 교육 : 재난대응체계,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예방대책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4) 재난대비 인력의 전문화

- 도로재난대비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인력의 전문화
- 도로재난대비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 억제 방안 강구
- 자체·유관기관 기술인력 일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화 유도

5)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 운영중인 도로의 사고 취약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진단 추진
 - ▶ 사고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개선사업 추진
 - ▶ 교통사고 위험노선 도로안전진단 실시
 - ▶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
-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터널 소방안전설비 보강
- 노후·위험교량 등 시설 개선 및 성능보강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위험도로개량 등

6) 안전문화 운동 추진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 대책 홍보
- 교통기초질서 준수 계도
 - ▶ 운행제한차량 불법운행 적극 단속(이동단속반 편성운영)
 - ▶ 갓길 불법 주·정차, 무단운행 등 적극 계도(고발)
 - ▶ 특별수송 대책기간 경찰과 합동단속
- 안전점검 및 재난의 날 행사 추진
 -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매년 5월 25일 재난의 날 행사실시

7) 상시 응급구조 및 구난체계구축

-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이 가능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 후송과 치료·보상체계 등을 구축(병원측과 사전협조)

- 인명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인명구조, 사상자후송, 임시 영현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 유사시에 대비토록 조치

나. 대비대책

1) 재난정보 관리체계 구축

- 사면붕괴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국도에 대하여는 절개면 상시계측 시스템 설치운영
 - ▶ 기타 도로에 대하여는 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 재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재난정보 통합관리
- 도로 종합재난체계 구축
 - ▶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 ▶ 도로시설물 현황(우회도로, IC, CCTV, 터널, 교량 등)
 - ▶ 차량사고지점 및 정체길이 등
 - ▶ 작업차, 순찰차 위치표시 등
 - ▶ 도로기상정보시스템 및 재난방송센터 구축
- 우회국도 ITS 확대 구축(지방도 등 기타도로도 도입 검토)
- 시설물 점검, 관리감독 강화 및 비상소집 연락체계 개선
 - ▶ 시설물 구역별 관리체계를 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정보 교환 및 지원체계 구축
 - ▶ 재난정보 통보,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의 상호 지원 방안
 - ▶ 긴급조치를 위한 상호 지원 등

2) 자원동원계획 수립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우선 자체인력·장비투입, 인근 군부대 등과 상호 지원체계 구축

3) 재난 대응훈련 실시

- 연1회 이상 재난대비 실제훈련 또는 도상훈련 실시
- 재난 유형별 대응대책을 익힐 수 있도록 훈련실시
- 재난대응별 유관기관 협력방안 논의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4)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 매뉴얼간 연계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증 및 평가
- 가상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작성
- 현장종사자에게 매뉴얼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다. 대응대책

1)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및 조치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2) 재난상황 보고내용 및 방법

- 재난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을 사전에 정해두고 긴급상황시 대처
- 보고내용
 - ▶ 재난의 개요
 - ▶ 주요 조치사항(시간대별)
 - ▶ 기타 지원 및 협조사항, 교통처리 상황 등
- 보고방법
 - ▶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 ▶ 보고의 종류 : 징후보고, 발생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양식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3)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확립

- 유관기관 협조 및 이송체계를 사전에 확립
 - ▶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발생시 협조요청 기관·112 경찰, 119 소방구조대 및 구급대
- 사고현장 질서유지 방안 사전계획 수립
 - ▶ 사고현장 자체인력 우선 동원
 - ▶ 공조협의기관(인근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 인력동원 긴급요청
- 사상자구조
 - ▶ 자체인력으로 우선 긴급구조 활동 전개
 -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구난기관 및 업체)에 구조인력 및 헬기, 구조차, 소방차 등 장비 긴급요청
 - ▶ 긴급구급기관에 사상자 구급 및 후송 요청

4)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방안

- 재난규모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시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5)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계획

- 부분(일부차로) 통제시
 -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 차량통제 안내간판 및 휨스, 전광등 등 차량 유도시설 설치
 -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전면 통제시에는 우회도로 지정 운영
 - ▶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 관할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 우회도로 시·종점에 안내간판 설치
 - <우회도로 지정내용, 복구 및 정상소통 예정일 등을 기재>
 - ▶ 지역방송에 우회도로 지정에 대한 보도요청

6) 홍보·보도대책 강구

○ 긴급구조 활동상황의 보도·안내 계획 수립

- ▶ 취재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 현장대변인의 지정 운영
- ▶ 사고관련 보도사항을 스크랩, 모니터하여 사실여부 확인
- ▶ 지역방송 활용 홍보

○ 주민 홍보대책 수립

-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 필요시 기관장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조사항 등 적극홍보
- ▶ 언론의 과대보도, 오보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라. 복구대책

1) 응급복구 계획수립

○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계획

- ▶ 재난 유형별 복구장비, 인원, 자재 소요과약 및 복구방법 결정
- ▶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계획
- ▶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등

2) 사고원인조사 계획

○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 구성 : 소관 도로관리청 및 외부전문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2종대상시설물 중 중대한 사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에서 조사 실시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대책 수립
- 증거 보존 자료의 수집
 -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증거물 보존 사고 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3) 피해배상(보상) 대책 수립

-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계획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 등
 - ▶ 책임소재 분석 :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필요시 구상권 행사
 - ▶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조기협상이 되도록 적극 중재 유도

4) 항구복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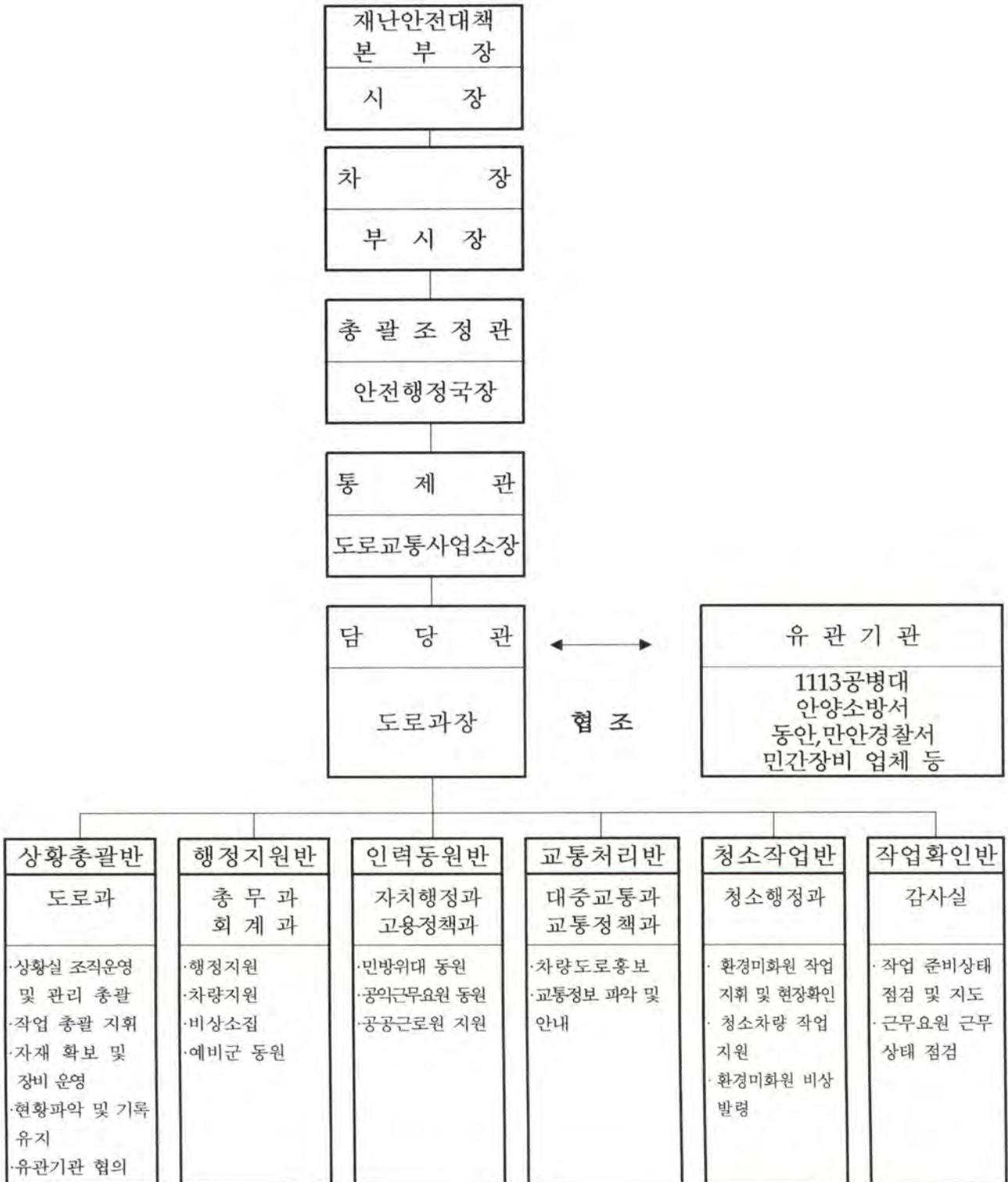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복구

5)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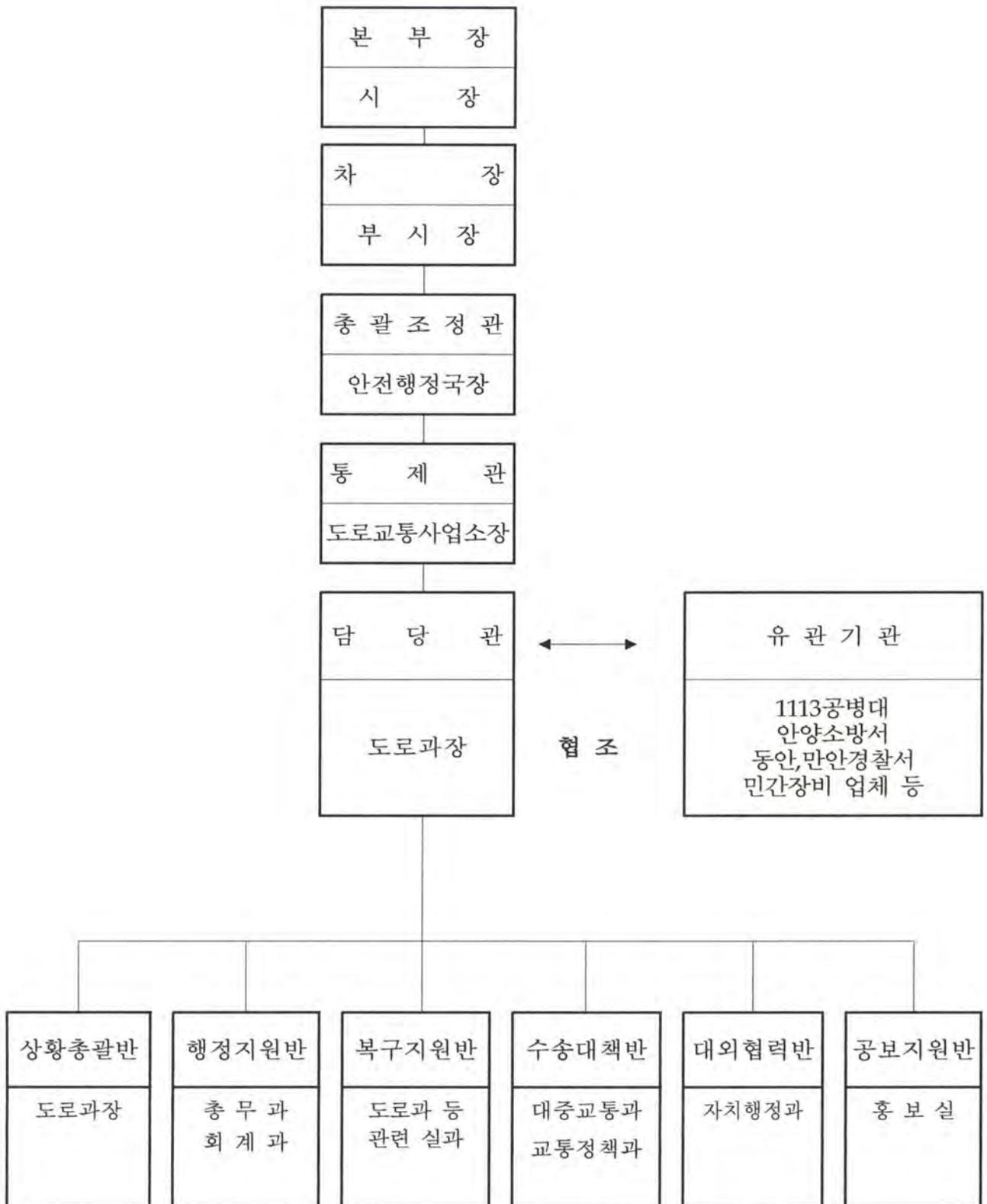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3. 추진체계

가. 도로재난관리 체계도



나.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1. 개요(목적)

- 철도 등 대규모 대중교통시설의 각종 재난상황(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대규모 정전 등)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대체 교통수단 연계·지원
 - ※ 안양시 경유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책임기관(주체)는 한국철도공사로서 별도의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운영중
-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각종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 파손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복구 등 위기대응 요령 및 조치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예방 및 대비대책

- 철도(고속·일반·광역철도 등) 분야
 - ▶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 기관사 교육 및 업무 적합성 주기적 평가(한국철도공사)
 - 철도역 내·외부 및 소방시설의 주기적 점검(한국철도공사·소방서)
 - 위기대응 매뉴얼 및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 재난상황 대비 책임기관과 지원기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한국철도공사↔경찰서·소방서·시)
 - ▶ 안양시(지원기관)
 - 재난상황 대비 책임기관(한국철도공사), 지원기관(경찰·소방서)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시 교통정책과)
 - 비상수송대책 관련 대체 교통수단 운영자(시내·마을·전세·화물·택시 등 여객 및 화물 운송업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시 대중교통과)

- 주요 철도역 재난상황 발생시 대체 교통수단 투입, 우회 등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시 대중교통과)
- 철도역 이용객 현황(2015년말 기준)

구분	1호선				4호선		
철도역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1일 평균 이용객	26,045	18,345	61,201	24,040	47,678	24,880	65,331

○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 분야

▶ 안양시(책임기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점의 각종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 검토·수립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발생원인 파악과 함께 개선대책 수립
-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2015년말 기준)

계(개소/개)	신호기 (교차로)	제어기	경보등	안전표지	횡단보도	기타시설
5,961/11,165	371/4,481	341/341	61/218	3,661/3,661	1,205/1,205	330/1,259

▶ 동안·만안경찰서(지원기관)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점검 및 모니터링
- 경찰서와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 및 합동 실태 점검

나. 철도(고속·일반·광역철도 등) 분야 대응대책

○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 ▶ 재난상황 발생시 철도교통관제센터·해당 역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보고하고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 경미한 철도사고는 한국철도공사 자체조사·처리

○ 안양시(지원기관)

▶ 위기 단계별 대응방향 기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

※ 위기경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령하며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경보단계 확인

구 분	판단 기준	운영사 대응	우리시 대응
관 심 (Blue)	- 철도사고 발생위험 인지	징후감시	해당없음
주 의 (Yellow)	-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거나, 5시간 이상 운행중단이 예상되는 사고	협조체제 가동	상황파악 및 보고
경 계 (Orange)	-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2시간 이상 운행중단이 예상되는 사고	대응태세 강화	상황판단 회의 개최
심 각 (Red)	- 열차 운행중 대형사고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규모 재난상황인 경우 - 철도사고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사고 - 기타 철도사고로 사회적 물의 예상	총력대응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

- ▶ 철도분야 재난상황 발생시 경찰서·소방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단계별 협조 및 지원대책 실시
- ▶ 심각단계(Red) 발령시 대체 교통수단 등 비상수송대책 실시
 - 철도 재난상황 발생지점(철도역, 선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내·마을·전세 등 버스운송업체 통보 및 노선우회
 - 경상자를 위한 통근·귀가 수요파악 후 철도 운행중단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시내·마을·전세버스, 화물차, 택시 등) 확보 및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실시
 - 대체 교통수단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환승이 가능한 주요 거점지역까지 반복운행 조치

다.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 분야 대응대책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시 적극 협의하고 교통통제 필요시 동안·만안경찰서(교통관리계)에 지원·협조체계 구축
-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우선 복구하되 사고원인자 파악 및 비용처리 등은 동안·만안경찰서(사고조사계)와 협력·조치
- 교통안전시설의 특성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파손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안양시에 소재한 지역업체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단가계약을 체결·관리

라. 복구대책

○ 철도(고속·일반·광역철도 등) 분야

▶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 신속한 피해조사단 편성 및 복구 추진(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조사단 편성·운영,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 재난피해 보상(배상) 대책 수립(철도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철도 현업직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열차사고로 인한 차량 지연에 따른 요금반환 신속 시행)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비축 복구자재로 긴급복구, 복구장비 부족시 인근지역의 민간업체에서 임대)

▶ 안양시(지원기관)

- 비상수송대책 마련 시달 및 해당업체의 비상수송대책 점검
- 비상수송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교통유관기관 협조
- 원활한 대체 운송대책, 긴급사태 저지활동대책 강구
- 비상수송대책의 홍보, 시민 협조사항 통보 등

○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 분야

- ▶ 시설물 파손신고 접수시 담당주무관은 유지관리 계약업체에 현장점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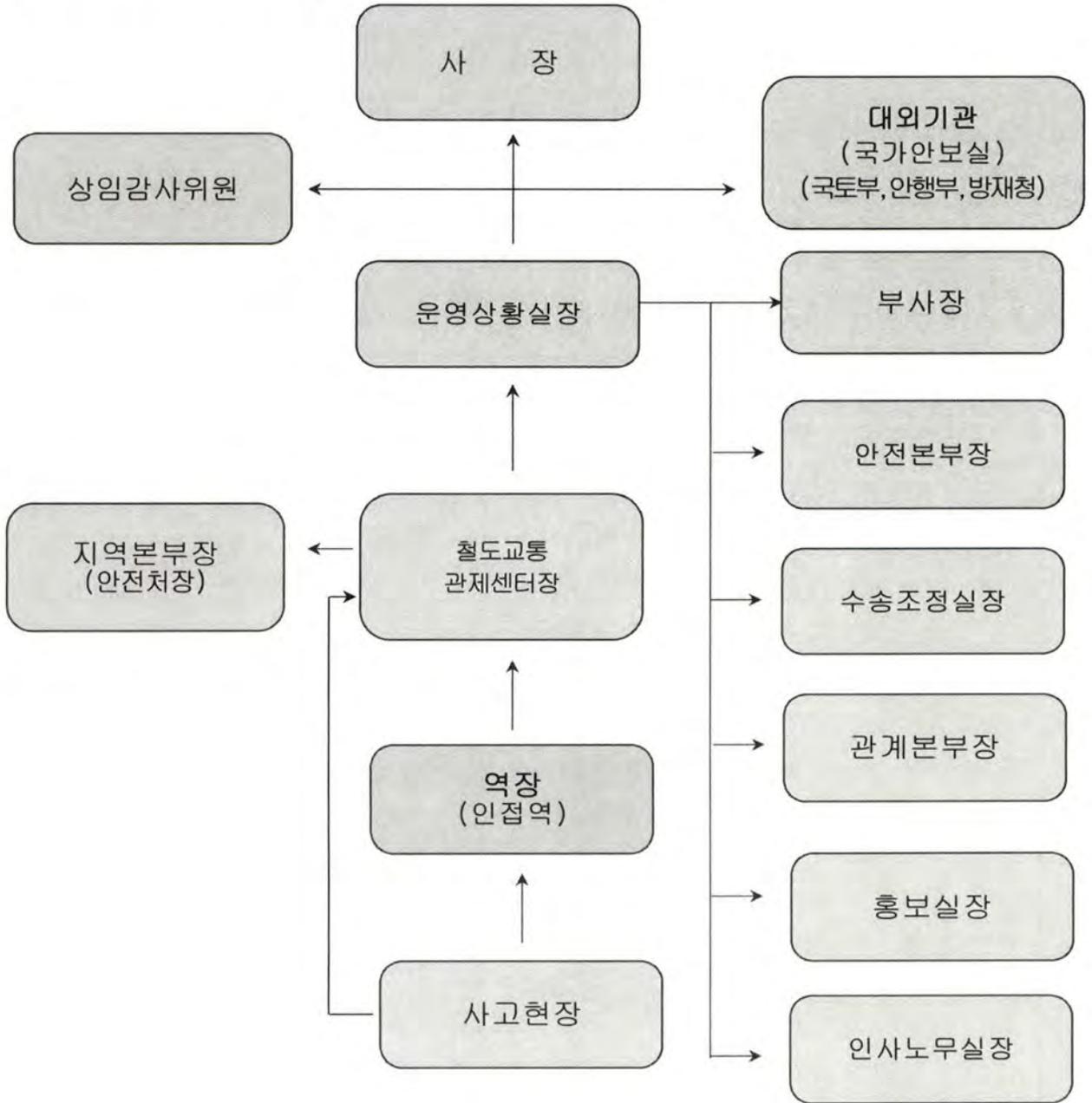
- ▶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경우 선조치 후 담당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
- ▶ 재난상황 등으로 동시다발적인 교통안전시설 파손시 동안·만안 경찰서 및 유지관리업체와 함께 순찰 및 현장조치 병행
 -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및 임시 안전 조치
 - 교통량에 따라 철거 작업으로 인한 2차 사고 우려시 경찰서 교통통제 지원요청 후 철거 실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교통대책반」 구성 및 역할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황총괄	- 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재난상황 및 피해규모 수집·관리 - 근무조 편성 및 운영 - 유관기관(경찰·소방서) 협조체계 등	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수송지원	- 단계별 대체 교통수단(시내, 마을, 전세, 화물, 택시 등) 투입·우회조치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실시 등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택시화물팀)
홍보지원	- 주변 교통상황 모니터링·보고 - 재난상황 홍보, 연계·환승 교통수단 및 우회도로 안내(BIS, VMS 등) 등	교통정책과 (U-통합운영팀) (통합정보관리팀)
통제지원	- 재난발생 대비 철도역 및 주변도로의 각종 교통안전시설 사전점검·관리 - 재난사고 발생지역 및 주변도로 교통유도·관리(경찰서 협조) 등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시설복구	- 재난상황 발생시 각종 교통안전시설(교통 신호기 등) 응급복구 등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3. 추진체계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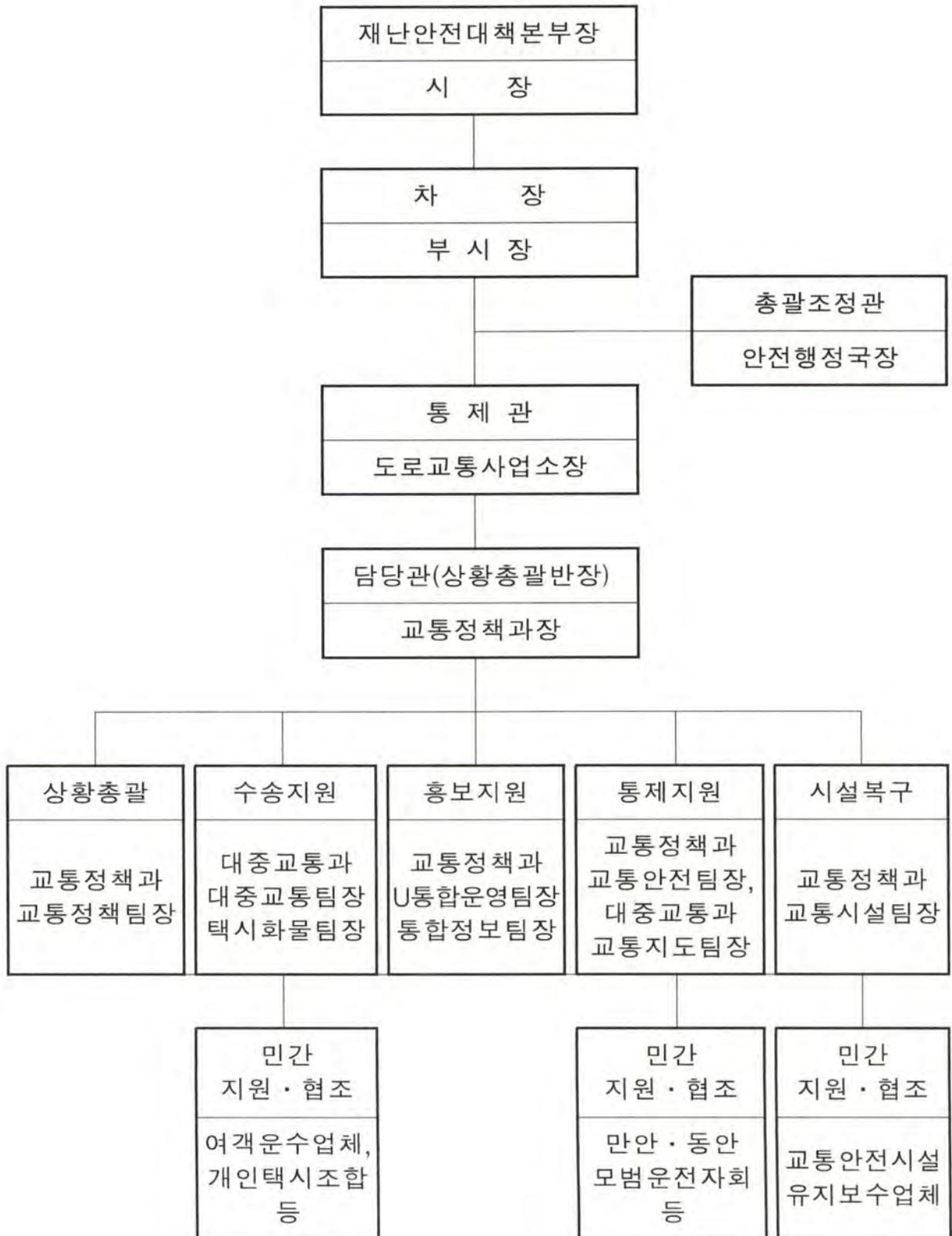
○ 한국철도공사 추진체계



- ▶ 급보책임자가 관제사에게 직접 급보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직접 급보 가능
- ▶ 근무시간외 지역본부장(안전처장)에 대한 통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지역본부 당직책임자에게 한다.

※ 대외기관 보고전담자 지정 : 정 - 운영상황실장,
부 - 선임관제사

○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교통대책반 추진체계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가. 예방단계

□ 전기

1)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 추진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점검추진(백화점, 유통시설, 역 등)
- 주 관 : 녹색성장과 (협조 : 전기안전공사)
- 점검내용
 - ▶ 법정 검사인 정기검사 이행여부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여부
 - ▶ 자체점검 실시 및 설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
 - ▶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등

2) 재난방지 관련 안전관리 홍보 추진 등

- 전기설비 안전관리 홍보 추진

□ 가스

1) 가스관련 시설 안전관리

- 가스 안전장치 보급
 - ▶ 사고빈도가 높은 LP가스시설에 대한 퓨즈콕 보급추진
 -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설치
 - ▶ 고무호스 LP가스시설 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 설치 홍보

2) 취약시기 ·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 우기 ·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 추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 점검 추진

3) 유관기관 합동 및 순회점검 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합동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4) 가스안전 문화운동 추진

- 가스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현장종사자 가스안전교육 실시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안전홍보 실시

□ 유류

1)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2회이상(1회/반기)
- 주 관 : 녹색성장과 (협조 : 안양소방서)
- 점검대상 : 관내 주유소 46개소
- 점검내용
 - ▶ 고정주유설비 주변의 전기시설의 설치
 - ▶ 고정주유설비 주변에 휴지등 가연성 경품의 적치행위
 - ▶ 석유등 제품 적치행위 등
 - ▶ 주유소내 가스시설 용기보관 상태 및 호스 연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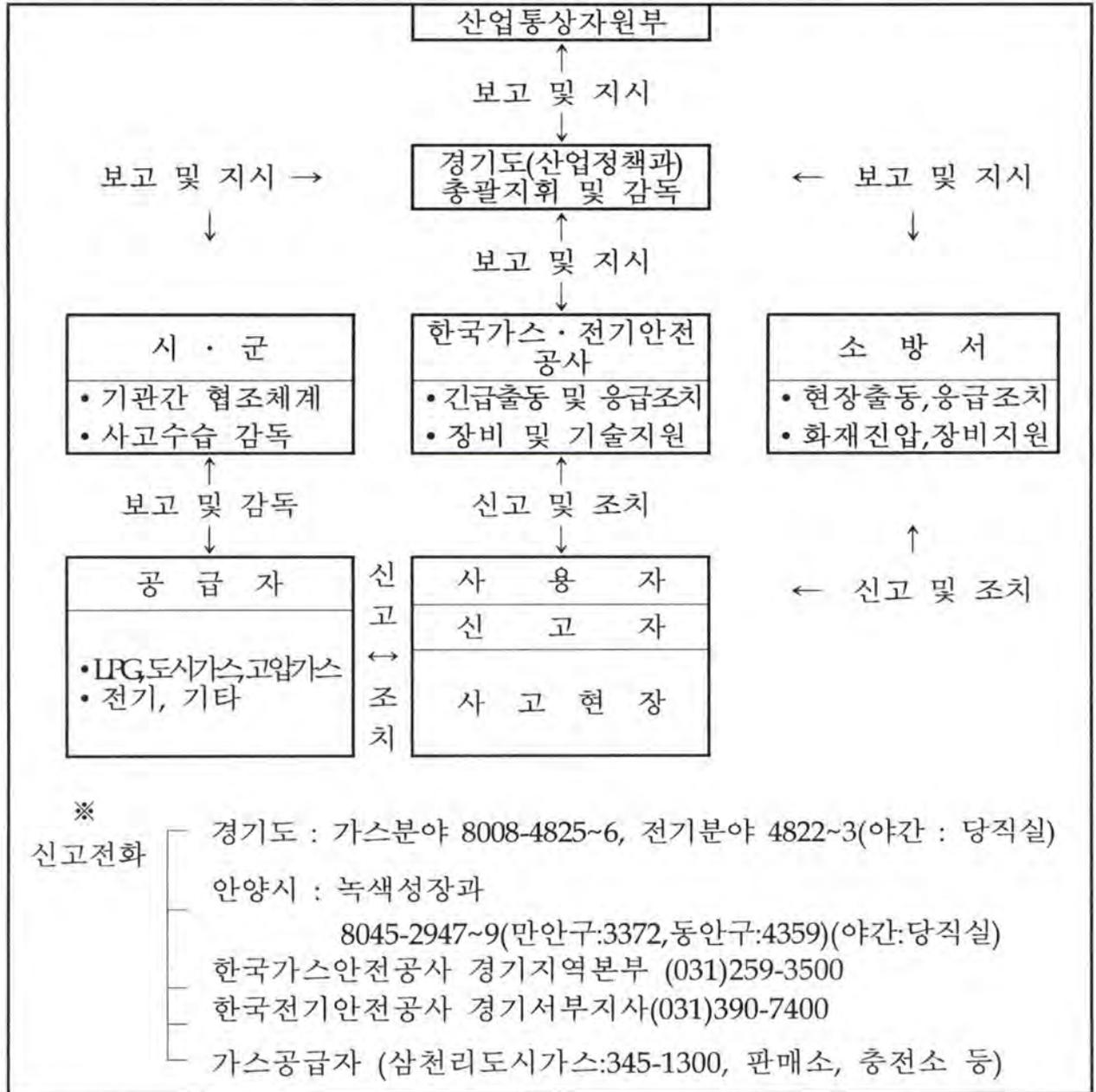
2) 재난방지관련 안전관리 홍보

- 안전관리 홍보 실시(년중 실시)

나. 대비단계

1) 재난대비 상황보고체계 구축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수습·복구를 위하여 24시간 보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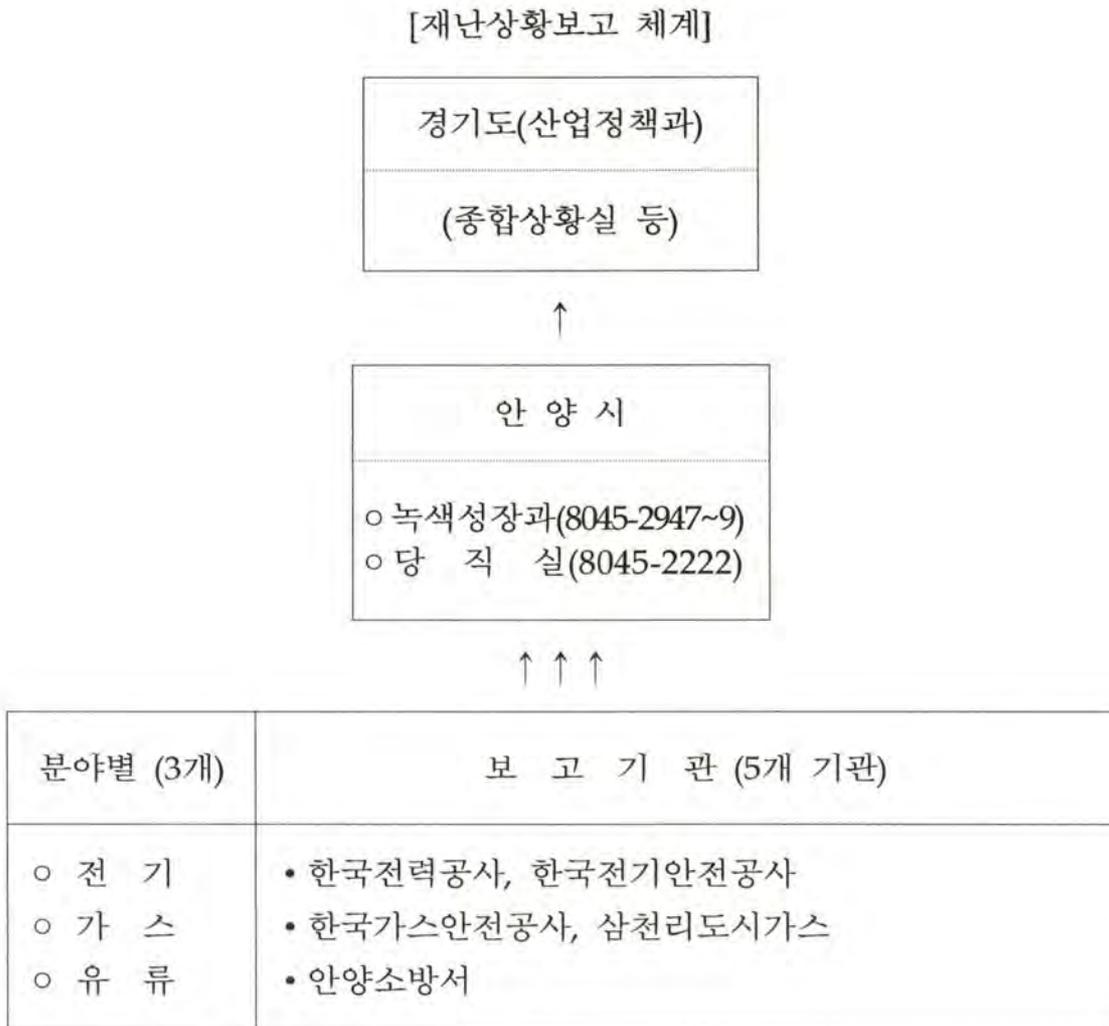
2)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

- 각종 재난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복구토록 하고,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유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발생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형재난에 대비

다) 대응단계

가.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 재난 상황과악 및 적기수습을 위한 상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협조·지원체계를 구축



○ 대규모 재난유형별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 재난관리기관과의 비상통신망 가동
- ▶ 비상상황 선포, 비상근무 지시 및 재난유형별 지침 시달
- ▶ 재난상황 실시간 보고 및 재난현장 신속출동 응급조치 시행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 지방 및 중앙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지원체제 구축

- ▶ 산업부, 산하기관, 지자체, 유관 중앙부처간에 비상통신망 가동
- ▶ 소규모 국지재난은 해당지역의 재난관리기관 사업소에서, 대규모 광역재난은 산업부와 재난관리기관 본사에서 초동대응
- ▶ 동원가능인원·장비·자재·구호물자·의료상황 등을 상호 정보공유 및 재난수습·복구 요청시 즉각 지원 협조

○ 지역별·재난유형별 지원체제 구축

- ▶ 재난관리책임기관 주축으로 재난성격에 따라 지원방안 설정
- ▶ 전기(단전 및 정전복구), 가스(누출·공급차단) 복구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즉시 출동태세 완비
- ▶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지원

다.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 구조반 조직·임무

- ▶ 소관 재난관리기관 상황실에 긴급 구조반 설치·운영
- ▶ 재난특성에 따라 상황에 대응하는 재난기관별 역할 분담된 재난조직을 구축, 긴급구조·구급임무 수행
- ▶ 임 무
 -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단계 긴급출동
 -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
 - 산하기관 구조반 지휘 및 중앙본부 보고·지원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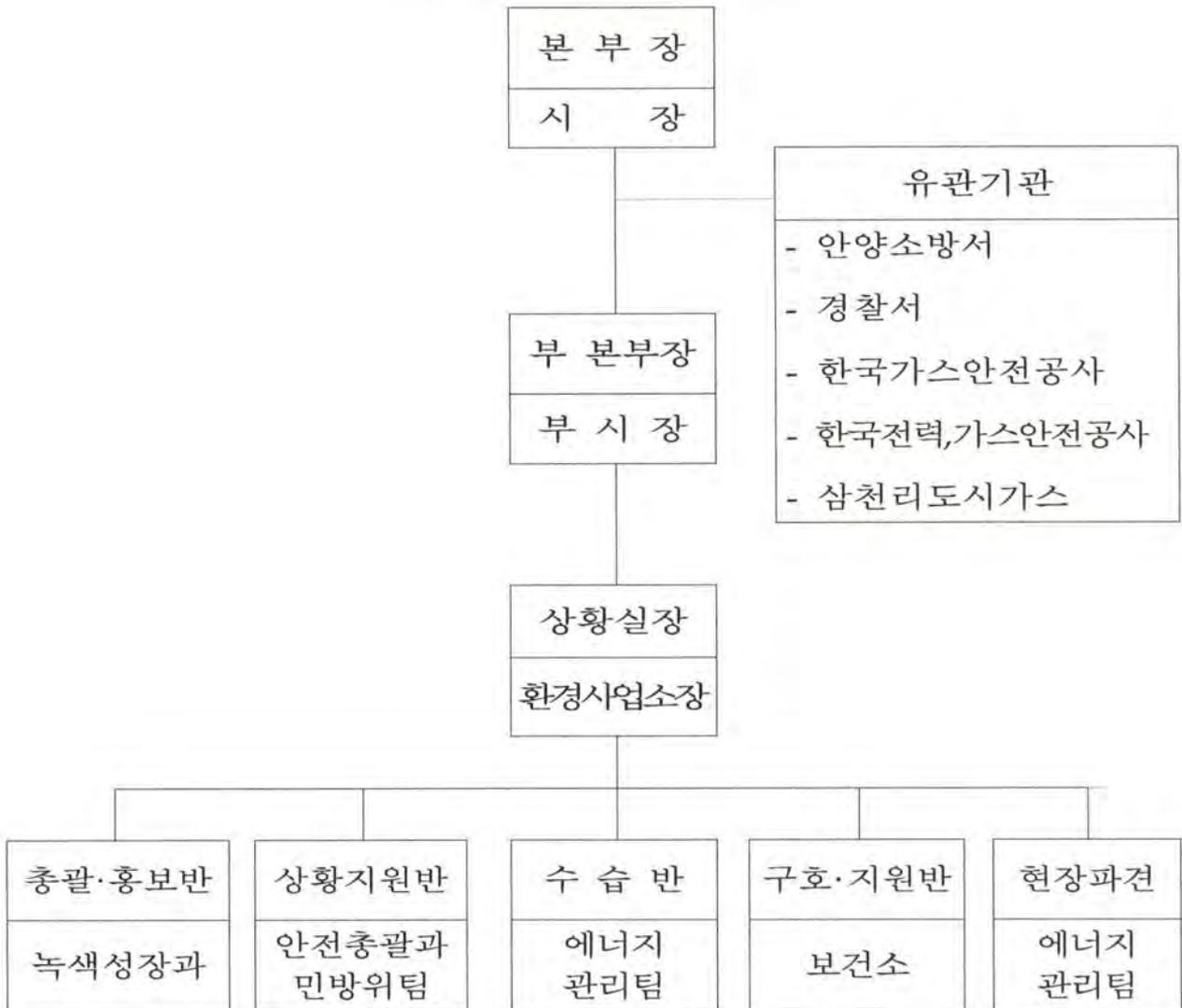
○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 긴급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라.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상황의 파악 및 조기수습·복구를 위하여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사고수습본부 구성]



○ 사고수습본부 운영요령

- ▶ 상황과악 단계 재난관리팀은 상황과악업무 수행, 해당과는 사고수습본부 설치여부 검토
- ▶ 초기수습 단계 반별 임무 수행
- ▶ 근무요령은 비상시 근무체제에 준함

○ 사고수습본부의 임무

- ▶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
-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 유사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 ▶ 기타 재난·재해예방 및 대형사고의 효율적 수습·복구지원

[사고수습본부의 반별 임무(가스·유류·전기사고의 경우)]

구 분	인 원 구 성		주 요 임 무
총괄·홍보반	반장	녹색성장과장	○ 관련 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 ○ 대외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반원	2명	
상황지원반	반장	민방위팀장	○ 사고상황 파악 및 대외전파 ○ 관련기관과의 협조
	반원	2명	
수 습 반	반장	에너지관리팀장	○ 사고원인 분석 및 보고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반원	2명	
구호·지원반	반장	보건소	○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습본부 운영지원
	반원	2명	

라) 복구단계

가.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소관분야의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수습본부에서 『재난합동조사반』의 업무를 지원함

- 조사반 편성『가스사고 합동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유류사고 합동조사반』 등

○ 합동조사반의 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우선순위 결정)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재난합동조사반 구성 및 임무]

구 분		구 성	주 요 임 무
재난합동조사반		- 녹색성장과장 (에너지관리팀장)	- 소관분야 업무총괄
분야별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전기담당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관분야 대응 및 복구 조치 수립·시행
	가스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가스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관분야 사고조사 및 보고
	유류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석유담당 - 안양소방서	-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 대책 관련사항

나.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수립

- 재난발생원인·피해상황·책임소재 조사
- 피해자 대표와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금 지급·정산

다.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단계
 - 긴급복구요원 비상소집 및 초동 조치반 현장 투입
 -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확보 및 지원
- 상황안정단계
 - 사고현장에 복구지원대책반 편성·운영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2차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순시, 각종 안전보호 조치 강화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용 계도·홍보
 -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 정상가동을 위한 신속한 후속지원 조치(유관기관 협의)
- 이재민 발생시 임시수용장소 설치 지원

라.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 재난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 평가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재난복구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미비점 보완

마. 복구작업 완료 - 상황종료

- 공급 확인(복구완료 선언)
- 관련 주민 등에 복구완료 홍보
- 복구상황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안내
- 관련기관 복구작업 완료보고 및 작업장 정리. 끝.

1. 목 적

- 주요 시설물 파괴와 더불어 중요 정보시스템의 사이버테러 감행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 시 행정업무망, 홈페이지망, 주민인터넷망의 사이버테러 및 중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
- 사이버공격 정보의 탐지·분석·대응으로 국가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기도과 연계한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

2. 관련법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014. 4. 1)
-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16호)

3. 원인분석

- 사이버공간이 정보교류의 매체로써 의존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해킹을 통한 홈페이지 위·변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산업기밀 유출 등 사이버 범 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사이버테러는 인터넷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파급성, 익명성, 동시성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정보시스템을 마비시켜 행정, 통신, 금융, 교통, 전력, 국방 분야 등에서 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4. 여건과 전망

- 지난 KBS 방송사 및 한수원 사이버테러와 같이 특정대상에게
대한 지능형(APT)공격 형태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 * 스마트폰(악성 앱 유포), 악성코드 유포,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IoT보
안취약점 등 다양한 공격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탐지된 위협정보의
분석 및 대응 조치중임

5. 개선방안

가. 제도개선

-
- ◇ 정보보호 관련 지침 개정
 - ◇ 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감사 실시
-

□ 주요내용

- 안양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양시 사이버안전 매뉴얼 개정
(2016년 하반기)
- 감사실 주관 시 자체감시시 정보보안 감사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정보보안감사 (만안구청)	5월
3/4분기	정보보안감사 (시설관리공단)	7월
	정보보안감사 (인재육성장학재단)	9월
	안양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사이버안전 매뉴얼 개정	하반기
4/4분기	정보보안감사 (청소년육성재단)	10월

나. 재정사업

- ◇ 신기술 및 노후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테러로부터 시의 중요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업내용

-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 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홈페이지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2 ~ 3월
2/4분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스템 및 접근기록시스템 도입	3 ~ 4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641	151	130	140	130	90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248	54	34	40	80	40	
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393	97	96	100	50	50	

다.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시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현장 지도점검 및 취약점 점검 등

□ 주요내용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집합 및 방문) 실시
- 시 및 산하기관을 방문을 통해 취약요소 중점 발굴 및 조치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자체 대응능력 향상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상시	시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내PC지킴이, Privacy-i, 월별 중점보안과제)	매월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시 및 산하기관)	연중
1/4분기	[교육] 개인정보처리 위·수탁자	1월
	[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1월
	[점검] 쓰기가능 휴대용저장매체 일제정비	1월
	[교육] 정보화사업 관련자(1차)	2월
	[교육] 부서 보안담당자	2월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태	2월
	[교육] 신규자 및 전입자	3월
	[점검] 위수탁 관리실태 및 접근권한	3월
2/4분기	[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4 ~ 5월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4월
	[교육] 정보화사업 관련자(2차)	4월
	[감사] 정보보안감사 (만안구청)	5월
	[점검] 정보보안 지도점검 (본청, 사업소)	5월 ~ 6월
3/4분기	[감사] 정보보안감사 (시설관리공단)	7월
	[교육] 부서 보안담당자	7월
	[점검] 정보보안 지도점검 (산하기관-감사대상 제외)	8월
	[교육] 정보화사업 관련자(3차)	9월
	[감사] 정보보안감사 (인재육성장학재단)	9월
	[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9 ~ 10월
4/4분기	[훈련] 사이버 모의해킹훈련	10월
	[감사] 정보보안감사 (청소년육성재단)	10월
	[점검] 경기도 보안감사 및 정보보안관리실태 수감	10월
	[점검] 정보보안 지도점검 (동안구, 동안동)	10월 ~ 11월
	[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11월

라. 사이버테러 대응 대책

1) 예방단계

□ 최신 사이버위협 동향 파악

-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등 사이버안전 전문기관 및 정보보호 업체의 홈페이지를 수시 방문하여 악성프로그램 출현 등 위협동향 파악

□ 업무용 PC 보안관리 강화

- 매월 “내PC지키미”를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비밀번호 변경, 윈도우 및 백신 업데이트, 공유 금지 등)
- 웹하드, 메신저 등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차단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신고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시 사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운영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상·하반기 및 점검시)

□ 네트워크 트래픽량 모니터링

- 라우터,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트래픽량이 급증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네트워크 트래픽량 모니터링을 통해 DDoS공격, 웹·바이러스 확산 등의 이상징후 발생여부 감시

□ 사이버 보안관제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 보안위협 정보의 탐지·분석·대응을 통한 상부기관과 공동대응 체계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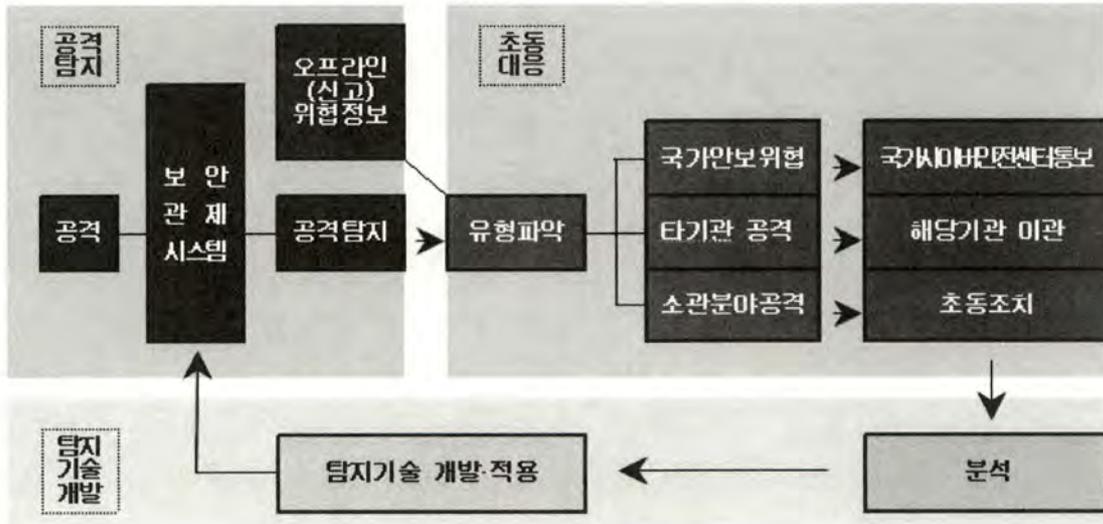
2) 대비단계

□ 긴급복구·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및 긴급대응반 체계 유지

구분	역할
긴급대응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응반 운영 총괄 • 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결과 종합 •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황 점검
보안관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이상징후 감시 및 피해상황 접수 • 국내·외 주요 보안 사이트 모니터링
사고대응 I 팀 (홈페이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파악 및 증거자료 보존 • 공격차단 및 피해예방 조치 • 피해발생시 백업시스템 가동 및 피해 복구
사고대응 II 팀 (행정업무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파악 및 증거자료 보존 • 공격차단 및 피해예방 조치 • 피해발생시 백업시스템 가동 및 피해 복구
사고대응 III 팀 (정보통신망, 인터넷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파악 및 증거자료 보존 • 공격차단 및 피해예방 조치 • 피해발생시 백업시스템 가동 및 피해 복구
대외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위기 관련정보 수신시 시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 • 경기도(031-8008-4114, 41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02-3279-3477), 국가 사이버안전센터(111), 범정부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등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3) 대응단계

□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



□ 대응 요령

-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IPS)을 이용한 불법 침입 차단 및 탐지
- 침입방지시스템에 의한 자동탐지, 방화벽 및 서버 등의 로그 분석을 통한 비인가자의 침입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대응체제 구축
-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변조 발견 시 신속히 응급 복구 조치
- 보안관제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인지한 경우 초동조치 후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행정자치부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국가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정보 통보 및 조치
- 상부기관으로 부터 통보되는 각종 사이버위협 분석정보 및 대응전략을 시 분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라) 복구단계

□ 사고조사 및 복구절차

1 단계

사고인지

- 보안관제 및 내·외부 관계자 신고 등으로 사고발생 인지
- 사이버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사고정보 접수



2 단계

초동대응 및 신고

- 피해시스템 네트워크 격리(차단)
- 공격차단 및 증거자료 백업
- “경기도 침해대응센터”, “행정자치부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국가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별지 제3호 서식 사고신고”)



3 단계

사고원인 조사

- 사고원인 분석 및 공격 근원지 파악
- 범죄 혐의여부 판단
- ※ 필요시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02-3480-2000,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www.ctrc.go.kr)와 연계조사



4 단계

피해복구

-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 등 백업자료를 이용한 복원
- 피해복구 및 운영 정상화



5 단계

후속조치

- 사고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 ※ 사고처리결과 보고서는 초동조치, 증거확보, 사고원인, 피해복구 등 사고대응 순과정을 수록
-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경기도 침해대응센터”, “행정자치부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국가 사이버안전센터”에 사고 조치결과 통보(“별지 제4호 서식 사고조치”)

1-1. 목 적

가. 긴급 통신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재난예방과 안양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시 정보통신분야 긴급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상기능을 회복함에 있다.

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통신재난대책총괄 (정보통신과장)
일반 : 8045-2225 FAX : 8045-2226	전화 : 8045-2080 FAX : 8045-6500
	통신재난대책반장 (통신운영팀장)
	일반 : 8045-2200

※팩스 8045-6500

상 황 반	행정통신 지 원 반	주민대피소 지 원 반	민간통신망 지 원 반
1명	3명	3명	2명

구 분	업 무
대책반장 (통신운영팀장)	· 상황과악 및 대응 업무 총괄
상 황 반 (1명)	· 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태세 가동 · 부내·외 상황전파 및 협력체제 유지 · 위기관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접수
행정통신망 지원반(3명)	· 위기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 · 위기관리관련 보고서 작성 및 사후조치
주민대피소 지원반(3명)	· 위기관리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배포 · 대외협력 및 공조체제 유지 등 대외홍보와 관련된 사항
민간통신망 지원반(2명)	·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피해의 복구·수습 ·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나.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위치)	역할	비고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450-2277 (호계2동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전력 제공 ▪ 통신망 우회루트 제공 	
KT안양지사	383-2600 (달안동 1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안양시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 임시거소 전화, 전용회선 가설 ▪ 유관기관 임시복구 협조 	
SK브로드밴드	344-8351/1600-0108 (평촌동 9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인터넷회선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LG U+	361-5812 (관양동 159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행정전화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티브로드 안양지사	1877-7000 (시민대로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TV회선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다. 긴급 복구업체 지정운영

구분	지정내용	업체명
광케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케이블 자재 ▪ 광케이블 부속자재(접속함체 등) ▪ 광케이블 설치, 접속, 개통 	CJ전기통신 대한전선 총판(수원) → 221-7114 뉴텔정보통신(관양동) → 420-4580
광전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 전송장비 ▪ 광 스위칭 장비 	뉴플러스정보통신(안양8동) → 444-0754
IP교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교환기, 전화기 등 	제이넷시스템즈 → 02-2294-0002
전자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서버, 프로그램 	솔루텍(서울) → 02-2169-0000
일반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 전화기 	맥슨(서울) → 02-2231-3607
방송영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 프로젝터 등 	세운씨엔텍 → 467-3024
컴퓨터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운영PC, 소프트웨어 	통합시스템유지보수(씨스케이트) → 426-8460 한길시스템(안양8동) → 441-9595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 락 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시청	주무관	이금숙	전화 : 031-8045-2338 FAX : 031-8045-6500	gumsukle@korea.kr	
KT	차장	조동곤	전화 : 031- FAX : 031-381-0235	donggon.cho@kt.com	
LG U+	부장	이상식	전화 : 031- FAX : 070-4009-6369	sang1357@lguplus.co.kr	
SK브로드밴드	매니저	고진수	전화 : 031- FAX : 02-6499-1499	ziant@sk.com	
티브로드안양 방송	사원	정재훈	전화 : 031-	jhjeong@tbroad.com	

1-4. 관련 대응업무

가. 초기대응

- 내부통신, 외부통신, 주민신고로 재난발생 인지
- 상황반 비상근무 발령과 구체적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 운영기간 :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 내부 행정문서를 통해 경과통보 및 추가피해 예방대책 시달

나. 전파, 보고

- 피해예상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취명하여 주민대비 발령
- 관내 주요통신사업자(KT, SK 등)에 통신망 피해발생 최소화 대비 통보
- 행정 및 민간통신분야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내역 보고

다. 대응조치

- 실무처리를 위한 통신지원반 업무분장 : 4개반 9명
- 통신망 복구용 자재확보 방안

①자체 비축자재	②통신사업자	③관내 협력업체	④제조사 문의
500m	KT 안양지사	안양시 사업참여 업체	대한전선 등

- 비상통신망 구축지원
 - 경기도청 ↔ 시청 간 영상회의시스템 상시가동 지원
 - 재난 통합지휘 무전기 5대 지원

- 직원용 휴대전화를 이용 임시 통신망 확보 지원
- 민방위 경보사이렌장비를 활용 안내방송 지원
- 관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피해대응 협의 구성

- 통신망 복구 우회루트 확보 및 임시전력 사용요청

기 관 명	담당자	연 락 처	이 메 일	비 고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김상훈	전화)031-450-2277 FAX)031-450-2279	paracool @kepcoco.kr	

-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체 상황반과 안양시 재난상황실 간 재난상황보고(통보) 채널 가동
- 방송통신시설의 피해/복구 파악 및 집계 현황 수시 보고
- 우선순위에 따른 신속한 복구 및 주요회선 긴급 우회소통 실시

라. 복구추진

- KT 임시 전용회선을 이용한 임시 행정통신망 복구추진
- 주민대피소 통신망 구축 : 일반전화 3회선 및 인터넷 50M이상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통신망 통신설비 임시 통합운용
- 피해상황별 통신망 복구(임시복구/가복구/본복구)

순 위	내 용
제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교환 및 일반전화 통신망 ▪ 자가통신망 및 광전송시스템 ▪ 경기도청 ↔ 안양시청 전용회선망
제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통신망 ▪ 팩스통신망
제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통신망 ▪ 영상회의시스템망

마. 완료상황 전파

- 재해상황실에 행정 및 민간통신분야 복구내용 통보
- 안양방송, 시 홈페이지를 이용 복구상황 홍보방송 실시

1-1. 감염병 피해 대책

가. 감염병 관리현황

1) 감염병 발생 현황(2013~2015)

(단위:명)

연도별	계	1군				2군						3군						4군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간염	유형성이하선염	백일해	홍역	수두	급성B형간염	산모B형간염	말라리아	프프가무시증	렙토스피라	발진열	신키우근총합열병	비브리오패혈증	매독	성홍열	덴기열	메르스	
2015년	합계	664	0	0	2	13	109	0	0	331	0	47	6	29	0	0	0	0	5	118	3	1
	만안	359	0	0	0	7	41	0	0	155	0	37	4	19	0	0	0	0	3	93	0	0
	동안	305	0	0	2	6	68	0	0	176	0	10	2	10	0	0	0	0	2	25	3	1
2014년	합계	760	0	2	0	19	141	1	6	387	3	21	5	50	0	2	1	1	6	108	7	
	만안	432	0	1	0	7	75	1	1	222	3	6	2	28	0	1	0	1	3	80	1	
	동안	328	0	1	0	12	66	0	5	165	0	15	3	22	0	1	1	0	3	28	6	
2013년	합계	989	3	3	2	7	366	0	0	350	0	19	3	70	3	0	0	0	7	155	1	
	만안	451	1	1	1	5	168	0	0	100	0	12	2	41	2	0	0	0	5	113	0	
	동안	538	2	2	1	2	198	0	0	250	0	7	1	29	1	0	0	0	2	42	1	

※ 통계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15년 자료는 미확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인명피해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1~5군, 지정감염병		해당 없음		

나. 원인분석

- 1) 기후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외식 기회의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식품·곤충매개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급증하는 추세임
- 2)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의 발전과 해외 여행의 기회 다양화, 국민소득 증가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로 국외유입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검역관리 뿐만 아니라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함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감염병 발생자수	664명	664명	
인명피해(명)	0	0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12.29)”이 개정·공포되었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15.11.6) 공포 되었음

□ 주요내용

- 신종감염병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뉴얼 정비
 - 감염병별 매뉴얼 홍보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대처 및 대응을 위한 훈련 교육 강화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업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기관명	내용
집단급식소, 산업체 등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병·의원 및 의약단체	감염병 감시 및 신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학교 41개교, 교육청	감염병 감시 및 신고, 관리
질병관리본부(검역소)	감염병 웹보고(해외유입감염병 입국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자문
주민센터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취약지 친환경 방역 활동 지원
에이즈예방 민간단체	에이즈 예방 교육 및 강사 지원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매뉴얼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정비	3월
2/4분기	안전교육 계획 및 현장교육실시(상반기)	5월
3/4분기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교육 및 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8월
4/4분기	유관기관(소방서 등)과의 합동 모의 훈련실시	11월

□ 법령 제·개정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 보유토록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설립 또는 지정 운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등에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토록 함 - 감염병의 발생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5.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환자 등 입원 통지 등을 규정 - 감염병환자에 대한 병문안의 자제 권고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를 규정 -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감염병 관련 홍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2) 재정사업(예산)

◇ 방역장비는 2015년에 메르스 이후 교체하였으며, 차량용 연막기 및 자전거 등을 구입할 예정임

□ 사업내용

○ 예산투입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2016년 예산			비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50,323	6,043	139,917	
급·만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27,362	2,104	9,786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신규)
매개모기 방제사업	-	1,324	47,870	
임상 검사	-	-	69,300	
에이즈 및 성병예방	12,961	-	12,961	

○ 장비 투입

(단위: 개)

합 계	방역장비		진단검사장비	비고
	차량연무기	휴대 연무·분무기		
25	3	9	1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123	33	18	18	18	18	18
방역약품	87	22	13	13	13	13	13
방역장비 관련 예산 (구입 및 수리)	36	11	5	5	5	5	5

3)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기간 : 연중

▶ 방법 :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우리안양지, LED, BIS, 보건소 전광판 등 활용하여 계절별 예방법 홍보 및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주요내용

- 감염병 유행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호발 전(식중독 예방 등), 건강한 여름 나기,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예방법,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 고위험군 대상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비누 등) 지원 어린이집, 노숙자 쉼터 무료 경로식당 홍보물 배포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파악 - 감염병 사업계획 수립 및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계획 - 봄철 호흡기질환 예방 홍보(수두, 수족구병, 이하선염, A형간염등)	2-3월
2/4분기	-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실시 - 방역활동 약품 및 장비 구입 및 방역소독장비 일제 정비 - 레지오넬라예방관리 및 냉각탑수 수거검사 - 하절기 집중방역실시 및 식중독 수인성감염병 예방홍보 강화	4-5월
3/4분기	- 장마철 수인성감염병 및 말라리아, 일본뇌염, 콜레라, 유행성 결막염, 네지 오넬라,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홍보 강화 - 냉각탑수 일제점검 및 수거 검사의뢰	7-9월
4/4분기	- 추석절비상근무 및 국내외 여행자 감염병 예방홍보 - 겨울철 호흡기질환(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홍보 강화	10-11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감염병 유행 사전 예측과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감염병 유행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인프라 구축 및 계획수립, 추진
- 감염병 유행 절기별 예방, 홍보 및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 격리병상 확보, 보호장구 비축, 검사장비 보강 등을 통해 방역인프라 구축
-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및 중앙(질병관리본부)와 공동대처 수행
- 감염병관리요원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대응 능력 배양
- 질병별 대응 매뉴얼 수립을 통해 위기 상황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한 감염병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

2)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제도 운영

○ 위기경보 수준

위기 경보 수준	내 용	비고
관심(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 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징후활동감시 대비 계획 점검
주의(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 발생 	협조체제가동

경계(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재출현 감염병 타지역으로 전파 ○ 대규모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대응체제 가동
심각(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전국적 확산 징후-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 도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 	대응역량총동원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1)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보건의료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 연계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터 연계
- 신속한 감별 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역학조사반 24시간 비상 연락망 구축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 체계 구축
-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 조정 체계 구축
- 감염병에 대한 대 시민 홍보

2) 자체(자율) 방역단 운영

○ 보건소 별 역학조사반 운영

- 구 성 : 1개반/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소독수)
- 기 간 : 연중(환자발생시, 유행 우려시)
- 시 기 : 유행 인지후 지체없이

○ 주민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운영

- 인 력 : 30개반/99명
- 내 용
 - 분무(연무)소독 : 하천변, 하수구, 쓰레기 적치장 등 취약지역
 - 유충구제 활동 :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를 위한 지하정화조, 집수정 등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 감염병 분야 위기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위기경보 수준별로 적극적 대응
- 감염병 유행 등 국가위기 발생시 경보 등급별로 단계별 대응 체계
- 진단장비, 환자관리시설,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및 가동
- 감염병 자문위원회 및 관련 민간단체(의사회 등) 합동으로 대응체계 가동
- 병원내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 계절별 유행 우려 질병에 대한 집중 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 위기 수준 단계별로 홍보활동 및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감염병 분야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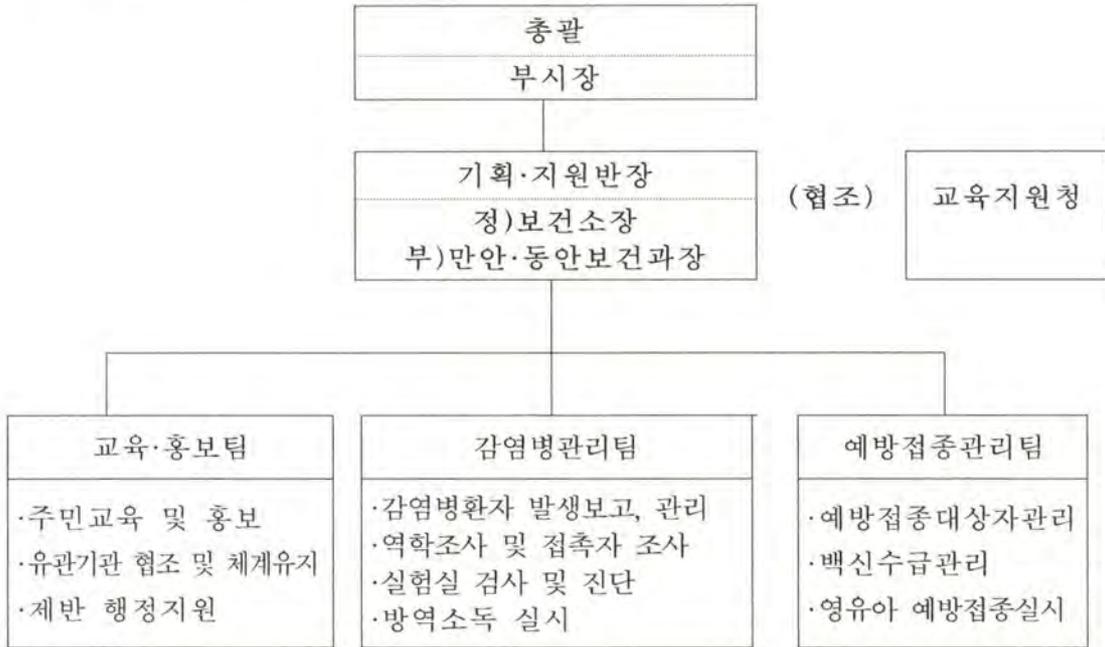
2) 위기 경보 수준별 임무

위기 경보 수준	임 무
관심(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 경보 발령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경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터를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모니터링 - 환자발생 동향 감시 강화 -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환자 발생동향 감시 강화 - 태풍 및 호우등에 대한 기상예보 모니터링 강화 ○ 방역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병원, 격리소, 보호장구, 진단장비 등 ○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 및 조정 체계 구축 ○ 감염병에 대한 대시민 홍보 ○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주의(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본부 가동(감염병발생 일일상황 및 동향보고) ○ 환자격리(발열감시 및 추적조사 등) ○ 감염병 전문 자문위원회의 소집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및 치료 대응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료기관 및 감염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의약품, 장비 등 비축 및 공급 ○ 수해로 인한침수지역 현황 파악 ○ 감염병에 대한 시민홍보 지속 및 언론 보도
경계(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본부 가동, 활동강화 ○ 방역체계 활동강화(24시간 비상 방역체계 운영) ○ 방역물자 및 인력 보강 검토 ○ 홍보대책반, 비상정보수집 대책반 운용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및 여론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심각(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방역대책본부 운영 활동 강화 ○ 범 시민적 모든 가용자원 및 동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동원, 역학조사관 총원 및 동원, 격리병상 추가 확보 ○ 시민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를 통한 비상속보 및 자막방송 실시 - 선전성 보도 및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속적 언론 모니터링으로 시민 및 언론 등 여론 파악

다) 대응단계

□ 조직체계

1) 안양시 비상방역대책반



○ 팀별 주요 임무

구분	주요 운영내용
감염병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감독 및 추진경과 평가 - 제반관리방안 마련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접촉자 등 관리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실시
교육·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회, 주민센터,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교육
예방접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 및 접종 실시

2)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감염병 환자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 역학조사반 운영 : 연중
- 역학조사반 편성 : 2개반/12명

구분	계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검사요원	운전기사	소독수
계	12명	2	2	2	2	2	2
만안구	6	임원철	임진영	황영주	김주희	안순호	1
동안구	6	이주나	유혜식	서명좌	나정미	한성섭	1

○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역학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역학조사를 위한 현지 지침 마련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조치
-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오염지역 살균소독 조치 요청

○ 단계별 활동

- 제1단계 : 해당 역학조사반 출동
- 제2단계 : 환자 격리 수용 및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
- 제3단계 : 전파경로 및 감염원 추적조사
- 제4단계 : 환자 및 인근주변 소독
- 제5단계 : 주민보건 및 홍보전개

○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병원 지정관리

- 지정기간 : 3년마다 재 지정
-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98병상
- 내용 : 민간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 후송, 격리·치료시설 확보

○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병의원, 학교보건교사, 산업체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 등
- 내용: 각종 감염병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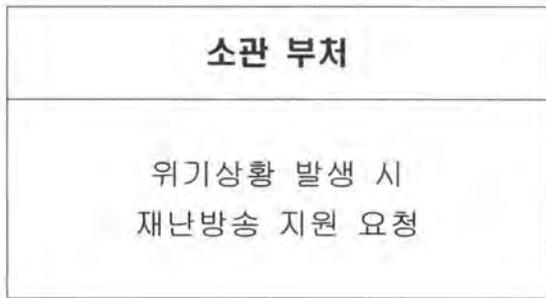
- 위기 상황시 시행한 대응 조치에 대한 평가
- 유사 사례 재발시 대응조치에 대한 보안

2) 세부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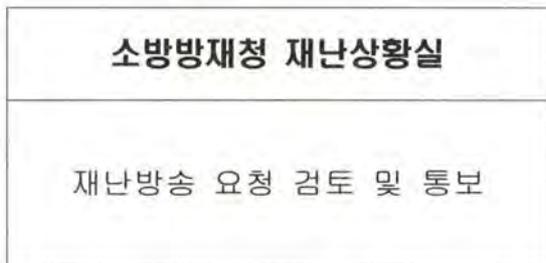
-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 시행
- 감염병 위기 대응 조치 평가
 - 비상대응조직, 관련부서 간 협조체제 및 단계별 조치사항 분석
 - 주민들의 대응 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 및 방역의 선진화 방안 강구
-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방역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 위기상황 홍보 전파시스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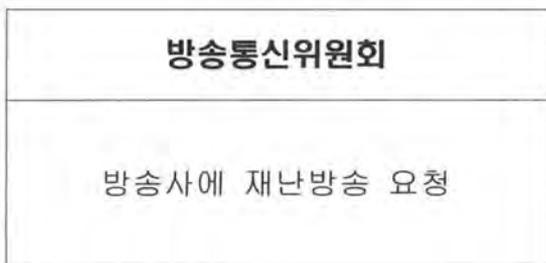
가.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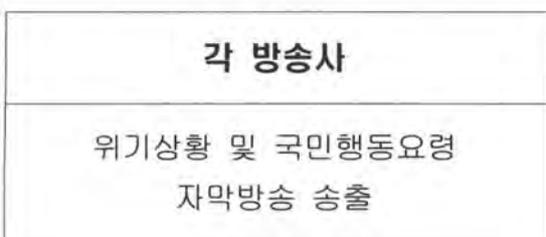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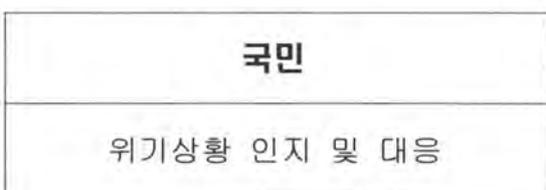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미래부에 재난방송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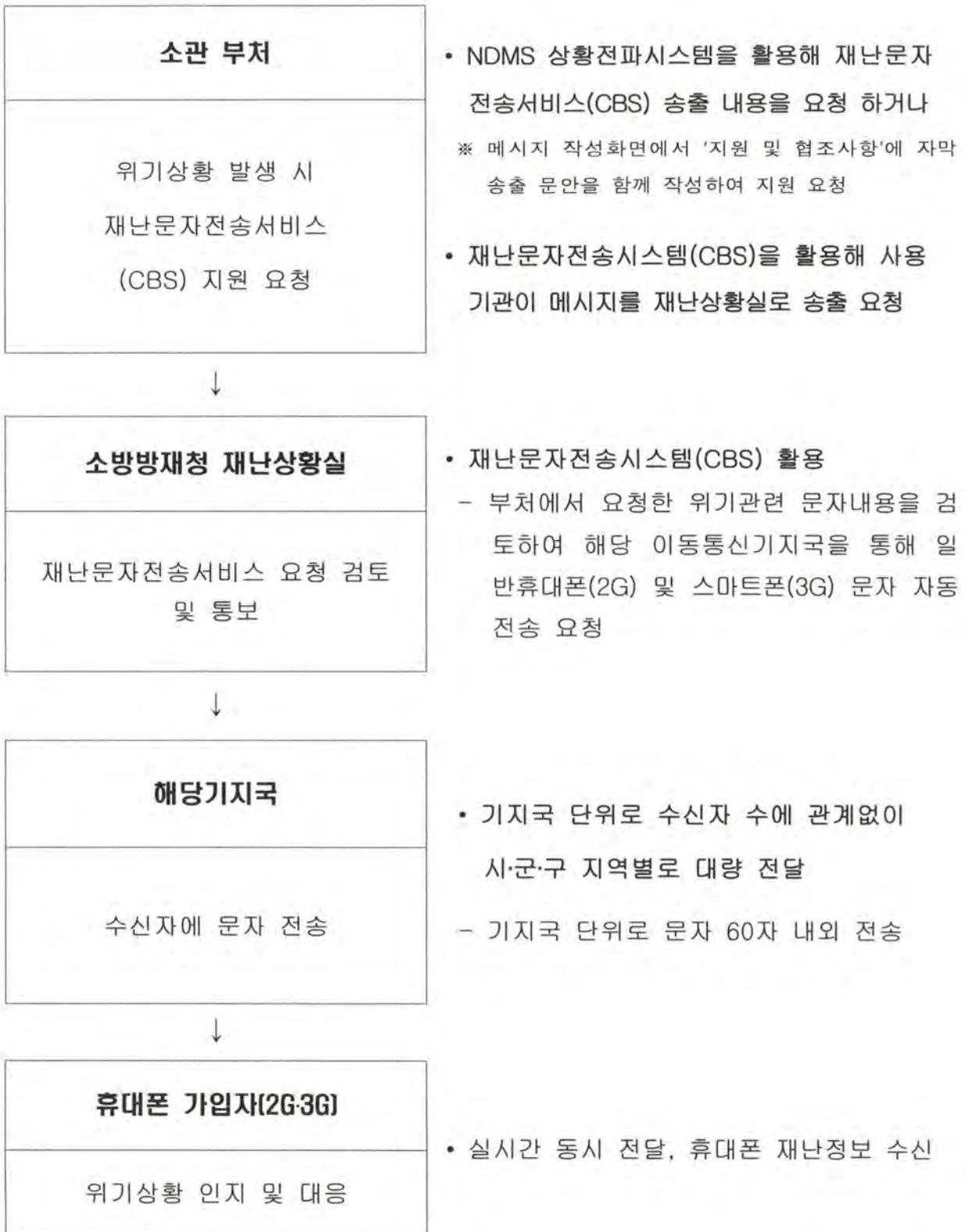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 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나.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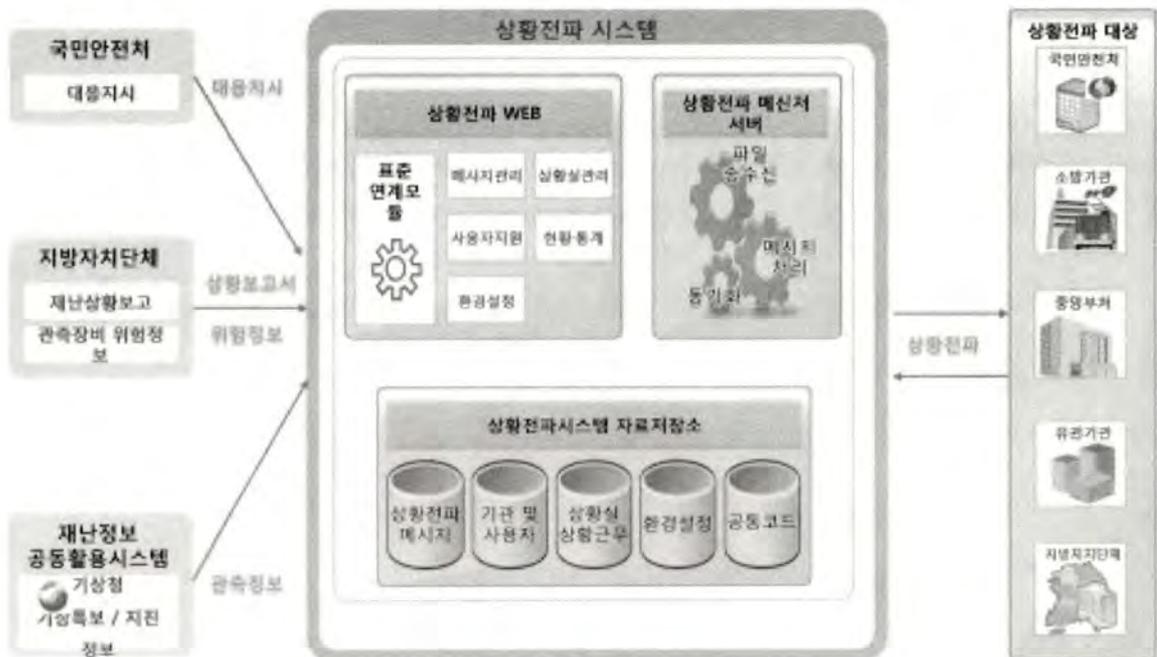


다.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가장 유용한 방법

□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1-1. 가축전염병대책

가. 피해현황

1) 최근 구제역 발생 및 피해내역

- 그 간 발생상황 및 '14~'15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비상방역태세 유지 및 총력적인 방역활동 전개 필요
-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아직도 백신접종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우려
 - ▶ '15년 신규 발생 : 10개국(중국, 몽골, 대만 등), 동남아 상시 발생

2)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내역

- 지난 '14.1.16일부터 '14.7.29일까지 총 212건, '14.9.24일 재 발생 이후, '15.6.10일까지 162건 등 총 374건 발생
 - ▶ 1차('14.1.16~'14.7.29) : 11개 시·도, 41개 시·군
 - ▶ 2차('14.9.24~'15.6.10) : 9개 시·도, 34개 시·군
- 7.15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전남 나주·강진 소재 오리농장(9.14), 광주·담양 소재 가금판매소(9.18) 검사 등 7건 발생
- 야생조류에서는 총 58건에서 항원이 검출됨
 - ▶ 1차('14.1.17~'14.5.8) : 전북,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제주
 - ▶ 2차('14.12.16~'15.1.27) : 경기, 충남, 제주, 충북, 경남, 전북, 서울
- 해외에서는 '14년 19개국 166건에서 '15년 29개국 1,471건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이며 최근 주변국에서도 빈발하고 있음
 - ▶ 주변 발생국 :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홍콩, 베트남

나. 원인분석

- 1) 명확한 전파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가간 물류 및 인적이동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파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에서 유래하는 신종질병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2) 철저한 방역관리 및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다.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해외 발생동향정보파악 및 확인 등

- 정보입수 및 상황파악(인터넷 검색 등) : 상대국 발생 현황 및 피해상황 등
- 발생사실 확인 등 신속한 정보파악
-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
 - 구청, 동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성 운영
 - 비상시 대비한 대응 매뉴얼 점검·운영
 - 파악 정보를 구청 및 유관부서 등에 상황 전파 및 홍보

□ 긴급대응 조치 준비 및 홍보활동

- 비상방역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체제 유지
- 관할구역 예찰활동 강화 및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유지
- 방역 동원장비, 매몰지 관리용 자재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등 사전 점검
- 예찰업무 강화, 농가 임상관찰, 정밀검사 등 예찰
-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신고 강화
- 대주민 홍보 강화 : 보도자료, 홈페이지, 리후렛 등

2) 예방대책

가축질병 접수 및 보고, 전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초동 방역팀 파견 요청
-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유, 무선 보고
- 가축질병방역대책협의회 개최

방역대 설치 준비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기타 조치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 별표 참조
- 방역인력 및 방역물자 동원 준비
- 이동통제초소 운영 준비

3) 긴급대응조치

이동제한조치 및 살처분 작업

- 격리·역류·이동제한 : 발생지역,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반경 10km) 안에서 사육되는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격리, 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고시
-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살처분·매몰 작업
- 이동통제초소 운영 : 발생농장, 발생지, 경계지역 등

기타 조치

- 가축 수매 실시(정책 결정시)
- 가축시장 및 축산물 거래행위 통제

4) 재발 방지대책 강구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 6개월마다 추가 접종
- 기타 조치
 - 살처분 인력 및 장비 소독관리 강화
 -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 환경보전과 협조
 - 대주민 홍보강화 및 질병 발생시 상황 유지

라. 재정사업(예산)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
 - 목적 :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및 광견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실시
 - 대상 : 관내 양축농가

추진일정 : 연중 실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가축전염병예방접종	80	16	16	16	16	16	

기타 방역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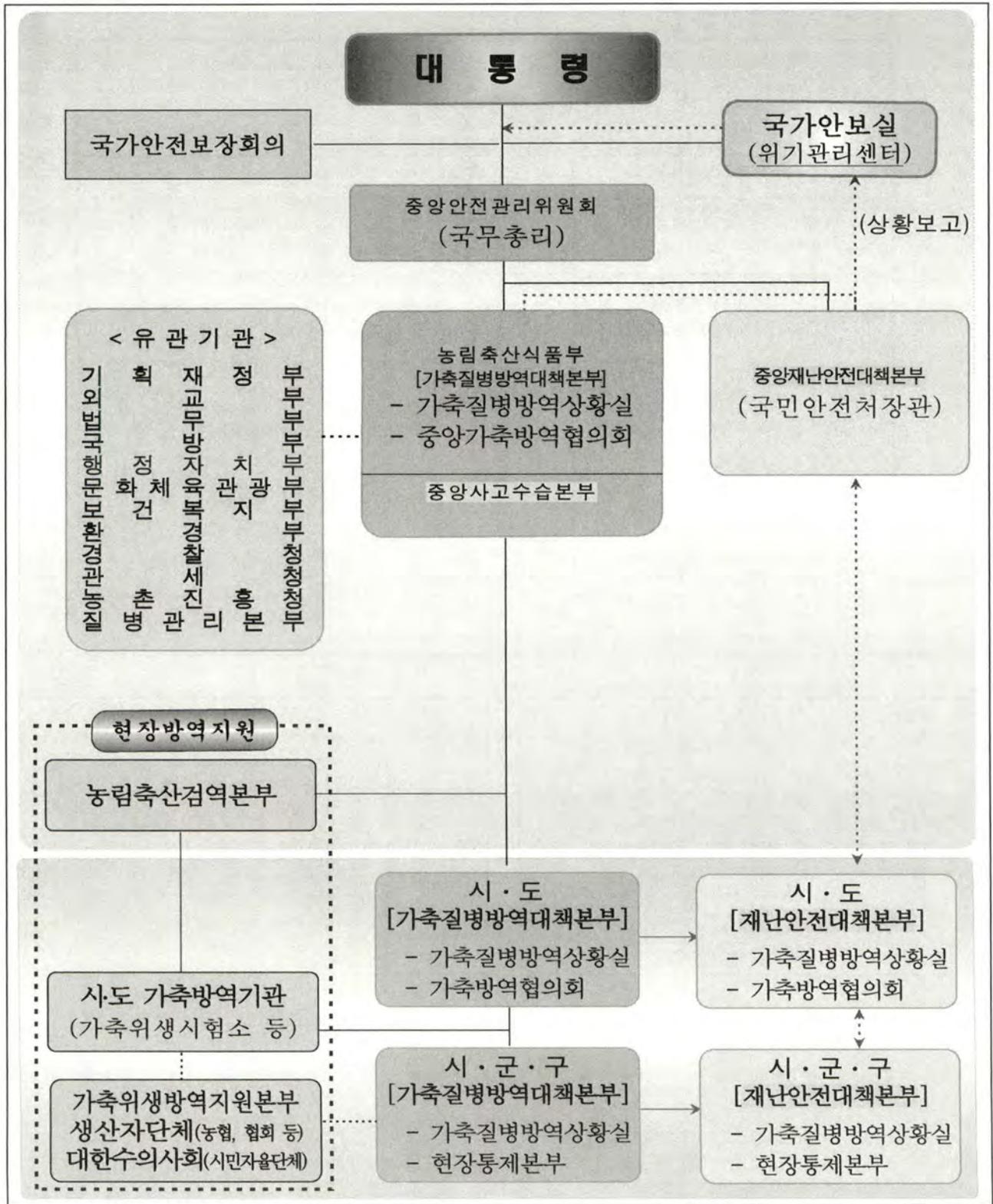
- 방역물품 구입재료비 : 4,000천원
- 가축방역추진 보상금 : 1,000천원
- 기타 장비유지 관리비 : 800천원

마. 기타 세부 추진사항

- 기타 사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 가축질병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시

붙임 : 참고자료

가. 종합체계도



※ 범례 : _____ 지시/보고/협조("관심·주의·경계" 단계), <.....> 지시/보고/협조("심각" 단계),
..... 유관기관(중앙부처, 협회·단체)간 협조

나.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본부 구성

방역대책상황실			
○ 상황실 위치 : 식품안전과 (상황실장 : 식품안전과장)			
○ 반별편성 : 3개반 13명			
○ 임무내용			
구분	종합상황반	방역통제반	행정지원반
편성	축산유통팀장 반원 3	식품안전팀장 반원 3	식품정책팀장 반원 3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상황유지 및 상황홍보전파 ▶ 방역지대 설정 및 출입이동제한 ▶ 강제폐기 매몰지 지휘실시 ▶ 소요예산 확보 ▶ 축산농가지도 및 대시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이동제한 위반사항 적발 ▶ 소독기 점검수리 ▶ 소독약품, 물품 공급 ▶ 방역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 통제초소 운영 소요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보고서 작성 ▶ 방역통제초소 등 작업인력 급식지원 ▶ 군부대, 경찰 등 인력지원 요청 ▶ 급식, 간식 등의 소요예산 집행 ▶ 각 기관별 지원 업무수행

각 구청 상황실
○ 대책반장 : 복지문화과장 (총괄 : 생활경제팀장)
○ 대책반편성 : 생활경제팀장 등 3명
○ 임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신고접수 및 동향보고 (공휴일 비상연락구축 유지) ▶ 관할 지역내 예찰 실시 ▶ 행정업무 및 인력 지원

동 주민센터
○ 관내 지역순찰시 구제역 관련 이상 징후 등 발견시 즉시 보고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 업무 및 인력 지원

○ 관내 또는 인근 시군 발생시, 대책본부 확대운영

- 방역대책본부 설치장소 :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사무실

※ 심각단계 발령시 지하1층 종합상황실로 이전

- 구성 : 5개반 27명 (본부장 1, 부분부장 1, 반장 5, 반원 20)

※ 발생농장 입구에 『현장통제반』설치

- 방역통제 및 소독실시를 위하여 구성,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운영

다. 상황발생에 따른 업무협조내역

○ 실과소별 업무협조 내역

실과소명	업 무
예산과	○방역예산 확보 및 배정 (예비비 및 국도비 확보 등)
홍보실	○방역추진상황 축산농가 및 대시민 홍보 ○언론브리핑 및 언론사 대응
총무과, 자치행정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편성 및 관리 ○작업자 급식 및 간식 지원(※ 읍면 협조)
	○컴퓨터 및 통신망 설치 ○상황실 및 통제초소 전화 설치
회계과	○예산 집행 및 관리(계약 및 지출) ○물품 구입 및 관리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신속 대응)
환경보전과	○사체처리(매몰, 소각 등)에 따른 관리자 파견 ○매몰지 선정 협의 및 관리
하수과, 수도행정과	○매몰지 선정 협의 ○매몰 관련 상수도 관리 및 설치
보건소	○인체감염 예방 관리 ○구제역, AI 방역소독 지원
고용경제과	○구제역, AI 방역소독 지원 ○지역별 농협 동원 일제소독 추진
녹지과	○매몰지 선정 지원 *(국유림 AI 매몰장소 제공협의) ○살처분 가축 등 평가 지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이동통제초소 소독시설 설치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생산 등 유용 미생물 지원 ○동물사체 처리(친환경 처리)

○ 관련 기관, 단체별 업무협조 내역

관계기관	협 조 사 항
안양소방서	○ 방역소독용 급수 지원
안양경찰서	○ 이동통제초소 통제인력 지원 ○ 살처분 매물현장 통제
군부대	○ 이동통제초소 통제인력 지원 ○ 살처분 매물 인력 지원
농협	○ 이동통제초소 통제인력 지원 ○ 방제차량 동원 안성시 전역 소독 실시 ○ 기타 방역 지원
수의사회	○ 농장 방문시, 임상관찰 실시 및 의심축 신고 지도 ○ 질병 예찰 및 가축반출증 발급
축협 등	○ 회원농가.단체의 구제역, AI 발생국 여행 자제 및 농장 방문 금지 홍보 ⇒ 부득이하게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것 ○ 축산농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일제점검 및 가동 확인 ○ 일 1회 이상 축사, 가축 소독 및 구제역, AI 예찰 실시 토록 축산농가 집중 홍보
도축장, 사료업체 등	○ 출입구 소독시설 일제점검 및 가동 확인(대인소독 철저) ○ 가축 운반차량 및 사료, 약품 운반차량 외부 및 내부 소독 철저 등

1. 목 적

- 북한 또는 이슬람 극단적 무장단체 IS(Islamic State)의 초국가적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2. 관련법령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337호)

3. 여건과 전망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불안 증가
 - 예측 불가능한 공포정치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 프랑스 파리 테러 후 전 세계적 테러 위협 증가
 - 이슬람 무장단체의 초국가적 테러위협 가능성 증대

4. 추진방안

가. 추진개요

- 테러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

단 계 (정부발령)	조 치 사 항	총괄책임자	상황실 운영
관 심	· 상황 전파, 연락체계 확인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안전행정국장	재난대책상황실 (8층) 3개반, 11명
주 의	· 중요시설 경비강화 ·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 등		
경 계	· 취약시설 출입통제 · 담당공무원 비상근무 등		
심 각	· 테러사건대책본부 지원 · 장비·인원동원태세 유지 등	안전행정국장	재난대책상황실 (8층) 6개반, 12명
테러발생	· 테러사건대책본부 지원 · 장비·인원동원태세 유지 등	부시장	종합상황실 (지하1층) 2실 9개반, 53명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유관기관 합동 테러대응 훈련 실시	2월
2/4분기	안전한국훈련 (테러대응 훈련 병행)	6월
3/4분기	유관기관 합동 테러대응 도상훈련 실시	8월

나.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 테러대비 지역주민, 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실시

□ 주요내용

- 공무원 대상 1박2일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실시
 - 기간/장소 : 6월,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 대상인원 :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 및 일반공무원 106명
 - 주요내용 : 테러관련 특강 및 현장견학 실시 등
 - * 2015년 교육실적 : 공무원 103명
- 2016 을지연습 실시
 - 기간/장소 : 8월 중 / 종합상황실(지하1층)
 - 주요내용 : 위기관리연습, 도상 및 실제훈련, 전시창설기구 운영 등
- 민방위 경보시설 등 정비
 - 민방위 관련 시설 현황
 - ▷ 경보시설:16개소, 비상대피소:243개소, 비상급수시설:55개소
 -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하도록 조치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제작·홍보
 - 연중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제작·홍보(을지연습 기간 집중 홍보)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비상대비교육	6월
3/4분기	을지연습	8월

다. 테러대응 활동계획

1) 예방단계

□ 신고체계 확립

○ 주민신고망 정비

- 주민신고망 현황(2015년)

(단위 : 명)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399	545	55	508	291

- 상·하반기 2회 점검 실시

○ 민방위 신고체제 확립

- 소관 직장민방위대 및 관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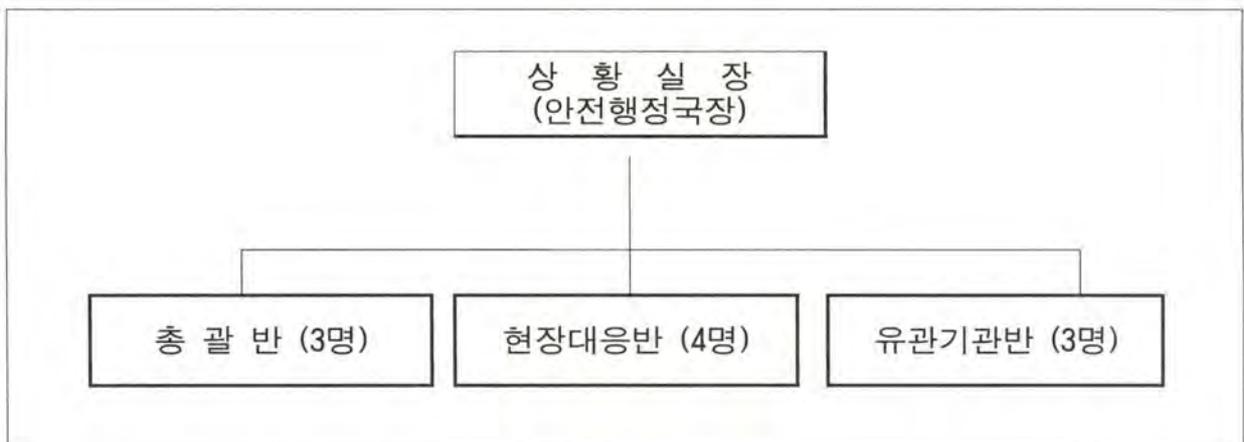
2) 대비단계

□ 테러경보 : 관심 ~ 경계

○ 비상대비상황실 운영(각종 상황파악·전파 및 보고 등)

- 3개반 11명 / 재난대책상황실(8층)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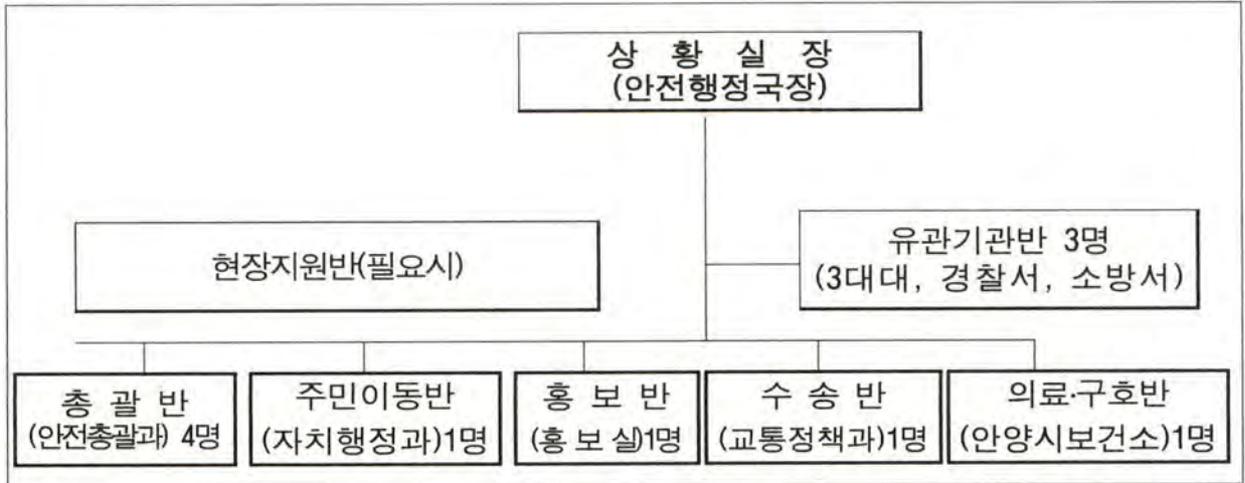


- 관심단계 : 테러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위기경보 접수·전파 및 관계기관 정보공유
 - 관계공무원 특별교육 및 비상연락망 점검·소집
 - 테러 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및 주민신고망 가동
 - 대테러 비상동원 물자·장비 점검 100% 가용상태 유지
- 주의단계 : 테러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
 - 테러 위기징후 감시활동 강화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긴급 안전점검·예방순찰
 - 재난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 경계단계 : 테러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테러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대테러 대책단 설치·운영
 - 소방, 민방위 등 테러대비 초동대응태세 확립
 - 신고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휴대폰, 방송매체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준비·점검

□ **테러경보 : 심각**

- 심각단계 : 테러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유지 및 위기대응 상황실 운영(공통)
 - 6개반 12명 / 재난대책상황실(8층)
- 소방·민방위·재난 등 관계공무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지하철역 등 테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력 전진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상황단계별 대처방안 강구
- 긴급구조활동 총력 대응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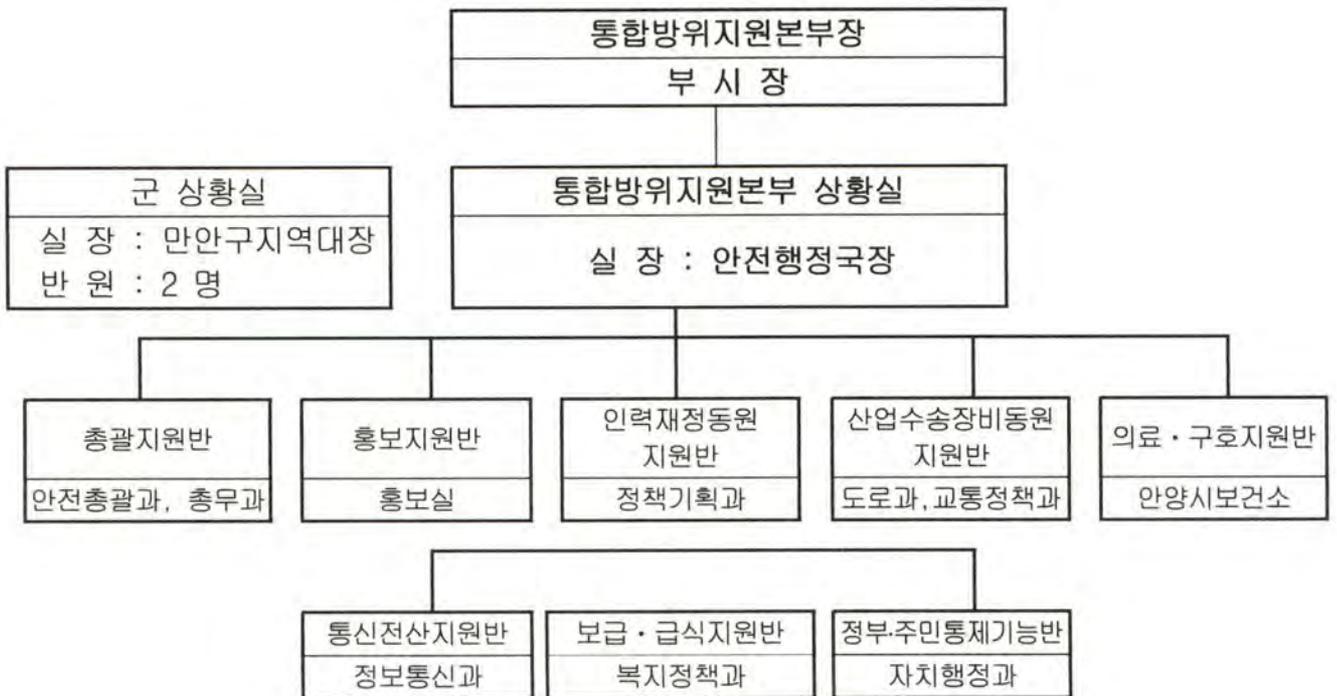
< 조직도 >



3) 대응단계

□ 테러발생 시

○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 8개반 53명 / 전시종합상황실



- 전주민 수용·구호대책 수립 및 구호물품 공급
- 단전·단수시 대비 비상급수시설, 급수장비, 자가발전기 확보 등
- 사상자 병원이송 및 치료대책 수립
- 민방위대원 동원태세 및 비상연락망 점검

〈 부서별 임무〉

- 안전총괄과 : 테러대응 총괄, 테러경보 단계별 상황실 운영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 수용, 구호 총괄
- 자치행정과 : 정부, 주민 이동 통제 운영
- 환경보건과 : 방사능, 화학테러 대응
- 안양시보건소 : 생물테러 대응, 응급 의료체계 가동
- 교통정책과 : 구호물자 수송
- 도로과 : 시설물 피해지원
- 예산과 :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활용 예산 투입

〈 유관기관 임무〉

- 167연대 3대대 : 군 작전상황 정보제공 및 연락장교 파견
- 국정원안양지부 : 테러 동향 파악·제공
- 안양동안만안경찰서 : 주민동요 대비 치안강화 및 유언비어 수사 등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학생 보호 및 대피 지시, 안보교육 실시
- 안양방송 : 국지도발사태 보도 및 도민 행동요령 등 홍보
- KT안양지점 : 통신망 긴급 복구대책 마련
- 한국전력안양지사 : 피폭가구 전기시설 복구 및 전력공급대책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 : 급식시설 등에 가스지원대책 마련
- 재향군인회 : 주민 및 학생 안보교육 실시
- 대한적십자사안양지사 : 전재민 의료구호 봉사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피해지역 구호 및 복구지원금 지원

4) 복구단계

□ 재원대책

- 재원대책 :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활용
 - 예산요구 : 예비비 지출요구서(사유서,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예산결산 : 복구사업비 집행실태 파악 및 관리 및 결산
- 절 차
 - 복구비 개략 산정 → 예비비 요청(안양시→경기도→국민안전처)
→ 기획재정부(협의) → 예비비 확정 → 국고보조금 신청
- 근거법령
 - 국고보조금 :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3. 안전관리 대책



여 백

1. 어린이집 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고발생	31	3	1	6	8	13

2. 원인분석

- 가. 2015년 어린이집 사고 발생현황은 총 13건으로 그 중 유형별로는 넘어짐 6건, 부딪힘 4건, 끼임 1건, 기타 2건의 사고 발생
- 나. 지난 5년간 총 어린이집 사고 발생건수는 31건이며, 주요 사고원인은 유아 부주의 71%, 아동간 다툼 10%, 종사자 부주의 6%, 기타 13%로 파악됨

3. 목 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감
사고건수	13건	10건	△3 (△23%)

4. 개선방안

가. 재정사업

-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환경 개선 도모 함

□ 사업내용

- (목 적)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련 시설환경개선(개보수)를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어린이집에 안전관련 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
 -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위험한 실내·외 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개보수
 - ※ 안심보육환경 구축 일환 '15년 관내 전체어린이집 CCTV설치 완료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확정 내시 '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 및 공사 실시	3월 3~12월
2/4분기	'17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4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1,870	430	430	430	430	150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750	150	150	150	150	150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1,120	280	280	280	280		

나.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분야별, 차량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교육 훈련 점검, 홍보 실시

□ 주요내용

○ 분야별안전관리

- ① (물리적 환경)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일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② (인적환경)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동지침과 안전관리 및 교육 실시

○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운전기사 채용 시 신체검사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성범죄경력 조회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등 비치, 차량안전 안전점검
-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 동승, 36개월 미만 영아 영아용 보호 장구 착용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안전교육

①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피난훈련(화재, 지진, 폭설) 등 재난대비 훈련 실시(월1회)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 숙지, 안전관련 교육 시행
-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③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17년 계획수립	2~3월
2/4분기	'16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4월

다. 재난대응 활동계획

1) 예방단계

가)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나)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 목 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과 역할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

- (평시)안전관리책임관의 주요업무

-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1회)
- 어린이집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1회)
-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지정 운영
 - *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 *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다)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보육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 * 찾아가는 상담실 : 직무스트레스 진단·평가(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연계)

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관할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평가인증 6개월 이내 제외)

2) 대비단계

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나)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 보고
 - * 중대사고(감염병 및 식중독 등,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즉시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

- 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 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통계를 관리

3) 대응단계

가) 비상상황 및 재해발생 시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 비상 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4) 복구단계

가) 비상상황 및 재해발생 후

- 어린이집 운영 재개 활동 수립 및 전개 등

1. 현 황

가.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616개소

구분	계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어린 이집	실내놀 이시설	식품 접객	대규모 점포	아동 복지	목욕 장업	의료 기관
안양	616	432	103	63	3	5	3	4	2	1

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연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고 건수	10	-	-	1	2	7

2. 원인분석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 나. 안전사고 피해자가 대부분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보호자나 관리주체의 보호아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하도록 하며,
-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시 안전점검 강화 및 보수·보강이 필요함

3. 목 표

- 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

4. 개선방안

가. 교육·훈련, 점검, 홍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추진(4월, 9월)
 - 교육대상 : 부서 담당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교육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4월)
 - 2~4월 중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 실시
- 불합격 시설의 불법적 이용실태 점검 및 홍보강화(2~12월)
 - 정기시설검사 후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실태확인
 - 점검사항 : 놀이기구 묶음조치, 출입봉쇄, 이용금지 표시 등
 - 홍 보 : 현수막, 반상회, 안내문 등 활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5월)
 -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주민센터의 통장, 부녀회 등 지역 사회단체를 통한 주민 홍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1월)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놀이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정보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수시 모니터링 가능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2~4월
2/4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업무담당자, 관리주체)	4월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5월
	• 주민센터 통장, 부녀회 등 지역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	5월
3/4분기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9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업무담당자, 관리주체)	9월
4/4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월

나. 재난대응 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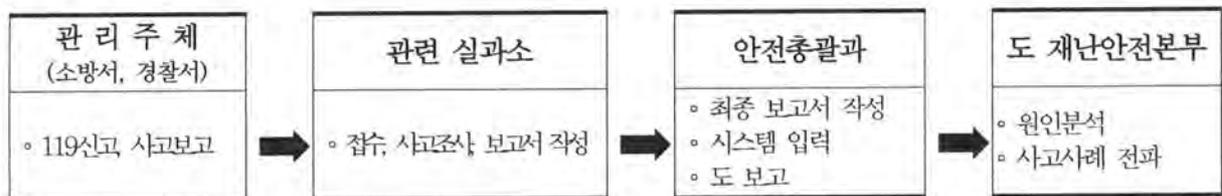
1) 예방단계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점검 실시(616개소)
 - 기간 : 2016. 2.15 ~ 4.30
 - 방법 : 1단계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검사·교육기관 합동점검
 - 내용 : 시설기준,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 * 시설기준 미흡시 시설개선 또는 시정명령 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수시)
 -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과태료부과 실적, 안전사고 현황
 - 교육 및 검사기관 이행실적 월별 입력 등 실적관리 현행화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http://www.cpf.go.kr>

2) 대비단계

- 사고대비 유관기관 현장대응 공조체제 구축
 - 대상 : 소방서, 경찰서, 인근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
 - 내용
 - 붕괴, 추락 등 사고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
 - 비상통신망 등 상호 지원을 위한 비상 신호연락체계 구축
 - 유관기관 유·무선 통신 비상연락망 정비 등

○ 신고체계



3) 대응단계

- 대응 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접수 후 소방대 출동 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 지원 요청
- 대응 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달
- 대응 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4)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조사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 조사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보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가) 예방단계

□ 전기

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 추진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점검추진(백화점, 유통시설, 역 등)
- 주 관 : 녹색성장과 (협조 : 전기안전공사)

○ 점검내용

- ▶ 법정 검사인 정기검사 이행여부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여부
- ▶ 자체점검 실시 및 설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
- ▶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등

나. 재난방지 관련 안전관리 홍보 추진 등

- 전기설비 안전관리 홍보 추진

□ 가스

가. 가스관련 시설 안전관리

○ 가스 안전장치 보급

- ▶ 사고빈도가 높은 LP가스시설에 대한 퓨즈콕 보급추진
-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설치
- ▶ 고무호스 LP가스시설 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 설치 홍보

나. 취약시기 ·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 우기 ·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 추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 점검 추진

다. 유관기관 합동 및 순회점검 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합동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마. 가스안전 문화운동 추진

- 가스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현장종사자 가스안전교육 실시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안전홍보 실시

□ 유류

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2회이상(1회/반기)
- 주 관 : 녹색성장과 (협조 : 안양소방서)
- 점검대상 : 관내 주유소 46개소
- 점검내용
 - ▶ 고정주유설비 주변의 전기시설의 설치
 - ▶ 고정주유설비 주변에 휴지등 가연성 경품의 적치행위
 - ▶ 석유등 제품 적치행위 등
 - ▶ 주유소내 가스시설 용기보관 상태 및 호스 연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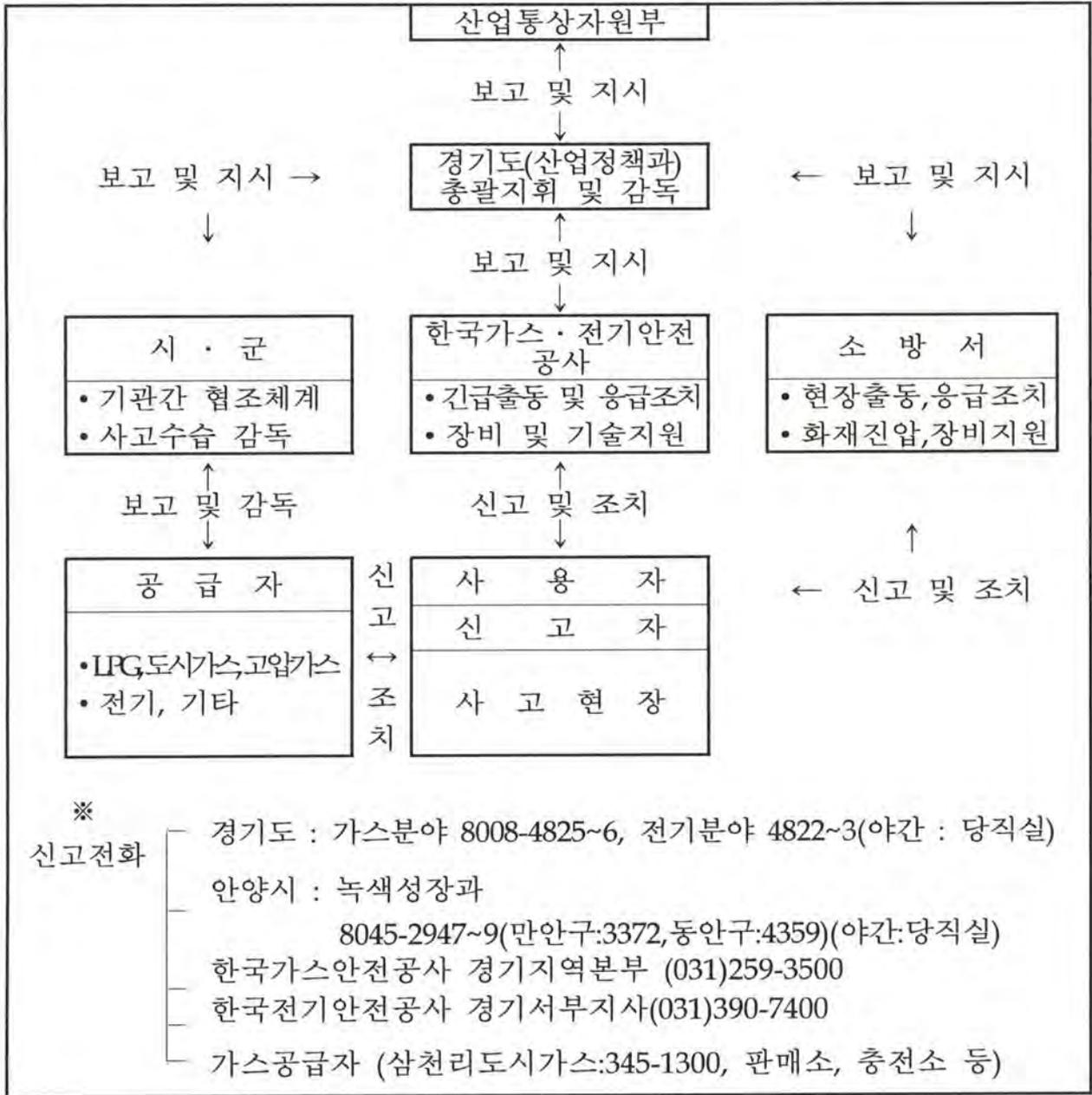
나. 재난방지관련 안전관리 홍보

- 안전관리 홍보 실시(년중 실시)

나) 대비단계

가. 재난대비 상황보고체계 구축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수습·복구를 위하여 24시간 보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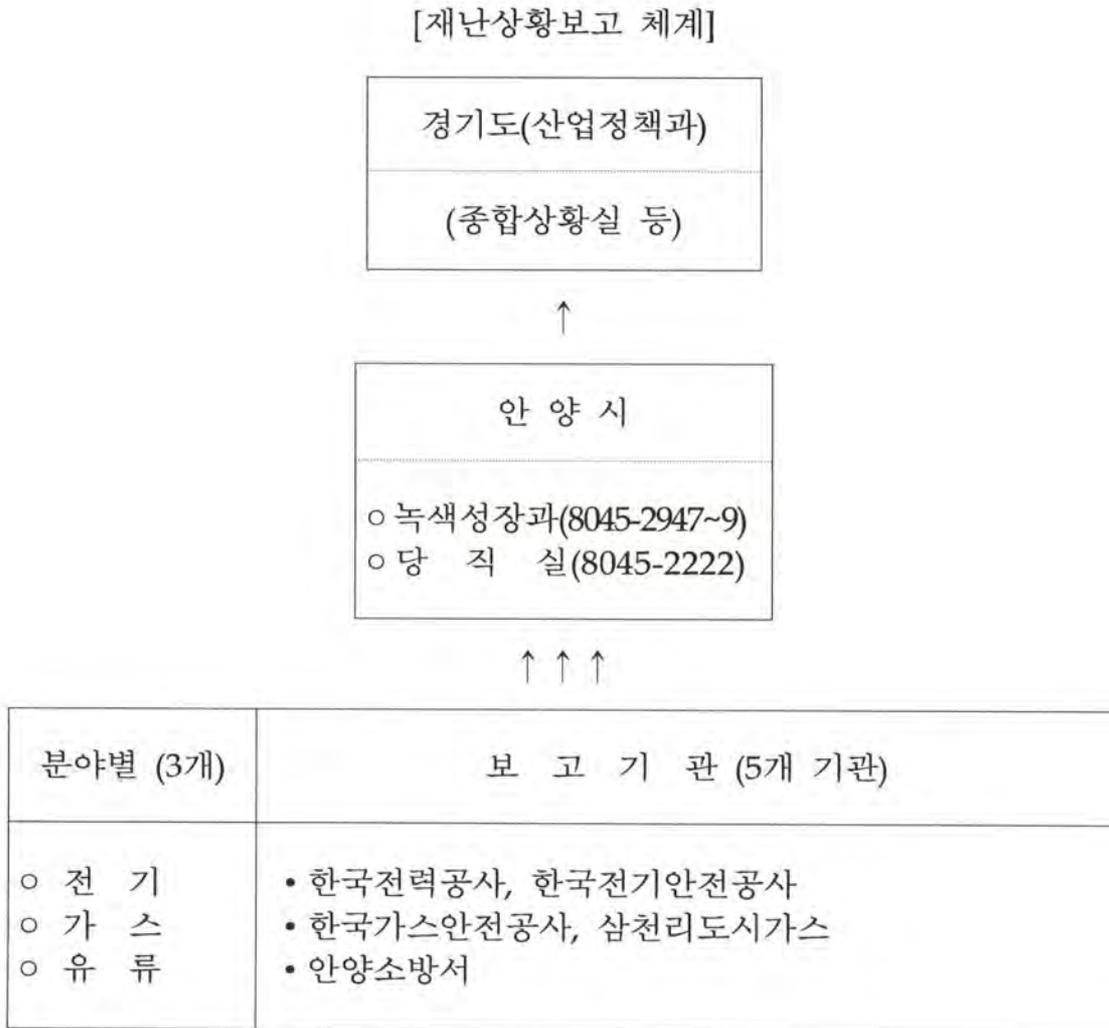
나.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

- 각종 재난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복구토록 하고,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유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발생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형재난에 대비

다) 대응단계

가.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 재난 상황 파악 및 적기수습을 위한 상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협조·지원체계를 구축



○ 대규모 재난유형별 신속한 대응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 재난관리기관과의 비상통신망 가동
- ▶ 비상상황 선포, 비상근무 지시 및 재난유형별 지침 시달
- ▶ 재난상황 실시간 보고 및 재난현장 신속출동 응급조치 시행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 지방 및 중앙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지원체제 구축

▶ 산업부, 산하기관, 지자체, 유관 중앙부처간에 비상통신망 가동

▶ 소규모 국지재난은 해당지역의 재난관리기관 사업소에서,

대규모 광역재난은 산업부와 재난관리기관 본사에서 초동대응

▶ 동원가능인원·장비·자재·구호물자·의료상황 등을 상호

정보공유 및 재난수습·복구 요청시 즉각 지원 협조

○ 지역별·재난유형별 지원체제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주축으로 재난성격에 따라 지원방안 설정

▶ 전기(단전 및 정전복구), 가스(누출·공급차단) 복구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즉시 출동태세 완비

▶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지원

다.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긴급 구조반 조직·임무

▶ 소관 재난관리기관 상황실에 긴급 구조반 설치·운영

▶ 재난특성에 따라 상황에 대응하는 재난기관별 역할 분담된 재난조직을
구축, 긴급구조·구급임무 수행

▶ 임 무

·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단계 긴급출동

·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

· 산하기관 구조반 지휘 및 중앙본부 보고·지원요청

○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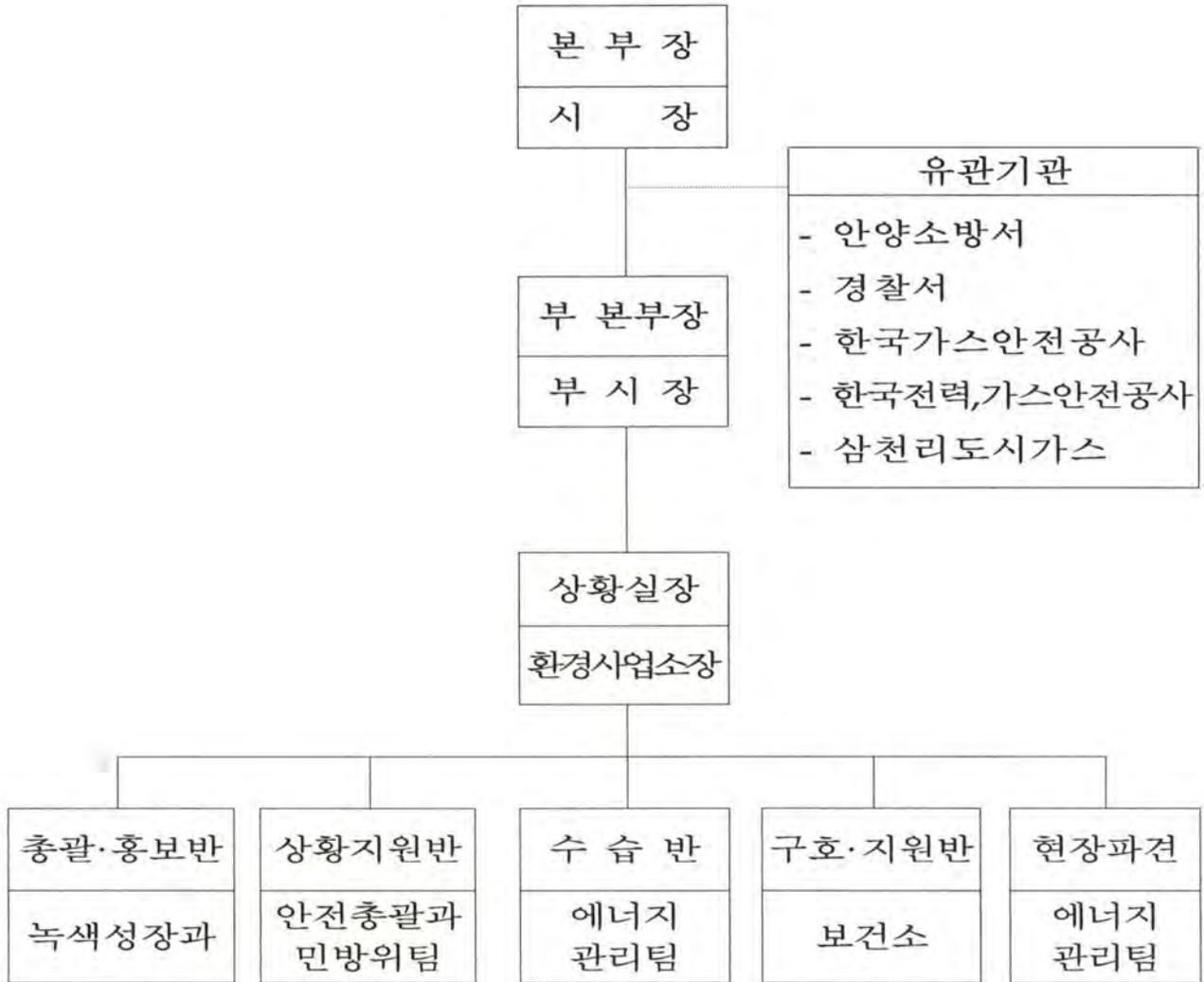
▶ 재난신고 접수처리, 통제선,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라.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상황의 파악 및 조기수습·복구를 위하여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사고수습본부 구성]



○ 사고수습본부 운영요령

- ▶ 상황파악 단계 재난관리팀은 상황파악업무 수행, 해당과는 사고수습본부 설치여부 검토
- ▶ 초기수습 단계 반별 임무 수행
- ▶ 근무요령은 비상시 근무체제에 준함

○ 사고수습본부의 임무

- ▶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
-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 유사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 ▶ 기타 재난·재해예방 및 대형사고의 효율적 수습·복구지원

[사고수습본부의 반별 임무(가스·유류·전기사고의 경우)]

구 분	인 원 구 성		주 요 임 무
총괄·홍보반	반장	녹색성장과장	○ 관련 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 ○ 대외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반원	2명	
상황지원반	반장	민방위팀장	○ 사고상황 파악 및 대외전파 ○ 관련기관과의 협조
	반원	2명	
수 습 반	반장	에너지관리팀장	○ 사고원인 분석 및 보고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반원	2명	
구호·지원반	반장	보건소	○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습본부 운영지원
	반원	2명	

라) 복구단계

가.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소관분야의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수습 본부에서 『재난합동조사반』의 업무를 지원함

- 조사반 편성 『가스사고 합동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유류사고 합동조사반』 등

○ 합동조사반의 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우선순위 결정)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재난합동조사반 구성 및 임무]

구 분		구 성	주 요 임 무
재난합동조사반		- 녹색성장과장 (에너지관리팀장)	- 소관분야 업무총괄
분야별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전기담당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관분야 대응 및 복구 조치 수립·시행 - 소관분야 사고조사 및 보고 -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 대책 관련사항
	가스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가스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유류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석유담당 - 안양소방서	

나.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수립

- 재난발생원인·피해상황·책임소재 조사
- 피해자 대표와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금 지급·정산

다.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단계

- 긴급복구요원 비상소집 및 초동 조치반 현장 투입
-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확보 및 지원

○ 상황안정단계

- 사고현장에 복구지원대책반 편성·운용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2차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순시, 각종 안전보호 조치 강화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용 계도·홍보
 -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 정상가동을 위한 신속한 후속지원 조치(유관기관 협의)
- 이재민 발생시 임시수용장소 설치 지원

라.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 재난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 평가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재난복구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미비점 보완

마. 복구작업 완료 - 상황종료

- 공급 확인(복구완료 선언)
- 관련 주민 등에 복구완료 홍보
- 복구상황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안내
- 관련기관 복구작업 완료보고 및 작업장 정리.

1-1. 사회재난대책(등산로 시설물관리)

1.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제도 운영

1) 등산로 운영·관리 실태조사 실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산로 운영·관리 실태조사 실시

2) 등산로 정기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등산로 노면, 각종 시설물 상태 등
- 정기점검 : 2월중순(해빙기), 6월(장마기)
- 수시점검 : 집중호우 전·후 등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등

3)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련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에 '산행 안전수칙' 게재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안양시청	8045-5018	
만안경찰서	472-0112	
안양소방서	470-0120	
공군부대	070-7790-1310	

□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 등 보수 및 추가 확충
-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설치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다) 대응단계

□ 재난상황실 운영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재난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비상대책반 편성
 - 상황실장 : 건설과장
 - 상황반원 : 산림녹지팀장 등18명(직원 4명, 기간제 14명)
 - 설치장소 : 건설과(산림녹지팀)
 - 주요임무 : 현장점검, 복구, 인명구조 지원,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 등

라) 복구단계

□ 등산로 안전사고 피해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1) 발생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상황 종료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실시
- 생활권지역 등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실시
- 피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지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안전사고 발생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예방 시설 집중 설치
- 안전사고 빈발 지역은 사고 내용에 대한 안내판 및 간이 구급함 설치

2. 개선방안

가. 재정사업(예산)

◇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편성

□ 사업내용

- 등산로 정비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대상 :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장소,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장소 우선 실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등산로 시설물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	1월~3월
2/4분기	등산로 시설물 보수공사 착공	4월
3/4분기	등산로 시설물 보수공사 준공	8월
4/4분기	등산로 시설물 모니터링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시설물보수	50		50				

나.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안전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직무교육(2월)
 - 산불취약지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등
- 산림보호감시원 직무교육(5월)
 - 훼손지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등
-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9월)
 - 주요 등산로 안전취약지역 조사 등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직무교육(11월)
 - 산불취약지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등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직무교육	2월
2/4분기	산림보호감시원 직무교육	5월
3/4분기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9월
4/4분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직무교육	11월

1. 재난 관리대책

1-1.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안전관리대책

가. 목 적

- 공공건축물 건립시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품격있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가) 계획 목표

-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정비 및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으로 위기 대응 역량 배양
- 유관기관과 실시간 연계체계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와 복구계획 시행철저
- 사고없고 안전한 현장관리로 신뢰받는 안양시 재난관리행정 확립

나) 여건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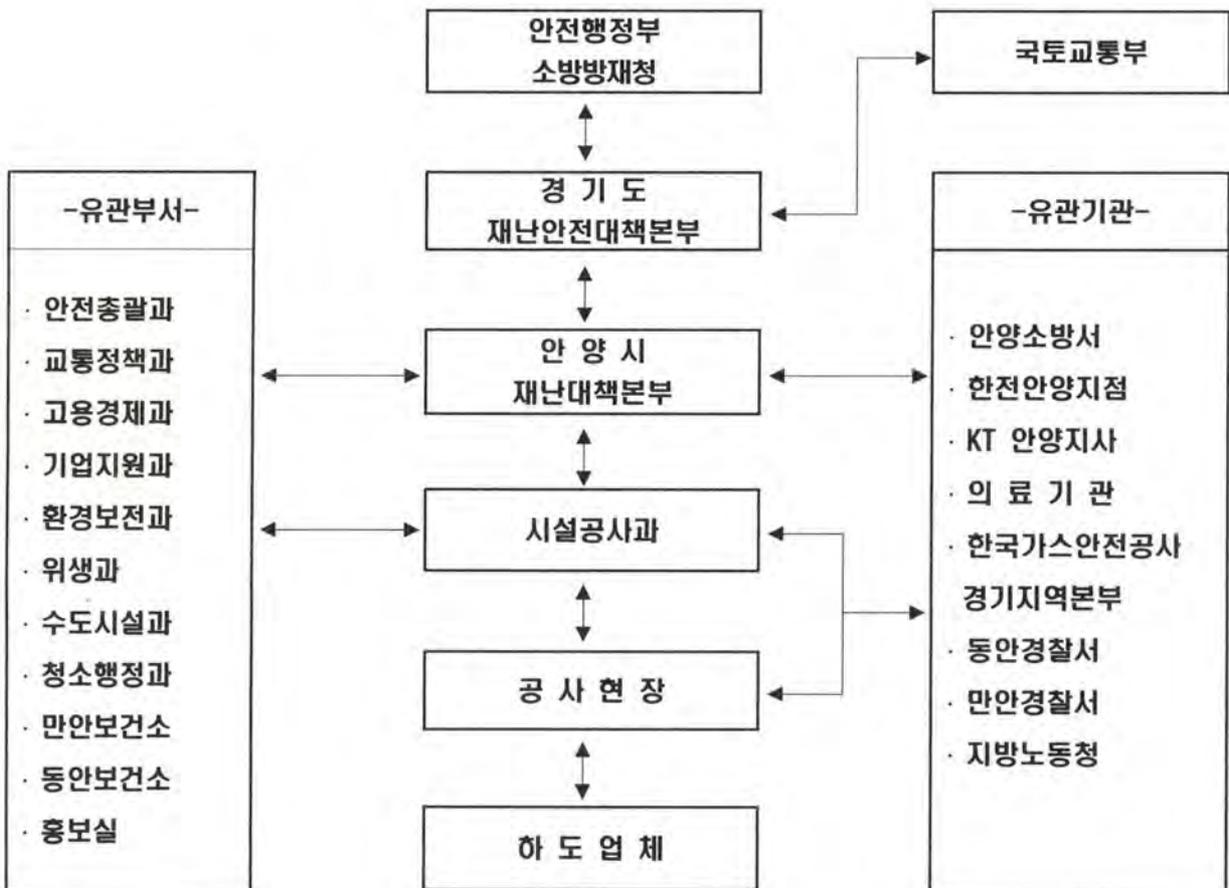
- 최근 우리시는 재개발,개전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관공사 부문에 대한 참여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공사현장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만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삼덕도서관 건립공사 등 대형공사 4개소와 구장터 경로당 엘리베이터 증축 및 시설 개선공사 등이 진행중이며 석수동 경로당 신축공사, 경로당 시설개선공사(3개소), 귀인권역 문화복지관 건립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의 2015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0.39%로 0.02%(4.9%) 감소, 재해자 수는 65,99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08명(1.8%) 감소, 사망자수는 1,343명으로 65명(4.6%) 감소하였는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다) 예방추진 방향

- 재난발생 취약지의 지속적인 사전 점검으로 재난예방 행정우선
-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한 신속 대처능력 배양 중점
- 시공사, 감리자, 현장출입자등 공사현장내 전방위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생활화

라) 재난관리체계



마) 주요 공사현장

(2016년)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고 (준공일)
		층수	연면적(m ²)		
1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1/4	3,902	9,579	16. 03.
2	만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1/4	4,433	16,046	16. 09.
3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4	2,410	9,209	16. 08.
4	삼덕도서관 건립공사	1/4	2,688	7,106	16. 06.
5	구장터경로당 승강기 증축 및 개선공사	1/4	702	113	16. 03.

(2). 대비대책

가) 개요

- 재난관리체계 수시점검으로 신속 정보전달 체계 유지
-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발생 근원적 해소
-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선안전 후공사 시행으로 안전의식 생활화
-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선적 보호

나) 주요내용

1)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구분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사업계획	안전관리업무 총괄	-	-	-
설계발주	설계조건 작성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설계시행	설계 검토	-건설안전 고려한 설계실시 -타 공종 설계자와 협력설계 (안) 지속적인 보고		
설계완료	성과물 검토	-안전관리문서 제출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 제공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현장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분담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건설현장 관계자 업무분담 등 조 직편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보고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안전교육 결과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적정성 확인 -안전교육 실시 지도·감독
	-안전사고 조사 결과확인 및 제재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공사완료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설계도서 보관 및 활용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전관리문서 제출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확인 -안전관리문서 확인

2)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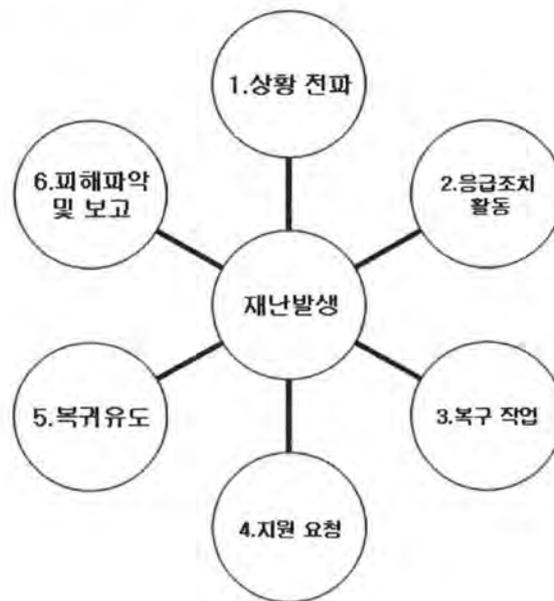
○ 비상사태의 범위

-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근로자·시설물 및 인근 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
-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으로 파급 우려시
-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 비상 연락망 및 비상동원 조직

- 내·외부 비상망 및 동원조직 구성하여 업무분장.

○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



3)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안전관리

○ 가설비계 안전관리

-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 여부.
-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 발생여부

-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1.5m이하
-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띠장 및 장선은 1.5m이하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
- 구조체와 수직·수평으로 5m이내마다 견고히 연결
- 기둥간격 10m 마다 45°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
-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설치
- 수시점검 사항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은 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 긴결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 가설계단 안전관리

-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2cm, 너비 25~30cm를 표준으로 설치
- 계단의 폭을 옥내에서 75cm 이상, 옥외에서는 60cm 이상
- 지주 및 난간기둥 간격은 120~150cm및 적절한 조명설비 설치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m²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

○ 가설공사(작업발판) 안전관리

- 발판 1개는 폭 40cm이상, 두께 3.5cm이상, 길이 3.6m이하 사용
- 최대적재하중(400kg 이하), 위험경고 및 지지판을 부착
-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간격 3cm 이하로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 이음부는 발판간에 20cm이상 겹치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고정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

○ 낙하물 방지 안전관리

- 철망호칭 #13 내지 #16, 또는 아연도금철선 0.9mm 이상 사용

- 15cm 이상 겹쳐 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
-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kg · mm 이상
- 방호시트 둘레 및 모서리를 잡아매는 명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 구조체와 45cm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시공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
-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정도 설치

□ 콘크리트공사 안전관리계획

○ 거푸집 안전관리

- 재사용으로 인한 흠집 과다 및 접착부 이탈로 인한 구조 안정성.
- 거푸집의 띠장은 손상 및 균열 발생여부
- 강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사포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Form oil)로 도포
- 강제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 도포
- 강판, 목재,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고 녹 또는 부식의 방지 조치
- 거푸집 조립시 “기초→기둥→벽체→보→마닥” 순서 이행
- 흔들림 막이 턴버클,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

○ 철근공사 안전관리

- 철근은 철근구조도에 의하여 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
-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철근과 동일 강도의 철근을 사용
- 구부림은 냉간가공 여부 (부득이 가열가공시 현장책임자의 승인)

- 용접한 철근은 구부러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구부릴 경우 용접 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림
- 콘크리트와 부착 저해하는 들뜬 녹 등 유해 물질을 제거
- 철근 제위치 배근,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배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없도록 견고히 조립
- 철근의 교점을 지름 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 (Clip)으로 긴결
- 벽이나 슬래브의 개구부에는 보강철근을 사용
- 철근의 조립 후 다음 사항을 규정대로 시공 확인
 - 철근의 개수와 직경
 - 이음의 위치
 -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 상태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하며, 특히 보의 중앙부근 이음 피함
- 이음 및 정착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은 것은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 또는 인장력이 작은 것은 지름의 25배, 이음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는 그 평균 지름으로 시공
- 철근의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함
- 철근의 정착위치 시공 확인

구 분	정착 위치
기둥의 주근	기초
보의 주근	기둥
작은보의 주근	큰보
직교하는 끝부분의 보 밑에 기둥이 없을 경우	보 상호간
지중보의 주근	기초 또는 기둥
벽 철근	기둥,보,기초,슬래브
바닥판의 철근	보 또는 벽체

○ 콘크리트공사 안전관리

- 당일 작업전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는 보수
- 작업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
- 타설 중 배근등 이동 방지조치, 표준시방서의 타설속도 유지
- 콘크리트 타설 한계 위치는 정확히 표시
- 보, 슬래브의 이어치기는 스패ن(Span)의 중앙부에서 수직
- 캔틸레버보나 슬래브는 절대로 이어치지 않음
- 슬래브의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때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침
- 이어치기 할 곳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며, 면을 깨끗이 하고 물로 적심
- 진동기로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며, 막대형 진동기는 수직방향으로 간격은 약 60cm이하
- 막대형 진동기 및 표면 진동기 등은 각기 특성에 맞는 곳에 사용
- 타설후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 (조강일 경우 3일)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
- 양생기간 온도는 항상 5℃ 이상을 유지

○ 거푸집 지보공 안전관리

- 지보공의 위치와 간격, 부재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
- 지반 설치시에 밑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로 부동침하 방지
- 경사진 바닥면에 세울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 높이 조절용 받침목, 철판 등은 이탈 방지
- 지보공, 보를 지지하는 주요부분은 규격품 또는 규정 이상 사용
- 단관 및 잭 베이스(Jack Base)의 손상, 변형, 부식 없는 것 사용
- 강관 지주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이음을 2방향으로 설치하고 견고한 것에 고정하고 두부의 잭 베이스는 멍에에 확실히 고정

-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 파이프 받침의 끼기핀은 전용의 철물을 사용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 조치

□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 굴착공사 안전관리

-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
-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이나 가마니를 덮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
- 공사의 규모, 토질, 공기등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
- 사면이나 무너지기 쉬운 지반에 장비를 세워두지 않음
- 굴착장비등은 안전능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작업구역을 로프울타리, 붉은 깃발 등으로 표시
- 야간작업을 할 때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작업시야를 확보
-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

○ 흙막이 안전관리

- 현장 및 주변으로 부터 침투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단 상태
-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
- 버팀목 및 띠장은 보울트, 췌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 부재의 연결부분은 확실하게 이음
- 흙막이판 뒷면에 틈이 없고 누수나 토사의 유출 여부

□ 성토 및 절토공사 안전관리계획

○ 성토공사 안전관리

- 사전에 나무뿌리 등의 유해한 잡물을 제거
-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
-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공사.
- 함몰, 균열등 변상상태 등의 수시 관찰
- 비탈면의 하부 및 상부, 작은 단부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
- 비탈면 상부에 물의 침투 방지조치(시트 등의 활용, 가설배수로 설치, 조기식재 등)
- 비탈면 상부에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 중장비의 주행 삼가

○ 절토공사 안전관리

- 상부 비탈면에 내리는 우수나 용수가 흐르지 않도록 비탈면 상단부에 배수구를 설치
- 비탈면이 높은 경우 보통 5~10m높이마다 소단을 설치 후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 유도.
- 소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탈면 하단에 배수구를 설치
- 우수후 토사붕괴 예방을 위해 균열 등 비탈면의 상태 점검

□ 교통안전관리계획

○ 교통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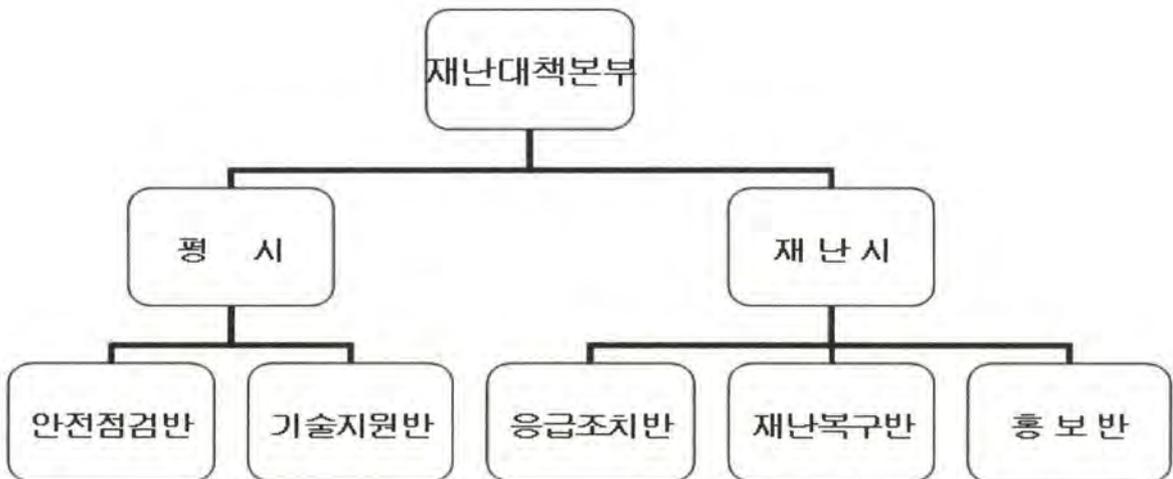
- 공사 안내판등 각종 표지판은 바람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
- 안내표식, 간판 등은 조종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표시내용이 야간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조치
- 출입구에는 필요에 따라 교통 정리원을 배치
- 공사장소 주변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
- 작업원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교통안전에 대하여 주의

다. 추진체계

가) 운영 지침

- 공사감독자 (감리자)는 평상시에는 시공자가 공사착공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현장안전관리를 이행여부 점검 및 확인
- 안전점검시 발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선 응급조치 후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재난발생시에는 재난수습 체계도에 의거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재난복구, 재난전파 등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와 실시간 상황유지관리 및 협조로 신속한 복구조치

나) 기구 및 담당업무



다) 대책반 별 임무

- 평 시 ----- 2개반 10명 (재난발생 예방)
 - ▶ 안전점검반 : 평시 재난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 ▶ 기술지원반 : 건설공사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법적·기술적 지도

○ 재난시 ----- 3개반 14명 (재난복구)

- ▶ 홍보 반 : 재난복구공사 계약,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 ▶ 응급조치반 : 사고원인 조사, 응급공사 시행
- ▶ 재난복구반 : 복구 예산편성, 보상대책 수립, 응급조치반 지원

라) 대책반 업무분장

구 분	소 속		연락처		E-mail	비고
	직급	성명	사무실	FAX		
총 괄	도로교통 사업소장	김영일	031-8045-2033	-	kyi1022@korea.kr	
반 장	시설공사과장	신정업	031-8045-2460	6554	sju7@korea.kr	
홍보반	시설행정팀장	김상권	031-8045-2421	"	ksgsanta@korea.kr	
	행정 7급	신현문	031-8045-2422	"	shm63@korea.kr	
	행정 8급	유대상	031-8045-5682	"	yoods99@korea.kr	
응급조치반 (안전점검)	시설공사1팀장	김인철	031-8045-2461	"	atkic@korea.kr	
	전기 6급	이종복	031-8045-5685	"	jb2004@korea.kr	
	시설 7급	박태규	031-8045-5687	"	gikrtg@korea.kr	
	시설 7급	이인수	031-8045-5684	"	cocos@korea.kr	
	기계 7급	류동혁	031-8045-2468	"	pooh2061@korea.kr	
	시설 7급	송종일	031-8045-2467	"	piter11@korea.kr	
재난복구반 (기술지원)	시설공사2팀장	이규호	031-8045-2464	"	veloce@korea.kr	
	기계 6급	김진홍	031-8045-2465	"	kjh66@korea.kr	
	시설 7급	김근홍	031-8045-5688	"	doyeon@korea.kr	
	시설 7급	한경희	031-8045-5689	"	hkh7702@korea.kr	
	전기 7급	한종섭	031-8045-5688	"	hanjongsub@korea.kr	

라. 행정사항

- 발주청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필요시 보완조치)
-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함 (다음의 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시 해당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포함)
 - ▶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터파기 공정
 - ▶ 높이 5m, 길이 20m 이상의 비탈면 절취 공정
 - ▶ 2차로 이상의 터널굴착 공정
 - ▶ 그밖에 발주자 및 감리자가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 공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여 예산계상 등 단계별 필요한 조치확행
- 응급조치반에서는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응급공사로 재난상황이 악화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재난복구반에서는 시(총괄 재난대책반)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하며, 홍보반에서는 긴급공사 계약업무를 시행하며, 필요시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와 복구상황을 홍보토록 함
- 재난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분야별 부여된 “복구대책 임무”를 수행하며, 유관기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1. 피해현황

○ 체육시설물 등 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발생 건수	-	-	-	-

※ 무재해 8배수 달성 : 2008. 4. 1 ~ 2015. 11. 6 (2,756일)

2. 발생가능 재난 유형

가. 재난의 유형

구분	유형 (예시)	관리책임기관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등 자연의 힘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총칭	소방방재청
사회적 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안전행정부
인적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 등	소방방재청

나. 발생 가능 재난 우선순위

재해유형		위험성 추정		위험도 추정	위험 사업장
		재해가능성	피해강도		
화재	건물화재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종합운동장 중앙지하도상가 호계체육관
	산불	매우낮음	보통	보통	석수체육공원 캠핑장
집중 호우	침수	높음	보통	높음	중앙지하도상가 종합운동장
	붕괴,전도	낮음	보통	보통	캠핑장
정전		보통	낮음	보통	종합운동장
전염병		낮음	매우낮음	낮음	전사업장
폭설		매우낮음	매우낮음	낮음	전사업장

3. 재난유형별 분석 및 예방

가. 발생 가능 주요재난 분석

우선 순위	재난유형	재난 특징	예방 대책
1	화재	- 발생가능성 및 피해규모 매우높음 -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지하에 위치한 시설등은 인명피해가 예상 -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	- 보험가입 및 화재위험 점검 - 방재설비 사전점검 철저 - 소방훈련을 통한 대응능력강화
2	침수	- 주로 장마철, 태풍 시 발생 - 예측 가능한 재난 - 발생 후 감전 등 2차 사고 가능	- 배수펌프 등 수방장비 점검 - 건물 내외부 배수구 점검 - 기계실 등 누수 유무 확인
3	정전	- 부하용량 초과, 설비 노후화등이 원인 - 복구 시 아크발생 등으로 2차사고 우려	- 시설물 사전점검 철저 - 사고 시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복구(2차사고 방지)
4	산불, 붕괴	- 이용객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능성이 높음 - 붕괴사고는 해빙기, 장마, 태풍 시 발생가능 높음	-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 - 사전 홍보활동 - 초기방재계획 수립

나. 재난 유형별 상황대응 : 세부대응 방침은 매뉴얼 참조

재난유형	ACTION	세부내용
화재	1.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재발생 감지 및 확인 ■ 화재전파 및 신고 ■ 자위소방대 활동 전개
	2. 화재발생시 시설 등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설비 정상작동 확인 및 조치 ■ 위험물 차단 조치
	3. 화재진압 및 대피유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 방법 ■ 대피유도 방법 「공기호흡기 사용요령」
정전	1. 정전발생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발생감지 및 확인 ■ 안내방송 시행 ■ 전기시설물 안전조치
	2. 정전복구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복구
풍수해	1. 풍수해관련 재난발생 예측시 (태풍, 폭우, 강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및 지역별 재난상황정보 수집 ■ 기상 및 재난상황 판단회의 실시 ■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전예찰활동 시행
	2. 풍수해 발생우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비상소집 시행 ■ 재난 및 비상근무 상황전파 ■ 비상근무 시행 ■ 비상근무 강화
	3.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주변 우수유입으로 범람시 ■ 구조체 내부로 지하수 유출시 「엔진펌프 사용요령」

다. 시설물 안전관리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사고예방

-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설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 시설물의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아닌 사후관리에 의존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인 상존
- ▶ 시설물 LCC (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예측시스템 도입
-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보수·교체 계획, 상태평가 등 시설물 성능 안전관리
 - ° 생애비용예측 : 유지관리 실적 데이터기반으로 LCC분석
 - ° 시설상태평가 : 정량, 정성적 상태평가를 통한 정비우선순위 도출
 - ° 예산수립지원 : 시설 유지보수예산 및 예산수립 이력관리

- 전사적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시설물 관리 체계화

예방중심의 재난안전대책

-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DB구축
-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별, 분야별 정비,순찰 등 예방활동
-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

신속.정확한 재난대응 대책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개선
-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조직 및 시스템 구축
- 노후시설물 집중관리로 이용시민 안전확보

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체계 확립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별 관리체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관리부서)	 재난.안전 감찰 (기획감사부)	 재난관리계획 (시설관리부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부서)
· 제어시스템 운영 · 기술 교육 및 훈련 · 일상.법정 시설물점검	· 정기/특별/상시 감찰 · 감사 및 조사활동	· 재난.안전관리 정비 · 재난.안전예방 대책 · 정기/특별/상시 점검	· 에너지 절감 · 녹색문화 확산 · 녹색기술 개발

마. 시설별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시설명	관리부서	책임자 지정	
		정	부
종합운동장,수영장,빙상장	종합운동장사업부	채형석	이준기
호계체육관	체육공원사업부	유성재	고낙진
석수체육공원	체육공원사업부	김종민	이률

4. 예방대책

□ 시설물 종합관리계획 수립

▶ 사업장별 종합관리계획 수립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찰제 실시 · 에너지 절약 순찰 · 자체점검 및 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기점검(일,월) · 소방시설물 정기점검 · 해빙기, 동절기, 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기점검(시특법) ·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시설분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특별점검 · 해빙기, 동절기, 우기 명절대비

▶ 점검 구분 및 방법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일상점검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이용시설 및 기계 전기실 등 운영설비 일상점검 ■ 시설물의 내·외부 진단(점검, 훈련 등) 	부서별 담당자 점검
정기점검	매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전기실 등 운영설비 일상점검 ■ 시설물의 내·외부 진단(점검, 훈련 등) 	합동점검
특별점검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집중)점검 - 상황별, 시기별 적정주제 선정 	합동 점검

5. 대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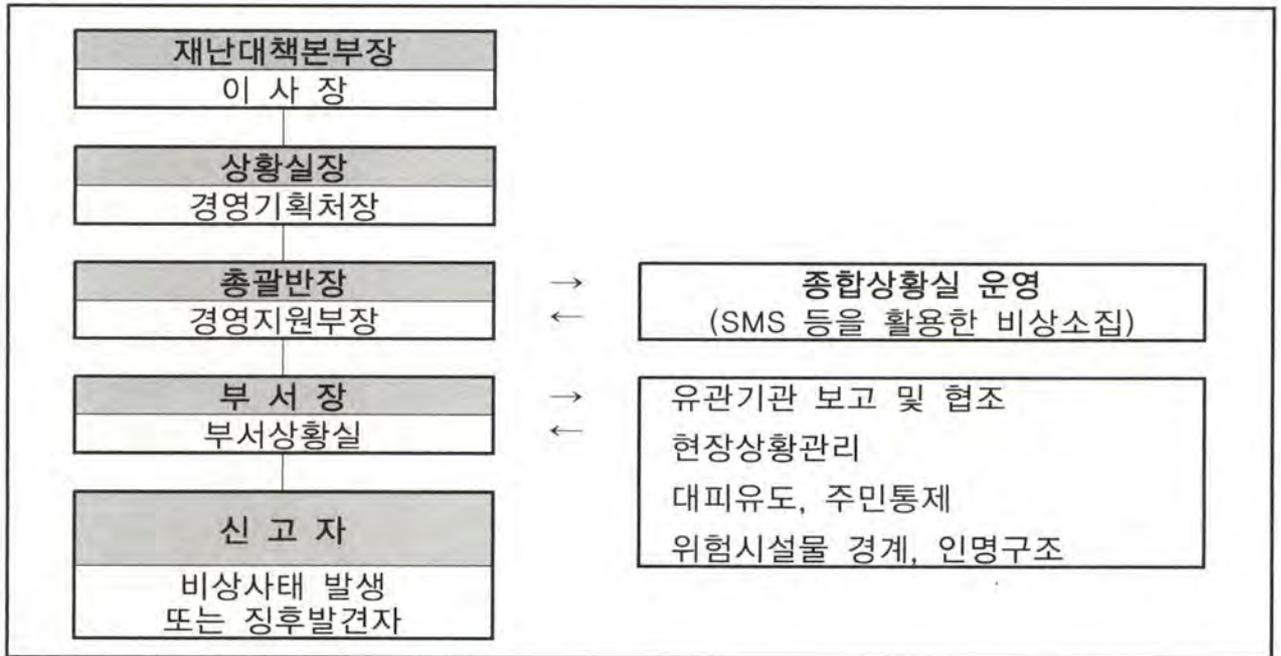
가.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구분	운영시기	운영체계	근무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방재실)	1,2급 재난 발생 시	상황실 근무인원 6명	전반: 09:00~18:00 후반: 18:00~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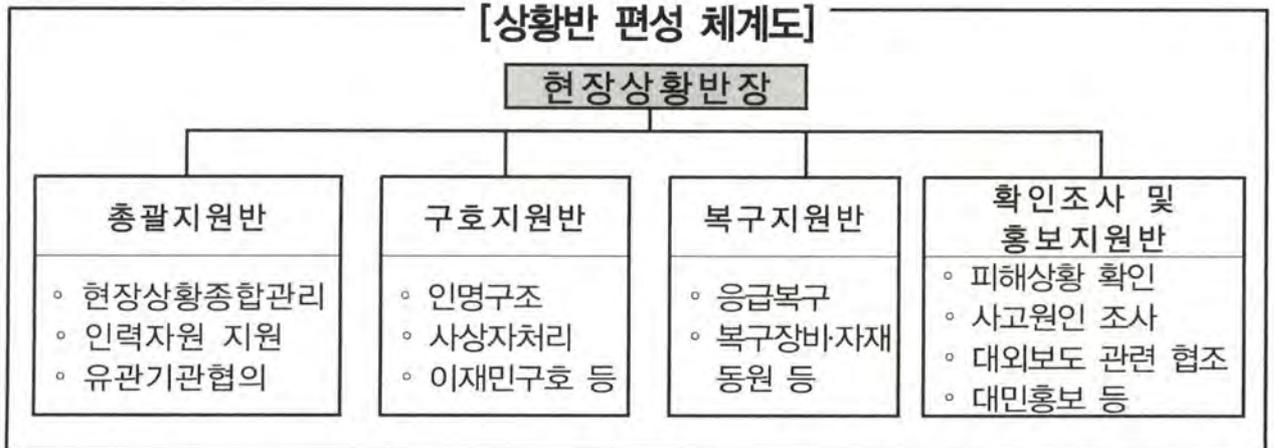
▶ 종합상황실 임무

- 재난의 발생·진행·수습과정 등의 상황을 종합관리
- 구청, 시 상황실,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관계부서 등에 대한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 지원대책 등을 협의·조정 추진

나. 상황관리 체계도



[상황반 편성 체계도]



다. 재난대책반별 임무

반별구분	해당부서	임무
총괄반	경영지원부, 기획감사부	현장상황관리, 유관기관 보고 협조, 재난수습 보상 등
구조반	생활지원사업부	대피유도 및 주민통제, 유관기관, 물품 및 인력지원 등
복구반	종합운동장사업부	시설물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복구장비 수송.지원 등
의료구호반	주차사업부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지원, 급수 및 방역 활동 등
지원반	체육공원사업부	사망자 현황파악 및 보상업무, 각종 지시사항 처리 등

가. 개요(목적)

- 아동시설 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현황

▶ 아동양육시설 3개소

시 설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장	설 립 연월일	아동 현원	전화번호
좋은집	만안구 예술공원로 52번길 46 (안양동)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오경인 (여)	'18.12.25.	81	472-8197
안양의집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석수동)	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	이정혜 (여)	'47.06.16.	99	471-2391
평화의집	동안구 임곡로 60 (비산동)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김광진 (여)	'46.10.31.	80	449-2596

▶ 그룹홈 3개소

시 설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장	설 립 연월일	아동 현원	전화번호
우 리 집	만안구 창박로38 수리산 현대@ 305-1202(안양동)	개인	신효숙 (여)	'06.9.8	6	449-4349
해 피 프랜드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 124동 607호(안양동,진흥아파트)	개인	이경래 (여)	'08.7.2	4	468-0227
밝은언덕	동안구 관평로 319번길 42 2층 (관양동)	사단법인 다음세대 희망나눔	김나리 (여)	'14.6.30	4	340-3808

▶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시 설	소 재 지	운영주체	시설장	신고일	정원	전화번호
안민희망동지	만안구 양화로 105번길 33	종교단체	정상시	06.11.16	44	448-0185
꿈터	만안구 예술공원로 76	종교단체	이 결	05.11.14	49	471-1614
참사랑	만안구 삼덕로 93	종교단체	김지애	07.12.24	29	464-0918
금빛	만안구 안양로 216	사단법인	이옥선	11.04.06	49	447-6033
달팽이	만안구 수리산로 45	비영리	김소영	06.09.27	49	442-5241
우리	만안구 덕천로 126	종교단체	김애숙	06.09.18	19	441-6734
영림	만안구 문예로 16-1	종교단체	최창호	05.11.08	29	449-2873
한숲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58	종교단체	권훈상	05.12.07	49	466-2776
해오름	만안구 인양로 468번길 25-6	비영리	김순애	06.09.21	49	473-0992
충훈부	만안구 와룡로 3번길 55	종교단체	이신애	07.07.18	29	474-1004
안양꿈꾸는	만안구 양화로 148번길 36	개 인	설지영	07.10.24	49	464-4553
1318해피존해밀	동안구 관평로 319번길 72	사단법인	황은수	12.03.22	49	386-1590
이루리	동안구 매곡로 38-6	개인	이영수	10.11.24	29	381-4037
동안	동안구 관평로 319번길 42	개 인	이석재	05.08.23	49	384-1590
순중	동안구 관평로 305번길 65	개 인	강현수	05.09.22	45	386-3348
관양흰돌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95	개 인	유영하	10.01.20	29	423-0019
꿈세	동안구 경수대로 556번길 49	개 인	김현숙	11.02.21	29	453-0090
안양행복	동안구 귀인로 94	개 인	김정희	08.01.15	49	349-8668
한무리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33	사단법인	윤정희	12.03.12	49	451-0906
희망나무	동안구 경수대로 472, 215호	개 인	설미경	09.02.19	29	427-7175
희망세움	동안구 엘에스로 45	비영리	정택숙	10.08.04	49	427-7525
사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67	종교단체	김호철	06.09.27	49	456-6694
동편행복한홈스쿨	동안구 동편로 120	사회복지법인	백창근	13.05.22	27	422-7447
와청소년	만안구 석수로 178번길 31	개인	김정아	14.04.01	29	471-9511

나. 주요내용

① 예방대책

○ 소방·안전 설비 등 강화

- ▶ 안전기준 준수 : 아동복지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토록 지도

※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제27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이 되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책임관은 분야별(ex 소방, 건축물, 생활안전 등) 필수 안전업무 실무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시설 안전 점검 등 진행
-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 채용시 소방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우대하고, 기존 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자격증 취득 등 독려

▶ 안전관리 업무분장 구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사자 업무분장 안을 시설별로 구비하고 평소 관련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토록 조치

▶ 야간근무 지침 구비

- 대비가 취약한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 야간 근무요령 등 지침 안 마련하여 시행

○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소멸식 상품가입 원칙

○ 교육 훈련 활성화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준을 감안 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훈련시 가능한 소방관서와 협력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함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② 대응대책

○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

- ▶ 아동복지시설은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 병원 등과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
-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조속한 지원 등을 위해 시·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병원 지정

○ 시설 자체 안전점검 강화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 ▶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후 문제점은 보완하고 정비보완 기록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③ 복구대책

○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전원조치 계획 수립

- ▶ 관내 및 인근 시 동일 기능 아동복지시설로 전원

○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 인근 학교시설 또는 동일기능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

○ 시설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복구예산 편성 및 배정

○ 아동복지시설

- ▶ 초동보고 및 사고발생경위 등 파악관리
- ▶ 사고발생구역 통제선 설치관리 및 안내방송
- ▶ 자체구조반 가동하여 우선적으로 인명구조 및 후송조치

○ 관련부서(시 복지정책과)

- ▶ 사고발생 즉시 사고유형,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2차피해여부, 시설물 안전조치 여부 등 파악, 사고수습 대응조치
-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사고수습대책본부 즉시 설치 운영
- ▶ 유관기관(소방서·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 ▶ 사고 시설 보수 지도·감독 철저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사고 발생시 합동조사단 파견 · 대규모 재난발생시 市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시설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사고 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



아 동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체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 안전점검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	--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1. 목 적

- 청소년시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무재해에 목적을 두며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예방대책

-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 ▶ 비상연락망 및 관계기관 연락망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확인
- 시설물의 등급
 - ▶ 건축 및 토목 시설물은 시설물별로 등급(A-E)을 구분하여 관리·점검
 - ▶ 시설물별 관리계획 및 이력카드 작성
 - ▶ 시설물의 분류

○ 유형별 분류

- 건축 시설물(동별 건물)
- 토목 시설물(옹벽, 석축, 지하구조물)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승강기
- 급식시설
- 야외시설

○ 등급별 분류

- 1급 시설물
- 2급 시설물

○ 일상점검 실시

- ▶ 건물 전체의 부동침하 현상 확인
- ▶ 외벽 및 담장의 전도위험 부위 확인
- ▶ 옥상 물탱크 등 과적 여부 확인
- ▶ 외벽 균열 발생 여부 확인
- ▶ 기둥·보 등 주요 구조체의 균열·누수·철근 노출 여부 확인
- ▶ 옥상 배수구 주위 막힘 및 방수면 파손 여부 확인 등

○ 정기 안전점검 실시

- ▶ 시설물 주변 지표면 상태 확인
- ▶ 시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상황 확인
- ▶ 시설물의 부동침하, 변위·변형 확인
- ▶ 시설물의 균열 발생 여부 확인
-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노후화현상 확인
- ▶ 강재의 도장 및 내화피복 상태, 접합부 상태 확인

○ 계절별 안전점검 요령

- ▶ 석축·옹벽의 이상 유무 확인
- ▶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 확인
- ▶ 변위·변형 발생 유무 확인
- ▶ 균열·손상 발생 유무 확인
- ▶ 해빙기 건축물 부동침하 상태 확인
- ▶ 우기(건축물 지하 방수, 배수로, 건축물 외부 부착물 상태) 점검

○ 소방시설 안전점검

-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 ▶ 연 1회 이상 소방 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안전관리기관에 의뢰

○ 전기시설 안전점검

- ▶ 주기적 안전점검·순찰 실시
- ▶ 파손된 전기시설 즉시 개·보수 실시
- ▶ 전기시설 이상 발생 시 점검기관에 점검 의뢰
- ▶ 수매전 설비 및 발전설비 반드시 점검

○ 승강기 안전점검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승강기 관리
- ▶ 자체 관리규정 수립 및 정기 점검 실시
- ▶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 ▶ 비상열쇠 감시반에 상시 비치

○ 프로그램실 안전점검

- ▶ 프로그램실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 ▶ 프로그램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 프로그램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운영
- ▶ 프로그램실 관리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프로그램실 안전교육

- ▶ 안전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함
- ▶ 프로그램실 내 소화기 등 안전 장비의 사용법 및 비상구 위치에 대해 잘 알도록 교육

나. 대응대책

○ 대응 1단계

- ▶ 재난담당부서장이 「재난대책상황실장」이 되어 「재난대책상황실」가동
- ▶ 대형재난으로 확산 시 해당 부서장은 「재난대책상황실」을 격상시켜 「현장지휘본부」 조직 가동여부를 판단해 기관장에게 보고

○ 대응 2단계

- ▶ 기관장 책임 하에 「현장지휘본부」 본격 가동
- ▶ 현장지휘본부장은 기관장이 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상황보고 후 지침에 의거 각 반장을 총괄 지휘함
-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 재난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 ▶ 관심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1단계(주의)

- 근무시간 중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18:00~22:00) : 당직자 겸임
- 근무장소 : 주간 - 각 사무실, 야간 - 당직실

▶2단계(경계)

- 담당 부서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대상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직원 1명(교대근무)
- 근무시간 : 09:00~24:00 / 경보해제 시 비상근무 종료
- 근무장소 : 각 사무실 또는 자체 상황실 운영

▶3단계(심각)

-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 근무대상 :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검토
-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교대 근무
- 근무장소 : 자체 상황실

○ 태풍·폭우·대설·대응 발생 시

▶재난상황 정보 수집

- 유관기관 및 기상청 등 지속적 확인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및 각 부서에 예·경보상황 전파
- 전자시스템,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황 전파

▶재난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지역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 판단을 참조 대처계획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재난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재난대책본부 운영

▶각 부서별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지진 발생 시

- ▶ 지진발생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실내 집기 등 정리
- ▶ 전기배선, 가스 점검, 불안정한 부분을 수리
-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은 단단히 고정
- ▶ 크고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고, 선반은 벽에 단단히 고정
- ▶ 균열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고 전문가에게 문의·조치
- ▶ 건물의 기초와 건물 주변의 지반 상태 점검
-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 숙지
- ▶ 지진에 대비한 훈련 실시
-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 사전 파악
- ▶ 비상 물자 준비, 건물 주변의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

○ 화재 발생 시

- ▶ 효과적인 예방활동 및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 ▶ 신속한 재난 상황접수·보고체계 확립
- ▶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기 대응체제 구축
- ▶ 비상연락망 구축
-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지원체계 구축
- ▶ 2차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활동 실시
- ▶ 효과적인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 ▶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함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함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도록 함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도록 함
 - 손잡이가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감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가도록 함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림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

○ 황사 대응 요령

- ▶ TV,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경보 확인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음
- ▶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도록 함
- ▶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에는 긴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용 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함
-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음
-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음
- ▶ 가습기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함

○ 폭염 대비 요령

-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함
- ▶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함
- ▶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
- ▶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 숙지
- ▶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
- ▶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함

○ 시설물 붕괴 시

- ▶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건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야 함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함
- 부상자는 가능한 응급처리를 한 후 함께 탈출 함
-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야 함
-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하여 이동해야 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함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함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함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 않도록 함

▶ 잔해에 깔린 경우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함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해야 함
-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함
-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리도록 함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 안함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함
-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경우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함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않도록 함

다. 복구대책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

- ▶ 피해발생 기관별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비용 산정 후, 피해유형, 피해 규모, 재원분담, 복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구계획 수립
- ▶ 피해시설은 우선 재단에서 예비비를 지원하여 긴급 복구하고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에 원상 복구비 신청

3.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 수련관 2개소 : 만안 · 동안청소년수련관
- 문화의집 3개소 : 만안 · 석수 · 호계 청소년문화의집
- 상담복지센터 1개소 : 안양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2개소(포유 / 호숙)
- 주)현대엔지니어링(유스호스텔)

나. 추진일정

- 3월 : 각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5월 : 전 직원 안전교육 실시

1. 노인복지시설 안전대책

가. 현황

- 1)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환경상의 이유 또는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의거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나. 원인분석

보행 능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인 경우 화재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예방 및 모의훈련의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목표

- 1)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점검 매뉴얼 마련하여 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 2)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의뢰
- 3) 시설 종사자는 화재등 사고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 숙지
- 4) 시설 내 연소방지 시설 설비

라. 개선방안

1) 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내실 있는 시설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시설의 보험가입의무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훈련 및 교육실시,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6년 노인복지시설 무상안전점검 8개소 신청

□ 시설현황

(단위:개소)

계	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주거복지
	요양원	주.야간 보호	양로원
43	39	3	1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	1~2월
2/4분기	해빙기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3월
2/4분기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6월
3/4분기	점검 지적사항 조치실태 확인	7~8월
4/4분기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11월

2)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을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처리

- 시설 안전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 및 장비보강
 -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조치
 - 기타 경미한 사업은 시설에서 자체 예산(시설비)을 편성하여 추진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노인복지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과 홍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설에 전파
 - 시설은 각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소방계획, 피난계획 등)을 수립
- 시설 자체 정기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각 시설은 소방설비, 전기 및 가스시설, 기타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작성
 - 취약시설 즉각적인 보수, 정비로 위해요인 수시 제거
 - 각 시설은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발생 시 대응태세 준비하는 등 예방활동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각 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나) 대비단계

-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 시설 이용자에게 재난상황 정보 인지시키고,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 시설장은 응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 가능한 협조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병원) 지정
- 대응 복구장비 준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장비 준비

다) 대응단계

- 피난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각 시설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선 응급조치 후, 사고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 (주간 관련부서, 야간 및 휴일당직실)
 - 인명 구조, 구급활동 등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및 상황보고
- 긴급구조 및 상황 관리
 - 시설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피난방송준비, 피난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실시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시설 피해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 실시 및 소관부처에 복구요청
 - 전기, 가스시설 등은 이상 유무 전문인력에 의해 확인 후 조치
- 복구사업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예방활동 강화방안 마련

1-1. 장애인복지시설 안전대책

가. 현황

- 1) 장애인복지시설은 신체·정신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의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나. 원인분석

- 1) 우리시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市위탁운영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기능보강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시설 노후도	13	2	2	8	1	0

다. 목표

- 1)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점검 매뉴얼 마련하여 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 2)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의뢰

라. 개선방안

1) 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내실있는 시설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의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시설의 보험가입의무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훈련 및 교육실시,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무상안전점검 신청
 - * 2015. 12. 29. 기신청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	1~3월
2/4분기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4월
3/4분기	점검 지적사항 조치실태 확인	8~9월
4/4분기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11월

2) 재정사업(예산)

- ◇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 시설현황

계	이용시설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직업재활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유형별거주시설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13	2	2	2	1	1	1	1	3

- 시설 안전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 및 장비보강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
 -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치
 - 기타 경미한 사업은 시설에서 각종 공모사업 및 자체 예산(시설비)를 편성하여 추진
-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은 국·도비 기능보강 지원대상 시설로 매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 필요사업 신청
-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는 국·도비 기능보강 미지원 시설로, 도비 기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또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2/4분기	2016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2~6월
3/4~4/4분기	2016년 기능보강사업 정산 및 2017년 계획사업 예산 편성	7~12월
연중	2016년 국·도비 보조 기능보강사업 추가신청 및 추진	계획 통보시
	2017년 국·도비 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901	174	271	190	266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846	139	251	190	26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6	35	11	-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	-	9	-	-	-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장애인복지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과 홍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설에 전파
- 시설은 각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소방계획, 피난계획 등)을 수립

□ 시설 자체 정기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각 시설은 소방설비, 전기 및 가스시설, 기타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 작성
 - 취약시설 즉각적인 보수, 정비로 위해요인 수시 제거
- 각 시설은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발생시 대응태세 준비하는 등 예방활동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각 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나) 대비단계

□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 시설 이용자에게 재난상황 정보 인지시키고,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 시설장은 응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 가능한 협조체제 구축
- 사고 발생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병원) 지정

□ 대응 복구장비 준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장비 준비

다) 대응단계

□ 피난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각 시설에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선 응급조치 후, 사고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주간 관련부서, 야간 및 휴일 당직실)
- 인명 구조, 구급활동 등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및 상황 보고

□ 긴급구조 및 상황 관리

- 시설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피난방송준비, 피난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실시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시설 피해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 실시 및 소관부처에 복구요청
- 전기, 가스시설 등은 이상 유무 전문인력에 의해 확인 후 조치

□ 복구사업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예방활동 강화방안 마련

1. 목 적

- 점점 저연령화 되고, 광역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
- 학교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안양시민의 고유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기반 마련
- 단회기성으로 끝나는 예방교육이 아닌 회기와 내용을 강화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제고

2. 추진방향

-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주입식 예방교육의 차원이 아닌 상황극을 도입한 인지행동수정 상담 접근법을 통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 양성된 지도자별 보수교육, 사전회의, 평가회 실시

3.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내 용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
 -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표준화 보수교육, 사전회의 및 평가회
- 소요예산 : 33,300천원

1. 목적

- 식품의 생산·제조·수입·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지속추진
-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
- 건강한 식생활환경 확충으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2. 추진방향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기본안전 수칙 위주로 집중 점검

〈기본안전수칙 점검 항목〉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통】
 ①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②지하수사용 수질검사 ③방충·방서시설 기준 ④제조가공실 (주방포함)위생적 관리 ⑤자가품질검사 ⑥이물 혼입 ⑦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판매 조리·보관 ⑧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⑨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⑩음식물 재사용

- 음식점 위생관리, 제조업체 등급 평가, 기타 위생사각분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은 시기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계절, 명절, 학교 일정(개학, 방학, 수련활동), 과거 위반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실시
- 위해 우려가 높은(Risk-Based)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
 - 관내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 위반된 제품이 회수 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 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으로 상습적 위반사항 근절

기본안전 수칙으로 중점 점검

전략 위생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

주요 점검 분야	기획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위반을 높거나,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등	사회적 이슈, 위생 취약 우려시설 등	하절기 등 특정시기 사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이 높은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 프렌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유통기한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체 : 위생적 제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 종사자 건강진단, 영양사 고용, 유통기한 관리, 불법한약재 사용,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 등 ▶ 패스트푸드점 : 조리장 위생불량, 유통기한 관리 등 ▶ 농수산물 단순가공 업체 : 작업장 바닥 전처리,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처리 등 ▶ 원료성 농산물 : 백수오 등 원료성 농산물 생산재배단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등 : 학교급식, 대형식재료판매 어린이기호식품 위생점검 등 식중독 예방 ▶ 하절기 식품안전 점검 :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공원, 여름철 식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 부적합 원료, 자가품질검사 적정실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 식품접객업 : 원료 유통기한 관리, 잔반 재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식약 처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지침 제정·운영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 총괄 - 선행조사 등 유해물질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 기획·계통조사를 통한 정책감시 - 식품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 - 각종 지도·점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회수관리 총괄 - 광역적 식중독 안전관리 - 국내·외 위해정보의 수집·분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세부계획 수립·시행 - 지역내에서 제조·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 - 시설개선, 개인위생 등 기초위생안전관리 -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 지역내 위해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회수관리 - 지역내 식중독 안전관리 - 지역내 위해정보 수집·분석·관리 - 지역주민대상 식품안전 교육홍보

3. 현황

○ 식품위생업소 현황

[2016.1.1일현재, 단위:개소]

계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	식품첨가물	식품소분	식품여반	식품판매업							식품보존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류제조	집단급식소	
						계	식음료판매	자동판매기	유통전문	집단지점판매	단식판매	식품수판매		기타판매	냉장	동장			계
3,505	155	615	8	124	41	941	9	290	123	66	405	48	2	1,204	64	1,107	33	22	393

○ 식품접객업 현황

[2016.1.1일현재, 단위:개소]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7,755	1,217	5,767	106	402	198	65

4. '15년 추진실적 및 평가

가. 추진실적

○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개소]

구분 업종별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역			
			면적변경 마신고	퇴폐 변태	청소년 출입및 주류제공	건강진 단미필	기타	영업장 폐쇄	영업 정지	시정 지시등	과태료
계	3,544	377	127	3	59	27	161	57	109	153	58

○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역				
		시설	표시 기준	유통 기한	품 목 미보고	이물 혼입	기타	영업장 폐쇄	영업 정지	품목(류) 정 지	시 정 지시등	과태료
1,474	82	45	3	11	3	10	10	43	12	3	14	10

○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가공식품	기구용기	농수산물	조리식품등	부적합			비 고
						계	조리식품	가공식품	
계	2,194	180	7	238	1,769	8	2	6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개소]

구 분	점검소	위 반 소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역				비 고
			수입고품 미	기규위반	과대과	정당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휴업	고발	영업장 폐쇄	영업 정지	시정등 기타	
계	691	46	-	-	-	46	-	46	-	-	

5. 금년도 추진계획

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평가 : 신규·정기·재평가
- 출입·검사·수거등을 차등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향상

○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제조·가공업체 등의 지도점검

-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특별관리 업체 지정 관리
- 위생등급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와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이물관리

- 이물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조사·처리, 재발방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매일 접속하여 소비자 또는 영업자의 신고(보고)사항 확인
- 조사방법 : 소비자단계 조사 ⇒ 유통단계조사 ⇒ 제조단계 조사

나.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 지도·점검의 강화 및 주기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
 - 과거 위반이력, 업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 중점점검
- 위생취약분야 안전관리
 - 전통시장에 대해 지도·계몽·교육 등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
 -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
- 업종별 문제우려업소 집중관리
- 횃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 수족관수에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여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과조 청소, 정수장치, 설치 권장
- 음식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
 -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등
- 자율 활동반 불법행위 예방 및 동업자 조합 자율지도 활동 강화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합동 단속
- 하절기 위해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단속
 - 유통과정 중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 집중관리

다.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
 - 유통식품(수입식품 포함)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
 -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이를 제조한 업소 지도점검 강화
-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 소비자감시원 활용 연1회 점검
 - 무신고 설치운영 자판기에 대한 단속 강화

○ 식품등의 수거·검사

- 국민다소비식품 중 집중 감시 및 수거·검사 확대
- 식품 유해·우려물질 집중 수거검사
-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유통식품 년중 수시 수거

○ 허위·과대광고 관리

- 광고매체 모니터링[인터넷,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 모니터링정보망협업시스템운동을 통한 과대광고 행위 신속조치
-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라. 부정·불량식품 등 특별관리

○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 위해사고 사전 예방

○ 전국 합동단속

- 전국적인 식품 등의 제조·조리·유통·운반 등 동시 단속이 필요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
- 부적합이력이 높은 식품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중점단속

마. 식중독 예방 특별관리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 식중독 발생시 상시 신속 조사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 비상근무 실시(5월~10월)

○ 학교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위생지도·점검 강화

○ 소규모 급식소 특별 지도 점검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식품안전 관리 홍보

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월1회 지도점검
-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200m이내 부정·불량식품 퇴출 유도
- 무료 장난감 제공등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예방
 -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 ※ 영양사 고용의무 : 식품위생법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00명 이상
- 어린이 먹을거리 영양교육·홍보 강화

1. 자살관련 현황(2016. 보건복지부)

가. 우리시 자살사망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시·군 순위
전 국	31.2	31.7	28.1	28.5	27.3	-
경 기 도	29.5	30.5	27.0	27.9	25.7	-
안양시	24.5	28.4	21.5	20.7	22.2	24
	151	174	131	125	133	(자살자 수)
과천시	18.1	15.4	18.4	12.8	20.1	31
연천군	44.5	51.8	40.3	46.6	44.5	1

나. 우리나라 자살률 : 10만명당 27.3명(2014)

(단위 : 명, 명/10만명)

구분	2014년	2013년 대비 증감
전체 자살자수(자살률)	13,836(27.3)	591명(4.1%) 감소
노인 자살자수(자살률)	3,497(55.5)	374명(9.7%) 감소

다. 우리나라 자살 원인 (2014)

(단위 : 명)

계	정신질환	질병	합계	경제문제	기타
13,658	3,916	2,581	1,762	2,889	2,510

*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경찰 자체 분석 결과이므로 통계청과 차이가 있음

라. 우리나라 자살 수단 (2014)

(단위 : 명)

계	목매	가스중독	추락	농약	기타
13,836	7,150	2,125	1,949	1,072	1,540

2. 원인분석

(2015년 심리부검 결과 : 중앙심리부검센터, 보건복지부)

가. 분석개요

- 해외 문헌 연구, 심리부검 분석 등을 통해 자살의 위험요인을 11가지*로 구분하여 121명의 심리부검 대상자를 군집분석

* 직업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부부관계 스트레스, 질병 및 신체건강, 경제적 어려움, 기분장애, 알코올 관련 문제, 성장기 부정적 경험, 충동성, 사망 전 자살 관련 행동, 가족의 정신건강문제

나. 분석 결과

- (우울증미치료군) 자살자 본인이 우울증이 있지만 그 심각성을 본인·가족이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
- (문제음주군) 부모의 음주로 인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문제음주를 지속하는 집단
 - 음주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문제음주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
- (정신건강-경제문제동반군) 기저에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 빈곤 등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집단
 - 중장년층 남성이 많았는데, 대부분 정신건강에 취약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기피

3.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33	129	△4(3%)

4. 개선방안

가. 재정사업

-
- ◇ 정신보건센터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자살예방 전담팀 신설, 조직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

1) 주요내용

-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팀 신설 (2팀제 → 3팀제로 확대)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 2명
 - 노인자살예방사업 신규 추진
 - 지역자원 발굴 생명사랑지킴이 'gatekeeper' 양성, 교육
- 자살시도자 및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기 :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튼튼교실' 운영
 - 중·장년기 : 직장인, 임산부, 군인, 재취업자 등 자살예방교육
 - 노년기 : 노인 우울증 조기검진 및 등록 사례관리
-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
 - 생명사랑 협의체(17개기관)연대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연계
- 생명사랑 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 정신건강연극제 개최 및 정신건강 정보지 발간
 - 자살예방 포스터 공모전 및 노인자살예방 글짓기 대회
 -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 정신건강 강좌 개최

2)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계	4,905	965	965	965	1,005	1,005	
정신보건센터 운영	3,430	674	674	674	704	704	국:도:시 (14:16:70)
생명사랑프로젝트	421	81	81	81	91	91	도:시 (30:7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50	30	30	30	30	30	국:시 (50:5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50	50	50	50	50	50	
노인자살예방사업	650	130	130	130	130	130	도:시 (50:50)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대비 단계

□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 운영방법 :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상담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정신보건센터)로 연결
- 상담내용 : 자살위기,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

□ 자살시도자 위기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팀 배치

- 인 력 : 5명(팀장, 팀원4)
- 자살위기 대응 협력기관 간담회 : 연 1회
 - 정신보건센터, 만안·동안경찰서, 소방서,
 - 응급의료기관(응급실,중환자실)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샘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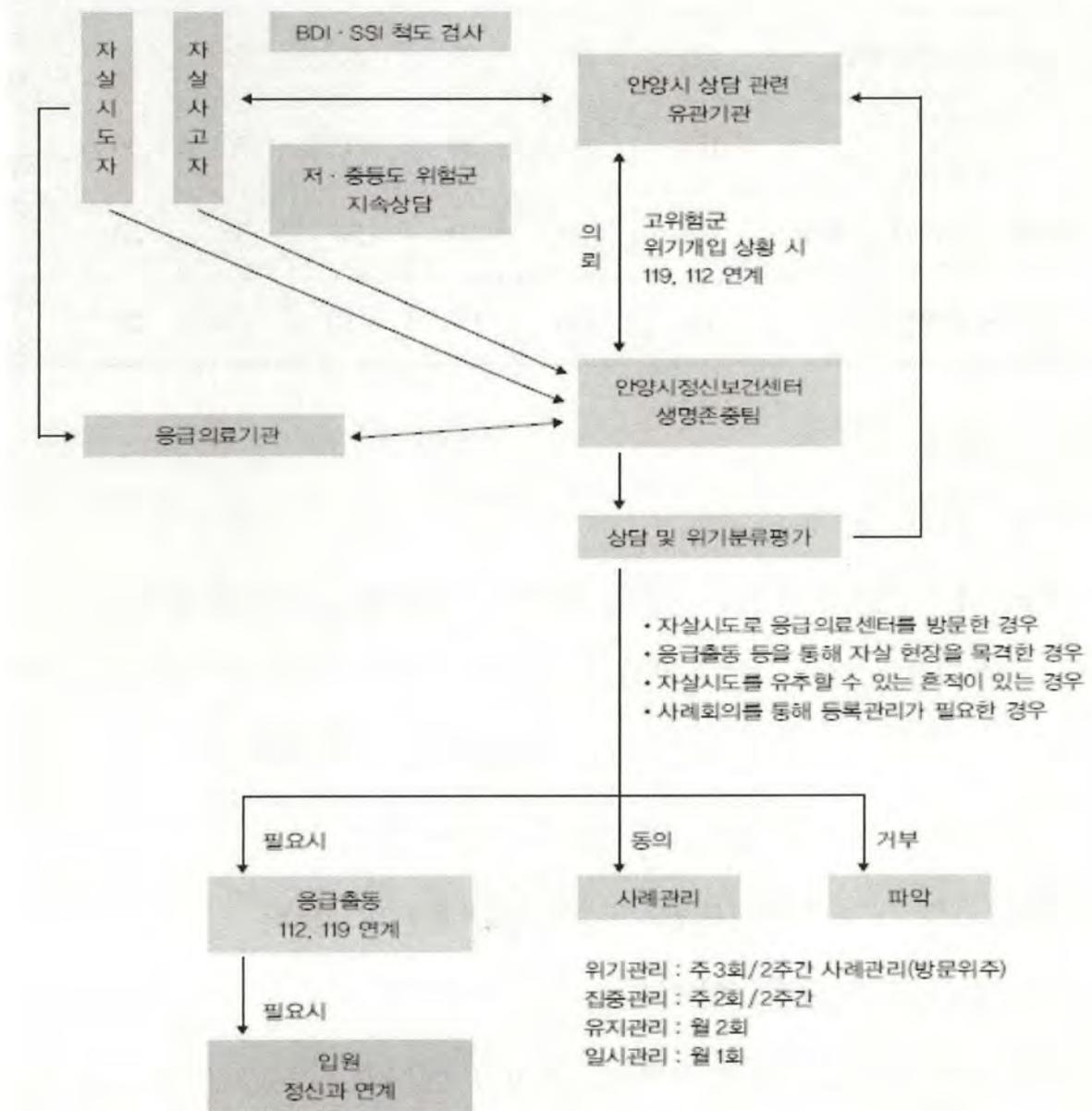
2) 대응 · 복구 단계

□ 자살 위기 개입

○ 자살위기자 발견 경로

- 응급실, 경찰서 및 소방서, 지역사회 민원, 정신건강상담기관

○ 자살위기 개입 서비스 체계도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시스템

○ 자살시도자 및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연 40만원 한/인), 노인우울증(연 20만원 한/인)

- 치료비 지원 시 센터 등록 후 사례관리 : 재발방지

Ⅲ.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



여 백

1. 재난상황관리

1-1. 목 적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 지진 등 대규모 복합 재난시
유관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시민재산과 생명을 보호.

1-2. 추진개요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목 표 : 초기대응역량 강화 및 협업가동체계 구축
- 훈련실시 : 4회
 - ▶ 4월 15(수) 10:00 ~ 11. 30 : 산불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 ▶ 5월 18일 ~ 5월 22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연계
유해화학 유출, 수해대비 훈련,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대피 훈련
- 주 관 : 중앙 국민 안전처와 연계하여 시 주관으로 실시
- 참 여 : 시 및 10개 유관기관(안양소방서, 동안경찰서 등)
- 중점사항 : 비상상황 대응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확인

1-3. 주요 훈련내용

- 재난안전대책 점검 및 재난대응 훈련
 - ▶ 비상소집훈련, 재난대응훈련 [유해화학 유출] (토론기반훈련)
-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및 현장 대응 훈련
 - ▶ 하천범람 수해대비 훈련,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대피 훈련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 ▶ 안전문화운동 워크숍,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익히기 캠페인 등

1-4. 추진계획

- 2016. 4월 : 훈련기획팀 구성·운영 및 훈련 기본계획 수립
- 2016. 4월 : 훈련 시행계획 수립(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등)
- 2016. 5월 : 훈련실시 및 평가

1-5. 기관별 연락처 및 주요업무

연번	기 관	전화번호	주요업무	비고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80-7216	◦ 학교 이재민 수용시설 사용 ◦ 학생휴교 협의 및 학생안전관리	
2	안양동안경찰서	478-7157	◦ 재난현장 교통통제, 범죄예방 등	
3	안양만안경찰서	8041-6145	◦ 재난현장 교통통제, 범죄예방 등	
4	안양소방서	470-0410	◦ 포괄적 재해 대비 지시 및 정보제공 ◦ 광역적 재난 지원 및 인근시 지원 등	
5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450-2233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복구 ◦ 가로등, 신호등통제 감전예방 및 복구	
6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390-7400	◦ 전기 안전점검 등	
7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259-3521	◦ 가스 안전점검 등	
8	KT 안양지사	477-0833	◦ 통신두절 복구 및 긴급복구 수습	
9	한국철도공사 안양역사	449-7788	◦ 철도시설 긴급 복구	
10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1588-2504	◦ 도로시설 복구에 따른 지원 협의 등	
11	GS 파워(주) 열병합발전소	420-2542 420-2529	◦ 난방시설 복구 등	
12	육군 제2506부대 (167연대본부)	431-5113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3	육군 제2506부대 (167연대 3대대)	459-0113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4	육군 제1580부대	468-5182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5	(주)삼천리도시가스	345-1324	◦ 가스공급 긴급지원 및 안전점검 등	
16	한림대병원	380-4125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7	샘안양병원	467-9710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8	메트로병원	467-9000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9	한성병원	452-0011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20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 중앙적십자봉사관	459-6410	◦ 긴급구호물자 지원	
21	안양시자원봉사센터	8045-2487	◦ 자원봉사자 지원	
22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389-5303	◦ 공영주차장시설 피해현황 파악, 상황관리 ◦ 지하철도 펌프유지관리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2-1. 목 적

- 재난발생 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에 대한 수용 및 구호활동 등을 신속·원활히 수행

2-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복지정책과

나. 지원기관 : 자치행정과, 식품안전과, 안양시 보건소, 청소행정과, 수도시설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 서부지사

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책팀장	김명숙	8045-2365	별도관리	
자 치 행 정 과	민간협력팀장	강범석	8045-2315	별도관리	
식 품 안 전 과	식품안전팀장	김광순	8045-2235	별도관리	
만 안 보 건 과	보건행정팀장	서문석	8045-3105	별도관리	
동 안 보 건 과	보건행정팀장	문두영	8045-4814	별도관리	
청 소 행 정 과	청소행정팀장	김의배	8045-5751	별도관리	
수 도 시 설 과	급 수 팀 장	유형열	8045-5663	별도관리	
안 양 과 천 교 육 지 원 청	경영지원팀장	함성진	380-7211	별도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 서부지사	고객지원부장	김 훈	390-7400	별도관리	

2-4. 관련 대응업무

- 대피 또는 대피소 수용을 시작하는 조건과 그러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지정
- 재난상황 동안 언제, 어떻게 대피소에 수용되고 대피소 수용이 종료되는지 절차 수립
-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동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피난민의 이동을 파악하고 지원
- 이재민 발생 즉시 사용가능한 이재민 수용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 방송 등을 통해 홍보
 - ※ 수용시설 안내도,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수용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
 -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화장실 및 간이목욕실 등 설치
 - ▶ 적절한 통풍유지 및 화재예방 완비
- 구호를 위한 조직체제 가동·운영
 - ▶ 지역구호센터(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등) 운영
 - ▶ 구호물자 배분센터, 지원팀 및 활동팀 설치·운영
- 긴급구호물품(예:위생키트, 청소도구, 유아보호물품) 배부 계획, 방법 및 배부기관 지정
- 대피소 시설안과 이동식 음식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
-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의 지원 조정
-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정보 제공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이재민에게 전달 등 응급구호 실시

- 대피소가 어떻게 피난민에게 재난상황을 알려주는지를 파악
- 재난피해자들에게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제공
 -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 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위생지도
- 대피동안에 피난민의 애완동물 등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법 안내
- 재난이 갖고 있는 위험(예:전염성 있는 쓰레기, 오염된 홍수물, 화학적 위험)에 노출된 피난민을 파악, 격리, 조치하고 대피소를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 응급구호를 위한 복권기금·재해구호기금 소요액 파악·지원
- 재난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
- 이재민의 귀가시기 조정 및 귀가 시 건강문제 등의 조치에 대한 안내
-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집과 지역 사회로의 귀환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절차와 자원 제공

[기관별 임무]

기 관 명	주 요 임 무
복 지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활동을 위한 조직체계 가동 운영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대피소 설정 및 운영 ○ 재해구호물품 구입, 조달 지원 ○ 대피소 수용 시작조건과 종료하는 규정 수립
자 치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수 ○ 응급구호품 이재민에게 전달 ○ 급식·세탁차 배치 운영 ○ 자원봉사자 휴식시설 운영지원
안 양 시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 의료지원반 편성·운영 ○ 의약품 구입 및 지원 ○ 대피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식 품 안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대피소 식품감시원 배치 및 급식 관리
청 소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화장실 제공
수 도 시 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소에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안 양 과 천 교 육 지 원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강당) 지원
전 기 안 전 공 사 경 지 지 역 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및 대피소내 비상 전기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3. 재난현장 환경 정비

3-1. 목 적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재난현장을 조기 정비하고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협력계획을 수립

3-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청소행정과

나. 지원기관 : 안양시 보건소, 육군 제1580부대, 육군 제2560부대 3대대

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팀 장	김의배	8045-5751	별도관리	
मान보건과	질병관리 팀 장	송금숙	8045-3194	별도관리	
동안보건과	질병관리 팀 장	김인자	8045-4489	별도관리	
육군 제 1580부대	대 위	홍진희	468-5181	별도관리	
육군 제2560부대 3대대	대 위	유근홍	459-0113	별도관리	

3-4. 관련 대응업무(기관별)

가. 청소행정과

- 1) 재해지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총괄업무 수행
- 2) 피해주민에게 쓰레기 수거일자, 장소 등 홍보
- 3) 임시 적환장 및 처리장 운영 등 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 4) 군부대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참고 1. 임시 적환장 및 처리장 현황

※ 참고 2.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2015. 2월)

나. 만안·동안 보건과

-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 2) 시민 보건 진단 및 치료

다. 군부대(육군1580부대 ,2560부대 3대대)

- 1) 군부대 보유 장비 및 인력 지원

《참고 1》 임시 적환장 및 처리장 현황

구분	동별	위치	면적(㎡)	비고
계	29			
만 안 구 (13)	안양1동	만안로 남부시장 철도변 주차장	1,512	
	안양2동	예술공원 내 주차장	3,716	
	안양3동	삼덕공원주차장	3,012	
	안양4동	삼덕공원주차장	3,012	
	안양5동	냉천 어린이 놀이터	2,740	
	안양6동	만안여성회관	1,187	
	안양7동	구) 동화약품 뒤 복개주차장	1,745	
	안양8동	아트센터 맞은편 주차장	1,485	
	안양9동	병목안 공중화장실 앞 공터	3,724	
	석수1동	예술공원 내 주차장	3,716	
	석수2동	석수체육공원 주차장	3,036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앞 안양천변 놀이터	1,237	
	박달1동	안양대교 및 안양천변 놀이터	1,546	
	박달2동	쓰레기 적환장	2,499	
동 안 구 (11)	비산1동	임곡교 밑 안양천변 놀이터	1,792	
	비산2동	중앙초등학교 뒤 안양천변 놀이터	752	
	비산3동	종합 운동장	2,443	
	부흥·달안동	학운공원	1,182	
	관양1동	아리랑맨션 앞 공용주차장	1,220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앞 공영주차장	2,188	
	부림동	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385	
	평촌·평안·귀인동	안양시자원회수시설	1,125	
	호계1·갈산동	자유공원 주차장	1,198	
	호계2동	안양교도소 주차장	3,500	
	호계3동	"	"	
범계·신촌동	중앙공원 주차장	1,250		

《참고 2》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11개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 화 번호	영업구역
중앙개발(합)	권정애	안양4동 707-3	447-4916	안양1,3,4,5동
동양환경(주)	전태수	안양8동 373-1	444-0139	안양6,7,8동
세명개발(주)	유치주	호계3동 666-2	455-2132	비산3,부림,평촌동
(주)성일기업	홍형주	석수3동 779-12	448-2559	석수2,3동
한우실업(주)	송영일	관양2동 1473-1 부림빌딩 401	422-2448	관양1,2동
(주)현대산업	김중환	관양2동 1473-1 부림빌딩 401	452-8504	평안,귀인,달안동
(주)안양위생	원영희	안양2동 857-48	468-2861	비산1,2,부흥동
원진개발(주)	원광희	관양2동 1488-7 우정타운 202호	426-0484	안양2,석수1동
남영개발(주)	양한두	비산3동 1026-11	388-9905	호계2,범계,신촌동
대정개발(주)	김춘자	안양6동 428-2 한솔주택상가 102호	464-9494	박달1,2,안양9동
합동환경(주)	이종선	호계1동 997(2층)	452-6427	호계1,3,갈산동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15개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동인환경	박복만	동안구 흥안대로 313(평촌동)	422-3830
뉴코아환경(주)	임동은	동안구 동안로 119(호계동)	386-1264
청녹환경(주)	김용석	동안구 흥안대로 133번길 34 2층77호 (호계동)	452-6427
제일환경(주)	이 세 윤	동안구 흥안대로 133번길 34 2층77호 (호계동)	452-6427
경기푸른환경(주)	김종무	만안구 안양로 115, 1312호 (안양동, 도정오피스텔)	441-8685
(주)매일환경	이근상	만안구 예술공원로 12-1 (안양동)	473-7878
승기환경(주)	민 병 호	만안구 석수로 42, 상가204호 (석수동)	472-5300
(주)이레농산	이승훈	만안구 석수로435번길 135 (석수동)	474-5252
(주)동진환경	박용호	동안구 시민대로 122 (호계동)	451-0079
탐에코텍	박소영	만안구 양화로 155, 3층 (박달동)	441-8272
다해산업	최선애	동안구 학의로 90 지하 101호 (비산동, 2단지셋별 상가)	423-6190
원진개발(주)	원광희	동안구 관악대로 480, 202호 (관양동)	426-0485
세명개발(주)	유치주	동안구 엘에스로 47번길 14-10 (호계동)	455-2132
중앙개발산업(주)	권정애	만안구 냉천로 177-1 (안양동)	445-4916
(주)진영실업	송영진	동안구 부림로 121, 지하 115호 (관양동, 동안프라자아케이트)	381-8874

○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17개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원진개발(주)	원광희	동안구 관악대로 480, 202호 (관양동)	426-0484
(주)익성산업	정영채	동안구 갈산로75번길 5, 402호 (호계동)	456-0654
(주)매일환경	이근상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405호(관양동, 신한대뷰오피스텔)	473-7733
(주)경기수질환경개발	김금수	동안구 갈산로75번길 5, 205호 (호계동)	421-0424
청녹환경(주)	김용석	동안구 흥안대로 145번길 21 (호계동)	429-7886
경기푸른환경(주)	김종무	만안구 안양로 115, 1312호 (안양동)	441-8685
승기환경(주)	민병호	만안구 석수로 42 상가204호 (석수동)	472-5300
원양통운(주)	조한윤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28, 502호 (호계동)	381-5157
(주)이레농산	이승훈	만안구 석수로435번길 135 (석수동)	474-5252
썬엘림산업(주)	김우룡	만안구 경수대로 1279 (석수동)	471-7356
(주)동진환경	박용호	동안구 시민대로 122 (호계동)	451-0079
(주)피앤제이환경자원	박문권	만안구 안양로343번길 92 (안양동)	449-6780
(주)정도하이텍	홍성초	동안구 흥안대로 533, 1004호 (관양동)	426-0774
중앙통운	정세미	경수대로537 (호계동, 창현빌딩506호)	455-4540
삼성환경산업	박재석	안양로 462-1 405호(석수동)	474-8272
희망자원	최종하	귀인로6(호계동)	427-8668
주)하이비지니스	최창욱	만안구 덕천로48 (안양동)	443-241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7개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만안구 엘에스로 252 (안양동)	443-2060
동방산업(주)	차상호	동안구 시민대로 281, 501호 (관양동)	421-4034
(주)정선환경	박명수	만안구 박달로 280 (박달동)	466-8491
경기환경건설(주)	민경선	동안구 시민대로 396-1, 307호 (평촌동)	422-3333
(주)태산기업	최태식	동안구 경수대로 472, 상가214호 (호계동)	457-9950
(주)태성개발	김 성	동안구 관악대로 257 은하빌딩 401호 (비산동)	382-9388
(주)종진개발	천명애	만안구 경수대로 1279, 1층 (석수동)	474-6667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5개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만안구 엘에스로 252	443-2060
동방산업(주)	차상호	관양2동 896외 4필지	421-4034
(주)정선환경	박명수	만안구 박달로 280	466-8491
경기환경건설(주)	민경선	동안구 흥안대로 457-27	425-0360
제일산업개발(주)	김재홍	만안구 연현로9번길 88	472-7351

4. 긴급 통신 지원

4-1. 목 적

가. 긴급 통신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재난예방과 안양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시 정보통신분야 긴급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상기능을 회복함에 있다.

4-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상 황 반	행정통신 지 원 반	주민대피소 지 원 반	민간통신망 지 원 반
1명	3명	3명	2명

구 분	업 무
대책반장 (통신운영팀장)	· 상황파악 및 대응 업무 총괄
상 황 반 (1명)	· 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대세 가동 · 부내·외 상황전파 및 협력체제 유지 · 위기관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접수
행정통신망 지원반(3명)	· 위기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 · 위기관리관련 보고서 작성 및 사후조치
주민대피소 지원반(3명)	· 위기관리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배포 · 대외협력 및 공조체계 유지 등 대외홍보와 관련된 사항
민간통신망 지원반(2명)	·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피해의 복구·수습 ·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나.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위 치)	역 활	비 고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450-2277 (호계2동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전력 제공 ▪ 통신망 우회루트 제공 	
KT안양지사	383-2600 (달안동 1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안양시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 임시거소 전화, 전용회선 가설 ▪ 유관기관 임시복구 협조 	
SK브로드밴드	344-8351/1600-0108 (평촌동 9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인터넷회선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LG U+	361-5812 (관양동 159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행정전화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티브로드 안양지사	1877-7000 (시민대로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소 TV회선 가설 ▪ 유관기관 공조 임시복구 추진 	

다. 긴급 복구업체 지정운영

구 분	지 정 내 용	업 체 명
광케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케이블 자재 ▪ 광케이블 부속자재(접속함체 등) ▪ 광케이블 설치, 접속, 개통 	CJ전기통신 대한전선 총판(수원) → 221-7114 뉴텔정보통신(관양동) → 420-4580
광전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 전송장비 ▪ 광 스위칭 장비 	뉴플러스정보통신(안양8동) → 444-0754
IP교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교환기, 전화기 등 	제이넷시스템즈 → 02-2294-0002
전자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서버, 프로그램 	솔루텍(서울) → 02-2169-0000
일반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 전화기 	맥슨(서울) → 02-2231-3607
방송영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 프로젝터 등 	세운씨엔텍 → 467-3024
컴퓨터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운영PC, 소프트웨어 	통합시스템유지보수(씨스게이트) → 426-8460 한길시스템(안양8동) → 441-9595

4-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시청	주무관	이금숙	전화 : 031-8045-2338 FAX : 031-8045-6500	별도관리	
KT	차장	조동곤	전화 : 031-381-1348 FAX : 031-381-0235	별도관리	
LG U+	부장	이상식	전화 : 031-361-5924 FAX : 070-4009-6369	별도관리	
SK브로드 밴드	매니저	고진수	전화 : 031-6266-7162 FAX : 02-6499-1499	별도관리	
티브로드 안양방송	사원	정재훈	전화 : 070-8188-1977	별도관리	

4-4. 관련 대응업무

가. 초기대응

- 내부통신, 외부통신, 주민신고로 재난발생 인지
- 상황반 비상근무 발령과 구체적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 운영 기간 :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 내부 행정문서를 통해 경과통보 및 추가피해 예방대책 시달

나. 전파, 보고

- 피해예상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취명하여 주민대비 발령
- 관내 주요통신사업자(KT, SK 등)에 통신망 피해발생 최소화 대비 통보
- 행정 및 민간통신분야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내역 보고

다. 대응조치

- 실무처리를 위한 통신지원반 업무분장 : 4개반 9명
- 통신망 복구용 자재확보 방안

①자체 비축자재	②통신사업자	③관내 협력업체	④제조사 문의
500m	KT 안양지사	안양시 사업참여 업체	대한전선 등

- 비상통신망 구축지원
 - 경기도청 ↔ 시청 간 영상회의시스템 상시가동 지원
 - 재난 통합지휘 무전기 5대 지원
 - 직원용 휴대전화를 이용 임시 통신망 확보 지원
 - 민방위 경보사이렌장비를 활용 안내방송 지원
 - 관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피해대응 협의 구성

- 통신망 복구 우회루트 확보 및 임시전력 사용요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김상훈	전화)031-450-2277 FAX)031-450-2279	paracool @kepco.co.kr	

-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체 상황반과 안양시 재난상황실 간 재난상황보고(통보) 채널 가동
- 방송통신시설의 피해/복구 파악 및 집계 현황 수시 보고
- 우선순위에 따른 신속한 복구 및 주요회선 긴급 우회소통 실시

라. 복구추진

- KT 임시 전용회선을 이용한 임시 행정통신망 복구추진
- 주민대피소 통신망 구축 : 일반전화 3회선 및 인터넷 50M이상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통신망 통신설비 임시 통합운용
- 피해상황별 통신망 복구(임시복구/가복구/본복구)

순 위	내 용
제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교환 및 일반전화 통신망 ▪ 자가통신망 및 광전송시스템 ▪ 경기도청 ↔ 안양시청 전용회선망
제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통신망, 팩스통신망
제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통신망, 영상회의시스템망

마. 완료상황 전파

- 재해상황실에 행정 및 민간통신분야 복구내용 통보
- 안양방송, 시 홈페이지를 이용 복구상황 홍보방송 실시

5. 시설피해 응급복구

5-1. 목 적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 원활한 응급복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을 수립

5-2. 책임부서

건축과, 하수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녹지과, 수도시설과, 고용경제과
교통정책과

5-3. 대응부서

1). 건축과

가.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건축과장	손진일	8045-2390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관리 총괄	
건축행정팀장	이정호	8045-2394	안전점검 상황관리 총괄	
시설6급	권유태	8045-5634	안전점검 상황관리	
시설7급	박종일	8045-5634	안전점검 상황관리	
행정7급	최미자	8045-2391	안전점검 상황관리	
건축허가팀장	서준형	8045-2392	피해조사 업무 총괄	
시설7급	강창우	8045-5635	피해조사 업무 상황관리	
시설7급	김주섭	8045-2395	피해조사 업무 상황관리	
시설8급	박창은	8045-2396	피해조사 업무 상황관리	
건축디자인팀장	권영일	8045-2040	응급복구 업무 총괄	
행정7급	이관희	8045-2143	장비지원 업무 상황관리	
사무운영 8급	양병용	8045-5637	장비지원 업무 상황관리	

나. 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만안구청	건설과 재난방재팀	8045-3510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관리 지원	
동안구청	건설과 재난방재팀	8045-4536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관리 지원	
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478-7356	교통통제, 사망·실종자 확인 재난위험지역 예방순찰활동	
만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8041-6356	교통통제, 사망·실종자 확인 재난위험지역 예방순찰활동	
안양소방서	방호구조	470-0120	재난구조반 인명구조활동 실종자 수색 협조	
한국전력공사	설비관리	450-2285	침수지역 감전사고 사전조치 피해 송·배전선로 신속복구	
(주)삼천리 도시가스	중부안전관 리팀	454-3002	피해지역 가스누출 사전조치 가스공급 관리 및 정비지원	
KT 호계지사		385-0060	피해예방 홍보, 피해시설 신속복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기획총무실	253-4551	피해지역 보수 건설업체 연계지원	
안양건축사 협회		445-0500	피해지역 붕괴 위험건물 순찰 및 안전점검	

다. 안전점검반 편성표

구분	점검반	인력편성	점검업무	비고
3개조	7개반	총인원 : 50명 건축사 10명, 구조기술사 5명, 공무원 35명		
시청건축과 (A조)	3개반	건축사 10명 구조기술사 5명 공무원 15명	- 유실, 전파, 반파된 가구 긴급안전점검 - 공사중인 건축공사장 점검	점검반별 담당구역 지정
동안구청 건설과 (B조)	2개반	공무원 10명 (동 주민센터 협조)	-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상황 확인 및 주민출입통제 실시	
만안구청 건설과 (C조)	2개반	공무원 10명 (동주민센터 협조)	-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상황 확인 및 주민출입통제 실시	

라. 안전점검반 활동내용

- 안전점검반 구성(3개조 7개반 50명)
- 재난상황 유지 : 피해주택에 대한 점검보고서 취합 및 상황유지
- 안전점검반 활동
 - ▶ 반파 및 침수 가구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
 - ▶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위험주택에 대한 주민 출입통제활동 실시
 - ▶ 피해지역과는 별도로 관내 공사중인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 ▶ 점검 차 조사결과에 대하여 재난상황본부에 실시간 보고하여 피해 주택에 대하여 사후조치 이행

□ 안전점검반

구분	성명	경력 및 직위	연락처	비고
건축	조철호	건축사협회 회장	별도관리	
"	조광희	대림대 교수	별도관리	
"	최아사	계원예술대 교수	별도관리	
"	이희수	예원건축사사무소 소장	별도관리	
"	김자영	고려대 조교수	별도관리	
"	권영규	건축대학원	별도관리	
"	어정연	계원예술대 교수	별도관리	
"	국중현	하늘건축사사무소 소장	별도관리	
"	명광재	성지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별도관리	
"	이민자	벽진건축사사무소 소장	별도관리	
구조	김대현	연성대학교 교수	별도관리	
"	이상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별도관리	
"	주동현	구조기술사	별도관리	
"	조영상	한양대학교 교수	별도관리	
"	김장훈	아주대학교 교수	별도관리	

2) 하수과

가. 담당부서·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안양시	하수과	김정현(2451)	상황연락, 기상예보 청취, 유관기관 연락	
		김영배(2454)	-	
		박정옥(2525)	-	
		노홍주(5165)	-	
		김석태(2524)	상습침수 지역 점검, 순찰 및 임시복구	
		박민용(2289)	-	
		소의수(2526)	-	
		이지한(2569)	-	
		박성호(5166)	-	
		김갑순(2615)	-	
		이주향(2528)	-	
		박완신(3531)	-	
		심기호(3533)	-	
		이미진(3534)	-	
		윤상신(4434)	-	
		안상표(4537)	-	
		윤선영(4381)	-	
		김재철(2527)	안전통제	
		김석태(2524)	-	
		배성원(2452)	-	
강연진(5168)	-			

기관명	담당자(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삼천리 도시가스	031)345-1324	재해지역 도시가스 시설물 보수	
한국전력공사	031)450-2114	재해지역 전력시설물 보수	
한국통신공사	031)382-0007	재해지역 통신시설물 보수	
한남건설	031)459-3136	재해지역 하수시설물 응급복구(협력업체)	

나. 관련대응 업무

1) 재난발생 전 대응계획

- 기상예보 청취, 비상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확인
- 상습침수 지역 일제 점검
- 필요시 2단계 전환 준비

2) 재난발생 중 대응계획

- 순찰강화
- 배수불량지역 등 응급복구 현황 파악 및 긴급 조치
- 하수과 비상상황실 및 시 재난상황실 상황 보고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인원 및 장비 준비 확인 등 협조요청

3) 재난발생 후 대응계획

- 전직원 동원령 하달
- 재해발생지역 안전조치
- 유관기관 담당자 파손지역 사전조사
- 협력업체 복구 작업 실시
- 하수과 비상상황실 및 시 재난상황실 처리결과 보고

3) 도로과

가. 담당부서·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임무	비고
안양시	도로과 (도로정비팀)	이기돈 8045-2433	◦ 시설물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의 -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등	
	도로과 (도로정비팀)	김진호 8045-5692	◦ 도로시설물(표지판)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추진	
	도로과 (도로정비팀)	박갑주 8045-2424	◦ 도로시설물(교량)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추진	
	도로과 (도로정비팀)	사기영 8045-5698	◦ 도로시설물(육교)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추진	
	도로과 (도로정비팀)	김화진 8045-5699	◦ 도로시설물(가로등)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추진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02-2110-6876	◦ 안전관리 및 재난 관리 시행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02-2225-8114	◦ 도로시설 복구에 따른 지원 협의 등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53-4551	◦ 도로시설 복구에 따른 지원 협의 등	
육군 제1580부대	재해복구	지원과 (031-468-5181)	◦ 재해복구 지원 - 굴삭기3, 덤프트럭5	
대광건설		473-3917	◦ 재해복구 지원 - 덤프트럭1	
(주)신주건설		조병주 031-444-0453	◦ 도로 응급복구 지원 - 덤프트럭4, 백호2	
대영건설 중기	중기부	444-3363 444-3363	◦ 재해복구 지원 - 백호우 2	
정선골재	중기부	447-9777	◦ 재해복구 지원 - 백호우 2, 덤프트럭 2	

나. 관련대응 업무

1) 재난발생 전 대응계획

○ 민간·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 피해발생 즉시 동원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준비 협의
- ▶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순찰조 운영(반장 : 도로시설팀장)
 - ▶ 4개조 8명(동안 2개조, 만안 2개조)
 - ▶ 임무 :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등 점검
 - ※ 절토사면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2) 재난발생 중 대응계획

- 수해취약시설 (교량, 위험도로사면) 순찰
 - ▶ 도로시설팀장 등 3개조 6명
-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조치 시행
 - ▶ 도로정비팀장 등 3개조 6명
- 피해발생 구간 차량통행 금지 조치
 - ▶ 도로행정 팀장 등 2개조 4명
- 응급복구업체 투입준비 《덤프(15톤) 10대, 백호 2대》
 - ▶ (주)신주건설 : 덤프(15톤) 4대, 백호 2대
 - ▶ (주)대광건설 : 덤프(15톤) 1대,
 - ▶ 육군제1580부대 덤프(15톤) 지원 5대

* 부족 인력·장비·자재를 파악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3) 재난발생 후 대응계획

《 도로 응급복구 》

- 응급복구 업체 투입 복구공사 시행
 - ▶ 항구복구 대책 수립 시행 및 재난관리 기금 사용협의
- 도로파손으로 인해 차량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이용
- 도로유실 및 도로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쓰레기 조치
 - ▶ 쓰레기 조치완료 후 대중교통 통행재개

4) 하천관리과

가. 담당자별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임무	비고
(주) 유수	대표 : 이정남 소장 : 이건수	☎ 381-6797~8	장비, 인력 피해복구 (연간단가업체)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안경찰서	경비작전	최수환 (479-7153)	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만안경찰서	경비작전	조필구 (8041-6156)	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안양소방서	방호구조	이강산 (470-0412)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실종자 수색 등	
한국전력 공사안양	설비관리	허용호 450-2284	재난지역 감전사고 사전조치 등	
대한건설협회		배정환 253-4551	재난지역 보수업체 신속 지원 등	
대영건설중기	중기부	444-3363	응급복구장비 긴급지원 - 백호2대	
경기환경건설	관리부	425-0360	응급복구장비 긴급지원 - 백호2대, 덤프트럭3대	
육군 제1580부대	지원과	468-5181	응급복구장비 긴급지원 - 백호1대, 도자2, 덤프트럭28대	
육군 제2506부대	군수과	470-1111 470-1300	응급복구장비 긴급지원 - 덤프트럭5대	
한국 가스공사	안전관리실	400-7233 400-7315	재난지역 가스누설 점검 및 복구 등	
KT안양지사	설비관리팀	471-0185	재난지역 통신시설 점검 및 복구	

나. 관련대응 업무

1) 재난발생 전 대응계획

○ 관할 구청별 하천순찰

▶ 하천순찰 구청별 2개조 → 4개조/8명

▶ 호우에 따른 순찰 중 하천 세월교, 징검다리 통제 필요시 조치

○ 하천관리과 상황근무 (반장 : 하천행정팀장)

▶ 하천행정팀장 등 2인

- 비상연락망 정비
 - ▶ 담당자별 연락처 및 주요임무 확인
 - ▶ 민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2) 대비단계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유관기관 등 통보
 - ▶ 하천복구 업체((주)유수) 장비 및 인력 비상대기 협의
 - ▶ 대영중기 등 2개 업체 응급사항 발생 대비 장비 비상대기 협의

3) 대응단계

- 하천CCTV로 하천수위 집중 확인
- 하천 출입통제(Safe Line 설치)
 - ▶ 세월교 8개소 및 징검다리 16개소 우선 통제 실시
 - ▶ 기 지정되어 있는 세월교 및 징검다리 관리자에게 우선 연락 후 관할 구·동 직원 현장 즉시 출동하여 조치
-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제방유실 위험지역(안양천 하류 지역 등) 발생 염려지역 조기 발견 및 현장대기 상황수시 보고
- 피해발생시 피해복구계획 강구
 - ▶ 하천복구 업체((주)유수) 장비 및 인력 비상대기 협의
 - ▶ 대영중기 등 2개업체 응급사항 발생시 장비 요청
 - ▶ 재해복구 자재 대기

4) 복구단계

- 하천시설물 파손에 따른 응급복구 시행
 - ▶ 복구업체 : (주)유수
 - ▶ 장비 및 인력 : 백호4대, 덤프12대, 복구인력 투입
 - ▶ 관리인력 : 책임자 현장상주 관리감독(하천관리팀장), 사무실 하천행정 팀장 상황보고
- 응급복구후 더 이상 기상악화 등이 없는 경우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 항구복구 토목 조치
 - ▶ 지역재난대책본부 재난관리기금 사용 협의

다. 돌발성 인명피해우려지역(징검다리, 세월교) 현황

번호	지구명	지역	피해예상지역	지정유형	현장관리자	비고
1	미룡지구	비산2동	학의천 미룡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조남복	
2	꿈의그린지구	비산2동	안양천 꿈의그린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	
3	학운지구	비산3동	학의천 학운공원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김진배	
4	비산지구	비산3동	학의천 부광빌라, 부안초교 부근	하천지역 (징검다리)	"	
5	수정지구	관양1동	학의천 수정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이남수	
6	호계지구	호계2동	안양천 한마음자동차정비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김청수	
7	중앙초교지구	비산2동	안양천 중앙초교 뒤	하천지역 (세월교)	조남복	
8	비산교지구	비산2동	학의천 쌍개울 합류부	하천지역 (세월교)	조남복	
9	평촌정보고지구	부림동	학의천 평촌정보고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김천권	
10	대한교지구	관양2동	학의천대한교상류	하천지역 (세월교)	이기환	
11	대릉지구	관양2동	학의천 대릉테크노 15차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	
12	인덕원지구	평촌동	인덕원대우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한재교	
13	진흥지구	안양1동	안양천 진흥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세월교)	오현구	
14	대우아파트지구	안양2동	안양천 대우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세월교)	임병선	
15	제일산업지구	석수2동	안양천 제일산업 주변	하천지역 (세월교)	정병식	
16	연현지구	석수2동	안양천 연현마을 두산위브A 주변	하천지역 (세월교)	"	
17	안양대교지구	안양2동	안양천 안양대교 주변	하천지역 (세월교)	임병선	
18	덕천교지구	안양7동	안양천 덕천교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원재섭	
19	뜨란체지구	안양1동	안양천 뜨란체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오현구	
20	래미안지구	안양1동	안양천 래미안아파트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오현구	
21	양명고지구	안양2동	안양천 양명교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임병선	
22	박석교 지구	박달1동	안양천 박석교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정기서	
23	석수초교지구	박달2동	안양천 석수초교 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박창규	
24	삼봉초교지구	박달2동	안양천삼봉초교주변	하천지역 (징검다리)	"	

5) 녹지과

가. 목 적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함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부서

직위(급)	성명	핸드폰 번호	비고
녹지과장	강명구	별도관리	
산림휴양팀장	권오영	별도관리	
녹지관리팀장	김귀배	별도관리	
녹지8급	이남일	별도관리	
운전7급	천춘식	별도관리	
녹지8급	이승아	별도관리	
녹지9급	성현직	별도관리	

○ 지원부서

직 위(급)	성명	핸드폰 번호	비고
만안산림녹지팀장	방형수	별도관리	
녹지7급	김종철	별도관리	
동안산림녹지팀장	윤석환	별도관리	
녹지7급	최복기	별도관리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조화택	042-481-4270	별도관리	
경기도	산림과	이정수	8030-3532	별도관리	
만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최용석	8041-6352	별도관리	
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한석재	478-7352	별도관리	
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	박규태	470-0401	별도관리	
대한건설협회		노승철	259-9900	별도관리	
에덴환경조경		이규석	445-7806	별도관리	
은하종합조경		이중인	388-8384	별도관리	
그린조경		이학중	449-7999	별도관리	
미림환경조경		박성봉	384-0635	별도관리	

라. 관련 대응업무

- 1) 유출된 토사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 외부 반출 조치
 - 응급복구 업체 에덴환경조경 등 2개 업체
 - 백호우, 덤프트럭 이용 유출된 토사 외부 반출
- 2) 전도된 가로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현지 재 식재하고,
그 외의 수목은 제거
 - 응급복구 업체 그린조경 등 2개 업체
 - 백호우, 전기톱 이용 가로수 정리

마. 항구복구는 별도계획 수립추진

- 재난관리기금 지원요청 등 협의 → 지역재난대책본부

3-6. 수도시설과

가. 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임무	비고
안양시	청계정수	이경한 8045-2591	◦수돗물 정수량 및 배수지관리 협의	
"	포일정수	우창호 8045-5351	◦수돗물 정수량 및 배수지관리 협의	
"	비산정수	이광재 8045-5830	◦수돗물 정수량 및 배수지관리 협의	
이원건설	긴급복구	이승희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오성건설	긴급복구	천계화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세호개발	긴급복구	이광수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대광건설	긴급복구	최덕일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한남건설	긴급복구 등	이덕래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정우기공	긴급복구 등	박병춘 별도관리	◦수도시설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	
보성주철	복구자재	이정운 448-3600	◦수도 응급복구 자재 등	
청원금속	복구자재	김혜미 385-7677	◦수도 응급복구 자재 등	

나. 관련 대응업무

1) 재난발생 중 대응계획

- 수도시설 피해 현황 파악(응급복구반)
- 피해지역 관련 자재를 파악 응급복구시 이동조치
 - ▶ 보성주철 : 수도관 및 관련부속 준비
 - ▶ 청원금속 : 수도밸브 등 관련부속 준비

- 응급복구 업체 이동준비 (응급복구반)
 - 《 총계 : 백호4대, 덤프5대, 배관공 9인 》
 - ▶ 대광건설 : 백호 1대, 덤프2대, 배관공 3인
 - ▶ 정우기공 : 백호 1대, 덤프1대, 배관공 2인
 - ▶ 한남건설 : 백호 1대, 덤프1대, 배관공 2인
 - ▶ 오성건설 : 백호 1대, 덤프1대, 배관공 2인
- 단수지역 긴급 비상급수 준비 (비상급수반)
 - ▶ 수자원공사 병입음료수 긴급지원 요청
 - ▶ 비상급수 차량 물 운반 준비
 - 안양시 급수차량(3톤) 2대, 트럭 10대(1톤 물탱크 이동)

2) 재난발생 후 대응계획

- 수계조정
 - ▶ 수도관 파손구간 차단(제수밸브 조절)
 - ▶ 단수구역 축소 : 수도관 파손구간
 - ▶ 관로복구 완료시 통수작업 실시
- 수도시설 응급복구(당일복구 원칙)
 - ▶ 현장 교통통제 1차 안전확보 → 2개조/4명
 - ▶ 복구업체(4개 업체) 현장투입 → 백호4대/덤프5대
- 단수지역 비상급수
 - ▶ 급수차량(3톤) 2대, 임대트럭(1톤)10대
- 이재민 수용시설
 - ▶ 수자원공사 병입 음료수 지원 : 1인 2ℓ

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업체

상수도 누수발생시 연락처 : 수도시설과 누수방지팀 이성호, 구자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안양동(1구역) ○ 복구업체 : 정우기공 ○ 사 장 : 박 병 춘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박 병 순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박달동, 석수동(2구역) ○ 복구업체 : 이원건설 ○ 사 장 : 이 승 희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윤 진 영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박달동, 석수동(3구역) ○ 복구업체 : 오성건설 ○ 사 장 : 천 계 화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천 창 완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호계동, 평촌동(4구역) ○ 복구업체 : 성진건설 ○ 사 장 : 윤 경 열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남 삼 희 연락처 별도관리

라 급수불량 민원처리 업체

* 가정집 급수불량 및 가압장내 민원처리 : 급수팀 손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안양동(1구역) ○ 복구업체 : 정우기공 ○ 사 장 : 박 병 춘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박 병 순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박달동, 석수동(2구역) ○ 복구업체 : 예주건설 ○ 사 장 : 이 승 준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이 보 선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박달동, 석수동(3구역) ○ 복구업체 : 세호개발 ○ 사 장 : 이 광 수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신 현 광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역 : 호계동, 평촌동(4구역) ○ 복구업체 : 대광건설 ○ 사 장 : 최 덕 일 연락처 별도관리 ○ 현장소장 : 송 봉 진 연락처 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관내(증압장 18개소) ○ 복구업체 : 협선기계 (현장소장 : 연락처 별도관리) 	

7) 고용경제과

가. 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 임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임무	비고
경기	재난대책과	이기민 231-0346	소관시설 피해,응급복구 상황관리 총괄	지원기관
	공정경제과	백현수 8030-2984 오승준 8030-2983	소관시설 피해,응급복구 상황관리 총괄	지원기관
	친환경 농업과	김동호 8008-4435	◦ 농가시설물 피해·응급복구 상황관리 총괄	지원기관
농협	안양시 농정지 원단	김광욱(단장) 380-0822	◦ 농작물 복구 및 현장작업 지원	지원기관
		신도희 380-0822	◦ 피해상황 정밀 조사 후 항구복구 및 보상지원	

나. 관련 대응업무

1) 재난발생 전 대응계획

- 비상연락망 정비
- 취약시설 현장예찰 및 주요시설물(펌프, 송배전시설 등) 가동·점검 현황 파악
- 재난 피해 대비 특별지시 및 계도
 - ▶ 비닐하우스, 낙과(포도 등), 전통시장 캐노피 등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발생 우려 시설 중점 계도

2) 재난발생 중 대응계획

- 시설·기능별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 ▶ 소상공인 분야, 전통시장 분야, 농림분야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발생 후 대응계획

- 사유시설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재해구호기금 지원 요청 및 지원체계 가동

8) 교통정책과

가. 목 적

- 재난상황 발생시 파손된 각종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1) 안양시(책임기관)
- 2) 경찰서(지원기관)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1) 안양시(책임기관)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박공복	031-8045-2295		주
"	주무관	기우순	031-8045-5645		부

2) 경찰서(지원기관)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양민석	031-478-7356		주
"	시설담당	홍순민	031-478-7152		부
만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향수	031-8041-6301		주
"	시설담당	김병국	031-8041-6152		부

3)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업체

업체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보국전력	차장	최홍준	별도관리		만안구
금남전기전력공사	부장	김해룡	별도관리		동안구

라. 관련 대응업무

1) 안양시(책임기관)

- 재난 등으로 각종 교통안전시설 파손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후 조속한 보수업체를 통한 시설복구 실시 등

2) 경찰서(지원기관)

- 시설복구 완료시까지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배치 등 협조체계 구축 등

9) 동안구 건설과(공동구 재난상황 관리)

가. 목적

- ▶ 공동구(상수·통신·전력) 시설물의 재난 및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한 예방·대책수습으로 신속한 도시기능 회복

나. 책임 및 지원기관

- 1) 책임기관 : 안양시
- 2) 지원기관 : 점용(유관기관) 및 군포전력지사

다.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직 급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8급	박종진	8045-2686	hi7749@korea.kr	
한전 안양지사	직원	안재성	450-2383	jsa831@kepcoco.kr	
KT안양지사 CS부CM팀	차장	배세희	385-0060	sehee.bae@kt.com	

라. 관련 대응 업무

- 1) 점용시설물 점검 및 보수
- 2) 비상복구 반 편성 운영

2.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2-1. 상수도

- 1) 밸브차단 및 조정
- 2) 비상급수 실시
- 3) 자체복구 반 및 협력업체 긴급복구 실시

2-2. 전력

- 1) 사고구간 분리 및 건전 구간 송전
- 2) 자체복구 반 및 협력업체 긴급복구 실시

2-3. 통신

- 1) 이원화망 절체 및 우회루트 구성
- 2) 자체복구 반 및 협력업체 긴급복구 실시

3. 재난대응 업무별 훈련계획

3-1. 방호훈련 : 테러관련 방호진단, 전술토의 등(군과 연계)

- 1) KR/FE훈련(3월)
- 2) 을지훈련·향방작계 기본훈련(8월), 화랑훈련(10월)

3-2. 소방훈련 : 소방합동(화재진압) 훈련(6월)

3-3. 재정투자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시설비(구조물, 시설물)	267,000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214,500	매5년마다 실시
공동구 정기점검	8,100	반기별 1회
안전관리대행(전기, 소방)	17,692	월 점검

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6-1. 목 적

- 가스, 전기, 유류 등 지역내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을 수립한다.

6-2. 복구대책

가.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소관분야의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재난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수습
본부에서 『재난합동조사반』의 업무를 지원함
 - 조사반 편성『가스사고 합동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유류
사고 합동조사반』 등
- 합동조사반의 임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파악
 - 피해시설 복구대책 수립(우선순위 결정)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재난합동조사반 구성 및 임무]

구 분		구 성	주 요 임 무
재난합동조사반		- 녹색성장과장 (에너지관리팀장)	- 소관분야 업무총괄
분야별 조사반	전기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전기담당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관분야 대응 및 복구 조치 수립·시행
	가스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가스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관분야 사고조사 및 보고
	유류사고 합동조사반	- 에너지관리팀 석유담당 - 안양소방서	-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 대책 관련사항

나.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수립

○ 재난발생원인·피해상황·책임소재 조사

- 수습반의 초동출동시 재난발생원인·피해상황·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파악, 근거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 기록 철저
- 사후 배상(보상) 문제를 감안하여 전문가 투입, 신중 대응

○ 피해자 대표와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금 지급·정산

- 법에 규정된 보험 외에도 문제야기 우려시설 등에는 임의보험 적극 가입 보상대비
- 피해보상·협상전문 변호사 및 법률구조 전문단체와 협력협정 체결하여 효율적 대응
- 책임자를 규명,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다.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상황발생단계

- 긴급복구요원 비상소집 및 초동 조치반 현장 투입
-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확보 및 지원

○ 상황안정단계

- 사고현장에 복구지원대책반 편성·운용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 복구활동 확대에 따른 인원·장비·물자 추가투입, 복구활성화
- 2차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순시, 각종 안전보호 조치 강화
 - 사고 주변시설에 대한 이상유무 안전점검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용 계도·홍보
 -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 정상가동을 위한 신속한 후속지원 조치(유관기관 협의)
 - 피해기업과 이재민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의무이행법률 적용시기 지연·완화 및 납입수수료 면제·경감 적극 검토
 - 신속한 복구 완료로 피해기업과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방안 강구
- 이재민 발생시 임시수용장소 설치 지원
 - 전기 및 가스시설의 우선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

라.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 재난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 평가
 - 재난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필요시 사고조사 실시
 - 재난복구 수범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포상 반영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재난복구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미비점 보완

마. 유관기관 상호 협력 복구대책

1)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

- 시설 피해상황 접수
- 피해 내용과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상황 확인
- 시설 복구대책 관련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안전공사, 공급사등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

2) 초기 피해확산 방지조치

- 긴급 복구할 본대 도착 전 응급 조치반 긴급편성 출동
- 응급 조치반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제어 활동전개
- 피해지역 경계활동 동시에 주변지역 경계 인력배치 및 교통통제 실시

3) 인명구급 및 구조조치

- 부상자 발견시 응급조치 등 현지 응급구호활동 전개
- 중환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근병원 이송
- 병원 구급차 출동과 의료인력 활동협조

- 4) 소방차 화재진압 및 피해지역 경계
- 피해지역 초기 자체 진화활동 전개
 - 소방차 도착전 응급조치반이 피해지역내 주민과 협조
 - 자체 진화활동을 전개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소방차 출동 긴급 화재진압 전개
 - 소방차에 의한 원활 화재진압 되도록 주변지역 경계 및 소통 협조 조치(차량 및 인근주민 통제)

5) 긴급 복구작업 개시

- 긴급복구반 종합복구 활동전개
 - 소요인력, 장비, 자재 확보한 긴급복구반이 본격 복구 활동전개
 - 최초 응급조치반은 작업인계 및 긴급복구반의 복구작업 협조

6) 복구작업 완료 - 상황종료

- 공급 확인(복구완료 선언)
- 관련 주민 등에 복구완료 홍보
- 복구상황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안내
- 관련기관 복구작업 완료보고 및 작업장 정리

[복구대책기관별임무]

기 관	임 무
안양시 녹색성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제
안양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 ● 사상자 구조/긴급후송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긴급치료, 치료병실 확보
가스·전기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전성 검사 실시
공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상황접수/전파 ● 응급조치반 편성/투입 ● 시설 파괴 안내방송 실시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협조 요청 ● 긴급복구반 편성/투입 ● 복구작업 실시 및 복구 완료

7. 재난 수습 홍보

7-1. 임무 및 역할

- 재난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대 언론 신속한 상황전파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7-2. 조치사항

- 재난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 ▶현장프레스센터 현장파견 : 홍보실 직원
 - ▶기자회견 브리핑룸 상시 운영 및 취재 지원
- 언론창구 단일화 및 언론사와의 협조체제 구축
 - ▶언론사별(중앙지, 지방지) 전담 공무원 지정
 - 언론대응 및 추측성보도 자재 당부
 - ▶대언론창구 단일화에 따른 협조체제 구축
 - 현장프레스센터와 핫라인 설치 : 단일보도 제공
- 재난상황별 수시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재난 상황에 따른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제공
 - ▶On-Off Line 언론매체 및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7-3. 재난수습 홍보반 주요 임무

업무·영역	담당부서	담당자	주요 업무	비고
재난 수습 홍보	홍보실	우종관	• 재난수습홍보 총괄	
	"	김호영	• 재난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 언론사 협조 체계 구축(언론모니터링), 취재지원 • 재난상황별 브리핑실 운영 및 보도자료 제공	
	"	윤숙희	• 언론매체 및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지원	
	"	서영섭	•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8. 재난관리자원 지원

8-1. 목 적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편성·유지, 사전정비·점검을 통해 상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8-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안전총괄과

나. 지원기관 : 안양소방서, 의왕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도로과, 만안건설과, 동안건설과

8-3. 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비고
			사무실	휴대폰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손병규	02-2100-0749	(별도관리)	
경기도	재난대응과	최현종	031-230-4590	(별도관리)	
의왕시	안전총괄과	이명대	031-345-2903	(별도관리)	
시흥시	안전총괄과	임정훈	031-310-2212	(별도관리)	
군포시	안전도시과	이용기	031-390-0404	(별도관리)	
과천시	안전총괄담당관	김영철	02-3677-2119	(별도관리)	

8-4. 담당부서, 유관기관 연락처 및 주요업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업무	비고
안양시	안전총괄과	구형국 8045-2539	◦ 시 방재물자 및 자원 비축관리 ◦ 시·군 간 방재물자 및 자원 동원지원	
안양시	도로과	김진호 8045-5692	◦ 건설장비 지원 협의 업무	
만안구	건설과	유용환 8045-3502	◦ 구 방재물자 및 자원 비축관리 ◦ 동 방재물자 및 자원 동원지원	
동안구	건설과	김영수 8045-4534	◦ 구 방재물자 및 자원 비축관리 ◦ 동 방재물자 및 자원 동원지원	
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이강산 470-0412	◦ 수색·구조 물품 관리 및 지원	

8-5. 관련 대응업무

- 군부대, 소방서, 인근 지자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상호협력기능별로 필수장비 확보

구 분	세 부 항 목
수색·구조·구급	구명보트, 구급차, 로프총
의료방역	방역차, 연막소독기, 동력분무기, 심실제세동기
재난구호	구호물품지원차량, 헬기
복 구	페이로더, 덤프트럭, 구조공작차, 발전기, 양수기
환경정비	청소차, 살수차, 집게차, 음식물용기세척차, 화물트럭

-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협약
 - ▶ 재난대비 필요장비에 대해 민간기업, 단체·협회 등과 사전에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동원협약 체결
- 재난 피해에 따른 동원 자재, 장비, 인력 지원현황 및 추가 지원 계획 파악·산출
- 방재자원 응급복구 지원

8-6. 자재 · 장비 · 관련업체 현황

○ 수방자재 확보 현황

구 분	P.P포대 (개)	비닐 (롤)	삽 (개)	곡괭이 (개)	말뚝 (개)	로프 (타래)	비 고
계	96,559	242	1,168	324	141	169	
만안구	38,140	133	723	204	-	111	
동안구	58,419	109	445	120	141	58	

○ 양수기 확보 현황

장소별	합 계	전기식(보통수중식)			엔진식							
		소계	0.5	2.0	소계	1.0	2.5	3.0	3.5	5.0	5.5	8.0
합 계	616	233	233		383	85	4	29	151	35	76	3
시 청	9				9						9	
만 안	381	163	163		218				151		64	3
동 안	176	70	70		106	85	4			14	3	
인양소방서	50				50			29		21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 무 실		비고
		주 소	전화	
세창환경건설 (주)	민영노	만안구 엘에스로 252 (안양동)	443-2060	
동 방 산 업 (주)	차상호	동안구 시민대로 281 (관양동)	421-4034	
(주)정 선 환 경	박명수	만안구 박달로 280 (박달동)	466-8491	
경기 환경건설(주)	민경선	동안구 시민대로 267 (평촌동)	422-3333	
(주) 태 산 기 업	최태식	동안구 경수대로 472 (호계동)	457-9950	
(주) 태 성 개 발	김 성	동안구 관악대로 257 (비산동)	382-9388	
(주) 종 진 개 발	천명애	만안구 경수대로 1279 (석수동)	474-6667	

○ 분노 수집 · 운반 업체 현황

영업구역 (담당지역)	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비상연락	
			대표자	부책임자
안양6,7,8동	군자환경	444-8354	이수훈 342-6003	안복임 447-6003
			(별도관리)	(별도관리)
안양3동,호계1동 관양2동	대우환경 산업	469-1636	이영길 469-1636	김춘화 469-1636
			(별도관리)	(별도관리)
안양2,9동 박달1,2동 비산2동	동우정화	443-2555	월명희 382-4577	이화선 382-4577
			(별도관리)	(별도관리)
석수1,2,3동	석수정화	472-5494	정광희 422-2177	정재현 427-2177
			(별도관리)	(별도관리)
호계2,3동 평촌동	세명개발	452-5706	서진식02-893-9426	유치주 396-2537
			(별도관리)	(별도관리)
안양1,4,5동	원진정화	472-3779	최성영 763-1772	김인홍
			(별도관리)	(별도관리)
비산1,3동 관양1동	청수개발	446-3333	남유민 458-3777	오훈 388-7880
			(별도관리)	(별도관리)
안양시 전지역 (재래식, 공사장)	그린위생	468-8210	김관웅 443-3030	김정래 391-9592
			(별도관리)	(별도관리)

○ 군부대 및 민간보유 지원장비

업체명	장비명 및 규격	수량	장비 등록번호	장비 기사	연락처		비고
					사무실	장비기사	
계	3종	11대					
육군 제1580부대	그레이더	2		상사 박영목	468-5182	별도관리	
	부착삽날 장착차량	3					
수도군단	부착삽날 장착차량	2		백찬용 상사	440-4413	별도관리	
세창환경	페이로다 3.5m ³	1	경기03마3032	박기준	443-2060	별도관리	
동방산업	페이로다 3.5m ³	1	경기03마3033	이강원	421-4034	별도관리	
정선골재	페이로다 3.5m ³	2	경기03고1578 경기03고1782	황인덕 장정환	447-9777	별도관리	

9. 교통대책

9-1. 목 적

- 안양시 경유 철도의 각종 재난상황(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대규모 정전 등) 발생시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 구축·추진

9-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나. 안양시(지원기관)

9-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석수역	역장	김진선	031-472-7788		1호선
관악역	역장	신성균	031-471-7788		"
안양역(관리역)	역장	천세완	031-448-7788		"
명학역	역장	윤영길	031-441-7788		"
인덕원역	역장	조배상	031-422-7788		4호선
평촌역	역장(당무)	강범식	031-383-7788		"
범계역	역장	조형순	031-384-7788		"

나. 안양시(지원기관)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조남동	031-8045-2807		주
"	교통보좌관	이준표	031-8045-2625		부

다. 교통분야 유관업체 · 단체

업체/단체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만안모범 운전자회	회장	이권승	031-443-6273		유관단체
동안모범 운전자회	"	김영식	031-476-5793		유관단체
삼영운수	대표	신보영	031-471-9111		시내버스
보영운수	"	신보영	031-474-8301		"
편안운수	"	신헌석	031-471-9111		마을버스
동안운수	"	이계춘	031-423-2271		"
평촌운수	"	김종호	031-459-1894		"
호계운수	"	윤은주	031-472-1815		"
만안운수	"	한창인	031-466-0409		"
학운교통	"	윤상진	031-459-8511		"
신안운수	"	황인성	031-442-9190		"
대성운수	"	한경섭	031-473-4551		"
동양고속	"	백남근	031-458-9201		전세버스
대신항공여행사	"	박찬성	031-442-2000		"
명신여행사	"	고성진	031-446-1500		"
범아관광	"	차정채	031-445-7400		"
블루관광여행사	"	박도규	031-441-2241		"
성우관광여행사	"	김선배	031-469-1511		"
성우항공여행사	"	김윤배	031-425-1515		"
세기여행사	"	임준교	031-476-0123		"
세빈고속관광	"	김신기	031-465-6700-1		"
제로쿨투어	"	정근옥	031-425-8626		"
(합)통일관광	"	함상미	1566-7738		"
클라운관광여행사	"	박종철	031-453-1002		"
엠알투어	"	박호현	1644-2207		"
안양개인택조합	조합장	한규표	031-469-1231		유관단체

9-4. 관련 대응업무

가. 한국철도공사(책임기관)

- 철도 재난상황 발생시 각 철도역별 승객 구호, 대피 등 1차적 대응·관리업무
- 철도역 내부 방화시설 및 수방자재 등 사전점검 등

나. 안양시(지원기관)

- 철도 재난 발생지점 주변의 교통통제, 비상 수송대책 추진 등 2차적 대응·관리업무
- 철도역 주변 방화시설 및 수방자재 등 사전점검 등

10.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10-1. 목 적

- 가. 주관기관, 유관기관, 지자체가 모든 재난에 대하여 상황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 나. 현행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휘부, 상황실, 대응부서의 상황 단계별 대응절차를 표준화하고,
 - 기관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으로 구성된 “재난대응 표준절차”와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마련
- 다.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업기능을 추출하여 공통 필수 기능으로 규정

10-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나. 지원기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만안, 동안경찰서, 안양소방서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안양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10-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전파 및 협업부서 연락망

<안양시>	<경기도>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장(행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필운 : 010-0000-0000 • 비서실장 : 010-0000-0000 ○ 부시장 (행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호 : 010-0000-0000 ○ 보건소장(행 3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길순 : 010-0000-0000 ○ 만안보건과장(행 3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현열 010-0000-0000 ○ 동안보건과장(행 4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010-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보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인태 : 010-0000-0000 (031-8008-2421) • 도역학조사관 이의준 : 010-0000-0000 • 류영우 : 010-0000-0000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1-250-2553 • FAX 031-250-2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3-719-7789,7790 • FAX 031-719-7188-9

<재난관련 실·국장>	<재난담당부서, 협업반>	<유관기관>
안전행정국장	이강호 010-0000-0000 ⇒ 안전총괄과	안양시의사회 031-441-1144
기획경제국장	이용용 010-0000-0000 ⇒ 회계과	안양시치과의사회 031-383-4890
복지문화국장	길정순 010-0000-0000 ⇒ 복지정책과	안양시한의사회 031-447-4277
보건소장	김길순 010-0000-0000 ⇒ 만안, 동안보건과	안양시약사회 031-449-6018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 010-0000-0000 ⇒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안양시간호사회 031-441-9111
환경사업소장	목진선 010-0000-0000 ⇒ 청소행정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056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010-0000-0000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양소방서 031-470-0213
홍보실	우종관 010-0000-0000 ⇒ 홍보기획팀	안양만안경찰서 031-8041-6366
		안양동안경찰서 031-478-7329
		안양샘병원 031-467-9710
		한림대성심병원 031-380-1500

□ 만안·동안보건과(개인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질병관리팀	팀장	송금숙	8045-3194	
〃	담당자	황영주	8045-3492	
질병관리팀	팀장	김인자	8045-4489	
〃	담당자	서명좌	8045-4490	
의약관리팀	팀장	김수정	8045-3154	
〃	담당자	이길영	8045-3196	
의약관리팀	팀장	김미덕	8045-4473	
〃	담당자	신경순	8045-4824	

□ 유관기관

기관명	직급(지위)	담당자(연락처)	주요업무	비고
보건복지부	비상안전 기획관	송우진 (044-202-2391)	○ 재난안전관리 업무 ○ 국가위기관리 업무	
	응급의료과	안선미 (044-202-2555)	○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팀	손인태 (031-8008-2421)	○ 감염병 위기관리 메뉴얼 관리 ○ 법적감염병 관리 및 방역관련	
	응급의료 TF팀	원주혜 (031-8008-4339)	○ 응급의료관련 업무	
안양만안 경찰서	정보계	031-8041-6381	○ 현장지도	
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	031-470-0120	○ 재난현장대응	
안양시의사회	-	031-441-1144	○ 의료자원봉사 지원	
안양시약사회	-	031-449-6018	○ 의료자원봉사 지원	
안양시한의사회	-	031-447-4277	○ 의료자원봉사 지원	
안양생병원	총무팀	김정국 031-467-9710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 환자분류, 응급처치, 환자이송	
한림대성심병원	총무팀	김성호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 환자분류, 응급처치, 환자이송	
한국 방역협회	-	대표전화 (02-467-7630)	○ 방역물자 등 지원	

10-4. 기관별 대응임무

□ 대응 기관별 주요 업무

대응기관	대응 및 수습활동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단위 재난의료지원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현황 종합, 필요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 사고 인근지역 병상정보 및 진료가능 정보 파악 및 제공 ○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 상황 접수·보고, 유관기관별 초기 대응 관련 조치 실시 여부 확인 ○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 ○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닥터헬기 등 출동 요청 ○ 재난상황 및 환자 이송현황 모니터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비상진료대응반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지원 - 인근 시·군·구간 부상자 이송·치료 조정 ○ 시·도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반 출동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긴급구조통제단장이 설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필요한 의료진 및 물자 동원 체계 유지 ○ 부상자, 사망자 현황 정보 수집 및 관리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제공 및 환자 수용 ○ 여유병상확보 및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지역응급 의료센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등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병원의 역량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제공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 여유병상확보 및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 병상정보 실시간 제공 ○ 현장 의료지원 요청 시 의료인력 파견

10-5. 현 황

《응급지원센터》

○ 응급의료기관 현황 - 3개소

지역	계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비 고
	3	-	2	1	
만안구	2	-	1	1	
동안구	1	-	1	0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 2개소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 소
안양샘병원	467-9114	467-9119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380-1500	380-4129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 1개소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 소
메트로병원	467-9000	467-9999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 지역종합병원 현황 - 4개소(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진료 과목	병상수
메트로 병원	이대순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467-9000	16	200
안양샘 병원	이상택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467-9114	25	418
한성 병원	조광열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5	452-4878	7	245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윤대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380-1500	25	818

○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현황

정보센터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수원응급 의료정보센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경기남부권 - 아주대학교병원 내)	한수이남 (20개 시·군)

○ 구급차 운용 현황

소방서명	구급차 수	인 력(명)				장 비(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헬기	구급차		기타
							특수	일반	
안양시 소방서	5	0	1	17	0	0	4	-	

《보건·의료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공사의료원
계	2	2	-	-	-
만안구	1	1	-	-	-
동안구	1	1	-	-	-

○ 민간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타
		종합	병원	한방				
계	778	4	20	2	349	228	175	
만안구	277	2	8	2	127	81	57	
동안구	501	2	12	-	222	147	118	

○ 의약품 등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약국	도매상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의료기기
계	671	245	43	2	6	541
만안구	242	101	9	2	3	193
동안구	429	144	32	-	3	348

○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현원	전문의	인턴	일반의	치과의	한 의사
계	0	-		0	0	0
만안구	0	-		0	0	0
동안구	0	-	-	0	0	0

다. 유형별 · 단계별 · 항목별 대책

< 재난관리 유형 >

- 보건의료노조의 집단 업무거부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의사의 집단진료 거부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약국의 연대업무 거부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예 방

(가) 중 점

- 보건의료분야의 예상되는 위협 및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관련 시설·운영 체계의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를 마련하여 위기발생을 차단·억제

(나) 세부 활동내용

-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기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원·의사협회·약사회 및 관련기관 간에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
-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및 혈액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방안 강구 및 시행

대 비

(가) 중 점

- 보건의료 분야 위기와 관련하여 주관·유관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기관별로 「위기상황 대응예규」를 작성하는 등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

(나) 세부 활동내용

- 위기발생에 대비 비상진료 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조 대체자원·인력을 준비하고, 지자체와 협조, 지역별 비상진료 체계 구축
- 병원·의사협회·약사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위기 대비체계를 구축 및 가동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진료수단 보완 및 비상진료대책을 강구·구축
- 혈액수급 부족에 대비하여 혈액수급 비상대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검토
- 위기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본부 가동준비
- 보건의료 분야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대비계획 확인 및 교육·훈련, 대응 체계에 대한 준비실태 점검

(다) 위기경보 수준별 임무

구 분	조 치 내 용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 비상대책본부 가동 준비 ○ 정보수집 및 분석 <li style="padding-left: 20px;">* 비선조직, Internet, 정보기관 등 활용 ○ 위기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의사의 진료거부 대비 금지명령 검토 ○ 약국의 불법 집단 업무거부 대비 업무개시 명령 검토 ○ 혈액수급 비상대책 강구 및 시행 준비

구 분	조 치 내 용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 비상대책본부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의사·약국의 폐업·업무거부, 진료거부 상황 파악 및 실시간 상황을 보고·전파 - 진료대책 점검, 유관 기관과 협조 - 해당 시·군·구별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단위 지역별로 의사협회·약사회 간부 등을 접촉하여 정부 입장을 적극 홍보 및 설득 ○ 폐업·파업 돌입 시 사법처리 대상자 명단을 사전 파악 ○ 의사 진료거부에 대한 금지명령 발동 ○ 약국의 불법 집단 업무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홍보 대책반 운영 ○ 위기상황에 따른 대국민 진료대책 안내 ○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조치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 비상대책본부 가동·활동 강화 ○ 폐업·업무거부 돌입 방지를 위한 설득 ○ 관련 단체의 불법 폐업 금지명령 발동 ○ 약국의 불법업무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확대) ○ 진료 보완수단 동원 준비 ○ 홍보대책반, 비상정보수집 대책반 운용 ○ 비상 혈액공급체계 가동 준비 ○ 단체 헌혈 운영 강화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 진료 및 불편 해소 대책 시행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부여 ○ 대체인력(군의원, 공중보건의 등) 동원 배치 ○ 비파업 병원과 연계체계 구축 ○ 국·도립병원, 군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진료체계 구축 ○ 비상 헌혈 공급체계 가동 ○ 임시 헌혈소(헌혈 차량 등) 설치·운영

대 응

(가) 중 점

- 보건의료 분야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대체자원 및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나) 세부 활동내용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가동하는 등 보건의료기능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를 시행
- 병원서비스 중단이 경우 비상진료대책반을 구성, 진료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시행
- 국·도립병원, 군병원, 파업불참 병원 및 약국 등과 연계하여 진료 체계 및 의약품 공급체계를 유지
-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유지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등을 부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 공중보건 의사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보건의료체계 마비 상황 방지
- 군의 인적·물적 대체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군병원 개방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
-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거부 등에 의한 의약품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국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한 약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위기 상황에 능동적 대응
-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공급장애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체 헌혈을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헌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 국민불안 해소

(대) 위기 유형별 역할

위기유형	역 할
<p>보건의료노조 집단업무 거부로 서비스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가동 ○ 비파업 병원과 연계체계 가동 ○ 지방공사 의료원 등 관련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진료 체계 가동 ○ 응급의료센터 비상 운영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발생 기간 중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 금지 조치
<p>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보완 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관 지원 배치 및 군병원의 민간 개방 협조 - 공중보건의 배치 조정 진료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도시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우선 배치 - 지역 거점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비상진료
<p>약국의 연대업무거부로 의약품 공급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개시명령 발동 ○ 약사회 동향 파악 및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위기해소 추진
<p>혈액수급 부족으로 혈액 공급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헌혈 홍보 활동 강화 - 군·관에 대한 단체헌혈 확대 실시 -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 확대 - 임시 헌혈소(헌혈 버스) 설치·운영 - 한시적으로 전혈 중심 채혈 실시 ○ 의료기관 등에 대한 비상 혈액공급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혈액공급을 위한 특수 운송수단 강구 - 혈액원별 혈액 재고량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권역구분 없이 혈액 공급

사후관리대책

(가) 중 점

- 보건의료 분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식별하여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

(나) 세부 활동내용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위기발생 원인분석·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
-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조치 평가·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부서간 협조체제 평가·보완
 -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유형별 조치사항 평가·보완
 - 국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분석 및 대책 강구
 - 응급실, 수술실 등 비상진료체계 평가·보완
 -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체계 및 제도 평가·보완
- 위기상황별 대처능력의 신속성 평가 및 보완책 마련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보완
- 위기 발생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화 창구개발

(다) 임 무

- 위기기간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해결책 마련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위기 대응결과에 대한 평가 및 교육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
- 응급실, 수술실 등 비상진료체계 평가·보완

라. 최소기능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재난발생기간 중 진료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환자 진료시간 연장
 -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시간 연장 : 20시까지
 - 약국 : 매일 22시까지

- 재난발생 기간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 보건소·보건지소 : 매일 20시까지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비상근무체계 돌입
 - 안내·상담요원을 보강 배치(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확충)
 - 진료기관 안내 및 질병상담 강화
- 재난발생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야간진료 기능부여
 -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시
 - 집단 업무거부기간 중 비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센터: 3만원, 응급의료기관 2만원) 부과 유예 조치
- 가용 의약품 및 혈액 확보 노력
 - 공공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수집
 - 임시 헌혈차 설치·운영,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 확대,
군·관에 대한 단체헌혈 확대 실시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11-1. 목 적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봉사들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시설, 장비·물자 등에 대해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동 대응계획 수립

1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자치행정과

나. 지원기관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1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자치행정과	민간협력 팀장	이원석	8045-2315	개별관리	자원봉사 총괄
자치행정과	행정7급	황유진	8045-2317	개별관리	
안양시자원 봉사센터	운영요원	장명교	8045-2487	개별관리	자원봉사 실무

11-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 단계별·종류별 자원봉사활동 지원 점검 및 준비

- 자원봉사 인력 등록 및 분야별 활용 준비
- 자원봉사 인력의 보험관리 수행
- 신규투입 인력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단체별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자원봉사단체 : 175개 단체/29,036명

(단위 : 단체/명)

계	인명 구조	의료 보호	급수 봉사	교통 봉사	방역 봉사	노력 봉사	이재민 구호/상담	임시센 터운영	기 타 봉사단
175개단체	2	10	4	8	5	84	6	4	52
29,036명	790	692	520	1,042	974	14,356	1,320	210	9,132

12. 사회질서 유지

12-1. 목 적

재난현장에서의 현장통제, 교통통제, 치안 등의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을 수립한다.

12-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1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동안경찰서	경장	이정민	031-478-7157	별도관리	
만안경찰서	경장	백필성	031-8041-6156	별도관리	

12-4. 관련 대응업무

-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요사태 방지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들을 지정하고 기관들 간의 업무를 조정
- 피해지역의 교통관리 및 교통통제 활동을 수행
- 피해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전파
- 수용시설에 대한 치안 담당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기관들을 지정하고 기관들간의 업무를 조정

12-5. 단계별 조치사항

가. 1단계 : 사전 예방순찰 단계

- 중점 활동사항
 - ▶ 피해 우려지역 중점 순찰·점검, 관할 시·구와 사전 협조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위험축대·제방, 공사장 등 취약지 파악·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 등 통보·조치 유도

- ▶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 사전지정
 - 주민홍보, 유사시 신속·적절히 활용
- ▶ 재해대비 출동태세 및 장비점검
 - 112타격대, 지구대·교통순찰차 등 외근요원 출동태세 확립
 - 출동요소별 보유장비 사전 점검 및 사용안전수칙 등 숙지
- ▶ 유관기관간 협조 및 통신체제 구축
- ▶ 기관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 등 연락망 확보·비치

나. 2단계 : 상황대처 단계

○ 중점활동 사항

- ▶ 비상근무체제 확립(사태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
 - ※ 재해·재난발생시 사태의 정황에 따라 비상발령
- ▶ 각급 지휘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확립
- ▶ 재해경비 담당직원 24시간 상황유지
- ▶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갑·을조로 편성, 연락체제 확립
- ▶ 필요시 경비·교통·생활안전·정보 기능별 합동, 협조체제 구축
- ▶ 기상 및 피해상황, 경찰활동 등 파악 보고·하달·전파
- ▶ 경력·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 ▶ 지방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처리
- ▶ 상황전파 및 초동 출동태세 확립
 - 상황실 중심 상황파악·전파 관할 불문 신고접수, 외근경찰 및 유관기관에 전파, 합동조치
- ▶ 현장 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및 지휘체제 확립
 - 산사태, 건물붕괴 등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 피해 우려지역 집중 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 지구대·교통 등 외근요원 취약개소 집중 배치
 - 기상예보에 따라 재난관리부대 인력·장비의 탄력적운용으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주력
 - 하천범람, 산사태 등 피해우려지역 주민 대피 유도
- ▶ 교통통제 및 관리
 - 침수·유실·두절 등 도로상황 파악
 - 통제구역 입구 입간판, 바리케이트 설치 및 차량우회
 - 유관기관 및 주민대상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 적극 협조)

다. 3단계 : 복구수습 단계

- 기 간 : 재해재난 복구 전까지
- 중점활동 사항
 - ▶ 재해재난 복구 지원반
 -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설치
 - ▶ 경찰조치 필요부분 적극 발굴·지원
 -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피해지역별 현지 점검을 통한 조치 필요사항 발굴
 - 해당 지구대(파출소)장이 피해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재해재난 복구 관련 제반 문제점 점검·개선
 - 피해지역 치안질서 확보 및 선전 선동자 단속활동 강화
 - 경찰 가용경력 총 동원 신속한 복구 지원
 - ▶ 피해지역에 상설부대 집중 투입·복구작업 지원
 - 침수가옥 등 가재도구 정리 및 쓰레기 제거

- 유실도로 · 제방 복구작업 지원
- 침수 농경지 및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복구
- 침수지역 방역활동 등
- 지원기간중 경찰조끼 착용 및 경력 교양 철저
- ▶ 수해지역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 긴급 구호물자 수송차량 수송로 확보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및 필요시 일반차량 통행금지
 - 상가 · 주택 등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
 - 이동방범파출소 및 특별순찰함 설치 · 운용
 - 지원물자 등 강 · 절도 예방
- ▶ 이재민 수용시설에 치안 서비스센터 운용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 · 지원(필요시 여경동원)
 - 수사활동 · 복구진척 등 진행사항에 대한 필요정보 지원
 - 기타 각종 주민생활 편의 지원
- ▶ 피해주민의 여론 및 동향 파악
 - 정부정책 수립 및 조기수습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주민동향 파악을 통한 집단적 항의시위 등 대비

13.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지원

13-1. 목 적

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항공기, 선박, 사람 등을 수색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13-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안양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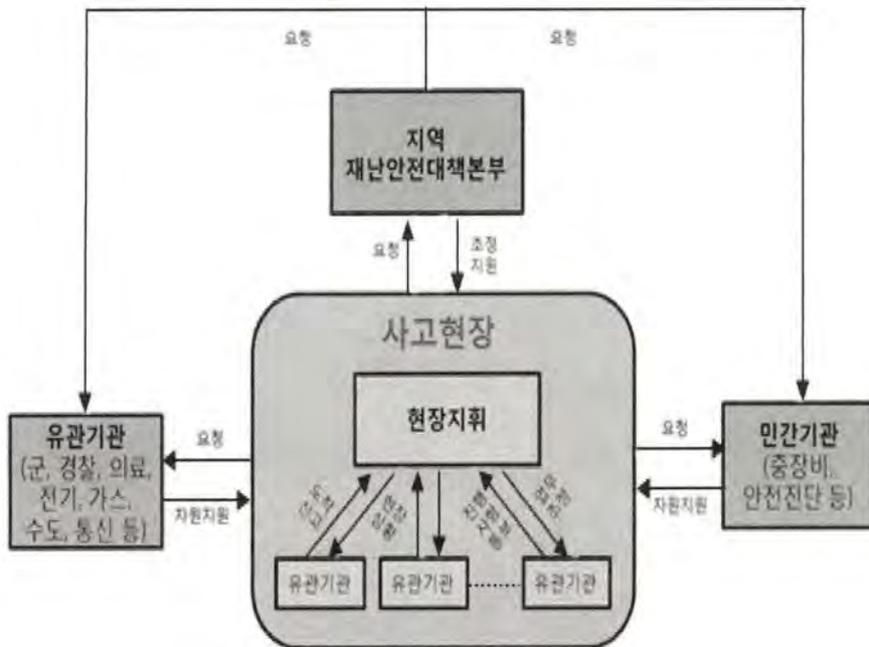
나. 지원기관 :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보건소,
육군 제1580부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1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소방서	소방경	김덕진	470-0410	-	
만안경찰서	경 감	김봉호	8041-6156	-	
동안경찰서	경 장	이경민	478-7157	-	
만안보건과	보건행정 팀 장	서문석	8045-3105	-	
동안 보건과	보건행정 팀 장	문두영	8045-4814	-	
육군 제1580부대	대 위	임정현	448-6166	-	
육군제2560부대 3대대	대 위	유근홍	459-0113	-	

13-4. 관련 대응업무

- 가.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가동·참여(재난현장지휘·대응체계 참조)
- 나. 항공기·선박 사고, 건물 등의 붕괴 및 각종 조난 등 사고 발생 시에
수색과 구조업무 수행
- 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의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 및 환자이송
- 라. 사망자 및 실종자의 신원 파악
- 마. 수색, 구조·구급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관련 보유 자원의 지원
- 바. 수색, 구조·구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재난현장 지휘·대응 체계도》

13-5. 기관별 임무

기관명	주요임무
안양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통제단가동) · 긴급구조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인력관리 · 각종 재난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수색 및 신원파악 · 종합적 구조전략을 위한 전문 기술팀 편성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기관과의 대책회의 · 사태별 전문구조요원 적정 배치 · 헬기 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 긴급구조장비 물품 등 수급 관리 · 긴급구조활동 상황의 집계 및 보고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 및 환자이송 · 중장비 동원여부 판단
안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접근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 긴급구조요원(특수부대) 및 장비 지원
안양시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 및 환자이송 · 사상자 규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원 요청
육군 제1580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인원(특수부대) 지원 · 중장비 지원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인원(초동조치부대 및 경계부대) 지원 · 추가구조인력 지원

14.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14-1. 목 적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 지진 등 대규모 복합 재난시
유관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시민재산과 생명을 보호.

14-2. 추진개요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목 표 : 초기대응역량 강화 및 협업가동체계 구축
- 훈련실시 : 4회
 - ▶ 4월 15(수) 10:00 ~ 11. 30 : 산불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 ▶ 5월 18일 ~ 5월 22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연계
유해화학 유출, 수해대비 훈련,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대피 훈련
- 주 관 : 중앙 국민 안전처와 연계하여 시 주관으로 실시
- 참 여 : 시 및 10개 유관기관(안양소방서, 동안경찰서 등)
- 중점사항 : 비상상황 대응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확인

14-3. 주요 훈련내용

- 재난안전대책 점검 및 재난대응 훈련
 - ▶ 비상소집훈련, 재난대응훈련 [유해화학 유출] (토론기반훈련)
-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및 현장 대응 훈련
 - ▶ 하천범람 수해대비 훈련,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대피 훈련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 ▶ 안전문화운동 워크숍,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익히기 캠페인 등

14-4. 추진계획

- 2016. 4월 : 훈련기획팀 구성·운영 및 훈련 기본계획 수립
- 2016. 4월 : 훈련 시행계획 수립(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등)
- 2016. 5월 : 훈련실시 및 평가

14-5. 기관별 연락처 및 주요업무

연번	기 관	전화번호	주요업무	비고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80-7216	◦ 학교 이재민 수용시설 사용 ◦ 학생휴교 협의 및 학생안전관리	
2	안양동안경찰서	478-7157	◦ 재난현장 교통통제, 범죄예방 등	
3	안양만안경찰서	8041-6145	◦ 재난현장 교통통제, 범죄예방 등	
4	안양소방서	470-0410	◦ 포괄적 재해 대비 지시 및 정보제공 ◦ 광역적 재난 지원 및 인근시 지원 등	
5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450-2233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복구 ◦ 가로등, 신호등통제 감전예방 및 복구	
6	한국전기안전공사경 기서부지사	390-7400	◦ 전기 안전점검 등	
7	한국가스안전공사경 기지역본부	259-3521	◦ 가스 안전점검 등	
8	K T 안 양 지 사	477-0833	◦ 통신두절 복구 및 긴급복구 수습	
9	한국철도공사 안양역사	449-7788	◦ 철도시설 긴급 복구	
10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1588-2504	◦ 도로시설 복구에 따른 지원 협의 등	
11	GS 파워 (주) 열병합발전소	420-2542 420-2529	◦ 난방시설 복구 등	
12	육군 제2506부대 (167연대본부)	431-5113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3	육군 제2506부대 (167연대 3대대)	459-0113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4	육군 제1580부대	468-5182	◦ 재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15	(주)삼천리도시가스	345-1324	◦ 가스공급 긴급지원 및 안전점검 등	
16	한림대병원	380-4125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7	샘안양병원	467-9710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8	메트로병원	467-9000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19	한성병원	452-0011	◦ 사상자 이송 및 치료 ◦ 영안실 지원	
20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 중앙적십자봉사관	459-6410	◦ 긴급구호물자 지원	
21	안양시자원봉사센터	8045-2487	◦ 자원봉사자 지원	
22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389-5303	◦ 공영주차장시설 피해현황 파악, 상황관리 ◦ 지하차도 펌프유지관리	

여 백

IV. 주요사업 재정투자 계획



여 백

붙임 1

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6년 계획	비고
	총 계	13,807	
풍수해대책	소 계	8,863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224	
	저지대 침수사업	90	
	하수관 정비 및 준설	8,399	
	재난시스템 구축	150	
설해대책	소 계	563	
	설해대책 자재 구입	303	
	제설장비 임차	260	
사회재난 대책	소 계	3,922	
	산불방지대책	8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83	
	공동구 안전관리	314	
	감염병 대책	325	
	가축전염병	9	
	정수장 유지보수	2,906	
안전관리 대책	소 계	459	
	자전거 이용안전	67	
	노인·장애인시설 안전	289	
	어린이집 안전	103	

여 백

V. 별첨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안양만안경찰서
3. 안양동안경찰서



여 백

I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

가. 개요(목적)

- 1)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대책 강구 필요
- 2) 자연재난에 적절한 대비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자 등에 대한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훈련 실시 필요
- 3)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계획 수립·시행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재난 취약시설 점검·정비

1) 자연재해 시설물

- 학교 인근의 옹벽 및 축대 등
-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배수구, 건물옥상 바닥 등
- 자체점검 시기
 - 5월 ~ 10월 : 수시점검
 - 11월 ~ 4월 : 월 1회 이상 점검
- 점검결과조치
 - 위험요소 시설물은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
 - 긴급정비시설물을 상급기관 예산활용 보장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학생대피계획수립 등 재해응급 대책 강구 후 특별관리

2) 학교 등 건설공사장

○ 점검관리 방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 관리카드 작성 : 공사장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등

-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 등 지정

○ 점검방법

- 수시점검 : 시공회사, 현장감리원이 합동으로 수시점검,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 정기점검 : 관리책임 공무원이 월 1회 점검,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 시행자, 시공사감리원이 종합점검 후 미비사항 보완조치

○ 공사장 사전 조치 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기능 확보
-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 방지사설 설치
- 대피계획수립 및 대피장소 선정

□ 재난예방대책 수립

1) 건축물의 안전성 유지

- 강풍에 의한 낙하물 방지대책 수립
- 건물 지하시설 등에 방수문, 방수판 설치 등 침수피해 예방

2)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

3) 저지대, 상습침수지역내에 있는 학생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나) 대비단계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체제 구축

- 1)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2)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계획 수립
- 3)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 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4)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경보발령,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질서유지
 - 긴급수송, 구조, 긴급급수, 구호품확보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학교시설)

□ 긴급대피체제 구축

- 1)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2)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3)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 마을방송, 반상회, 유선방송 등 방법 이용 평시 경각심 고취
 - 재난 유형별 홍보문안 작성 지속적인 홍보로 경각심 고취,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홍보

다) 대응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1) 1단계 : 준비단계(주의보 발령 시)

- 상시대비 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 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 주요 조치 사항
 -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
 - 주요시설물 순찰, 점검 활동 강화

2) 2단계 : 비상단계(경보 발령 시)

- 풍수, 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생 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경기도청,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조치

□ 위험지역 주민, 학생 대피 체제 확립

1)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등 신속 보도

2)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3)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 저지대 침수, 고립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 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학교수업(등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등)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1) 피해상황 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2) 구조·구급 활동, 응급조치 활동
- 3) 의료, 통신, 교통 두절시 소통 대책
- 4) 이재민 대피, 수용 및 구호 대책
- 5)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대책
- 6) 쓰레기 처리 및 방역 대책

라) 복구단계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판단 : 응급복구, 기능복구, 개선복구

피해조사

1) **경미한 피해 : 자체조사단 구성 조사**

- 조사기간 : 1주일 이내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재해대장, 복구조서 검토

2) **여러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합동조사 필요시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 운영**

- 조사기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 조정)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현지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 확인, 복구계획 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 검토, 도교육청 복구조서 검토

복구비용 지원 및 지원요청

1-2. 설해대책

가. 개요(목적)

- 대설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대책 강구 필요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1) 삽, 낙가래, 빗자루 등 확보
 - 2)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관리대책 추진
 - 1) 학교 등 진입로, 상습 결빙구간
 - 2)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

- 주민, 학생 홍보 강화
 - 1) 설해 발생 및 한파 시 대국민 행동요령
 - 2)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3)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4) 내 집, 내 학교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5) 언론매체,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활용 홍보

나) 대응단계

□ 비상근무체제 확립

1) 비상근무체제

- 적설량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근무

구 분	내 용	근 무 형 태
대설 주의보	· 24시간 내 5cm 이상 적설예상 시 (※지역 구분 없음)	· 비상근무체제 유지
대설 경보	· 24시간 내 20cm 이상 적설예상 시 (단, 산지는 30cm 이상)	· 비상근무체제 유지

2) 보고체제 확립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 FAX,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3) 주민, 학생에 대한 재난 예·경보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전파
-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1-3. 가뭄대책

가. 개요(목적)

- 가뭄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대책 강구 필요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가뭄대비 종합 대책 수립

1) 지역별 가뭄실태 파악

- 2) 학교별 생활용수 확보대책 수립
- 3) 학교급식 운영대책 검토
- 4) 교육과정 운영대책 검토
- 5) 비상급수 단절시 대책
- 6) 유관기관과 협조대책
- 7) 생수보내기 운동 전개

물 절약 대책 추진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물 절약교육 실시

- 사이버 에너지 절약교육 참여 활성화(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수자원 공사)

2) 기후변화 협약 관련교육

물 절약 홍보 활동 강화

1) 지역사회 캠페인 및 물 절약 홍보자료 배포

2) 가정에서의 물 절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급

물 절약 추진 대책 강구 : 학교 등에 절수기 설치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검토

1) 학교 실정을 고려한 학사 일정 운영

- 단축수업(오전수업)
- 방학 중일 경우 방학기간 조정
- 단기방학 활용

학교급식운영

1) 비상시 학교별 급식운영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학교별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용수량 및 부족 용수량 산정

3) 시군청, 소방서와 상시 비상체제 유지 및 급식용수 확보 대책협의

학교시설 운영

- 1) 학교별 간이 화장실 소요량 및 소요액 산출
- 2) 각급학교 생활용수, 소화용수, 저수조 현황 파악 및 소요액산정

나) 대비단계

가뭄대응 상황 관리 체제 확립

1) 재난 예·경보 상황 신속 전파

- 문자메시지, 지역 방송 등 언론 매체 활용
- 유관기관과 홍보협조 강화

2) 단계별 상황 근무 체제 구축

- 평상시 : 재무과, 교육과정지원과 자체 상황근무 요원으로 근무
- 가뭄시작 및 확립 단계 : 3개반, 6~9명, 관련업무 실·국(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1) 학교 실정을 고려한 학사일정 운영

- 단축수업(오전수업)
- 단기 방학 활용
- 방학 중일 경우 방학기간 조정

학교급식운영

1) 학교 급식 종합 대책반 운영

2) 학교별 급식 운영계획 조정(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3) 급식 용수가 적은 식단으로 식단표작성 방안강구

- 4) 조리과정중 사용하는 용수에 대한 절수 요령 교육
- 5) 급식실내 누수 여부 항시 점검
- 6) 급식용 저수조 시설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 철저
- 7) 급식 불가시 도시락지참, 빵 급식 등 대처 방안 마련

□ 학교시설 운영

- 1) 시·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적시적인 비상급수 공급
- 2) 비상급수 단절시 간이화장실 및 식수 물탱크 확보 지원
- 3) 간이 식수원 확보 생활용수 공급

- 유희우물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비상급수시설, 인근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 활용
- 먹는 샘물 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 절수 운동 전개

- 1)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등 넣기
 - 수도꼭지에 절수 디스크 달기 운동
- 2) 가뭄 극복 3대 운동 전개: 저수, 절수, 용수개발 등

□ 생수 보내기 운동 전개

- 1) 교육부와 협의 가뭄지역 학교 물 보내기 운동 전개
- 2) 자율적인 성금모금, 피해 교육지원청, 학교에 전달
- 3) 타시도교육청에 물 보내기 동참협조
- 4) 각급학교 생수 구입비 예산지원

□ 단계별 제한 급수 대책(경기도)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동이용

다) 대응단계

- 중수로 시설 확충
- 빗물을 이용한 생활용수 확보 방안 강구
- 저수조, 물탱크 등 생활용수 확보대책 강구
- 절수식 자재 등 사용
- 지하수 개발

1-4. 지진대책

가. 개요(목적)

-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피절차 및 교육시설물 안전 점검 등 안전 대책 강구 필요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지진예방대책 강화

1) 위험 시설물 및 화재예방 시설의 점검·정비 지원

-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 화재 예방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실시

2) 내진설계 기준 선정 및 적용실태 감독 강화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선정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내진 보강대책

3) 지진 재해 경감 대책 수립 추진

- 지진 발생 시 신속대응 및 복구체제 검토
- 실무자에 대한 방재교육 및 대국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4) 재난 예·경보 전파 체계 확립

-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신시스템 운영
- 마을 앰프 시설 이용 전파 (시·군 협조)

-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1) 지진방재 교육 실시

- 비상대비 및 안전관리 담당자 위탁교육
- 각급학교별 지진 대비 행동요령 및 대피요령 교육

2) 지진 대비 대피 훈련 실시

- 민방위 대피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실시
- 도·시·군청에서 실시하는 재난훈련참관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1) 화재 발생 시 진화대책 협조
- 2) 긴급수송을 위한 수송대책 협조
- 3) 생활 필수품등 공급대책(식료품, 식수, 의약품, 통신기기 등)
- 4) 위생대책 협조
 - 건물붕괴 등 쓰레기 청소
 -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 및 방역

나) 대비단계

□ 응급대응 및 비상 연락 체계 정비

- 1) 응급대응 체제 확립
 - 방재 담당 직원의 비상소집망 정비
 - 유관기관과 협조 및 연계성 유지
 - 응급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실시
- 2)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수립

□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 전파

- 1) 학생, 학부모 혼란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령사항 신속 전파
- 2) 언론기관, 지역주민, 학생 등으로부터 재난 상황 수집 체제 정비

□ 학생 학부모 교육 및 홍보 강화

- 1) 안전생활 가이드 등 교재활용 안전 교육 실시
- 2) 소방 방재청과 협조 교육교재 개발 배포 (만화, 삽화, 동영상 등)
- 3) 유관기관 협조 대피장소, 대피로 등 홍보

다)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전의 대책

- 1) 지진 대응 활동체제 확립 및 재난 발생 상황 신속 전파
- 2) 피해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

재난 발생 직후의 대책

- 1) 2차 재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설물 응급 복구 대책
- 2) 유관기관과 구급·구조 및 의료 대책 협조
- 3)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협조

라) 복구단계

복구 기본 방향 결정

- 1) 피해상황, 지역특성,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복구사업 등의 기본방향 결정
- 2) 피해 지역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주민 의견 수렴, 복구 방안 강구

피해조사 협조

- 1) 중앙합동 조사단 편성, 운영
- 2)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 조사단 편성, 운영

1-5. 가뭄대책

가. 개요(목적)

- 황사대비 사전 교육활동 강화로 기관별 대응능력 제고
- 신속한 대처로 학생건강 보호 및 원활한 학교운영 도모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황사 예·특보 발령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학교)별 황사대응 실시

<황사 특보 발령기준>

경보종류	내 용	비고
주의보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mu\text{g}/\text{m}^3$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주로 봄철에 발생하며 기상청에서 발표
경보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mu\text{g}/\text{m}^3$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1) 황사 발생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황사상황	대응계획
황사발생 전 (황사예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실외활동 또는 단축수업(휴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황사발생 중 (황사특보 발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등 조치
황사종료 후 (황사특보 해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가·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권역별 기상청과 연계한 신속한 황사 발생 상황 접수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실외활동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업무담당자 부재시 대체 인력 보충 방안 등)

나) 대응단계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비상대책반장 : 평생교육건강과장	
학생건강팀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팀
황사특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안내	수업단축 및 휴업(휴교) 검토,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 수립

1) 구성 :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2) 교육지원청별 연락담당관과 상시 연락체제 구축

3)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각급학교 간 Hot-Line을 구축하여 대응
조치 상황 신속전파 및 대응 (SMS문자·메일·팩스)

□ 황사 발생 대응 및 사전교육 강화

1)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속기관 전체

2) 황사발생 단계별·기관별·발령단계별 행동요령 교육 실시

○ 황사발생 전·중·후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

○ 손 씻기, 황사 예방용 마스크 지참 및 활용방법 지도

○ 황사주의보 발령 시 학생의 건강유지를 위해 실외 현장학습 자제

□ 교육지원청 황사발생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황사 피해예방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황사 발생 전	도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및 환경부의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히 검토 ○ 지역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결정·통보 ○ 황사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속히 보고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도(지역)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유아들에게 알림 ○ 황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황사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황사 발생 기간 중	도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 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외출 후 자주 손발 씻기 등 몸의 청결 유지, 옷 세탁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부득이한 등교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일: 정상 근무(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님) - 휴교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황사 종료 후	도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1-6. 폭염대책

가. 개요(목적)

폭염대비 대응체계 확립

1) 교육지원청 폭염비상대책반 구성 및 관계기관 대응 협조체계 구축

폭염 대비 교육·홍보 지속 실시

폭염상황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통보 및 대응

나.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대비단계

학교 수업 조치 관련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1) 구성 :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2) 학교와 상시 연락체제 구축

3)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각급학교 간 Hot-Line을 구축하여 대응 조치 상황 신속전파 및 대응 (SMS문자·메일·팩스)

무더위 휴식시간제 (Heat Break) 운영 강화

1)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시간대(14:00~17:00) 휴식 유도

○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시,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활동하도록 유도 및 권고

나) 대응단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폭염 대비 대책 추진

〈폭염특보 발령기준〉

◆ 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이상 지속 예상

1) 도내 각급학교에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매뉴얼 보급교육

- 폭염 특보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 전달 및 교육 지도
- 폭염 특보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검토
- 수업 단축·휴교, 야간열대야 시 학교시설 사용시간 연장 권고
- 실내온도 적정 유지, 학생 건강상태 등 파악
- 학교급수·급식위생 관리 철저, 전기과부하 대비 등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간 Hot-Line운영

【폭염특보시 학교별 대응계획 수립】

폭염 상황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가동 ○ 단축수업 검토 ○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자제 ○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폭염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조치 검토 ○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점검 ○ 대응조치 :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게 결정 -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2) 교육지원청별 폭염 특보 발령 시 적용범위 유형을 선택하여 조치

- 교육장은 적용범위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일된 대응지침 마련
- 교육장은 대응 조치사항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
-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여 혼란 예방

〈교육지원청별 적용범위 유형〉

A형	교육감이 경기도 전역에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B형	교육감이 지정된 권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1권역 : 의정부 외 7개 지역	2권역 : 수원 외 4개 지역	3권역 : 부천 외 4개 지역	4권역 : 성남 외 5개 지역
C형	교육장이 교육지원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 발령			
D형	학교장 자체 조치			

□ 폭염 피해예방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폭염 발생 전	도(지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히 검토 - 시·도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단축수업 등 결정·통보 - 폭염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신속히 보고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발생 대비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 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폭염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알림 - 폭염에 딸라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폭염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폭염 발생 기간 중	도(지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폭염 예방 교육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 하고 꼭 불명 휴대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물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근무: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일: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학교의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은 정상적으로 근무 · 휴교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폭염 종료 후	도(지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피해 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조치 - 학교 시설 설비 점검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II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재난상황관리

1-1. 목 적

- 가.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나. 교육시설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예방 및 피해 경감
- 다.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공동 대응

1-2. 책임 및 지원기관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주무관	가희찬	031-380-7216	daeeun2@goe.go.kr	

1-4. 관련 대응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참고

I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 및 대비단계

- 피해 우려지역 중점 순찰·점검, 관할 시·구와 사전 협조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위험축대·제방, 공사장 등 취약개소 파악·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 등 통보·조치 유도

나) 대응단계

- 비상근무체제 확립(사태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
 - ※ 재해·재난발생시 사태의 정황에 따라 비상발령
 - 각급 지휘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확립
 - 재해경비 담당직원 24시간 상황유지
 -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갑·을조로 편성, 연락체제 확립
 - 필요시 경비·교통·생활안전·정보 기능별 합동, 협조체제 구축
 - 기상 및 피해상황, 경찰활동 등 파악 보고·하달·전파
 - 경력·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 지방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처리
- 상황전파 및 초동 출동태세 확립
 - 상황실 중심 상황파악·전파 관할 불문 신고접수, 외근경찰 및 유관기관에 전파, 합동조치

- 현장 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및 지휘체제 확립
 - 산사태, 건물붕괴 등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피해 우려지역 집중 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 지구대·교통 등 외근요원 취약개소 집중 배치
 - 기상예보에 따라 재난관리부대 인력·장비의 탄력적운용으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주력
 - 하천범람, 산사태 등 피해우려지역 주민 대피 유도
- 교통통제 및 관리
 - 침수·유실·두절 등 도로상황 파악
 - 통제구역 입구 입간판, 바리케이트 설치 및 차량우회
 - 유관기관 및 주민대상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 적극 협조)

다) 복구단계

- 재해재난 복구 지원반
 -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설치
- 경찰조치 필요부분 적극 발굴·지원
 -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피해지역별 현지 점검을 통한 조치 필요사항 발굴
 - 해당 지구대(파출소)장이 피해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재해재난 복구 관련 제반 문제점 점검·개선
 - 피해지역 치안질서 확보 및 선전 선동자 단속활동 강화
 - 경찰 가용경력 총 동원 신속한 복구 지원

- 피해지역에 상설부대 집중 투입·복구작업 지원
 - 침수가옥 등 가재도구 정리 및 쓰레기 제거
 - 유실도로·제방 복구작업 지원
 - 침수 농경지 및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복구
 - 침수지역 방역활동 등
 - 지원기간중 경찰조끼 착용 및 경력 교양 철저
- 수해지역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 긴급 구호물자 수송차량 수송로 확보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및 필요시 일반차량 통행금지
 - 상가·주택 등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
 - 이동방범과출소 및 특별순찰함 설치·운용
 - 지원물자 등 강·절도 예방
- 이재민 수용시설에 치안 서비스센터 운용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필요시 여경동원)
 - 수사활동·복구진척 등 진행사항에 대한 필요정보 지원
 - 기타 각종 주민생활 편의 지원
- 피해주민의 여론 및 동향 파악
 - 정부정책 수립 및 조기수습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 주민동향 파악을 통한 집단적 항의시위 등 대비

1. 재난상황관리

1-1. 목 적

- 가. 매년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 나.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재난 협조체제 구축으로 조속한 복구 활동
- 다. 적극적인 인명구조·피해예방 및 사후 복구 활동을 통한 봉사
경찰상 확립

1-2. 책임 및 지원기관 : 안양만안경찰서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만안경찰서	경사	백필성	031-8041-6156	ssabasaba@naver.com	

1-4. 관련 대응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참고

붙임 3 안양동안경찰서

1. 목 적

- 매년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재난 협조체제 구축으로 조속한 복구 활동
- 적극적인 인명구조·피해예방 및 사후 복구 활동을 통한 봉사 경찰상 확립

2. 기본방침

- 피해 우려지역 사전 점검 및 순찰강화로 피해 최소화
- 인원·장비 총동원 적극적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복구
- 경비·교통·생활안전·정보기능 합동, 종합적 상황관리
- 경찰 조치사항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동안경찰서	경장	이정민	031-478-7157	ljmzzang@police.co.kr	

4. 단계별 조치사항

가. 1단계 : 사전 예방순찰 단계

- 중점 활동사항
 - 피해 우려지역 중점 순찰·점검, 관할 시·구와 사전 협조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위험축대·제방, 공사장 등 취약개소 파악·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 등 통보·조치 유도
 -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 사전지정
 - 주민홍보, 유사시 신속·적절히 활용

- 재해대비 출동태세 및 장비점검
 - 112타격대, 지구대·교통순찰차 등 외근요원 출동태세 확립
 - 출동요소별 보유장비 사전 점검 및 사용안전수칙 등 숙지
- 유관기관간 협조 및 통신체제 구축 기관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 등 연락망 확보·비치

나. 2단계 : 상황대처 단계

○ 중점활동 사항

- 비상근무체제 확립(사태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
 - ※ 재해·재난발생시 사태의 정황에 따라 비상발령
 - 각급 지휘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확립
 - 재해경비 담당직원 24시간 상황유지
 -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갑·을조로 편성, 연락체제 확립
 - 필요시 경비·교통생활안전·정보 기능별 합동, 협조체제 구축
 - 기상 및 피해상황, 경찰활동 등 파악 보고·하달·전파
 - 경력·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 지방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처리
- 상황전파 및 초동 출동태세 확립
 - 상황실 중심 상황파악·전파 관할 불문 신고접수, 외근경찰 및 유관기관에 전파, 합동조치
- 현장 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및 지휘체제 확립
 - 산사태, 건물붕괴 등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피해 우려지역 집중 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 지구대·교통 등 외근요원 취약개소 집중 배치
 - 기상예보에 따라 재난관리부대 인력·장비의 탄력적운용으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주력
 - 하천범람, 산사태 등 피해우려지역 주민 대피 유도

- 교통통제 및 관리
 - 침수·유실·두절 등 도로상황 파악
 - 통제구역 입구 입간판, 바리케이트 설치 및 차량우회
 - 유관기관 및 주민대상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 적극 협조)

다. 3단계 : 복구수습 단계

- 기 간 : 재해재난 복구 전까지
- 중점활동 사항
 - 재해재난 복구 지원반
 -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설치
 - 경찰조치 필요부분 적극 발굴·지원
 -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피해지역별 현지 점검을 통한 조치 필요사항 발굴
 - 해당 지구대(파출소)장이 피해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재해재난 복구 관련 제반 문제점 점검·개선
 - 피해지역 치안질서 확보 및 선전 선동자 단속활동 강화
 - 경찰 가용경력 총 동원 신속한 복구 지원
 - 피해지역에 상설부대 집중 투입·복구작업 지원
 - 침수가옥 등 가재도구 정리 및 쓰레기 제거
 - 유실도로·제방 복구작업 지원
 - 침수 농경지 및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복구
 - 침수지역 방역활동 등
 - 지원기간중 경찰조끼 착용 및 경력 교양 철저
 - 수해지역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 긴급 구호물자 수송차량 수송로 확보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및 필요시 일반차량 통행금지
 - 상가주택 등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

- 이동방법과출소 및 특별순찰함 설치·운용
- 지원물자 등 강·절도 예방
- 이재민 수용시설에 치안 서비스센터 운용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필요시 여경동원)
 - 수사활동·복구진척 등 진행사항에 대한 필요정보 지원
 - 기타 각종 주민생활 편의 지원
- 피해주민의 여론 및 동향 파악
 - 정부정책 수립 및 조기수습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 주민동향 파악을 통한 집단적 항의시위 등 대비

라. 관내 재해발생 위험개소 (총 2개소)

○ 침수 우려지역 (1개소)

위험개소	위험장소	위험요소	관할지구대(파출소)
1	안양학의천 일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	범계·인덕원·비산 평안·호계

○ 산사태 우려지역(1개소)

위험개소	위험장소	위험요소	관할지구대
1	관악산 등산로(망해암로)	등산객고립 및 산사태 우려	비산지구대

마. 구조 및 지원

○ 상황보고 전파체제 확립(긴급종합상황반 및 현장상황반 운용)

⇒ 대규모 피해 발생시

- 긴급 현장 상황반(1/10, 상설 : 즉시 현장 진출)
- 긴급 종합 상황반(1/12, 상설 : 상황실에 위치 보고, 전파체제 확립)

○ 인명구조 체제 확립

· 상황발생 신고 접수 동시 즉각 출동 구조활동 전개

단계별	경 력	출동요령	비고
1단계 (초동단계)	112타격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형기차 (형사당직반), 싸이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발생 신고접보 동시 즉각 출동 ◦ 출동병력, 차량등은 인명구조장비 확보대비: 구명로프, 구명대, 구명환, 구조망, 인명구조인양기, 구명자일, 튜브, 핸드폰,쌍안경, 들것, 급약품 등 ※ 상황실 상시 비치 ◦ 24시간 상시 출동태세 확립 	
2단계 (지원단계)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 형기반, 1단위부대 등		

□ 재난대비 구조장비 보유현황

○ 일반 구조장비

장 비 명		수 량
동력 절단기	大	0
	小	0
	커터기	0
접는 사다리		1
구급 배낭		0
리코 라이트		0
완 강 기		0
구 명 복		2
구 명 조 끼		30
구 명 환		23
해 머		0
모 포		0
로 프	25M	0
	50M	0
들 것		7
인명구조벨트		0
안 전 벨 트		0
카 리 비 너		0
기타 (5종, 260 점)	메 가 폰	2
	노란자켓	0
	노란조끼	0
	후색조끼	0
삼		20

○ 산악 구조장비

장 비 명		수 량
쥬	마	0
만 능 도 끼		0
8 자 하 강 기		0
아 이 쥬		24
배 낭		12
들 것		7
카 리 비 너		0
헤 드 램 프		5
안 전 벨 트		0
도 르 래		0
폴 리 스 라 인		10
산 악 용 로 프		1
절 단 기		3
골 절 부 목		0
맥 라 이 트		1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발 행 일 : 201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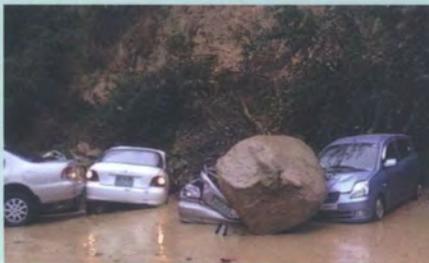
발 행 인 : 안양시장

발 행 처 : 안양시청 안전총괄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발간등록번호 : 71-3830000-000026-10

비 매 품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